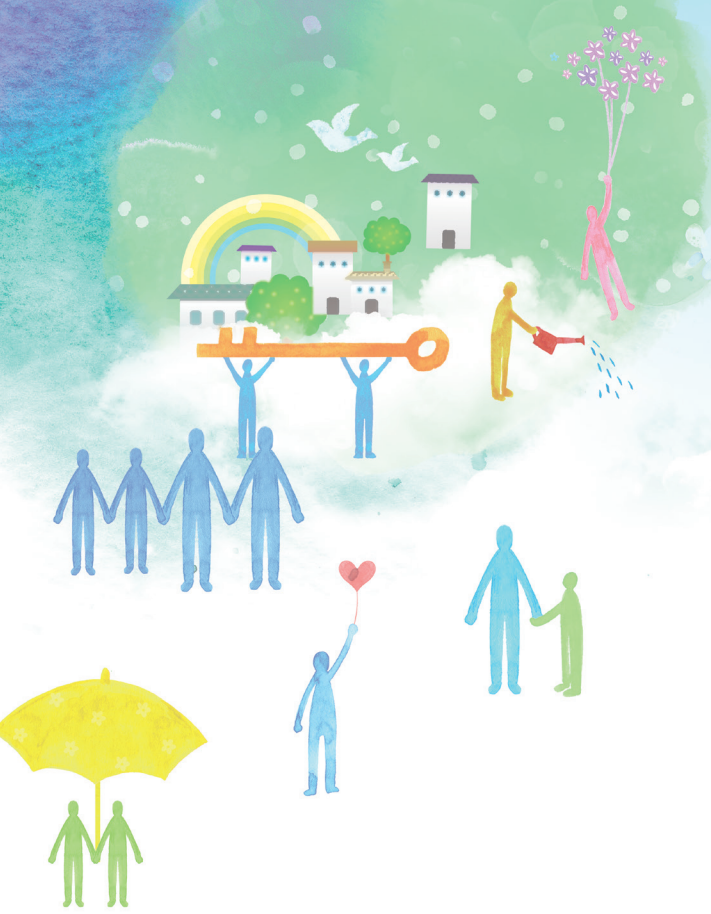
www.humanrights.go.kr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43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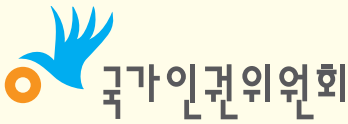
ISSN 2288-5315



2013 인권통계

Human Rights Statistical Yearbook 2013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로고와 심벌

국가인권위원회 로고는 인권기관으로서 갖춰야 할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로고 타입 자체를 간결하게 만들고 조형적 완성도를 높여 국가를 대표하는 인권기관으로서의 격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창조' 와 '생명' 그리고 음양오행에서 '봄' 을 상징하는 청색을 사용하여 사람을 중히 여기는 국가인권위원회만의 아이덴티티를 창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심벌은 현대성과 동양성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중앙과 집중', '다양성과 긍정', '해와 밝음', '조화와 포용', '공명정대' 등의 뜻을 내포하는 가장 원초적 조형인 원과 '평화와 포용'을 상징하는 비둘기와 손을 활용하여 이미지를 형상화하였습니다.

일러두기

1. 〈인권통계〉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업무실적에 관한 통계, 국내 인권통계 및 국제 인권통계를 소개한 것임.
2. 〈인권통계〉의 자료는 2013. 12. 31.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통계를 작성하였고, 누계는 위원회 설립(2001. 11. 24.) 이후부터 2013. 12. 31.까지의 합을 의미하며, 특별한 경우 누계 산정기간을 명기하였음.
   - 통계표 중에서 사용된 부호 '–'의 뜻은 해당 숫자 없음(0)을 의미함.
   - 관계기관 또는 침해된 기본권 등이 복수인 경우 대푯값을 기준으로 작성함.
   - 〈2013 연간보고서〉 등 위원회에서 기 발표한 자료와 수치가 일치하지 않은 것은 본 〈인권통계〉에서 오류를 수정한 것이니 본 호의 수치를 이용하여야 함.
   - 본문에서 적시한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말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부록에 수록하였음.
3. 국내 인권통계에서 인용한 각 지표들의 출처는 표 하단과 부록에 소개하였음. 또한 용어는 국가기관 등이 발간한 원본 통계표를 훼손하지 않기 위하여 가급적 원본 통계표그대로 인용하였음.
4. 국제 인권통계는 OECD 34개국과 G20 국가(총 42개국)를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원자료에 이들 나라의 지표값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하였음. 그리고 동일 순위 또는 지표값이 동일한 경우 국가명 알파벳 순으로 표기하였음.
5. 국내 및 국제 인권통계 인용시 출처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표기하였음.
   - 인쇄물로 출판된 경우 – 발행처, 책제목(발행연도)
   - 웹사이트에 게재된 경우 – 게시기관, 홈페이지 주소
6. 국내 및 국제 인권통계는 가급적 2013년 통계를 수록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불가피한 경우 가급적 최근 발표된 자료를 인용하였음.
7. 본 통계표에 수록된 숫자는 반올림하였기 때문에 합계의 수치와 내용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8. 〈2013 인권통계〉 자료는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humanrights.go.kr)〉 인권정보 · 정책)〉인권통계자료)에서도 내려받으실 수 있음.

   ※ 문의처 :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실(☎ 02–2125–9797, Fax 02–2125–0913, E–mail hoso@humanrights.go.kr)에 문의하시기 바람.

발 간 사

2001년 설립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확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기본권 증진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인권통계〉는 그간의 활동을 수치화하여 생생한 기록으로 남기고, 많은 이들과 함께 인권의 현재를 공유하고자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3 인권통계〉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후부터 2013년도까지 위원회의 업무 전반에 관한 통계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출간되는 인권통계는 작년 〈2012 인권통계〉 발간을 이어간다는 차원을 넘어 「국가인권지수개발을 위한 지표선정 및 지수개발」 용역의 결과를 반영하여 내용을 한층 더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제2부 국내 인권통계는 총론 및 일반현황, 주요 인권 취약 계층별 통계를 보완하고, 시민적 · 정치적 권리와 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에 관한 통계를 추가하여 총 4개의 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사건을 계기로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를 중심으로 하는 군 관련 통계표를 수록하였습니다.

인권통계의 발간은 우리 위원회가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의 결실인 동시에, 위원회의 주요 업무에 관한 현황을 관리하고 국내외 인권 상황을 파악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정기적인 인권통계 발간이 인권문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학문적인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고, 인권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도 인권통계는 연간보고서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물로서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인권통계가 향후 국가승인통계로 발간되어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과 위원회의 다양한 활동들을 더욱 많은 국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인권통계 발간을 위해 관심을 갖고 애써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목 차

개 관 ····· 1

제1부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 7

제1장 인권정책 ····· 9

제1절 인권정책의 이해 ····· 9

제2절 인권정책 권고 등 ····· 10

1. 연도별 현황 ····· 10
2. 의견표명 ····· 11
3. 의견제출 ····· 11

제3절 권고수용 현황 ····· 12

제4절 분야별 인권정책 권고 등 현황 ····· 17

1. 이주인권 ····· 17
2. 여성·성소수자 인권 ····· 18
3. 장애인 인권 ····· 19
4. 북한인권 ····· 21
5. 인권교육 ····· 22

제5절 인권상황실태조사 등 ····· 23

1.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 23
2. 정책연구용역 ····· 24

제2장 인권상담 ····· 25

제1절 인권상담의 이해 ····· 25

제2절 인권상담 ····· 26

1. 인권상담 현황 ····· 26
2. 상담신청인 현황 ····· 28

3. 유형별·기관별 상담 현황 ····· 29
□ 유형별 상담 현황 ····· 29
□ 인권침해 상담 현황 ····· 29
□ 주요기관별 인권침해 상담 현황 ····· 30
□ 차별행위 상담 현황 ····· 34
□ 기타 상담 현황 ····· 35
4. 상담 처리결과 현황 ····· 36
5. 면전진정 ····· 37

제3절 민원 및 안내 ····· 39
1. 민원 ····· 39
2. 안내 ····· 40

제3장 조사 및 구제 ····· 41

제1절 조사·구제의 이해 ····· 41

제2절 진정 접수 ····· 42
1. 진정접수 현황 ····· 42
2. 진정인 현황 ····· 44
3. 인권침해 진정 접수 현황 ····· 45
□ 주요기관의 인권침해 내용별 진정 접수 현황 ····· 47
4. 차별행위 진정 접수 현황 ····· 51
5. 성희롱 진정 접수 현황 ····· 56
6. 장애차별 진정 접수 현황 ····· 58
7. 기타 진정 접수 현황 ····· 59

제3절 진정 처리결과 ····· 60
1. 진정 처리결과 현황 ····· 60
2.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63
□ 검찰 ····· 70
□ 경찰 ····· 72
□ 군 ····· 74
□ 구금시설 ····· 76

□ 다수인보호시설 ····· 78
□ 출입국관리기관 ····· 80
□ 각급학교 ····· 81
3.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83
□ 성별 ····· 87
□ 임신 또는 출산 ····· 89
□ 혼인여부 ····· 91
□ 나이 ····· 93
□ 인종 등 ····· 95
□ 용모·신체조건 ····· 97
□ 학력 ····· 99
□ 병력 ····· 101
□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 103
□ 사회적 신분 ····· 105
□ 기타사유 ····· 107
4. 성희롱 진정 처리결과 ····· 109
5. 장애차별 진정 처리결과 ····· 111
6. 기타 진정 처리결과 ····· 113

제4절 조사·구제 ····· 115
1. 구제율 ····· 115
2. 권고수용현황 ····· 116
□ 인권침해 진정 권고수용현황 ····· 117
□ 차별행위 진정 권고수용현황 ····· 118
□ 기타 진정 권고수용현황 ····· 119
3. 긴급구제 ····· 120
4. 권고이행계획 회신현황 ····· 120

제5절 직권 및 방문조사 ····· 121
1. 직권조사 ····· 121
□ 인권침해 직권조사 ····· 122
□ 차별행위 직권조사 ····· 123
2. 방문조사 ····· 124

제4장 인권교육 및 협력 ····· 127

제1절 인권교육 및 협력의 이해 ····· 127

제2절 인권교육 ····· 128

1. 인권교육 현황 ····· 128
2. 인권교육과정 ····· 129
3. 방문프로그램 ····· 129
4. 사이버인권교육 ····· 130
5. 인권특강 ····· 131

제3절 국내외 협력 ····· 132

1. 인권현장방문 ····· 132
2. 보조금 ····· 132
3. 국제회의 및 외빈 방문 ····· 132

제5장 일반행정 ····· 134

제1절 일반행정의 이해 ····· 134

제2절 위원회 의사 운영 ····· 135

1. 심의 · 의결기구 ····· 135
   - □ 전원위원회 ····· 135
   - □ 상임위원회 ····· 135
   - □ 소위원회 ····· 136
   - □ 조정위원회 ····· 138
2. 자문기구 ····· 140
   - □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 140
   - □ 정책자문위원회 ····· 140
   - □ 전문위원회 ····· 140

제3절 일반현황 ····· 145

1. 사무처 조직 ····· 145
2. 정보공개 ····· 148
3. 청문회 ····· 150
4. 업무협약 ····· 151

5. 대한민국인권상, 인권보도상 ····· 151
6. 과태료 및 보상금 ····· 152

제2부 국내 인권통계 ····· 153

제1장 총론 및 일반현황 ····· 155

제1절 총론 ····· 155
제2절 일반현황 ····· 156

제2장 주요 인권취약계층별 현황 ····· 159

제1절 여성 ····· 159
제2절 아동·청소년 ····· 165
제3절 장애인 ····· 177
제4절 노인 ····· 197
제5절 외국인, 난민 ····· 205
제6절 북한이탈주민, 재외동포 ····· 213
제7절 군 ····· 221

제3장 시민·정치적 권리 ····· 226

제1절 생명권 ····· 226
제2절 신체의 자유 ····· 231
제3절 공정한 재판을 보호받을 권리 ····· 241
제4절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 244
제5절 거주·이전의 자유 ····· 247
제6절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251
제7절 언론·출판의 자유 ····· 2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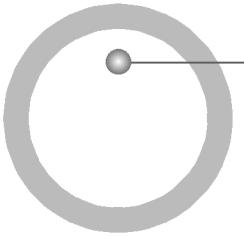
제8절 집회·결사의 자유 ····· 259
제9절 참정권 ····· 263

제4장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 267
제1절 사회보장권 ····· 267
제2절 노동권 ····· 284
제3절 건강권·환경권 ····· 294
제4절 교육권·문화권 ····· 299
제5절 주거권 ····· 306

제3부 국제 인권통계 ····· 309

제1장 국제기구 통계 ····· 311
제2장 비정부기구(NGO) 통계 ····· 338
제3장 학술기관 통계 ····· 351

부 록(별도첨부) ····· 359



개 관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하는 '2013년 인권통계'는 제1부 국가인권위원회 통계와 제2부 국내 인권통계, 그리고 제3부 국제 인권통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제1부인 국가인권위원회 통계는 인권정책, 인권상담, 조사 및 구제, 인권교육 및 협력, 일반행정으로 구분하고, 2013년도 통계를 포함하여 최근 5년간의 자료를 시간순서대로 배치하여 발간하였다.

제2부 국내 인권통계는 그간 인구 및 계층별 일반현황에 국한되어 있어 지난해와 다르게 자유권 및 사회권 등 기본권 영역 등을 보완하여 통계자료를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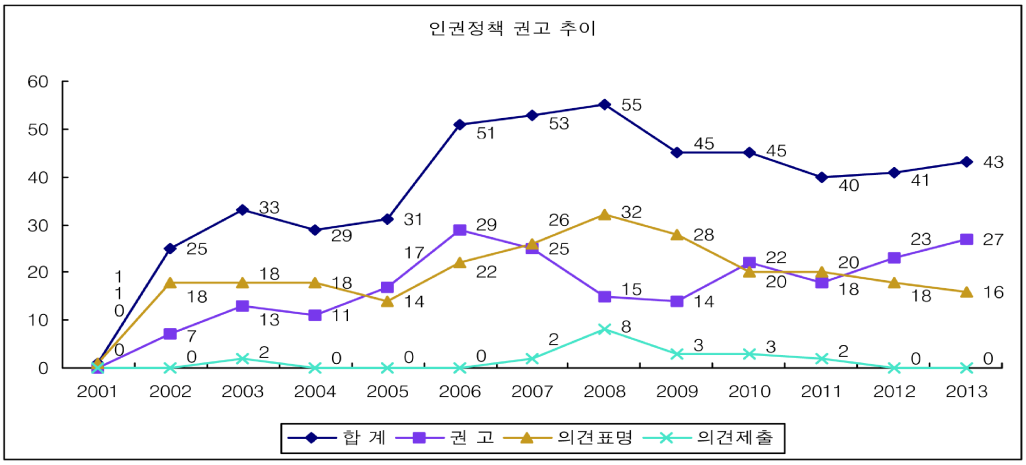
제3부 국제인권통계는 유엔 및 그 전문기관,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 등의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학술기관 통계로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제1부에서 제3부까지 배열하였고, 우선 발간하는 제1부 국가인권위원회 통계는 아래와 같이 우리 위원회의 핵심업무인 인권정책 권고, 인권상담, 진정 접수 및 처리, 권고 수용률 및 인권교육의 영역별로 간략하게 소개한다.

인권정책 권고

2013년 한 해 동안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인권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과 시정을 위하여 권고 27건, 의견표명 16건 등 총 43건의 인권정책 관련 권고[1]를 하여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설립이후 2013년까지 인권정책 권고는 총 492건으로, 권고 221건(연평균 18.4건), 의견표명 251건(연평균 20.9건), 의견제출 20건이다.

<그림 1> 인권정책 권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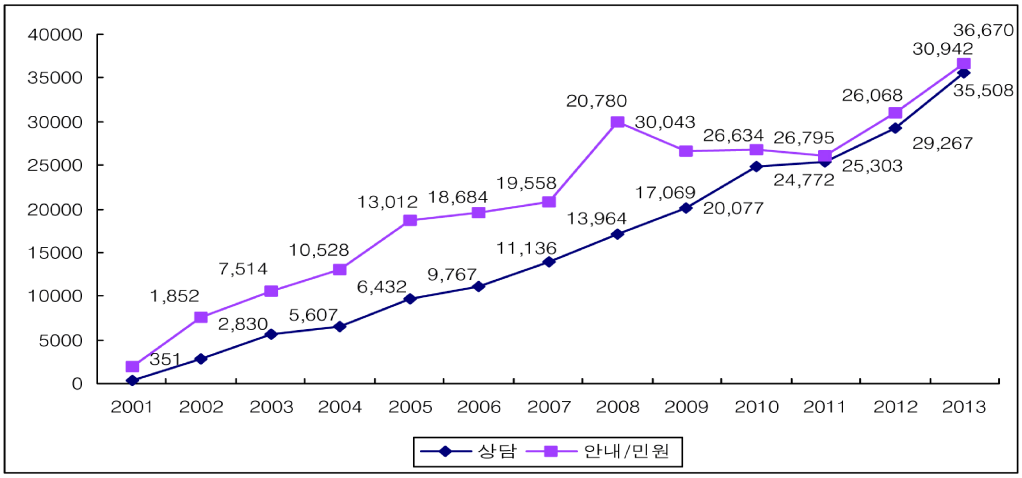


1) 법 제19조제1호 및 제25조제1항

인권상담

2013년 위원회는 35,508건의 인권상담을 실시하였고, 36,670건의 민원·안내를 처리하였다. 위원회 설립이후 2013년까지 누적 통계는 인권상담 202,083건, 민원·안내 269,080건이다. 2008년에 민원·안내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이 후, 전반적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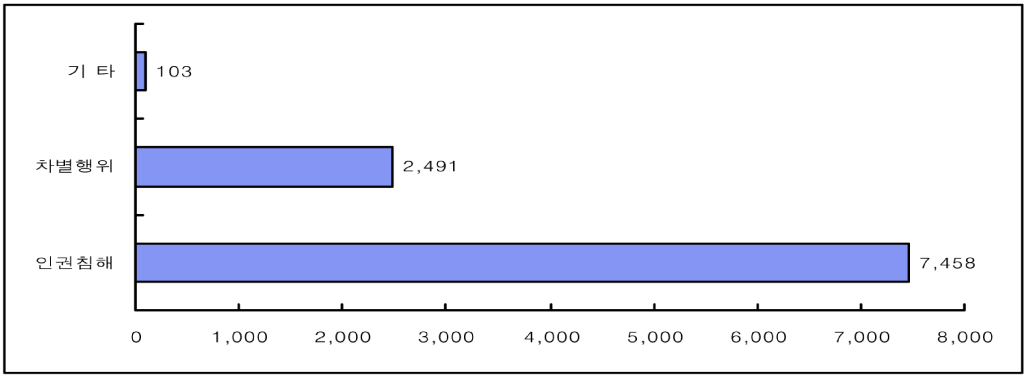
<그림 2> 인권상담, 민원·안내 추이



진정 접수 및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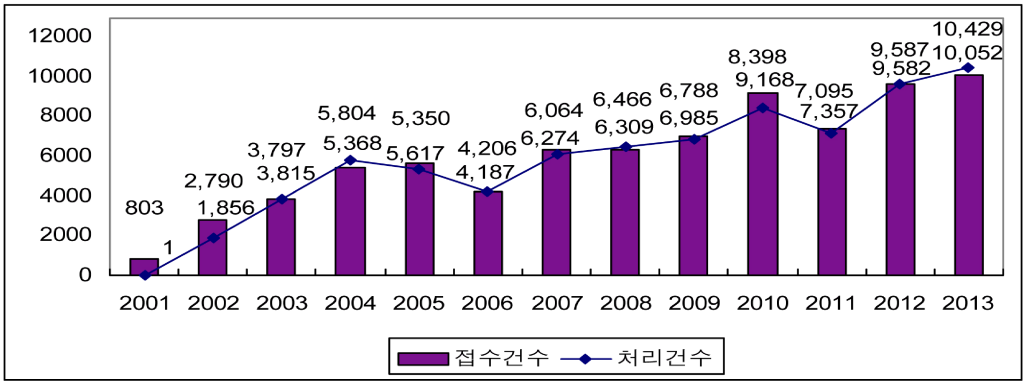
2013년에 위원회는 진정 10,052건을 접수하였다. 이를 유형별로 분석하면 인권침해 7,458건(74.2%), 차별행위 2,491건(24.8%), 기타 진정 103건(1.0%)이었다.

<그림 3> 유형별 진정 구성비



2013년에 위원회는 10,429건의 진정을 처리하였다. 이 중 구제조치 등의 권고[2]는 214건, 그 외 고발, 조정, 법률구조 요청 및 징계권고는 9건, 합의종결 353건 등 576건을 인용하였다. 지난해 보다 인용건수는 증가하였지만, 권고건수가 111건 줄어들고 합의종결 건수가 209건 대폭 증가하였다. 미인용 종결건수는 각하 6,291건, 기각 3,491건, 이송 29건, 조사중지 42건이다. 위원회 설립이후 연도별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건수를 보면, 2006년과 2011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종결건수가 접수 건수를 상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진정 접수 및 처리건수 추이[3]



권고수용률 등

2013년 위원회는 인권정책 권고 27건, 진정사건 권고 217건, 직권·방문조사 권고 9건 등 총 253건[4]의 권고 결정을 하였고, 그중 153건의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5]을 회신 받았다. 2013년에 결정한 권고에 대한 회신 결과를 분석한 결과, 권고수용률[6]은 98.0%이다. 설립 이후 2013년까지 위원회는 총 3,199건의 권고를 결정하였고, 2013년말 기준 누적 권고 수용률(대푯값)은 88.7%이다. 한편, 2013년 피진정기관의 90일 이내 권고이행계획 회신 현황을 살펴보면, 90일 이내 회신은 201건, 90일 초과 87건, 미회신 20건이고, 90일 이내 회신율[7]은 67.4%로 나타났다.

---

2) 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3) 2013년 진정 10,052건을 접수하였고, 10,429건을 처리하여 설립이후 처음으로 일만건 이상의 진정을 접수하고 처리하였음.

4) 권고 사후관리는 인권정책 권고(법 제19조 및 제25조), 진정사건 권고(법 제44조), 징계권고(법 제45조제2항), 긴급구제 조치(법 제48조)를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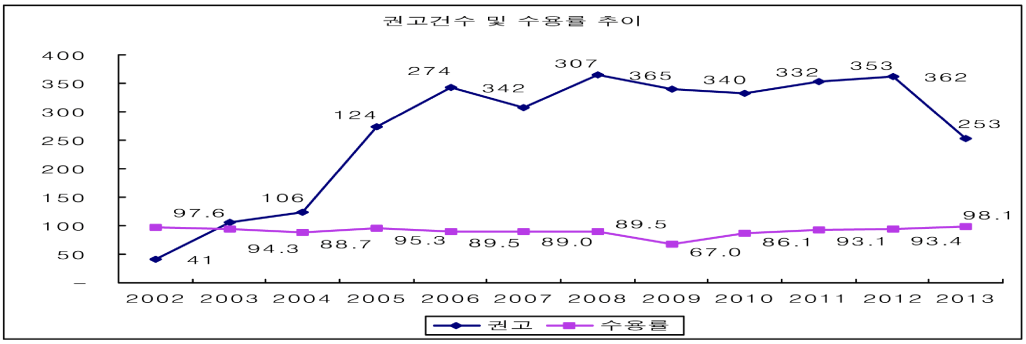
5)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

6) 권고수용률은 권고의결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함.

$$\text{권고수용률} = \frac{(\text{수용} + \text{일부수용})\text{건수}}{(\text{수용} + \text{일부수용} + \text{불수용})\text{건수}} * 100$$

7) $$\text{90일 이내 회신율} = \left(\frac{\text{90일이내 회신건수}}{\text{피권고기관수} - \text{검토중(90일내)건수}}\right)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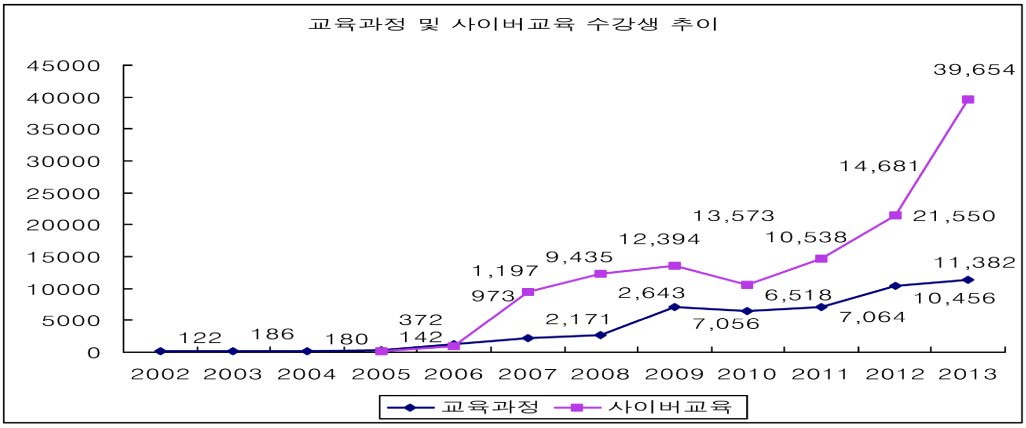
〈그림 5〉 권고건수 및 수용률 추이



인권교육

2013년에 위원회는 인권교육센터를 운영하여 총 180,323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형태별로 분석하면, 인권교육과정 245회를 운영하여 11,382명을 교육하였고, 159회의 방문프로그램을 통해 4,588명에게 위원회와 인권에 대한 소개를 하였다. 그리고 사이버 인권교육 150회를 운영하여 39,654명을 교육하였고, 1,280회에 걸쳐 직원 및 인권강사를 파견하여 112,956명에게 인권특강을 실시하였다. 또한 위원회가 개발한 인권교육 콘텐츠를 공동활용하여 11,743명(177회)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위원회 설립 이후 2013년까지 위원회는 다양한 형태로 총 758,414명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인권교육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10년부터 「정신보건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이 확대되면서 수요가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림 6〉 교육과정 및 사이버교육 수강생 추이



제1부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제1장 인권정책

제2장 인권상담

제3장 조사 및 구제

제4장 인권교육 및 협력

제5장 일반행정

제1장 인권정책

제1절 인권정책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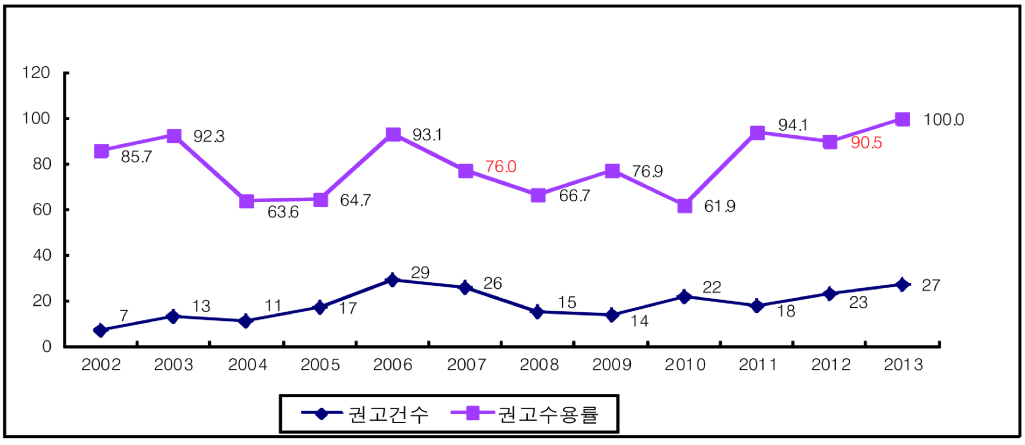
우리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을 조사·연구하여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며, 국제인권조약 가입과 조약의 이행에 관한 권고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9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출범 이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권고, 사형제 폐지 의견표명 등 다양한 인권사안에 대한 인권정책 권고를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아울러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위원회가 조사하거나 처리한 내용에 관해서는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인권문제에 대한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인권침해의 유형·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고 권고한다.

위원회는 인권정책 기능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公私) 단체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정부보고서 작성 시 위원회 의견 제시, 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조회, 청문회 운영 등을 할 수 있다.

〈그림 7〉 인권정책 권고건수와 수용률 추이



제2절 인권정책 권고 등[8)]

1. 연도별 현황

<표 1-1-1> 인권정책 권고 등 연도별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 계	권 고	의견표명	의견제출
누 계	492	221	251	20
2013	43	27	16	–
2012	41	23	18	–
2011	40	18	20	2
2010	45	22	20	3
2009	45	14	28	3
2008	55	15	32	8
2007	53	25	26	2
2006	51	29	22	–
2005	31	17	14	–
2004	29	11	18	–
2003	33	13	18	2
2002	25	7	18	–
2001	1	–	1	–

8)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위한 권고는 ⅰ)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법 제25조제1항), ⅱ)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법 제44조제1항제2호)가 있으며, 위원회는 전자는 인권정책 분야에서, 후자는 조사구제 분야에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2. 의견표명

<표 1-1-2> 국제인권규약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권 이사회	자유권 규약[9]	사회권 규약[10]	인종차별 철폐협약[11]	고문방지 협약[12]	여성차별 철폐협약[13]	아동권리 협약[14]	강제실종 금지협약	장애인권리 협약[15]
누 계	16	1	2	1	3	3	3	2	–	1
2013	–	–	–	–	–	–	–	–	–	–
2012	2	1	–	–	–	1	–	–	–	–
2011	2	–	1	–	1	–	–	–	–	–
2010	1	–	–	–	–	–	–	–	–	1
2009	1	–	–	–	–	–	1	–	–	–
2008	1	–	–	–	–	–	–	1	–	–
2007	–	–	–	–	–	–	–	–	–	–
2006	3	–	–	1	1	–	–	1	–	–
2005	1	–	–	–	–	–	1	–	–	–
2004	1	–	1	–	–	–	–	–	–	–
2003	2	–	–	–	–	1	1	–	–	–
2002	2	–	–	–	1	1	–	–	–	–

3. 의견제출[16]

<표 1-1-3> 법원 및 헌법재판소 의견제출 현황

(단위 : 건)

구 분	누 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20	–	2	–	–	–	2	8	3	3	2	–	–
법 원	7	–	–	–	–	–	–	5	–	1	1	–	–
헌법재판소	13	–	2	–	–	–	2	3	3	2	1	–	–

9)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0)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1)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12)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고문방지협약,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13)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4)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5)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16) 법 제28조(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출)

제3절 권고수용 현황

<표 1-2-1> 연도별 권고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권고건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A+B)/C
		소계(C)	수용(A)	일부수용(B)	불수용		
2013	221	196	90	66	39	26	80.0
2012	194	181	86	55	39	14	78.3

※ 연도별 권고수행현황은 각 연도별 12월 31일 누계기준(위원회 전반 통계를 정립한 2012년도부터 실시)

<표 1-2-2>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권고건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17]
		합 계	수 용	일부수용	불수용		
누 계	221	195	90	66	39	26	80.0
2013	27	6	1	5	0	21	100.0
2012	23	21	8	11	2	2	90.5
2011	18	17	9	7	1	1	94.1
2010	22	21	5	8	8	1	61.9
2009	14	13	5	5	3	1	76.9
2008	15	15	4	6	5	–	66.7
2007	25	25	9	10	6	–	76.0
2006	29	29	24	3	2	–	93.1
2005	17	17	7	4	6	–	64.7
2004	11	11	4	3	4	–	63.6
2003	13	13	10	2	1	–	92.3
2002	7	7	4	2	1	–	85.7

17) 권고수용률은 권고의결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함. 권고수용률 = $\frac{(\text{수용}+\text{일부수용})\text{건수}}{(\text{수용}+\text{일부수용}+\text{불수용})\text{건수}} * 100$

<표 1-2-3> 2013년 피권고기관별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피권고기관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소 계	수 용	일부수용	불수용		
합 계	265	59	24	35	0	206	100.0
고용노동부	7	4	2	2	–	3	100.0
교육부	4	1	–	1	–	3	100.0
국무총리실	1	–	–	–	–	1	–
국방부	4	–	–	–	–	4	–
국토교통부	4	2	1	1	–	2	100.0
국회	1	1	–	1	–	–	100.0
기획재정부	1	1	–	1	–	–	100.0
대법원	2	–	–	–	–	2	–
대법원 법원행정처	1	1	1	–	–	–	100.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	–	–	–	–	1	–
법무부	3	–	–	–	–	3	–
보건복지부	7	2	–	2	–	5	100.0
시도교육청	34	17	4	13	–	17	100.0
안전행정부	1	–	–	–	–	1	–
여성가족부	1	–	–	–	–	1	–
㈜매일방송	1	–	–	–	–	1	–
㈜문화방송	1	–	–	–	–	1	–
㈜에스비에스	1	–	–	–	–	1	–
㈜제이티비씨	1	–	–	–	–	1	–
㈜조선방송	1	–	–	–	–	1	–
㈜채널에이	1	–	–	–	–	1	–
지방자치단체	184	30	16	14	–	154	100.0
통일부	1	–	–	–	–	1	–
한국교육방송공사	1	–	–	–	–	1	–
한국방송공사	1	–	–	–	–	1	–

<표 1-2-4> 2013년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별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피권고 기관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소 계	수 용	일부수용	불수용		
합 계	57	30	16	14	–	27	100.0
서울특별시	4	2	1	1	–	2	100.0
부산광역시	3	2	2	–	–	1	100.0
대구광역시	4	2	1	1	–	2	100.0
인천광역시	4	2	1	1	–	2	100.0
광주광역시	4	2	1	1	–	2	100.0
대전광역시	4	2	1	1	–	2	100.0
울산광역시	4	2	1	1	–	2	100.0
경기도	3	2	1	1	–	1	100.0
강원도	3	2	1	1	–	1	100.0
충청북도	3	1	1	–	–	2	100.0
충청남도	3	1	1	–	–	2	100.0
세종특별자치시	2	–	–	–	–	2	–
전라북도	3	2	1	1	–	1	100.0
전라남도	3	2	1	1	–	1	100.0
경상북도	3	2	1	1	–	1	100.0
경상남도	3	2	1	1	–	1	100.0
제주특별자치도	4	2	–	2	–	2	100.0

<표 1-2-5> 2013년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별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피권고 기관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소 계	수 용	일부수용	불수용		
합 계	127	–	–	–	–	127	–
서울특별시	–	–	–	–	–	–	–
부산광역시	–	–	–	–	–	–	–
대구광역시	–	–	–	–	–	–	–
인천광역시	–	–	–	–	–	–	–
광주광역시	–	–	–	–	–	–	–
대전광역시	–	–	–	–	–	–	–
울산광역시	–	–	–	–	–	–	–
경기도	29	–	–	–	–	29	–
강원도	18	–	–	–	–	18	–
충청북도	9	–	–	–	–	9	–
충청남도	11	–	–	–	–	11	–
전라북도	7	–	–	–	–	7	–
전라남도	19	–	–	–	–	19	–
경상북도	18	–	–	–	–	18	–
경상남도	16	–	–	–	–	16	–
제주특별자치도	–	–	–	–	–	–	–

<표 1-2-6> 2013년 시·도교육청별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피권고 기관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소 계	수 용	일부수용	불수용		
합 계	34	17	4	13	–	17	100.0
서울특별시	2	1	–	1	–	1	100.0
부산광역시	2	1	–	1	–	1	100.0
대구광역시	2	1	–	1	–	1	100.0
인천광역시	2	1	–	1	–	1	100.0
광주광역시	2	1	1	–	–	1	100.0
대전광역시	2	1	–	1	–	1	100.0
울산광역시	2	1	–	1	–	1	100.0
경기도	2	1	1	–	–	1	100.0
강원도	2	1	1	–	–	1	100.0
충청북도	2	1	–	1	–	1	100.0
충청남도	2	1	–	1	–	1	100.0
세종특별자치시	2	1	–	1	–	1	100.0
전라북도	2	1	1	–	–	1	100.0
전라남도	2	1	–	1	–	1	100.0
경상북도	2	1	–	1	–	1	100.0
경상남도	2	1	–	1	–	1	100.0
제주특별자치도	2	1	–	1	–	1	100.0

<표 1-2-7> 권고이행계획 90일 이내 회신현황

(단위 : 건, %)

구 분	피권고 기관수(A)	검토중 (90일내)(B)	회신		미회신	90일 이내 회신율[18]
			90일 이내(C)	90일 초과		
2013	265	182	36	45	2	43.4
2012	576	55	131	254	136	25.1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19] 2012.3.21.개정(2012년 권고 이행계획 회신 현황 작성기간은2012.3.21.~2012.12.31.)

18) 90일 이내 회신율 = $\left(\frac{\text{90일이내 회신건수}}{\text{피권고기관수} - \text{검토중(90일내)건수}}\right) * 100$

19) 법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③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제4절 분야별 인권정책 권고 등 현황

1. 이주인권

<표 1-3-1> 이주 인권정책 권고 또는 의견표명, 의견제출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 계	권 고	의견표명	의견제출
누 계	35	25	10	–
2013	5	4	1	–
2012	3	3	–	–
2011	7	5	2	–
2010	5	2	3	–
2009	3	3	–	–

<표 1-3-2> 이주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권고건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합 계	수 용	일부수용	불수용		
누 계	25	19	6	11	2	6	89.5
2013	4	–	–	–	–	4	–
2012	3	2	1	1	–	1	100.0
2011	5	5	1	3	1	–	80.0
2010	2	2	1	1	–	–	100.0
2009	3	3	2	–	1	–	66.7

<표 1-3-3> 2013년 피권고기관별 이주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피권고 기관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소 계	수 용	일부수용	불수용		
합 계	12	–	–	–	–	12	–
고용노동부	1	–	–	–	–	1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	–	–	–	–	1	–
법무부	1	–	–	–	–	1	–
보건복지부	1	–	–	–	–	1	–
㈜매일방송	1	–	–	–	–	1	–
㈜문화방송	1	–	–	–	–	1	–
㈜에스비에스	1	–	–	–	–	1	–
㈜제이티비씨	1	–	–	–	–	1	–
㈜조선방송	1	–	–	–	–	1	–
㈜채널에이	1	–	–	–	–	1	–
한국교육방송공사	1	–	–	–	–	1	–
한국방송공사	1	–	–	–	–	1	–

2. 여성·성소수자 인권

<표 1-3-4> 여성·성소수자 인권정책 권고 또는 의견표명, 의견제출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 계	권 고	의견표명	의견제출
누 계	8	3	4	1
2013	2	1	1	
2012	2	1	1	–
2011	–	–	–	–
2010	4	1	2	1
2009	–	–	–	–

<표 1-3-5> 여성·성소수자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권고건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합 계	수 용	일부수용	불수용		
누 계	3	2	2	–	–	1	100.0
2013	1	–	–	–	–	1	–
2012	1	1	1	–	–	–	100.0
2011	–	–	–	–	–	–	–
2010	1	1	1	–	–	–	100.0
2009	–	–	–	–	–	–	–

<표 1-3-6> 2013년 피권고기관별 여성·성소수자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피권고기관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소 계	수 용	일부수용	불수용		
합 계	1	–	–	–	–	1	–
국방부	1	–	–	–	–	1	–

3. 장애인 인권

<표 1-3-7> 장애인 인권정책 권고 또는 의견표명, 의견제출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 계	권 고	의견표명	의견제출
누 계	31	20	11	–
2013	7	6	1	–
2012	3	2	1	–
2011	5	2	3	–
2010	6	–	6	–
2009	2	2	–	–

<표 1-3-8> 장애인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권고건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합 계	수 용	일부수용	불수용		
누 계	20	14	7	7	–	6	100.0
2013	6	2	1	1	–	4	100.0
2012	2	–	–	–	–	2	–
2011	2	2	–	2	–	–	100.0
2010	–	–	–	–	–	–	–
2009	2	2	–	2	–	–	100.0

<표 1-3-9> 2013년 피권고기관별 장애인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피권고 기관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소 계	수 용	일부수용	불수용		
합 계	145	4	2	2	–	141	100.0
고용노동부	1	–	–	–	–	1	–
국무총리실	1	–	–	–	–	1	–
국토교통부	2	–	–	–	–	2	–
대법원	1	1	–	1	–	–	100.0
대법원 법원행정처	1	1	1	–	–	–	100.0
법무부	1	1	–	1	–	–	100.0
보건복지부	2	1	1	–	–	1	100.0
안전행정부	1	–	–	–	–	1	–
지방자치단체	135	–	–	–	–	135	–

4. 북한인권

<표 1-3-10> 북한 인권정책 권고 또는 의견표명, 의견제출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 계	권 고	의견표명	의견제출
누 계	19	9	10	–
2013	3	1	2	–
2012	2	–	2	–
2011	3	3	–	–
2010	3	2	1	–
2009	1	–	1	–

<표 1-3-11> 북한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권고건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합 계	수 용	일부수용	불수용		
누 계	9	8	6	1	1	1	87.5
2013	1	–	–	–	–	1	–
2012	–	–	–	–	–	–	–
2011	3	3	3	–	–	–	100.0
2010	2	2	–	1	1	–	50.0
2009	–	–	–	–	–	–	–

5. 인권교육

<표 1-3-12> 인권교육 정책 권고 또는 의견표명, 의견제출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 계	권 고	의견표명	의견제출
누 계	10	6	4	–
2013	1	1	–	–
2012	5	2	3	–
2011	1	1	–	–
2010	1	1	–	–
2009	2	1	1	–

<표 1-3-13> 인권교육 정책 권고 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권고건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합 계	수 용	일부수용	불수용		
누 계	6	5	1	4	–	1	100.0
2013	1	–	–	–	–	1	–
2012	2	2	–	2	–	–	100.0
2011	1	1	1	–	–	–	100.0
2010	1	1	–	1	–	–	100.0
2009	1	1	–	1	–	–	100.0

<표 1-3-14> 2013년 피권고기관별 인권교육 정책 권고 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피권고 기관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소 계	수 용	일부수용	불수용		
합 계	18	–	–	–	–	18	–
교육부	1	–	–	–	–	1	–
시·도교육청	17	–	–	–	–	17	–

제5절 인권상황실태조사 등

1.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20]

<표 1-4-1> 인권상황실태조사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누 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건 수	183	29	23	26	17	24	14	11	8	7	8	8	8
예산액	5,610	750	750	700	700	550	350	300	330	280	300	300	300

<표 1-4-2> 분야별 인권상황실태조사 현황

(단위 : 건)

구 분	누 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누 계	183	29	23	26	17	24	14	11	8	7	8	8	8
인권기준·정책 일반(NAP포함)	47	4	8	23	1	–	4	1	–	1	3	–	2
구금·보호시설	9	3	3	–	–	2	–	–	–	1	–	–	–
군·경찰	12	3	3	–	2	3	–	–	–	–	–	1	–
여 성	5	–	–	–	–	1	1	1	1	–	–	1	–
장애·병력	19	7	–	2	4	3	1	1	1	–	–	–	–
아 동	17	5	–	–	1	4	3	1	1	2	–	–	–
노 인	8	3	–	–	–	1	1	–	1	–	–	1	1
이주·난민	10	1	3	–	1	–	–	1	–	2	–	1	1
차별일반· 전과 등 차별	10	1	1	1	2	2		–	1	–	1	1	–
비정규직· 노동권	11	–	2	–	1	2	1	1	–	–	1	2	1
건강권·주거권· 사회보장권	9	–	2	–	3	2	–	1	1	–	–	–	–
인권교육	7	1	–	–	–	2	1	2	–	–	1	–	–
정보인권	8	1	1	–	1	1	–	–	1	1	1	1	–
기업인권	4	–	–	–	–	–	–	2	1	–	1	–	–
북한인권	3	–	–	–	1	–	1	–	–	–	–	–	1
국제인권	4	–	–	–	–	1	1	–	–	–	–	–	2

20) 법 제19조 제4호

2. 정책연구용역

<표 1-4-3> 연구용역 현황

(단위 : 건)

구 분	누 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소 계	147	2	4	10	8	18	17	21	18	10	14	13	12
인권정책(일반)	6	–	–	–	–	1	–	–	–	–	2	1	2
정보인권	3	–	–	–	–	–	–	–	1	1	–	–	1
기업인권	2	–	–	–	–	–	–	–	–	–	–	1	1
북한인권	6	–	–	1	–	–	–	1	2	1	–	1	–
국제인권	1	–	–	–	–	–	1	–	–	–	–	–	–
인권교육	95	2	4	9	8	17	16	14	14	5	3	2	1
이주	5	–	–	–	–	–	–	–	–	–	2	1	2
차별	2	–	–	–	–	–	–	–	–	–	1	1	–
여성	4	–	–	–	–	–	–	–	–	–	1	1	2
장애	23	–	–	–	–	–	–	6	1	3	5	5	3

제2장 인권상담

제1절 인권상담의 이해

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진정 등 권리 구제 방안을 안내하며, 법과 제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전화, 방문,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인권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 수용자가 위원회에 진정하기를 원한다는 뜻을 알리면, 즉 면전진정을 신청하면 위원회 직원은 시설 수용자가 수용되어 있는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고 필요한 경우 진정을 받는다. 시설 수용자의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매년 구금·보호시설에 설치된 진정함의 운영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위원회는 인권 취약계층과 사회적 현안이 발생하는 인권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인권순회상담을 하기도 한다.

<표 2-1-1> 인권상담 · 민원 / 안내 현황

(단위 : 건, %)

구 분	합 계		인권상담		민원/안내	
누 계	471,163	100.0	202,083	42.9	269,080	57.1
2013	72,178	100.0	35,508	49.2	36,670	50.8
2012	60,209	100.0	29,267	48.6	30,942	51.4
2011	51,371	100.0	25,303	49.3	26,068	50.7
2010	51,567	100.0	24,772	48.0	26,795	52.0
2009	46,711	100.0	20,077	43.0	26,634	57.0
2008	47,112	100.0	17,069	36.2	30,043	63.8
2007	34,744	100.0	13,964	40.2	20,780	59.8
2006	30,694	100.0	11,136	36.3	19,558	63.7
2005	28,451	100.0	9,767	34.3	18,684	65.7
2004	19,444	100.0	6,432	33.1	13,012	66.9
2003	16,135	100.0	5,607	34.8	10,528	65.2
2002	10,344	100.0	2,830	27.4	7,514	72.6
2001	2,203	100.0	351	15.9	1,852	84.1

제2절 인권상담

1. 인권상담 현황

<표 2-1-2> 부서별 상담 현황

(단위 : 건, %)

구 분	합 계		인권상담센터		부 산		광 주		대 구	
누 계	202,083	100.0	156,897	77.6	18,448	9.1	14,143	7.0	12,595	6.2
2013	35,508	100.0	27,947	78.7	2,656	7.5	2,245	6.3	2,660	7.5
2012	29,267	100.0	21,668	74.0	3,172	10.8	2,178	7.4	2,249	7.7
2011	25,303	100.0	18,864	74.6	2,183	8.6	2,159	8.5	2,097	8.3
2010	24,772	100.0	18,926	76.4	2,107	8.5	1,776	7.2	1,963	7.9
2009	20,077	100.0	14,732	73.4	2,050	10.2	1,645	8.2	1,650	8.2

<표 2-1-3> 부서별 상담 경로별 현황

(단위 : 건)

구 분		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202,083	20,077	24,772	25,303	29,267	35,508
인권상담센터	소 계	156,897	14,732	18,926	18,864	21,668	27,947
	전화	129,230	12,286	16,642	17,021	19,655	25,860
	대면	17,213	1,534	1,850	1,566	1,761	1,637
	인터넷	182	14	5	-	-	-
	면전상담	10,272	898	429	277	252	450
부 산	소 계	18,448	2,050	2,107	2,183	3,172	2,656
	전화	12,129	1,214	1,422	1,569	2,442	1,991
	대면	2,012	222	209	183	232	304
	면전상담	4,307	614	476	431	498	361
광 주	소 계	14,143	1,645	1,776	2,159	2,178	2,245
	전화	9,010	998	1,148	1,615	1,617	1,794
	대면	2,026	245	255	278	257	258
	인터넷	1	-	1	-	-	-
	면전상담	3,106	402	372	266	304	193
대 구	소 계	12,595	1,650	1,963	2,097	2,249	2,660
	전화	8,385	779	1,133	1,598	1,828	2,203
	대면	886	141	107	112	109	139
	면전상담	3,324	730	723	387	312	318

<표 2-1-4> 인권순회상담 현황

(단위 : 회, 건)

구 분	실시횟수	처리결과		
		합 계	진정접수	상 담
누 계	**170**	**4,955**	**678**	**4,277**
2013	31	323	12	311
2012	18	548	32	516
2011	28	686	11	675
2010	23	544	33	511
2009	17	459	16	443

<표 2-1-5> 부서별 인권순회상담 현황

(단위 : 회, 건)

구 분			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처리결과	소 계	**4,955**	459	544	686	548	323
		진정접수	**678**	16	33	11	32	12
		상담	**4,277**	443	511	675	516	311
	순회상담 횟수		**170**	17	23	28	18	31
서 울	처리결과	소 계	**3,348**	318	297	419	285	72
		진정접수	**615**	11	22	10	30	8
		상담	**2,733**	307	275	409	255	64
	순회상담 횟수		**78**	6	11	9	7	12
부 산	처리결과	소 계	**334**	30	40	36	35	88
		진정접수	**19**	-	2	-	1	1
		상담	**315**	30	38	36	34	87
	순회상담 횟수		**27**	3	4	5	3	8
광 주	처리결과	소 계	**763**	86	139	71	78	116
		진정접수	**34**	5	9	1	1	3
		상담	**729**	81	130	70	77	113
	순회상담 횟수		**34**	6	6	5	4	3
대 구	처리결과	소 계	**510**	25	68	160	150	47
		진정접수	**10**	-	-	-	-	-
		상담	**500**	25	68	160	150	47
	순회상담 횟수		**31**	2	2	9	4	8

2. 상담신청인 현황

<표 2-1-6> 상담신청인 지역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구	대전	울산	경기	강원
누 계	202,083	10,771	3,461	1,851	3,195	1,435	841	657	7,007	1,174
2013	35,508	372	164	76	384	180	23	72	229	46
2012	29,267	531	184	131	265	170	50	70	469	118
2011	25,303	628	90	114	393	114	39	21	459	69
2010	24,772	682	221	111	326	89	67	36	580	66
2009	20,077	622	251	180	537	43	35	40	468	77

구 분	충북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미등록[21]
누 계	939	816	39	2,248	3,556	1,514	2,078	586	159,915
2013	21	29	1	285	525	239	272	78	32,512
2012	51	66	3	168	311	190	231	49	26,210
2011	34	66	1	195	593	109	90	78	22,210
2010	49	81	1	210	293	75	164	62	21,659
2009	50	50	5	260	420	42	130	37	16,830

<표 2-1-7> 상담신청인 성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 계	남	여	미등록
누 계	202,083	145,549	47,583	8,951
2013	35,508	23,944	10,121	1,443
2012	29,267	18,157	7,399	3,711
2011	25,303	15,842	6,577	2,884
2010	24,772	19,012	5,688	72
2009	20,077	15,969	4,095	13

<표 2-1-8> 상담신청인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 계	20대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미등록
누 계	202,083	536	4,250	9,190	12,347	7,688	4,786	163,286
2013	35,508	39	331	866	1,420	1,347	806	30,699
2012	29,267	44	335	832	1,416	1,197	693	24,750
2011	25,303	167	333	763	1,197	852	521	21,470
2010	24,772	62	459	971	1,578	1,055	566	20,081
2009	20,077	49	407	990	1,161	684	444	16,342

21) 상담신청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상담신청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할 때에는 그 내용을 생략할 수 있어 미등록 통계가 높게 나온 것이며(이하 같음), 면전진정 상담의 경우 지역별 통계가 상담신청인의 거주지가 아닌 구금·보호시설로 처리되고 있어 이를 반영할 경우 상담신청인의 지역별 통계가 왜곡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미등록으로 일괄 처리함.

3. 유형별·기관별 상담 현황

□ 유형별 상담 현황

<표 2-1-9> 유형별 상담 현황

(단위 : 건, %)

구 분	합 계		인권침해		차별행위		기타[22]		면전진정 상담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누 계	**202,083**	**100.0**	**73,233**	**36.2**	**17,855**	**8.8**	**89,986**	**44.5**	**21,009**	**10.4**
2013	35,508	100.0	13,787	38.8	2,978	8.4	17,421	49.1	1,322	3.7
2012	29,267	100.0	11,823	40.4	2,529	8.6	13,549	46.3	1,366	4.7
2011	25,303	100.0	8,957	35.4	2,293	9.1	12,692	50.2	1,361	5.4
2010	24,772	100.0	8,806	35.5	2,141	8.6	11,825	47.7	2,000	8.1
2009	20,077	100.0	6,738	33.6	1,974	9.8	8,721	43.4	2,644	13.2
2008	17,069	100.0	5,391	31.6	1,607	9.4	6,812	39.9	3,259	19.1
2007	13,964	100.0	4,843	34.7	1,170	8.4	5,247	37.6	2,704	19.4
2006	11,136	100.0	3,687	33.1	978	8.8	4,045	36.3	2,426	21.8
2005	9,767	100.0	3,610	37.0	995	10.2	3,764	38.5	1,398	14.3
2004	6,432	100.0	2,426	37.7	518	8.1	2,142	33.3	1,346	20.9
2003	5,607	100.0	2,015	35.9	446	8.0	2,268	40.4	878	15.7
2002	2,830	100.0	1,032	36.5	202	7.1	1,294	45.7	302	10.7
2001	351	100.0	118	33.6	24	6.8	206	58.7	3	0.9

□ 인권침해 상담 현황

<표 2-1-10> 기관별 인권침해 상담 현황

(단위 : 건)

구 분	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73,233**	**6,738**	**8,806**	**8,957**	**11,823**	**13,787**
검찰	**3,519**	272	392	291	339	323
경찰	**17,896**	1,895	2,368	1,849	2,021	2,236
국정원	**200**	9	13	12	15	26
특사경	**108**	8	10	–	–	–
지방자치단체	**5,440**	650	717	679	666	573
사법기관	**1,314**	114	206	140	194	180
입법기관	**56**	7	5	1	1	4
기타국가기관	**6,268**	562	688	568	565	583
구금시설	**2,269**	196	243	219	232	325
다수인보호시설	**28,260**	2,623	3,250	4,119	5,774	7,591
군	**2,592**	210	254	337	366	337
각급학교	**2,470**	–	334	453	868	815
출입국관리기관	**166**	–	–	53	65	48
보호시설	**164**	13	7	–	–	–
공직유관단체	**650**	–	–	–	300	350
기타	**1,861**	179	319	236	417	396

22) 기타 상담의 주요 내용은 〈표 2-1-21〉 기타 상담 내용별 현황 참조

□ 주요기관별 인권침해 상담 현황

<표 2-1-11> 검찰 인권침해 유형별 상담 현황

(단위 : 건)

구 분	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3,519**	272	392	291	339	323
도 · 감청 등	9	–	–	2	1	2
압수수색(신체)	45	4	6	3	2	–
집회, 시위	8	–	2	–	–	1
체포이유 등 권리 불고지/ 가족미통지	19	2	2	1	1	–
임의동행	12	1	–	–	1	–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11	–	–	–	1	1
폭행, 가혹행위/ 과도한 장구사용	151	10	9	9	10	6
폭언, 욕설 등 인격권 침해	571	37	90	72	56	58
건강 · 의료권침해/ 피해자보호조치 미흡	55	4	9	3	6	2
체포, 구속, 감금	109	6	8	12	3	13
불리한 진술 강요/ 심야, 장시간 조사/ 편파 부당수사	1,394	124	151	59	103	96
공소권 남용	279	15	33	24	30	31
피의사실 유포/ 개인정보 관리 등	150	14	13	23	28	23
알권리/정보공개	84	4	11	5	10	13
생명권 침해	3	–	–	–	1	2
압수수색(주거) 등	5	–	–	2	1	2
종교의 자유	1	–	–	1	–	–
기타	613	51	58	75	85	73

<표 2-1-12> 경찰 인권침해 유형별 상담 현황

(단위 : 건)

구 분	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17,896**	**1,895**	**2,368**	**1,849**	**2,021**	**2,236**
불심검문/ 임의동행	504	81	90	27	36	28
도 · 감청 등	67	4	9	7	4	16
압수수색/과도한 신체검사	537	79	94	32	22	39
집회, 시위	259	45	57	9	8	13
체포이유 등 권리 불고지/ 가족미통지	374	55	44	36	42	44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37	5	4	3	1	3
폭행, 가혹행위/ 과도한 장구사용	3,967	447	589	368	425	555
폭언, 욕설 등 인격권 침해	2,883	289	454	377	362	390
건강 · 의료권침해/ 피해자보호조치 미흡	555	69	58	49	54	60
체포, 구속, 감금	657	64	65	68	73	67
불리한 진술 강요/ 심야, 장시간 조사/ 편파 부당수사	4,514	448	531	330	422	450
피의사실 유포/ 개인정보 관리 등	803	59	58	107	152	146
알권리/ 정보공개	184	17	14	28	28	24
생명권 침해	26	-	-	7	8	11
압수수색(주거) 등	39	-	-	15	8	16
종교의 자유	1	-	-	-	1	-
인터넷	5	-	-	1	1	3
유치장 관련 인권침해	16	-	-	4	7	5
기타	2,468	233	301	381	367	366

<표 2-1-13> 군 인권침해 유형별 상담 현황

(단위 : 건)

구 분	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2,592	210	254	337	366	337
부당한 사건분류	4	-	1	-	-	-
법정질환관리 부실	1	-	-	-	-	-
면담불허	1	-	1	-	-	-
외부통신 제한	3	-	-	-	-	-
불심검문/임의동행	3	-	2	1	-	-
도 · 감청 등	3	-	-	1	-	-
압수수색(신체)	8	-	1	2	1	-
체포이유 등 권리 불고지/가족미통지	2	-	1	-	1	-
불리한 진술 강요/ 심야, 장시간 조사/ 편파 부당수사	79	3	6	11	5	14
폭행, 가혹행위/ 과도한 장구사용	563	49	53	63	54	36
폭언, 욕설 등 인격권 침해	288	15	29	58	54	55
건강 · 의료권 침해/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472	43	42	81	84	70
체포, 구속, 감금	15	1	-	3	3	2
피의사실 유포/ 개인정보 관리 등	49	2	2	6	16	20
알권리 침해/ 정보공개	19	-	4	3	6	5
생명권 침해	180	8	8	25	32	21
부당한 제도 및 처분	434	39	66	24	42	59
압수수색(주거)	1	-	-	-	1	-
종교의 자유	4	-	-	1	-	3
인터넷	2	-	-	-	-	2
영창관련 인권침해	13	-	-	5	4	4
기타	448	50	38	53	63	46

<표 2-1-14> 구금시설 인권침해 유형별 상담 현황

(단위 : 건)

구 분	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2,269	196	243	219	232	325
건강/의료	750	72	64	61	102	102
외부교통 권리제한	157	11	14	14	11	10
조사/징벌/계구	211	29	27	21	15	32
폭행/가혹행위	422	24	55	41	36	75
처우관계/인격권 침해	305	26	38	38	29	43
시설/환경	112	9	17	9	10	8
기타	312	25	28	35	29	55

<표 2-1-15> 다수인보호시설 인권침해 유형별 상담 현황

(단위 : 건)

구 분	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28,260**	**2,623**	**3,250**	**4,119**	**5,774**	**7,591**
불법/강제수용	**9,867**	891	1,350	1,335	1,729	2,421
폭행/가혹행위	**2,627**	298	302	363	376	525
외부교통권 제한	**1,907**	220	188	283	397	478
의료조치 미흡	**1,086**	83	96	136	236	283
강제노동	**341**	37	54	34	62	78
인권격 침해	**1,664**	110	82	256	553	432
시설/환경	**1,043**	117	132	135	164	249
퇴원요청	**3,610**	558	645	1,061	1,518	1,121
기타	**6,115**	309	401	516	739	2,004

<표 2-1-16> 출입국관리기관[23] 인권침해 유형별 상담 현황

(단위 : 건)

구 분	누 계	2011	2012	2013
합 계	**166**	**53**	**65**	**48**
욕설/ 반말	**6**	4	-	2
폭행/ 가혹행위	**5**	1	4	-
출입국 제한	**50**	17	15	18
사생활 비밀 침해	**7**	1	2	4
알권리 침해	**5**	1	2	2
적법절차 준수 위반	**4**	1	1	2
위법/ 부당한 처분	**24**	11	5	8
부작위/ 거부 등 소극적 처분	**29**	8	18	3
기타	**36**	9	18	9

<표 2-1-17> 각급 학교[24] 인권침해 유형별 상담 현황

(단위 : 건)

구 분	누 계	2010	2011	2012	2013
합 계	**2,470**	**334**	**453**	**868**	**815**
인격권 침해	**1,263**	334	217	370	342
체벌	**207**	-	71	61	75
징계부당	**210**	-	24	112	74
기타	**790**	-	141	325	324

23) 2011년부터 출입국관리기관으로 기관유형을 추가하여 분리함

24) 2010년부터 각급학교로 기관유형을 추가하여 분리함

□ 차별행위 상담 현황

<표 2-1-18> 기관별 차별행위 상담 현황

(단위 : 건)

구 분	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17,855**	**1,974**	**2,141**	**2,293**	**2,529**	**2,978**
검찰	**496**	39	25	2	6	7
경찰	**118**	-	-	31	45	42
구금시설	**40**	4	8	2	3	4
군대	**131**	10	14	18	23	19
기타국가기관	**1,458**	141	159	122	149	167
지방자치단체	**1,226**	167	144	118	158	157
보호시설	**193**	26	10	29	47	45
교육기관	**1,677**	170	181	183	234	292
공공기관	**1,289**	154	136	156	218	215
사법인	**4,883**	715	744	613	437	554
개인회사	**2,919**	201	247	393	571	777
단체	**419**	34	67	70	66	67
사인(개인)	**2,201**	250	320	409	424	476
요양시설	**48**	-	2	15	13	18
기타	**757**	63	84	132	135	138

<표 2-1-19> 차별행위 사유별 상담 현황

(단위 : 건)

구 분	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17,855**	**1,974**	**2,141**	**2,293**	**2,529**	**2,978**
성별	**560**	51	39	61	68	78
종교	**131**	15	11	22	15	11
장애	**5,680**	806	851	833	937	1,112
나이	**1,322**	210	217	142	158	197
사회적신분	**1,640**	125	136	157	198	231
출신지역	**136**	18	9	8	14	10
출신국가	**478**	46	78	55	42	64
출신민족	**28**	1	2	3	2	5
용모, 신체조건	**254**	18	27	27	27	39
혼인여부	**107**	11	8	16	8	11
임신, 출산	**268**	25	34	31	45	45
가족상황	**131**	16	15	15	16	17
인종	**28**	2	1	2	4	8
피부색	**12**	1	2	-	2	4
사상, 정치적의견	**72**	10	6	5	4	3
전과	**266**	22	16	22	42	44
성적지향	**24**	2	-	4	4	5
병력	**547**	58	63	67	71	75
학벌/학력	**264**	30	31	28	30	38
성희롱	**4,211**	402	491	661	602	764
기타	**1,696**	105	104	134	240	217

<표 2-1-20> 차별행위 영역별 상담 현황

(단위 : 건)

구 분		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17,855	1,974	2,141	2,293	2,529	2,978
고용에서의 차별	소 계	6,789	689	775	679	813	1,083
	모집	714	116	92	50	84	89
	채용	1,322	170	128	143	146	184
	배치	593	54	63	45	68	94
	교육	68	6	7	5	8	13
	승진	271	18	25	26	25	42
	임금지급	613	39	62	62	104	128
	임금외 금품	229	27	34	25	26	41
	자금융자	5	-	-	-	-	1
	정년	173	17	30	10	38	35
	퇴직	264	24	30	28	29	49
	해고	949	104	116	125	102	116
	기타	1,588	114	188	160	183	291
재화등 공급이나 이용에서의 차별	소 계	3,937	534	500	499	567	716
	용역의 공급이용	1,208	159	160	152	152	209
	재화의 공급이용	1,557	218	173	158	241	329
	교통수단의 공급이용	440	78	76	68	59	47
	상업시설의 공급이용	502	53	70	89	83	82
	주거시설의 공급이용	210	23	20	28	30	49
	토지의 공급이용	20	3	1	4	2	-
교육시설등 이용차별	소 계	810	91	98	104	101	112
	교육시설의 이용	731	82	85	92	90	93
	직업훈련기관의 이용	79	9	13	12	11	19
기타		6,319	660	768	1,011	1,048	1,067

□ 기타 상담 현황

<표 2-1-21> 기타 상담 내용별 현황

(단위 : 건)

구 분	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89,986	8,721	11,825	12,692	13,549	17,421
사인간침해	18,679	1,874	2,378	2,733	2,367	3,126
회사	9,902	955	1,323	1,375	1,456	1,789
기타단체	2,280	252	344	301	227	255
재산권	3,529	334	482	452	467	615
법령제도개선	1,802	139	150	95	209	252
입법/재판	3,266	252	392	466	375	451
국가기관	5,310	561	754	615	851	913
인권위업무 문의	9,665	875	927	985	2,081	3,061
위원회업무불만	2,978	284	383	327	388	473
법률문의	4,532	547	611	453	659	898
인권위관련 제안	915	115	94	106	110	93
차별영역외	439	-	-	211	121	107
사립학교[25]	141	-	-	122	19	-
기타	26,548	2,533	3,987	4,451	4,219	5,388

25) 법 제30조제1항1호가 개정(각급학교 추가, 2012.3.21.)되어 사립학교가 조사대상에 포함됨.

4. 상담 처리결과 현황

<표 2-1-22> 상담 처리결과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진정접수	상담종결	타기관안내	기 타
누 계	202,083	15,699	170,104	11,098	5,182
2013	35,508	3,410	28,418	2,294	1,386
2012	29,267	2,922	23,077	2,063	1,205
2011	25,303	2,089	21,010	1,350	854
2010	24,772	2,268	20,369	1,624	511
2009	20,077	1,316	17,271	1,218	272

<표 2-1-23> 접수처별 상담 처리결과 현황

(단위 : 건)

구 분		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202,083	20,077	24,772	25,303	29,267	35,508
인권상담센터	소 계	156,897	14,732	18,926	18,864	21,668	27,947
	진정접수	11,380	862	1,728	1,406	1,985	2,264
	상담종결	134,320	12,883	15,556	16,241	17,600	23,152
	타기관안내	7,969	800	1,220	861	1,458	1,734
	기타	3,228	187	422	356	625	797
부산	소 계	18,448	2,050	2,107	2,183	3,172	2,656
	진정접수	1,975	274	272	266	414	428
	상담종결	14,799	1,597	1,714	1,759	2,357	1,862
	타기관안내	1,240	159	106	77	242	258
	기타	434	20	15	81	159	108
광주	소 계	14,143	1,645	1,776	2,159	2,178	2,245
	진정접수	1,639	160	216	325	366	388
	상담종결	9,863	1,260	1,314	1,134	1,221	1,216
	타기관안내	1,422	192	194	333	253	251
	기타	1,219	33	52	367	338	390
대구	소 계	12,595	1,650	1,963	2,097	2,249	2,660
	진정접수	705	20	52	92	157	330
	상담종결	11,122	1,531	1,785	1,876	1,899	2,188
	타기관안내	467	67	104	79	110	51
	기타	301	32	22	50	83	91

5. 면전진정

<표 2-1-24> 면전진정[26] 신청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

구 분	신 청	처리결과							
		소 계		철 회		진정접수		상담종결	
누 계	43,247	43,071	100.0	10,490	24.4	11,572	26.9	21,009	48.8
2013	3,068	3,094	100.0	991	32.0	781	25.2	1,322	42.7
2012	3,070	3,069	100.0	989	32.2	714	23.3	1,366	44.5
2011	3,117	3,055	100.0	1,019	33.4	675	22.1	1,361	44.5
2010	3,949	3,916	100.0	1,129	28.8	787	20.1	2,000	51.1
2009	5,009	5,022	100.0	1,096	21.8	1,282	25.5	2,644	52.6

<표 2-1-25> 부서별 면전진정 처리 현황

(단위 : 건, %)

구 분		신 청	처리결과							
			소 계		철 회		진정접수		상담종결	
누 계		43,247	43,071	100.0	10,490	24.4	11,572	26.9	21,009	48.8
2013	소 계	3,068	3,094	100.0	991	32.0	781	25.2	1,322	42.7
	서 울	978	1,044	100.0	353	33.8	241	23.1	450	43.1
	부 산	867	852	100.0	251	29.5	240	28.2	361	42.4
	광 주	527	518	100.0	157	30.3	168	32.4	193	37.3
	대 구	696	680	100.0	230	33.8	132	19.4	318	46.8
2012	소 계	3,070	3,069	100.0	989	32.2	714	23.3	1,366	44.5
	서 울	871	826	100.0	435	52.7	139	16.8	252	30.5
	부 산	977	978	100.0	237	24.2	243	24.8	498	50.9
	광 주	639	664	100.0	131	19.7	229	34.5	304	45.8
	대 구	583	601	100.0	186	30.9	103	17.1	312	51.9
2011	소 계	3,117	3,055	100.0	1,019	33.4	675	22.1	1,361	44.5
	서 울	987	983	100.0	501	51.0	205	20.9	277	28.2
	부 산	797	782	100.0	182	23.3	169	21.6	431	55.1
	광 주	613	577	100.0	121	21.0	190	32.9	266	46.1
	대 구	720	713	100.0	215	30.2	111	15.6	387	54.3
2010	소 계	3,949	3,916	100.0	1,129	28.8	787	20.1	2,000	51.1
	서 울	1,372	1,316	100.0	656	49.8	231	17.6	429	32.6
	부 산	766	776	100.0	144	18.6	156	20.1	476	61.3
	광 주	707	718	100.0	131	18.2	215	29.9	372	51.8
	대 구	1,104	1,106	100.0	198	17.9	185	16.7	723	65.4
2009	소 계	5,009	5,022	100.0	1,096	21.8	1,282	25.5	2,644	52.6
	서 울	2,047	2,074	100.0	610	29.4	566	27.3	898	43.3
	부 산	1,046	1,049	100.0	179	17.1	256	24.4	614	58.5
	광 주	726	710	100.0	98	13.8	210	29.6	402	56.6
	대 구	1,190	1,189	100.0	209	17.6	250	21.0	730	61.4

26) 법 제31조(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표 2-1-26> 구금 · 보호시설[27]별 면전진정 신청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신 청	종결처리			
			소 계	철 회	진정접수	상담종결
누 계	합 계	43,247	43,071	10,490	11,572	21,009
	교정시설	38,729	38,593	9,348	10,880	18,365
	경찰서 유치장 등	78	78	24	25	29
	군 구금시설	48	48	25	3	20
	다수인 보호시설	4,392	4,352	1,093	664	2,595
2013	소 계	3,068	3,094	991	781	1,322
	교정시설	2,300	2,342	745	663	934
	경찰서 유치장 등	4	4	2	1	1
	군 구금시설	9	12	2	-	10
	다수인 보호시설	755	736	242	117	377
2012	소 계	3,070	3,069	989	714	1,366
	교정시설	2,269	2,258	737	627	894
	경찰서 유치장 등	5	5	1	1	3
	군 구금시설	18	15	14	1	-
	다수인 보호시설	778	791	237	85	469
2011	소 계	3,117	3,055	1,019	675	1,361
	교정시설	2,438	2,395	826	577	992
	경찰서 유치장 등	5	5	4	-	1
	군 구금시설	8	9	6	-	3
	다수인 보호시설	666	646	183	98	365
2010	소 계	3,949	3,916	1,129	787	2,000
	교정시설	3,165	3,123	960	664	1,499
	경찰서 유치장 등	6	6	1	1	4
	군 구금시설	3	2	1	-	1
	다수인 보호시설	775	785	167	122	496
2009	소 계	5,009	5,022	1,096	1,282	2,644
	교정시설	4,283	4,310	970	1,134	2,206
	경찰서 유치장 등	10	10	2	3	5
	군 구금시설	7	7	2	-	5
	다수인 보호시설	709	695	122	145	428

<표 2-1-27> 면전진정 처리 소요일수

(단위 : 건, 일)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종결건수	5,022	3,916	3,055	3,069	3,094
평균 소요일수	9.6일	19.9일	20.9일	27.9일	22.3일

27) 법 제2조(정의)제2호

제3절 민원 및 안내

1. 민원

<표 2-2-1> 민원 내용별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누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98,907**	**10**	**471**	**2,004**	**4,526**	**8,578**	**8,151**	**8,843**	**8,931**	**9,615**	**11,370**	**10,974**	**12,212**	**13,222**
진정접수 절차안내	13,647	-	63	205	659	1,137	1,574	1,069	1,321	1,825	1,513	1,723	1,411	1,147
조사대상안내	34,293	-	164	585	1,259	3,144	3,216	2,781	3,271	3,543	4,561	4,120	3,289	4,360
진정내용 보완요구	1,163	-	-	53	244	175	30	123	76	105	68	73	6	210
진정사건 처리안내	868	-	15	174	71	96	88	75	78	84	50	50	15	72
법령등 자료송부	669	-	23	58	89	148	85	124	92	29	14	3	-	4
질의회신	768	-	34	74	205	431	24	-	-	-	-	-	-	-
면전진정 안내	403	-	-	47	130	130	36	5	15	20	4	9	2	5
타기관 이송	238	-	11	54	3	4	3	22	21	13	61	26	7	13
타기관 안내	667	-	-	37	140	106	107	34	21	13	79	75	3	52
진정접수 안내	18,067	-	-	177	422	1,214	855	1,894	1,749	1,859	2,271	2,137	2,688	2,801
민원인취하	583	-	-	-	-	3	115	126	20	40	117	65	66	31
공람종결	1,305	-	-	99	81	221	15	60	131	176	293	167	46	16
처리종결(회신무)	11,203	-	-	87	460	748	818	1,842	1,271	993	957	904	1,495	1,628
민원회신	8,665	-	-	-	-	-	-	-	-	-	1,070	1,579	3,146	2,870
기타	6,368	10	161	354	763	1,021	1,185	688	865	915	312	43	38	13

<표 2-2-2> 부서별 민원 처리 현황

(단위 : 건, %)

구 분	합 계		본 부		부 산		광 주		대구	
누 계	**98,907**	**100.0**	**96,877**	**97.9**	**926**	**0.9**	**510**	**0.5**	**594**	**0.6**
2013	13,222	100.0	13,019	98.5	80	0.6	69	0.5	54	0.4
2012	12,212	100.0	11,963	98.0	70	0.6	112	0.9	67	0.5
2011	10,974	100.0	10,618	96.8	139	1.3	114	1.0	103	0.9
2010	11,370	100.0	11,098	97.6	109	1.0	68	0.6	95	0.8
2009	9,615	100.0	9,302	96.7	145	1.5	34	0.4	134	1.4

2. 안내

<표 2-2-3> 안내 내용별 현황

(단위 : 건)

구 분	누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170,173**	**1,842**	**7,043**	**8,524**	**8,486**	**10,106**	**11,407**	**11,937**	**21,112**	**17,019**	**15,425**	**15,094**	**18,730**	**23,448**
위원회 업무 안내	**27,368**	-	-	1,240	1,563	2,466	2,695	2,936	2,276	2,357	3,231	2,353	2,563	3,688
전화번호/주소 안내	**12,681**	-	-	1,043	885	1,054	1,341	1,239	1,394	1,383	1,406	1,152	719	1,065
잘못 걸린 전화	**34,267**	-	-	608	542	463	1,214	922	8,947	4,768	2,659	4,003	5,007	5,134
직원 안내	**38,170**	-	-	2,490	2,230	2,771	2,327	2,808	3,736	3,799	4,381	3,707	4,150	5,771
진정접수 여부 확인	**5,100**	-	-	451	346	371	487	555	525	486	448	305	435	691
타기관/ 단체 안내	**15,834**	-	-	758	971	1,119	1,482	1,613	1,599	2,325	1,661	1,209	1,171	1,926
타부서 안내	**5,638**	-	-	587	310	302	453	431	736	490	488	427	540	874
진정예정	**255**	-	-	-	-	-	-	-	-	-	42	13	47	153
기타	**30,860**	1,842	7,043	1,347	1,639	1,560	1,408	1,433	1,899	1,411	1,109	1,925	4,098	4,146

<표 2-2-4> 부서별 안내 처리 현황

(단위 : 건, %)

구 분	합 계		본부		부산		광주		대구	
누 계	**170,173**	**100.0**	**134,122**	**78.8**	**10,425**	**6.1**	**19,763**	**11.6**	**5,863**	**3.5**
2013	23,448	100.0	18,674	79.6	607	2.6	3,343	14.3	824	3.5
2012	18,730	100.0	13,821	73.8	478	2.6	4,043	21.6	388	2.1
2011	15,094	100.0	9,873	65.4	1,566	10.4	3,323	22.0	332	2.2
2010	15,425	100.0	10,853	70.4	1,353	8.8	1,747	11.3	1,472	9.5
2009	17,019	100.0	11,837	69.5	1,584	9.3	2,053	12.1	1,545	9.1

제3장 조사 및 구제

제1절 조사·구제의 이해

위원회는 인권침해, 차별행위 및 성희롱에 대한 조사와 구제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또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급구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의 조사업무 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한 행위,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의 차별행위이다.

차별행위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이다.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性的)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다.

그 외에도 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차별과 연령차별을 조사한다.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위원회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손해배상 등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다.

제2절 진정 접수

1. 진정접수 현황

<표 3-1-1> 유형별 진정 접수 현황

(단위 : 건, %)

구 분	합 계		인권침해		차별행위		기 타[28]	
누 계	78,307	100.0	59,565	76.1	16,589	21.2	2,153	2.7
2013	10,052	100.0	7,458	74.2	2,491	24.8	103	1.0
2012	9,582	100.0	6,946	72.5	2,549	26.6	87	0.9
2011	7,357	100.0	5,425	73.7	1,803	24.5	129	1.8
2010	9,168	100.0	6,460	70.5	2,681	29.2	27	0.3
2009	6,985	100.0	5,282	75.6	1,685	24.1	18	0.3
2008	6,309	100.0	4,892	77.5	1,380	21.9	37	0.6
2007	6,274	100.0	5,067	80.8	1,159	18.5	48	0.8
2006	4,187	100.0	3,335	79.7	824	19.7	28	0.7
2005	5,617	100.0	4,199	74.8	1,081	19.2	337	6.0
2004	5,368	100.0	4,627	86.2	389	7.2	352	6.6
2003	3,815	100.0	3,041	79.7	358	9.4	416	10.9
2002	2,790	100.0	2,214	79.4	136	4.9	440	15.8
2001	803	100.0	619	77.1	53	6.6	131	16.3

28) 기타 진정의 주요 내용은 〈표 3-1-26〉 기타 진정 내용별 접수 현황 참조

<표 3-1-2> 경로별 진정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전화	대면	면전	홈페이지	인터넷	우편	FAX	이첩
누 계	78,307	11,418	12,512	11,778	11,391	4,912	21,912	1,739	2,645
2013	10,052	2,921	1,291	832	2,053	115	1,970	133	737
2012	9,582	2,492	1,381	751	2,016	44	2,142	146	610
2011	7,357	1,759	989	701	1,358	374	1,597	128	451
2010	9,168	1,889	1,719	819	1,743	29	2,248	184	537
2009	6,985	960	813	1,319	1,553	43	1,840	223	234
2008	6,309	369	1,084	1,179	1,524	153	1,802	122	76
2007	6,274	186	913	1,251	1,144	754	1,875	151	-
2006	4,187	107	673	797	-	1,039	1,439	132	-
2005	5,617	157	732	1,168	-	1,397	2,010	153	-
2004	5,368	122	1,670	1,274	-	458	1,728	116	-
2003	3,815	76	555	1,129	-	295	1,605	155	-
2002	2,790	177	445	553	-	173	1,368	74	-
2001	803	203	247	5	-	38	288	22	-

2. 진정인 현황

<표 3-1-3> 진정인 지역별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서 울	부 산	인 천	광 주	대 구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누 계	78,307	14,314	4,030	2,307	2,664	3,295	1,915	755	10,884	1,763
2013	10,052	1,347	371	259	319	353	200	89	1,185	184
2012	9,582	1,373	396	281	268	386	218	72	1,354	211
2011	7,357	1,046	285	235	221	274	127	65	966	124
2010	9,168	1,739	334	259	186	250	151	90	1,125	132
2009	6,985	1,078	351	179	212	262	117	79	927	119

구 분	충 북	충 남	세 종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미등록
누 계	1,330	1,787	49	2,458	2,963	3,759	2,693	483	20,858
2013	139	195	10	267	416	350	292	66	4,010
2012	153	217	9	350	462	318	309	71	3,134
2011	93	151	4	246	347	200	193	56	2,724
2010	140	171	2	227	259	285	207	73	3,538
2009	86	139	7	152	206	238	240	32	2,561

<표 3-1-4> 진정인 성별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 계	남	여	미등록
누 계	78,307	42,670	9,047	26,590
2013	10,052	6,057	1,705	2,290
2012	9,582	3,961	1,187	4,434
2011	7,357	3,513	922	2,922
2010	9,168	4,131	1,084	3,953
2009	6,985	3,639	780	2,566

<표 3-1-5> 진정인 연령별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 계	20대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미등록
누 계	78,307	893	6,762	12,815	13,532	7,196	3,001	34,108
2013	10,052	143	667	1,122	1,627	1,174	380	4,939
2012	9,582	137	671	1,337	1,799	1,300	440	3,898
2011	7,357	83	600	1,132	1,412	928	361	2,841
2010	9,168	83	496	942	1,002	553	204	5,888
2009	6,985	67	550	912	819	394	143	4,100

3. 인권침해 진정 접수 현황

<표 3-1-6> 헌법상 기본권[29]별 인권침해 진정 접수 현황

(단위 : 건, %)

구 분	합 계		인간의 존엄성 (10조)		평등권 (11조)		신체의 자유 (12조)		형벌불소급 (13조)		거주이전의 자유 (14조)		직업선택의 자유 (15조)		주거의 자유 (16조)	
누 계	59,565	100.0	32,677	54.9	1,187	2.0	16,866	28.3	22	0.0	244	0.4	193	0.3	89	0.2
2013	7,458	100.0	2,989	40.1	205	2.8	2,863	38.4	1	0.0	22	0.3	24	0.3	18	0.2
2012	6,946	100.0	3,084	44.4	307	4.4	2,251	32.4	9	0.1	42	0.6	22	0.3	12	0.2
2011	5,425	100.0	2,638	48.6	188	3.5	1,835	33.8	1	0.0	12	0.2	8	0.1	6	0.1
2010	6,460	100.0	3,905	60.4	33	0.5	1,746	27.0	1	0.0	8	0.1	8	0.1	5	0.1
2009	5,282	100.0	3,340	63.2	49	0.9	1,271	24.1	2	0.0	16	0.3	18	0.3	6	0.1
2008	4,892	100.0	3,212	65.7	43	0.9	1,060	21.7	2	0.0	14	0.3	15	0.3	3	0.1
2007	5,067	100.0	2,960	58.4	96	1.9	1,279	25.2	1	0.0	13	0.3	30	0.6	16	0.3
2006	3,335	100.0	2,030	60.9	39	1.2	731	21.9	–	0.0	10	0.3	21	0.6	8	0.2
2005	4,199	100.0	2,343	55.8	19	0.5	1,145	27.3	–	0.0	36	0.9	18	0.4	4	0.1
2004	4,627	100.0	3,411	73.7	6	0.1	977	21.1	1	0.0	33	0.7	7	0.2	1	0.0
2003	3,041	100.0	1,685	55.4	57	1.9	867	28.5	2	0.1	22	0.7	12	0.4	3	0.1
2002	2,214	100.0	863	39.0	85	3.8	701	31.7	2	0.1	13	0.6	2	0.1	5	0.2
2001	619	100.0	217	35.1	60	9.7	140	22.6	–	0.0	3	0.5	8	1.3	2	0.3

구 분	사생활의 비밀과자유(17조)		통신의 자유 (18조)		양심의 자유 (19조)		종교의 자유 (20조)		언론의 자유 (21조)		학문예술의 자유 (22조)		기타	
누 계	2,028	3.4	1,688	2.8	98	0.2	134	0.2	399	0.7	79	0.1	3,861	6.5
2013	352	4.7	320	4.3	18	0.2	13	0.2	46	0.6	5	0.1	582	7.8
2012	349	5.0	256	3.7	8	0.1	29	0.4	35	0.5	9	0.1	533	7.7
2011	244	4.5	188	3.5	8	0.1	13	0.2	20	0.4	2	0.0	262	4.8
2010	219	3.4	209	3.2	5	0.1	13	0.2	39	0.6	6	0.1	263	4.1
2009	172	3.3	141	2.7	2	0.0	7	0.1	33	0.6	2	0.0	223	4.2
2008	127	2.6	93	1.9	11	0.2	15	0.3	43	0.9	7	0.1	247	5.0
2007	160	3.2	74	1.5	8	0.2	19	0.4	26	0.5	8	0.2	377	7.4
2006	115	3.4	60	1.8	8	0.2	11	0.3	16	0.5	9	0.3	277	8.3
2005	126	3.0	108	2.6	7	0.2	7	0.2	42	1.0	18	0.4	326	7.8
2004	58	1.3	92	2.0	–	0.0	–	0.0	33	0.7	4	0.1	4	0.1
2003	44	1.4	94	3.1	4	0.1	4	0.1	41	1.3	6	0.2	200	6.6
2002	55	2.5	46	2.1	19	0.9	3	0.1	25	1.1	3	0.1	392	17.7
2001	7	1.1	7	1.1	–	0.0	–	0.0	–	0.0	–	0.0	175	28.3

29) 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제1항제1호

<표 3-1-7> 주요 기관별 인권침해 진정 접수 현황

(단위 : 건, %)

구 분	합 계		검 찰		경 찰		국정원		특사경		지방 자치단체		사법기관		입법 기관	
누 계	59,565	100.0	2,204	3.7	12,649	21.2	214	0.3	169	0.3	2,839	4.8	833	1.4	53	0.1
2013	7,458	100.0	157	2.1	1,330	17.9	16	0.2	-	0.0	343	4.6	74	1.0	6	0.1
2012	6,946	100.0	147	2.1	1,221	17.6	16	0.2	-	0.0	335	4.8	85	1.2	-	0.0
2011	5,425	100.0	139	2.6	1,107	20.4	15	0.3	-	0.0	247	4.6	71	1.3	3	0.1
2010	6,460	100.0	234	3.6	1,582	24.5	17	0.3	8	0.1	295	4.6	156	2.4	14	0.2
2009	5,282	100.0	142	2.7	1,210	22.9	17	0.3	8	0.2	214	4.1	50	0.9	5	0.1
2008	4,892	100.0	172	3.5	1,106	22.6	25	0.5	17	0.3	323	6.6	70	1.4	2	0.0
2007	5,067	100.0	226	4.5	1,131	22.3	36	0.7	12	0.2	449	8.9	62	1.2	8	0.2
2006	3,335	100.0	136	4.1	797	23.9	12	0.4	4	0.1	177	5.3	56	1.7	2	0.1
2005	4,199	100.0	214	5.1	937	22.3	11	0.3	37	0.9	194	4.6	63	1.5	2	0.0
2004	4,627	100.0	164	3.5	688	14.9	11	0.2	26	0.6	115	2.5	41	0.9	8	0.2
2003	3,041	100.0	174	5.7	701	23.1	5	0.2	26	0.9	81	2.7	35	1.2	2	0.1
2002	2,214	100.0	194	8.8	705	31.8	15	0.7	31	1.4	26	1.2	16	0.7	-	0.0
2001	619	100.0	105	17.0	134	21.6	18	2.9	-	0.0	40	6.5	54	8.7	1	0.2

구 분	기타 국가기관		구금시설		다수인 보호시설		군		각급학교		출입국 관리기관		공직유관 단체		기 타	
누 계	5,751	9.7	20,621	34.6	10,237	17.2	1,210	2.0	1,313	2.2	100	0.2	312	0.5	1,060	1.8
2013	316	4.2	1,688	22.6	2,728	36.6	141	1.9	412	5.5	23	0.3	179	2.4	45	0.6
2012	424	6.1	1,731	24.9	2,115	30.4	184	2.6	480	6.9	27	0.4	133	1.9	48	0.7
2011	530	9.8	1,360	25.1	1,555	28.7	132	2.4	199	3.7	40	0.7			27	0.5
2010	486	7.5	1,885	29.2	1,372	21.2	116	1.8	218	3.4	10	0.2			67	1.0
2009	452	8.6	2,027	38.4	490	9.3	96	1.8	4	0.1					567	10.7
2008	307	6.3	1,946	39.8	685	14.0	89	1.8							150	3.1
2007	327	6.5	2,004	39.6	586	11.6	80	1.6							146	2.9
2006	394	11.8	1,427	42.8	255	7.6	65	1.9							10	0.3
2005	525	12.5	1,918	45.7	234	5.6	64	1.5								
2004	1,553	33.6	1,835	39.7	126	2.7	60	1.3								
2003	201	6.6	1,686	55.4	57	1.9	73	2.4								
2002	124	5.6	1,026	46.3	25	1.1	52	2.3								
2001	112	18.1	88	14.2	9	1.5	58	9.4								

□ 주요 기관의 인권침해 내용별 진정 접수 현황

<표 3-1-8> 검찰 인권침해 내용별 진정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2,204	142	234	139	147	157
도 · 감청 등	5	-	-	1	-	2
압수수색(신체)	51	6	16	-	2	1
집회, 시위	2	-	1	-	-	-
체포이유 등 권리 불고지/ 가족미통지	35	4	2	3	1	2
임의동행	6	-	2	-	-	-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21	4	2	1	1	3
폭행, 가혹행위/과도한 장구사용	118	5	18	10	3	1
폭언, 욕설 등 인격권 침해	354	28	57	27	23	32
건강 · 의료권침해/ 피해자보호조치 미흡	47	2	6	4	7	4
체포, 구속, 감금	130	11	12	9	6	13
불리한 진술 강요/ 심야, 장시간 조사/ 편파 부당수사	770	43	54	34	65	54
공소권 남용	186	7	8	-	3	3
피의사실 유포/개인정보 관리 등	68	9	2	19	12	8
알권리/정보공개	40	7	7	-	2	7
생명권 침해	4	-	-	-	1	3
압수수색(주거) 등	2	-	-	1	-	1
인터넷	1	-	-	1	-	-
기타	364	16	47	29	21	23

<표 3-1-9> 경찰 인권침해 내용별 진정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12,649	1,210	1,582	1,107	1,221	1,330
불심검문/ 임의동행	372	67	61	18	7	19
도 · 감청 등	25	2	3	8	-	1
압수수색/과도한 신체검사	395	52	68	13	33	27
집회, 시위	302	29	34	35	5	20
체포이유 등 권리 불고지/ 가족미통지	428	57	74	45	26	34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87	9	9	11	1	3
폭행, 가혹행위/과도한 장구사용	3,523	313	465	286	280	348
폭언, 욕설 등 인격권 침해	2,194	214	351	214	236	246
건강 · 의료권침해/ 피해자보호조치 미흡	594	62	66	44	71	61
체포, 구속, 감금	790	57	65	85	92	140
불리한 진술 강요/ 심야, 장시간 조사/편파 부당수사	2,126	154	187	152	278	196
피의사실 유포/개인정보 관리 등	382	31	52	66	72	82
알권리/정보공개	45	5	8	7	2	4
생명권 침해	5	-	-	1	1	3
압수수색(주거) 등	39	-	-	18	7	14
종교의 자유	3	-	-	-	2	1
유치장 관련 인권침해	52	-	-	24	16	12
인터넷	1	-	-	-	-	1
기타	1,286	158	139	80	92	118

<표 3-1-10> 군 인권침해 내용별 진정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1,210**	**96**	**116**	**132**	**184**	**141**
불심검문/ 임의동행	3	-	-	-	-	-
도 · 감청 등	6	-	1	2	-	-
압수수색(신체)	9	1	2	1	-	-
체포이유 등 권리 불고지/ 가족미통지	1	-	-	-	-	-
불리한 진술 강요/ 심야, 장시간 조사/ 편파 부당수사	85	2	4	5	12	8
폭행, 가혹행위/ 과도한 장구사용	229	8	27	29	33	17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1	-	1	-	-	-
폭언, 욕설 등 인격권 침해	148	17	8	20	25	34
건강 · 의료권 침해/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204	18	29	34	43	24
체포, 구속, 감금	19	-	2	2	3	2
피의사실 유포/ 개인정보 관리 등	18	-	1	4	8	4
알권리 침해/ 정보공개	8	2	2	1	1	1
생명권 침해	114	16	3	6	5	5
부당한 제도 및 처분	149	20	13	11	36	19
압수수색(주거) 등	3	-	-	2	-	-
종교의 자유	4	-	-	1	2	1
인터넷	2	-	-	-	2	-
영창관련 인권침해	24	1	3	2	2	9
기타	183	11	20	12	12	17

<표 3-1-11> 구금시설 인권침해 내용별 진정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20,621**	**2,027**	**1,885**	**1,360**	**1,731**	**1,688**
건강/의료	4,681	455	407	339	410	445
외부교통 권리제한	2,102	199	250	103	125	104
조사/징벌/계구	2,983	275	269	165	233	238
폭행/가혹행위	1,937	189	184	148	180	161
처우관계/인격권 침해	4,339	436	328	455	574	576
시설/환경	2,577	270	223	72	104	92
기타	2,002	203	224	78	105	72

<표 3-1-12> 다수인보호시설 인권침해 내용별 진정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10.237**	**490**	**1,372**	**1,555**	**2,115**	**2,728**
불법/ 강제 수용	**5,324**	243	753	786	1,064	1,453
폭행/ 가혹행위	**1,501**	67	213	244	282	373
외부교통권 제한	**857**	34	123	134	217	270
의료조치 미흡	**476**	34	56	75	98	118
강제노동	**180**	13	29	14	43	52
인격권 침해	**423**	19	47	67	93	116
시설/ 환경	**392**	22	35	40	59	93
퇴원요청	**553**	33	61	126	146	116
기타	**531**	25	55	69	113	137

<표 3-1-13> 출입국관리기관 인권침해 내용별 진정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누 계	2010	2011	2012	2013
합 계	**100**	**10**	**40**	**27**	**23**
욕설/ 반말	**1**	-	1	-	-
폭행/ 가혹행위	**8**	-	4	2	2
출입국 제한	**14**	-	7	6	1
사생활 비밀 침해	**1**	-	1	-	-
적법절차 준수 위반	**2**	-	1	-	1
위법/ 부당한 처분	**39**	2	9	10	18
부작위/ 거부 등 소극적 처분	**29**	8	14	6	1
기타	**6**	-	3	3	-

<표 3-1-14> 각급 학교 인권침해 내용별 진정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1,313**	**4**	**218**	**199**	**480**	**412**
폭행/ 가혹행위	**2**	2	-	-	-	-
인격권 침해	**744**	2	210	76	251	205
체벌	**112**	-	-	34	43	35
징계부당	**92**	-	1	12	49	30
기타	**363**	-	7	77	137	142

4. 차별행위 진정 접수 현황

<표 3-1-15> 주요 기관별 차별행위 진정 접수 현황

(단위 : 건, %)

구 분	합 계		검찰		경찰		구금시설		군대		기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보호시설	
누 계	16,589	100.0	137	0.8	445	2.7	211	1.3	128	0.8	3,057	18.4	2,225	13.4	27	0.2
2013	2,491	100.0	9	0.4	40	1.6	15	0.6	12	0.5	356	14.3	199	8.0	4	0.2
2012	2,549	100.0	1	0.0	41	1.6	23	0.9	10	0.4	332	13.0	455	17.9	4	0.2
2011	1,803	100.0	7	0.4	38	2.1	15	0.8	19	1.1	223	12.4	283	15.7	4	0.2
2010	2,681	100.0	4	0.1	109	4.1	17	0.6	14	0.5	538	20.1	450	16.8	1	0.0
2009	1,685	100.0	12	0.7	56	3.3	16	0.9	11	0.7	269	16.0	184	10.9	6	0.4
2008	1,380	100.0	21	1.5	27	2.0	15	1.1	13	0.9	223	16.2	184	13.3	1	0.1
2007	1,159	100.0	14	1.2	23	2.0	2	0.2	25	2.2	227	19.6	140	12.1	2	0.2
2006	824	100.0	6	0.7	21	2.5	6	0.7	11	1.3	224	27.2	124	15.0	4	0.5
2005	1,081	100.0	11	1.0	50	4.6	47	4.3	10	0.9	398	36.8	126	11.7	1	0.1
2004	389	100.0	14	3.6	19	4.9	27	6.9	1	0.3	125	32.1	39	10.0	-	0.0
2003	358	100.0	26	7.3	5	1.4	26	7.3	-	0.0	81	22.6	23	6.4	-	0.0
2002	136	100.0	11	8.1	11	8.1	1	0.7	2	1.5	41	30.1	15	11.0	-	0.0
2001	53	100.0	1	1.9	5	9.4	1	1.9	-	0.0	20	37.7	3	5.7	-	0.0

구 분	교육기관		공공기관		사법인		개인회사		단체		사인(개인)		요양시설		기타	
누 계	1,824	11.0	1,234	7.4	3,868	23.3	963	5.8	333	2.0	1,183	7.1	61	0.4	893	5.4
2013	253	10.2	86	3.5	507	20.3	253	10.1	90	3.6	445	17.8	18	0.7	204	8.2
2012	265	10.4	192	7.5	689	27.0	159	6.2	50	2.0	141	5.5	24	0.9	163	6.4
2011	167	9.3	120	6.7	461	25.6	153	8.5	40	2.2	160	8.9	19	1.1	94	5.2
2010	200	7.5	340	12.7	554	20.7	119	4.4	59	2.2	181	6.8			95	3.5
2009	224	13.3	103	6.1	483	28.7	76	4.5	22	1.3	119	7.1			104	6.2
2008	191	13.8	89	6.4	323	23.4	72	5.2	21	1.5	77	5.6			123	8.9
2007	198	17.1	67	5.8	288	24.8	67	5.8	20	1.7	22	1.9			64	5.5
2006	120	14.6	59	7.2	176	21.4	24	2.9	6	0.7	13	1.6			30	3.6
2005	107	9.9	79	7.3	202	18.7	15	1.4	18	1.7	10	0.9			7	0.6
2004	46	11.8	40	10.3	58	14.9	8	2.1	5	1.3	4	1.0			3	0.8
2003	40	11.2	47	13.1	96	26.8	7	2.0	1	0.3	3	0.8			3	0.8
2002	13	9.6	8	5.9	23	16.9	6	4.4	1	0.7	2	1.5			2	1.5
2001	-	0.0	4	7.5	8	15.1	4	7.5	-	0.0	6	11.3			1	1.9

<표 3-1-16> 사유[30]별 차별행위 진정 접수 현황

(단위 : 건, %)

구 분	합 계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신체조건		혼인 여부	
누 계	16,589	100.0	512	3.1	126	0.8	7,193	43.4	1,201	7.2	1,541	9.3	100	0.6	276	1.7	12	0.1	240	1.4	80	0.5
2013	2,491	100.0	63	2.5	11	0.4	1,309	52.6	141	5.7	145	5.8	13	0.5	35	1.4	-	0.0	31	1.2	5	0.2
2012	2,549	100.0	44	1.7	12	0.5	1,340	52.6	166	6.5	185	7.3	6	0.2	9	0.4	1	0.0	40	1.6	6	0.2
2011	1,803	100.0	35	1.9	10	0.6	886	49.1	146	8.1	127	7.0	10	0.6	27	1.5	1	0.1	19	1.1	5	0.3
2010	2,681	100.0	45	1.7	14	0.5	1,695	63.2	196	7.3	81	3.0	7	0.3	27	1.0	3	0.1	24	0.9	5	0.2
2009	1,685	100.0	83	4.9	14	0.8	725	43.0	138	8.2	91	5.4	5	0.3	16	0.9	3	0.2	23	1.4	7	0.4
2008	1,380	100.0	42	3.0	13	0.9	640	46.4	62	4.5	103	7.5	4	0.3	28	2.0	2	0.1	15	1.1	5	0.4
2007	1,159	100.0	50	4.3	14	1.2	256	22.1	108	9.3	117	10.1	9	0.8	38	3.3	1	0.1	20	1.7	3	0.3
2006	824	100.0	28	3.4	8	1.0	116	14.1	69	8.4	208	25.2	10	1.2	28	3.4	-	0.0	11	1.3	22	2.7
2005	1,081	100.0	53	4.9	11	1.0	121	11.2	87	8.0	297	27.5	23	2.1	19	1.8	-	0.0	45	4.2	9	0.8
2004	389	100.0	24	6.2	8	2.1	54	13.9	57	14.7	64	16.5	6	1.5	10	2.6	-	0.0	6	1.5	7	1.8
2003	358	100.0	33	9.2	5	1.4	18	5.0	24	6.7	75	20.9	2	0.6	19	5.3	1	0.3	4	1.1	4	1.1
2002	136	100.0	10	7.4	4	2.9	20	14.7	6	4.4	31	22.8	2	1.5	12	8.8	-	0.0	2	1.5	2	1.5
2001	53	100.0	2	3.8	2	3.8	13	24.5	1	1.9	17	32.1	3	5.7	8	15.1	-	0.0	-	0.0	-	0.0

구 분	임신/출산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병 력		학벌/학력		성희롱		기타	
누 계	182	1.1	123	0.7	71	0.4	9	0.1	34	0.2	166	1.0	56	0.3	317	1.9	503	3.0	1,548	9.3	2,299	13.9
2013	18	0.7	23	0.9	18	0.7	1	0.0	4	0.2	19	0.8	8	0.3	39	1.6	124	5.0	241	9.7	243	9.8
2012	27	1.1	8	0.3	1	0.0	1	0.0	2	0.1	20	0.8	15	0.6	34	1.3	47	1.8	228	8.9	357	14.0
2011	19	1.1	17	0.9	4	0.2	-	0.0	1	0.1	17	0.9	3	0.2	30	1.7	52	2.9	216	12.0	178	9.9
2010	39	1.5	8	0.3	12	0.4	4	0.1	1	0.0	13	0.5	6	0.2	41	1.5	40	1.5	210	7.8	210	7.8
2009	17	1.0	14	0.8	22	1.3	-	0.0	3	0.2	10	0.6	2	0.1	39	2.3	77	4.6	166	9.9	230	13.6
2008	14	1.0	10	0.7	7	0.5	-	0.0	3	0.2	16	1.2	3	0.2	19	1.4	23	1.7	151	10.9	220	15.9
2007	15	1.3	13	1.1	4	0.3	1	0.1	2	0.2	18	1.6	3	0.3	31	2.7	28	2.4	165	14.2	263	22.7
2006	9	1.1	8	1.0	1	0.1	-	0.0	2	0.2	13	1.6	4	0.5	30	3.6	24	2.9	107	13.0	126	15.3
2005	5	0.5	15	1.4	1	0.1	1	0.1	5	0.5	23	2.1	5	0.5	21	1.9	48	4.4	60	5.6	232	21.5
2004	4	1.0	4	1.0	-	0.0	-	0.0	-	0.0	7	1.8	1	0.3	7	1.8	12	3.1	1	0.3	117	30.1
2003	15	4.2	2	0.6	-	0.0	-	0.0	7	2.0	3	0.8	2	0.6	16	4.5	28	7.8	2	0.6	98	27.4
2002	-	0.0	-	0.0	1	0.7	-	0.0	3	2.2	6	4.4	3	2.2	8	5.9	-	0.0	1	0.7	25	18.4
2001	-	0.0	1	1.9	-	0.0	1	1.9	1	1.9	1	1.9	1	1.9	2	3.8	-	0.0	-	0.0	-	0.0

30) 법 제2조(정의)제3호

<표 3-1-17> 영역[31]별 차별행위 진정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 계	고용에서의 차별												
		소계	모집	채용	배치	교육	승진	임금	임금외 금품	자금 융자	정년	퇴직	해고	기타
누 계	16,589	5,293	1,030	1,109	271	64	192	601	163	5	204	153	497	1,004
2013	2,491	616	56	158	40	8	15	46	27	2	30	11	53	170
2012	2,549	774	125	138	27	11	21	112	35	1	58	23	44	179
2011	1,803	480	75	114	28	7	14	57	16	–	14	16	49	90
2010	2,681	578	118	112	33	5	16	66	8	1	32	18	43	126
2009	1,685	532	162	91	15	7	12	45	13	–	27	21	41	98
2008	1,380	467	101	59	30	11	15	67	17	–	4	12	50	101
2007	1,159	498	124	98	27	6	20	51	13	1	17	12	58	71
2006	824	387	101	97	21	2	14	52	8	–	13	18	26	35
2005	1,081	503	90	148	17	6	36	50	12	–	3	10	45	86
2004	389	175	51	22	18	–	9	12	4	–	3	5	17	34
2003	358	209	21	54	14	–	11	26	4	–	3	6	61	9
2002	136	55	6	14	1	1	7	11	3	–	–	–	8	4
2001	53	19	–	4	–	–	2	6	3	–	–	1	2	1

구 분	재화 등 공급이나 이용에서의 차별							교육시설 등 이용 차별			기타
	소계	용역	재화	교통 수단	상업 수단	주거 시설	토지	소계	교육 시설	직업훈련 기관	
누 계	6,355	2,241	2,995	479	452	168	20	995	928	67	3,946
2013	970	378	449	40	83	20	–	105	97	8	800
2012	1,092	472	419	56	107	37	1	179	170	9	504
2011	768	440	180	64	57	23	4	82	76	6	473
2010	1,467	184	1,146	75	40	21	1	106	96	10	530
2009	659	292	201	84	61	18	3	122	116	6	372
2008	551	199	149	115	62	21	5	102	98	4	260
2007	288	124	110	17	22	15	–	103	96	7	270
2006	165	50	91	15	3	6	–	87	83	4	185
2005	270	87	151	9	13	5	5	56	51	5	252
2004	54	10	40	2	1	1	–	26	24	2	134
2003	33	2	29	–	1	–	1	17	14	3	99
2002	27	3	20	1	2	1	–	10	7	3	44
2001	11	–	10	1	–	–	–	–	–	–	23

31) 법 제2조(정의)제3호가목내지 다목

<표 3-1-18> 2013년 영역 및 사유별 차별행위 진정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 계	고용에서의 차별												
		소계	모집	채용	배치	교육	승진	임금	임금외 금품	자금 융자	정년	퇴직	해고	기타
합 계	2,491	616	56	158	40	8	15	46	27	2	30	11	53	170
성별	63	27	4	9	6	-	1	-	1	-	-	-	1	5
종교	11	7	-	3	-	-	-	-	-	-	-	1	-	3
장애	1,309	85	10	18	6	2	1	10	-	1	-	5	10	22
나이	141	120	13	65	7	1	3	-	1	-	5	1	13	11
사회적 신분	145	103	3	9	6	1	3	12	10	1	8	1	7	42
출신지역	13	7	1	3	-	-	-	-	-	-	-	-	-	3
출신국가	35	13	-	8	-	-	1	2	-	-	-	-	-	2
출신민족	-	-	-	-	-	-	-	-	-	-	-	-	-	-
용모/신체조건	31	18	4	5	-	-	-	1	-	-	-	-	4	4
혼인여부	5	1	-	-	1	-	-	-	-	-	-	-	-	-
임신/출산	18	15	-	3	-	-	1	2	1	-	-	-	5	3
가족상황	23	6	2	2	1	-	-	-	-	-	-	-	-	1
인종	18	1	-	1	-	-	-	-	-	-	-	-	-	-
피부색	1	-	-	-	-	-	-	-	-	-	-	-	-	-
사상/정치적의견	4	3	2	-	-	-	-	-	-	-	-	-	1	-
전과	19	13	1	11	-	-	-	-	-	-	-	-	-	1
성적지향	8	-	-	-	-	-	-	-	-	-	-	-	-	-
병력	39	14	2	4	-	-	1	-	-	-	-	-	3	4
학벌/학력	124	26	6	8	1	1	-	1	-	-	-	-	1	8
성희롱	241	14	-	1	-	-	-	-	2	-	-	-	1	10
기타	243	143	8	8	12	3	4	18	12		17	3	7	51

(단위 : 건)

구 분	재화 등 공급이나 이용에서의 차별							교육시설 등 이용 차별			기타
	소계	재화	용역	교통 수단	상업 수단	주거 시설	토지	소계	교육시설	직업훈련 기관	
합계	**970**	**449**	**378**	**40**	**83**	**20**	**-**	**105**	**97**	**8**	**800**
성별	19	5	9	-	4	1	-	9	7	2	8
종교	-	-	-	-	-	-	-	4	4	-	-
장애	797	414	282	37	51	13	-	40	38	2	387
나이	13	1	10	-	2	-	-	2	2	-	6
사회적신분	29	4	13	1	9	2	-	2	2	-	11
출신지역	4	1	1	1	1	-	-	1	-	1	1
출신국가	13	2	7	-	4	-	-	-	-	-	9
출신민족	-	-	-	-	-	-	-	-	-	-	-
용모/신체조건	3	2	-	-	1	-	-	3	2	1	7
혼인여부	3	-	2	-	-	1	-	-	-	-	1
임신/출산	3	1	1	-	1	-	-	-	-	-	-
가족상황	5	-	5	-	-	-	-	12	11	1	-
인종	2	-	1	-	1	-	-	1	1	-	14
피부색	-	-	-	-	-	-	-	-	-	-	1
사상/정치적의견	-	-	-	-	-	-	-	-	-	-	1
전과	3	-	3	-	-	-	-	-	-	-	3
성적지향	4	2	2	-	-	-	-	-	-	-	4
병력	18	1	14	1	2	-	-	3	2	1	4
학벌/학력	4	2	1	-	1	-	-	15	15	-	79
성희롱	2	-	-	-	2	-	-	-	-	-	225
기타	48	14	27	-	4	3	-	13	13	-	39

5. 성희롱 진정 접수 현황

<표 3-1-19> 주요 기관별 성희롱[32] 진정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 계	검찰	경찰	구금 시설	군대	기타 국가 기관	지방 자치 단체	보호 시설	교육 기관	공공 기관	사법인	개인 회사	단체	사인 (개인)	요양 시설	기타
누 계	1,548	14	20	14	14	38	63	5	180	65	538	246	54	199	17	81
2013	241	-	2	1	5	4	9	-	26	6	42	37	18	69	4	18
2012	228	-	3	3	-	3	10	-	21	12	120	24	5	9	8	10
2011	216	2	1	3	4	7	5	-	17	6	64	32	7	57	5	6
2010	210	1	4	1	-	7	11	-	24	12	78	38	9	18	-	7
2009	166	-	4	-	-	3	12	1	17	5	69	31	1	10	-	13

<표 3-1-20> 차별 영역별 성희롱 진정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 계	고용에서의 차별													재화 등 공급이나 이용에서의 차별							교육시설 등 이용 차별			기타
		소계	모집	채용	배치	교육	승진	임금	임금 외 금품	자금 융자	정년	퇴직	해고	기타	소계	용역	재화	교통 수단	상업 수단	주거 시설	토지	소계	교육 시설	직업 훈련 기관	
누 계	1,548	393	30	10	4	1	-	1	2	-	1	8	20	316	20	9	1	1	7	2	-	17	13	4	1,118
2013	241	14	-	1	-	-	-	-	2	-	-	-	1	10	2	-	-	-	2	-	-	-	-	-	225
2012	228	106	-	1	1	-	-	-	-	-	-	1	6	97	1	1	-	-	-	-	-	1	1	-	120
2011	216	40	-	3	1	-	-	-	-	-	-	3	4	29	5	2	1	-	2	-	-	3	3	-	168
2010	210	50	3	-	-	-	-	-	-	-	-	-	1	46	6	3	-	1	1	1	-	4	4	-	150
2009	166	70	8	-	2	1	-	-	-	-	-	1	2	56	6	3	-	-	2	1	-	1	1	-	89

32) 법 제2조(정의)제3호라목

<표 3-1-21> 성희롱 진정의 성별 당사자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여 성	남 성	미등록
누 계	**피해자**	**1,548**	**585**	**87**	**876**
	피진정인	**1,548**	**32**	**593**	**923**
2013	피해자	241	167	29	45
	피진정인	241	18	193	30
2012	피해자	228	146	9	73
	피진정인	228	9	198	21
2011	피해자	216	143	29	44
	피진정인	216	3	54	159
2010	피해자	210	43	8	159
	피진정인	210	2	38	170
2009	피해자	166	27	6	133
	피진정인	166	-	25	141

<표 3-1-22> 성희롱 진정의 연령대별 피해자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 계	20대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미등록
누 계	**1,548**	**32**	**216**	**175**	**124**	**40**	**12**	**949**
2013	241	10	66	66	36	14	4	45
2012	228	11	59	37	30	15	3	73
2011	216	5	62	53	36	7	3	50
2010	210	1	6	6	6	1	-	190
2009	166	1	8	3	5	2	-	147

6. 장애차별 진정 접수 현황[33)]

<표 3-1-23> 장애 차별행위 진정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접수건수	6,540	725	1,695	886	1,340	1,309

<표 3-1-24> 장애 유형별 진정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계	지체	시각	뇌병변	청각	지적(발달)	언어	정신장애	기타
누 계	6,540	2,033	1,238	455	831	840	48	277	818
2013	1,309	376	300	71	251	115	7	50	139
2012	1,340	492	193	87	142	231	13	47	135
2011	886	297	142	57	72	214	8	48	48
2010	1,695	508	427	136	275	181	8	73	87
2009	725	288	91	69	46	70	11	44	106

<표 3-1-25> 장애차별 영역별 진정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계	고용	교육	재화 · 용역	사법행정	참정권	괴롭힘 등	기타
누 계	6,540	413	368	4,030	251	128	842	508
2013	1,309	75	45	707	29	41	303	109
2012	1,340	82	96	808	36	57	111	150
2011	886	64	62	487	77	3	105	88
2010	1,695	82	55	1,269	26	13	176	74
2009	725	69	49	412	39	3	105	48

3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8. 4. 11. 이후 접수된 진정사건에 한함.

7. 기타 진정 접수 현황

<표 3-1-26> 기타 진정 내용별 접수 현황

(단위 : 건, %)

구 분	합 계		사인간침해		회사		기타단체		재산권		법령제도 개선		입법/재판		기타	
누 계	2,153	100.0	655	30.4	8	0.4	4	0.2	69	3.2	622	28.9	6	0.3	789	36.6
2013	103	100.0	92	89.3	1	1.0	-	0.0	-	0.0	1	1.0	1	1.0	8	7.7
2012	87	100.0	63	72.4	2	2.3	2	2.3	2	2.3	-	0.0	2	2.3	16	18.4
2011	129	100.0	10	7.8	5	3.9	2	1.6	2	1.6	6	4.7	3	2.3	101	78.3
2010	27	100.0	17	63.0	-	0.0	-	0.0	-	0.0	3	11.1	-	0.0	7	25.9
2009	18	100.0	11	61.1	-	0.0	-	0.0	-	0.0	2	11.1	-	0.0	5	27.8
2008	37	100.0	27	73.0	-	0.0	-	0.0	-	0.0	4	10.8	-	0.0	6	16.2
2007	48	100.0	41	85.4	-	0.0	-	0.0	-	0.0	1	2.1	-	0.0	6	12.5
2006	28	100.0	21	75.0	-	0.0	-	0.0	1	3.6	4	14.3	-	0.0	2	7.1
2005	337	100.0	61	18.1	-	0.0	-	0.0	6	1.8	86	25.5	-	0.0	184	54.6
2004	352	100.0	73	20.7	-	0.0	-	0.0	6	1.7	151	42.9	-	0.0	122	34.7
2003	416	100.0	57	13.7	-	0.0	-	0.0	12	2.9	188	45.2	-	0.0	159	38.2
2002	440	100.0	114	25.9	-	0.0	-	0.0	23	5.2	165	37.5	-	0.0	138	31.4
2001	131	100.0	68	51.9	-	0.0	-	0.0	17	13.0	11	8.4	-	0.0	35	26.7

제3절 진정 처리결과

1. 진정 처리결과 현황

<표 3-2-1-1> 진정 처리결과[34]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용											미인용					조사중지
		소계	수사의뢰	합의권고	조정	권고	고발	징계권고	법률구조	긴급구제	합의종결	기초조사중해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중지	
누 계	75,841	4,503	24	5	25	2,739	72	96	17	10	1,513	2	71,243	47,453	1,118	22,238	434	95
2013	10,429	576	-	-	2	214	2	3	2	-	353	-	9,811	6,291	29	3,491		42
2012	9,587	480	3	-	2	325	-	3	2	1	144	-	9,054	5,791	24	3,239		53[35]
2011	7,095	532	4	-	2	317	7	4	2	-	196	-	6,563	3,843	40	2,648	32	
2010	8,398	538	3	-	1	301	6	3	1	1	222	-	7,860	5,157	153	2,457	93	
2009	6,788	534	2	-	2	313	3	5	-	1	208	-	6,254	3,868	88	2,226	72	
2008	6,466	427	-	-	2	301	12	32	1	2	75	2	6,039	3,977	113	1,884	65	
2007	6,064	392	1	-	3	259	12	17	2	-	98	-	5,672	4,105	138	1,387	42	
2006	4,206	355	-	-	10	279	17	2	1	-	46	-	3,851	2,622	81	1,122	26	
2005	5,350	317	2	-	-	217	4	6	2	1	85	-	5,033	3,376	155	1,452	50	
2004	5,804	181	2	-	1	110	4	2	4	-	58	-	5,623	4,028	154	1,387	54	
2003	3,797	130	5	2	-	88	4	3	-	2	26	-	3,667	2,766	116	785	-	
2002	1,856	40	1	3	-	15	1	16	-	2	2	-	1,816	1,629	27	160	-	
2001	1	1	1	-	-	-	-	-	-	-	-	-	-	-	-	-	-	

34) 법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법 제33조(다른 구제 절차와 이송)제1항 및 제2항, 법 제34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제1항, 법 제39조(진정의 기각), 법 제40조(합의의 권고), 법 제42조(조정위원회의 조정), 법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법 제45조(고발 및 징계권고), 법 제47조(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법 제48조(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6조의3(기초조사과정에서의 해결, 2011.12.8. 폐지), 제26조(합의)(이하 같음)

35)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22조의2 제4항(2011.12.8. 신설)에 의거 2012년 통계작성시부터 조사중지를 종결건수로 보지 않음(이하 같음)

<표 3-2-1-2> 진정 처리결과 - 기각 사유별

(단위 : 건, %)

구 분	합 계		법 제39조제1항제1호		법 제39조제1항제2호		법 제39조제1항제3호	
누 계	22,238	100.0	8,952	40.3	9,252	41.6	4,034	18.1
2013	3,491	100.0	1,362	39.0	1,394	40.0	735	21.0
2012	3,239	100.0	1,223	37.7	1,246	38.5	770	23.8
2011	2,648	100.0	1,036	39.1	987	37.3	625	23.6
2010	2,457	100.0	994	40.5	1,042	42.4	421	17.1
2009	2,226	100.0	856	38.5	977	43.9	393	17.7
2008	1,884	100.0	739	39.2	834	44.3	311	16.5
2007	1,387	100.0	588	42.4	576	41.5	223	16.1
2006	1,122	100.0	399	35.6	581	51.8	142	12.7
2005	1,452	100.0	634	43.7	645	44.4	173	11.9
2004	1,387	100.0	651	46.9	593	42.8	143	10.3
2003	785	100.0	386	49.2	328	41.8	71	9.0
2002	160	100.0	84	52.5	49	30.6	27	16.9

<표 3-2-1-3> 진정 처리결과 - 각하 사유별

(단위 : 건, %)

구 분	합 계		법 제32조제1항																법 제32조제3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누 계	47,453	100.0	8,452	17.8	1,048	2.2	965	2.0	1,779	3.8	3,250	6.9	74	0.2	1,348	2.8	29,628	62.4	561	1.2	299	0.6	49	0.1
2013	6,291	100.0	1,114	17.7	78	1.2	163	2.6	125	2.0	264	4.2	6	0.1	222	3.5	4,234	67.3	79	1.3	2	0.0	4	0.1
2012	5,791	100.0	897	15.5	93	1.6	137	2.4	134	2.3	265	4.6	19	0.3	201	3.5	3,991	68.9	47	0.8	4	0.1	3	0.1
2011	3,843	100.0	548	14.3	83	2.2	82	2.1	108	2.8	169	4.4	6	0.2	102	2.7	2,684	69.8	58	1.5	3	0.1	-	0.0
2010	5,157	100.0	802	15.6	85	1.6	114	2.2	189	3.7	267	5.2	6	0.1	172	3.3	3,433	66.6	58	1.1	29	0.6	2	0.0
2009	3,868	100.0	475	12.3	65	1.7	79	2.0	117	3.0	231	6.0	7	0.2	96	2.5	2,736	70.7	54	1.4	2	0.1	6	0.2
2008	3,977	100.0	643	16.2	97	2.4	96	2.4	119	3.0	239	6.0	13	0.3	150	3.8	2,556	64.3	43	1.1	19	0.5	2	0.1
2007	4,105	100.0	536	13.1	118	2.9	79	1.9	148	3.6	287	7.0	7	0.2	184	4.5	2,658	64.8	58	1.4	13	0.3	17	0.4
2006	2,622	100.0	345	13.2	73	2.8	50	1.9	81	3.1	215	8.2	1	0.0	80	3.1	1,706	65.1	52	2.0	8	0.3	11	0.4
2005	3,376	100.0	551	16.3	117	3.5	66	2.0	165	4.9	352	10.4	3	0.1	106	3.1	1,915	56.7	79	2.3	19	0.6	3	0.1
2004	4,028	100.0	1,712	42.5	41	1.0	38	0.9	157	3.9	298	7.4	1	0.0	32	0.8	1,709	42.4	22	0.5	18	0.4	-	0.0
2003	2,766	100.0	324	11.7	150	5.4	44	1.6	255	9.2	337	12.2	4	0.1	1	0.0	1,553	56.1	10	0.4	87	3.1	1	0.0
2002	1,629	100.0	505	31.0	48	2.9	17	1.0	181	11.1	326	20.0	1	0.1	2	0.1	453	27.8	1	0.1	95	5.8	-	0.0

<표 3-2-1-4> 진정 처리결과 - 진정 처리 소요일수 현황

(단위 : 건, 일)

구 분	합 계		인용		미인용	
	종결건수	평균소요일수	종결건수	평균소요일수	종결건수	평균소요일수
누계	**75,841**	**112.6**	**4,503**	**184.1**	**71,338**	**108,1**
2013	10,429	96.1	576	122.9	9,853	94.5
2012	9,587	135.3	480	259.1	9,107	128.8
2011	7,095	117.4	532	189.8	6,563	111.5
2010	8,398	85.8	538	131.1	7,860	82.7
2009	6,788	97.2	534	128.1	6,254	94.5
2008	6,466	104.1	427	207.1	6,039	96.8
2007	6,064	90.0	392	212.8	5,672	81.5
2006	4,206	122.6	355	200.8	3,851	115.4
2005	5,350	110.1	317	203.9	5,033	104.2
2004	5,804	124.0	181	269.2	5,623	119.3
2003	3,797	180.2	130	256.5	3,667	177.4
2002	1,856	162.4	40	106.3	1,816	163.7
2001	1	31.0	1	31.0	-	-

※ 미인용 종결건수는 조사중지 포함 건수임.

2.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표 3-2-2-1>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용											미인용					조사중지
		소계	수사의뢰	합의권고	조정	권고	고발	징계권고	법률구조	긴급구제	합의종결	기초조사중해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중지	
누 계	57,780	2,846	22	5	2	1,650	64	90	17	10	984	2	54,882	36,166	1,005	17,359	352	52
2013	7,452	360	-	-	-	113	1	2	2	-	242	-	7,071	4,542	18	2,511		21
2012	6,938	264	2	-	-	155	-	1	2	1	103	-	6,643	4,392	22	2,229		31
2011	5,158	260	3	-	1	130	3	4	2	-	117	-	4,898	2,935	35	1,908	20	
2010	6,264	331	3	-	-	198	3	3	1	1	122	-	5,933	3,907	130	1,831	65	
2009	5,108	365	2	-	1	235	3	5	-	1	118	-	4,743	2,974	78	1,637	54	
2008	5,288	308	-	-	-	213	12	30	1	2	48	2	4,980	3,177	99	1,644	60	
2007	4,757	239	1	-	-	147	12	16	2	-	61	-	4,518	3,152	116	1,215	35	
2006	3,250	207	-	-	-	164	17	2	1	-	23	-	3,043	2,019	70	933	21	
2005	4,132	244	2	-	-	156	4	6	2	1	73	-	3,888	2,378	147	1,318	45	
2004	4,931	145	2	-	-	79	4	2	4	-	54	-	4,786	3,306	148	1,280	52	
2003	3,137	94	5	2	-	55	4	3	-	2	23	-	3,043	2,210	116	717	-	
2002	1,364	28	1	3	-	5	1	16	-	2	-	-	1,336	1,174	26	136	-	
2001	1	1	1	-	-	-	-	-	-	-	-	-	-	-	-	-	-	

<표 3-2-2-2> 2013년 주요 기관별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용											미인용				조사중지
		소계	수사의뢰	합의권고	조정	권고	고발	징계권고	법률구조	긴급구제	합의종결	기초조사중해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합계	7,452	360	-	-	-	113	1	2	2	-	242	-	7,071	4,542	18	2,511	21
검찰	170	4	-	-	-	3	-	-	-	-	1	-	164	107	1	56	2
경찰	1,453	80	-	-	-	32	-	-	2	-	46	-	1,362	663	9	690	11
국정원	13	-	-	-	-	-	-	-	-	-	-	-	13	10	-	3	-
지방자치단체	297	4	-	-	-	3	-	-	-	-	1	-	293	196	-	97	-
사법기관	94	2	-	-	-	2	-	-	-	-	-	-	92	60	-	32	-
입법기관	5	-	-	-	-	-	-	-	-	-	-	-	5	2	-	3	-
기타국가기관	324	5	-	-	-	5	-	-	-	-	-	-	317	236	1	80	2
구금시설	1,662	7	-	-	-	3	-	-	-	-	4	-	1,655	916	5	734	-
다수인보호시설	2,650	224	-	-	-	53	1	1	-	-	169	-	2,423	1,781	2	640	3
군	165	9	-	-	-	6	-	-	-	-	3	-	155	95	-	60	1
각급학교	422	22	-	-	-	5	-	1	-	-	16	-	399	307	-	92	1
출입국관리기관	25	2	-	-	-	1	-	-	-	-	1	-	23	15	-	8	-
공직유관단체	127	1	-	-	-	-	-	-	-	-	1	-	125	109	-	16	1
기타	45	-	-	-	-	-	-	-	-	-	-	-	45	45	-	-	-

<표 3-2-2-3> 2013년 헌법상 기본권별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용											미인용				조사중지
		소계	수사의뢰	합의권고	조정	권고	고발	징계권고	법률구조	긴급구제	합의종결	기초조사중해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합 계	7,452	360	-	-	-	113	1	2	2	-	242	-	7,071	4,542	18	2,511	21
인간의존엄성(10조)	2,944	87	-	-	-	29	-	1	-	-	57	-	2,850	1,773	7	1,070	7
평등권(11조)	295	9	-	-	-	6	-	-	-	-	3	-	284	171	2	111	2
신체의자유(12조)	2,854	206	-	-	-	63	1	-	1	-	141	-	2,640	1,676	6	958	8
형벌불소급(13조)	3	-	-	-	-	-	-	-	-	-	-	-	3	1	-	2	-
거주이전의자유(14조)	20	-	-	-	-	-	-	-	-	-	-	-	19	15	-	4	1
직업선택의자유(15조)	23	-	-	-	-	-	-	-	-	-	-	-	23	16	-	7	-
주거의자유(16조)	18	2	-	-	-	2	-	-	-	-	-	-	16	9	-	7	-
사생활의비밀과자유(17조)	338	18	-	-	-	6	-	-	1	-	11	-	319	176	-	143	1
통신의자유(18조)	326	28	-	-	-	3	-	-	-	-	25	-	298	219	1	78	-
양심의자유(19조)	11	1	-	-	-	-	-	1	-	-	-	-	9	7	-	2	1
종교의자유(20조)	17	-	-	-	-	-	-	-	-	-	-	-	17	10	-	7	-
언론의자유(21조)	37	3	-	-	-	-	-	-	-	-	3	-	34	24	-	10	-
학문예술의자유(22조)	6	-	-	-	-	-	-	-	-	-	-	-	6	5	-	1	-
기타	560	6	-	-	-	4	-	-	-	-	2	-	553	440	2	111	1

<표 3-2-2-4>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기각 사유별

(단위 : 건, %)

구 분	합 계		법 제39조제1항제1호		법 제39조제1항제2호		법 제39조제1항제3호	
누 계	17,359	100.0	8,148	46.9	7,499	43.2	1,712	9.9
2013	2,511	100.0	1,213	48.3	1,154	46.0	144	5.7
2012	2,229	100.0	1,068	47.9	1,005	45.1	156	7.0
2011	1,908	100.0	898	47.1	709	37.2	301	15.8
2010	1,831	100.0	874	47.7	826	45.1	131	7.2
2009	1,637	100.0	775	47.3	727	44.4	135	8.2
2008	1,644	100.0	697	42.4	741	45.1	206	12.5
2007	1,215	100.0	565	46.5	487	40.1	163	13.4
2006	933	100.0	373	40.0	436	46.7	124	13.3
2005	1,318	100.0	610	46.3	565	42.9	143	10.8
2004	1,280	100.0	637	49.8	521	40.7	122	9.5
2003	717	100.0	368	51.3	286	39.9	63	8.8
2002	136	100.0	70	51.5	42	30.9	24	17.6

<표 3-2-2-5>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각하 사유별

(단위 : 건, %)

구 분	합 계		법 제32조제1항																법 제32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누 계	36,166	100.0	5,325	14.7	889	2.5	759	2.1	1,469	4.1	2,636	7.3	51	0.1	1,015	2.8	23,385	64.7	342	0.9	253	0.7	42	0.1
2013	4,542	100.0	644	14.2	64	1.4	119	2.6	107	2.3	190	4.2	5	0.1	157	3.5	3,193	70.3	59	1.3	1	0.0	3	0.1
2012	4,392	100.0	685	15.6	86	2.0	116	2.6	104	2.4	198	4.5	14	0.3	173	3.9	2,974	67.7	36	0.8	4	0.1	2	0.0
2011	2,935	100.0	370	12.6	74	2.5	58	2.0	92	3.1	130	4.4	4	0.1	77	2.6	2,096	71.4	34	1.2	-	0.0	-	0.0
2010	3,907	100.0	450	11.5	80	2.0	98	2.5	156	4.0	220	5.6	5	0.1	138	3.5	2,691	68.9	41	1.0	27	0.7	1	0.0
2009	2,974	100.0	285	9.6	59	2.0	64	2.2	101	3.4	189	6.4	5	0.2	72	2.4	2,164	72.8	31	1.0	1	0.0	3	0.1
2008	3,177	100.0	463	14.6	87	2.7	85	2.7	92	2.9	216	6.8	10	0.3	124	3.9	2,046	64.4	34	1.1	18	0.6	2	0.1
2007	3,152	100.0	359	11.4	101	3.2	54	1.7	137	4.3	251	8.0	1	0.0	141	4.5	2,032	64.5	47	1.5	13	0.4	16	0.5
2006	2,019	100.0	237	11.7	64	3.2	32	1.6	73	3.6	178	8.8	-	0.0	49	2.4	1,347	66.7	24	1.2	4	0.2	11	0.5
2005	2,378	100.0	173	7.3	85	3.6	47	2.0	136	5.7	291	12.2	2	0.1	64	2.7	1,539	64.7	23	1.0	15	0.6	3	0.1
2004	3,306	100.0	1,375	41.6	21	0.6	30	0.9	126	3.8	240	7.3	-	0.0	18	0.5	1,477	44.7	9	0.3	10	0.3	-	0.0
2003	2,210	100.0	85	3.8	129	5.8	42	1.9	185	8.4	253	11.4	4	0.2	1	0.0	1,437	65.0	4	0.2	69	3.1	1	0.0
2002	1,174	100.0	199	17.0	39	3.3	14	1.2	160	13.6	280	23.9	1	0.1	1	0.1	389	33.1	-	0.0	91	7.8	-	0.0

<표 3-2-2-6> 부서별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본부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용											미인용					조사중지
		소계	수사의뢰	합의권고	조정	권고	고발	징계권고	법률구조	긴급구제	합의종결	기초조사중해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중지	
누 계	48,262	2,291	22	5	2	1,384	59	85	16	10	706	2	45,925	31,166	863	13,575	321	46
2013	5,390	190	-	-	-	65	1	1	2	-	121	-	5,182	3,492	12	1,678		18
2012	4,983	133	2	-	-	85	-	1	2	1	42	-	4,822	3,295	17	1,510		28
2011	3,712	164	3	-	1	86	-	2	1	-	71	-	3,548	2,183	23	1,323	19	
2010	4,582	259	3	-	-	146	2	2	1	1	104	-	4,323	3,028	96	1,161	38	
2009	3,755	293	2	-	1	190	2	4	-	1	93	-	3,462	2,350	33	1,028	51	

<표 3-2-2-7> 부서별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부산인권사무소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용											미인용					조사중지
		소계	수사의뢰	합의권고	조정	권고	고발	징계권고	법률구조	긴급구제	합의종결	기초조사중해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중지	
누 계	3,235	212	-	-	-	111	3	2	-	-	96	-	3,019	1,658	26	1,331	4	4
2013	691	52	-	-	-	13	-	1	-	-	38	-	636	320	1	315		3
2012	731	51	-	-	-	18	-	-	-	-	33	-	679	395	-	284		1
2011	426	27	-	-	-	17	3	-	-	-	7	-	399	219	1	179	-	
2010	487	36	-	-	-	27	-	1	-	-	8	-	451	269	1	177	4	
2009	607	41	-	-	-	31	-	-	-	-	10	-	566	265	10	291	-	

<표 3-2-2-8> 부서별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광주인권사무소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용											미인용					조사중지
		소계	수사의뢰	합의권고	조정	권고	고발	징계권고	법률구조	긴급구제	합의종결	기초조사중해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중지	
누 계	3,300	203	-	-	-	89	2	3	1	-	108	-	3,097	1,628	39	1,428	2	-
2013	720	56	-	-	-	13	-	-	-	-	43	-	664	336	4	324		-
2012	716	48	-	-	-	28	-	-	-	-	20	-	668	390	2	276		-
2011	530	37	-	-	-	15	-	2	1	-	19	-	493	230	1	262	-	
2010	492	27	-	-	-	18	1	-	-	-	8	-	465	240	8	215	2	
2009	309	27	-	-	-	14	1	1	-	-	11	-	282	133	5	144	-	

<표 3-2-2-9> 부서별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대구인권사무소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용											미인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합의 권고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법률 구조	긴급 구제	합의 종결	기초 조사 중해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누 계	2,983	140	-	-	-	66	-	-	-	-	74	-	2,841	1,714	77	1,025	25	2
2013	651	62	-	-	-	22	-	-	-	-	40	-	589	394	1	194		-
2012	508	32	-	-	-	24	-	-	-	-	8	-	474	312	3	159		2
2011	490	32	-	-	-	12	-	-	-	-	20	-	458	303	10	144	1	
2010	703	9	-	-	-	7	-	-	-	-	2	-	694	370	25	278	21	
2009	437	4	-	-	-	-	-	-	-	-	4	-	433	226	30	174	3	

<표 3-2-2-10>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진정 처리 소요일수 현황

(단위 : 건, 일)

구 분	합 계	평균 소요일수	본 부		부 산		광 주		대 구	
			종결 건수	평균 소요일수	종결 건수	평균 소요일수	종결 건수	평균 소요일수	종결 건수	평균 소요일수
누 계	57,780	105.9	48,262	238.4	3,235	80.9	3,300	53.2	2,983	52.1
2013	7,452	86.6	5,390	103.7	691	61.8	720	60.6	651	41.9
2012	6,938	109.2	4,983	126.0	731	68.8	716	64.6	508	65.8
2011	5,158	106.8	3,712	119.2	426	79.5	530	67.1	490	80.0
2010	6,264	79.4	4,582	79.1	487	54.6	492	60.6	703	111.5
2009	5,108	87.5	3,755	91.3	607	74.4	309	56.0	437	95.7

<표 3-2-2-11> 2013년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검,경,군) - 내용별

(단위 : 건)

구 분	합계	인용									미인용				조사중지
		소계	수사의뢰	합의권고	권고	고발	징계권고	법률구조	긴급구제	합의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합 계	1,788	93	-	-	41	-	-	2	-	50	1,681	865	10	806	14
불심검문/임의동행	17	3	-	-	1	-	-	-	-	2	14	7	-	7	-
도 · 감청 등	2	-	-	-	-	-	-	-	-	-	2	1	-	1	-
압수수색(신체)	38	5	-	-	3	-	-	-	-	2	33	11	-	22	-
집회, 시위	10	-	-	-	-	-	-	-	-	-	10	4	-	6	-
체포이유 등 권리 불고지/가족미통지	31	1	-	-	1	-	-	-	-	-	30	9	-	21	-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3	-	-	-	-	-	-	-	-	-	3	2	-	1	-
폭행, 가혹행위/ 과도한 장구사용	380	23	-	-	10	-	-	1	-	12	355	153	3	199	2
폭언, 욕설 등 인격권 침해	342	16	-	-	3	-	-	-	-	13	323	167	2	154	3
건강 · 의료권침해/ 피해자보호조치 미흡	108	4	-	-	2	-	-	-	-	2	103	46	-	57	1
체포, 구속, 감금	166	15	-	-	7	-	-	-	-	8	148	75	-	73	3
불리한 진술 강요/ 심야, 장시간 조사/ 편파 부당수사	334	7	-	-	5	-	-	-	-	2	324	189	3	132	3
공소권 남용	3	-	-	-	-	-	-	-	-	-	3	3	-	-	-
피의사실 유포/ 개인정보 관리 등	98	9	-	-	3	-	-	1	-	5	89	42	-	47	-
알권리/정보공개	10	-	-	-	-	-	-	-	-	-	10	7	-	3	-
생명권 침해	10	1	-	-	1	-	-	-	-	-	9	6	-	3	-
압수수색(주거) 등	11	1	-	-	-	-	-	-	-	1	10	5	-	5	-
부당한 제도 및 처분	21	-	-	-	-	-	-	-	-	-	21	18	-	3	-
종교의 자유	3	1	-	-	-	-	-	-	-	1	2	-	-	2	-
유치장/영창 관련 인권침해	18	2	-	-	1	-	-	-	-	1	16	8	-	8	-
인터넷	3	-	-	-	-	-	-	-	-	-	3	2	-	1	-
기타	180	5	-	-	4	-	-	-	-	1	173	110	2	61	2

□ 검찰

<표 3-2-2-12> 검찰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용							미인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권고	고발	징계 권고	긴급 구제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누 계	2,174	78	2	61	1	1	3	10	2,094	1,455	39	576	24	2
2013	170	4	–	3	–	–	–	1	164	107	1	56		2
2012	161	4	–	1	–	–	1	2	157	89	4	64		–
2011	129	6	–	5	–	–	–	1	123	62	2	58	1	
2010	223	5	–	3	–	–	–	2	218	137	10	68	3	
2009	135	4	–	3	–	–	–	1	131	84	2	41	4	

<표 3-2-2-13> 검찰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기각·각하 사유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법 제32조제1항											법 제32조 제3항	법 제39조제1항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누 계	2,031	1,455	163	25	14	177	400	1	105	498	11	61	–	576	299	240	37
2013	163	107	23	5	–	9	7	–	14	49	–	–	–	56	40	14	2
2012	153	89	15	1	–	7	9	–	17	39	1	–	–	64	30	33	1
2011	120	62	4	1	2	4	4	–	4	41	2	–	–	58	27	31	–
2010	205	137	12	4	2	21	17	–	19	55	5	2	–	68	28	37	3
2009	125	84	14	–	–	12	17	–	3	38	–	–	–	41	19	19	3

<표 3-2-2-14> 2013년 검찰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내용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용									미인용				조사중지
		소계	수사의뢰	합의권고	권고	고발	징계권고	법률구조	긴급구제	합의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합 계	170	4	–	–	3	–	–	–	–	1	164	107	1	56	2
도 · 감청 등	1	–	–	–	–	–	–	–	–	–	1	–	–	1	–
압수수색(신체)	2	–	–	–	–	–	–	–	–	–	2	2	–	–	–
집회, 시위	–	–	–	–	–	–	–	–	–	–	–	–	–	–	–
체포이유 등 권리 불고지/가족미통지	2	–	–	–	–	–	–	–	–	–	2	1	–	1	–
임의동행	–	–	–	–	–	–	–	–	–	–	–	–	–	–	–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2	–	–	–	–	–	–	–	–	–	2	1	–	1	–
폭행, 가혹행위/ 과도한 장구사용	1	–	–		–	–	–	–	–	–	1	–	–	1	–
폭언, 욕설 등 인격권 침해	31	–	–	–	–	–	–	–	–	–	31	16	–	15	–
건강 · 의료권침해/ 피해자보호조치 미흡	3	–	–	–	–	–	–	–	–	–	3	2	–	1	–
체포, 구속, 감금	13	2	–	–	1	–	–	–	–	1	10	8	–	2	1
불리한 진술 강요/ 심야, 장시간 조사/ 편파 부당수사	66	–	–	–	–	–	–	–	–	–	66	44	1	21	–
공소권 남용	3	–	–	–	–	–	–	–	–	–	3	3	–	–	–
피의사실 유포/ 개인정보 관리 등	9	–	–		–	–	–	–	–	–	9	5	–	4	–
알권리/정보공개	7	–	–	–	–	–	–	–	–	–	7	4	–	3	–
생명권 침해	3	1	–	–	1	–	–	–	–	–	2	1	–	1	–
압수수색(주거) 등	–	–	–	–	–	–	–	–	–	–	–	–	–	–	–
인터넷	–	–	–	–	–	–	–	–	–	–	–	–	–	–	–
기타	27	1	–	–	1	–	–	–	–	–	25	20	–	5	1

□ 경찰

<표 3-2-2-15> 경찰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용								미인용					조사중지
		소계	수사의뢰	권고	고발	징계권고	법률구조	긴급구제	합의종결	소계	각하	이승	기각	조사중지	
누 계	12,328	977	12	560	8	61	4	5	327	11,322	6,730	168	4,296	128	29
2013	1,453	80	-	32	-	-	2	-	46	1,362	663	9	690		11
2012	1,243	66	-	51	-	1	-	-	14	1,159	584	6	569		18
2011	992	59	2	42	-	1	-	-	14	933	449	8	469	7	
2010	1,431	104	2	58	2	1	-	-	41	1,327	859	31	417	20	
2009	1,319	173	2	123	2	2	-	1	43	1,146	678	13	431	24	

<표 3-2-2-16> 경찰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기각·각하 사유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법 제32조제1항										법 제32조제3항	법 제39조제1항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누 계	11,026	6,721	365	178	115	505	890	9	266	4,222	70	101	9	4,296	2,900	1,141	255
2013	1,353	663	65	21	5	40	47	1	68	398	18	-	-	690	459	189	42
2012	1,153	583	67	10	8	34	40	2	39	376	5	2	1	569	385	156	28
2011	918	449	32	9	7	28	35	1	14	312	11	-	-	469	359	92	18
2010	1,276	858	33	22	18	64	62	-	44	598	14	3	1	417	274	123	20
2009	1,109	678	25	15	16	40	62	-	19	497	4	-	-	431	311	99	21

<표 3-2-2-17> 2013년 경찰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내용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용									미인용				조사중지
		소계	수사의뢰	합의권고	권고	고발	징계권고	법률구조	긴급구제	합의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합 계	1,453	80	–	–	32	–	–	2	–	46	1,362	663	9	690	11
불심검문/임의동행	17	3	–	–	1	–	–	–	–	2	14	7	–	7	–
도 · 감청 등	1	–	–	–	–	–	–	–	–	–	1	1	–	–	–
압수수색/ 과도한 신체검사	36	5	–	–	3	–	–	–	–	2	31	9	–	22	–
집회, 시위	10	–	–	–	–	–	–	–	–	–	10	4	–	6	–
체포이유 등 권리 불고지/가족미통지	29	1	–	–	1	–	–	–	–	–	28	8	–	20	–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1	–	–	–	–	–	–	–	–	–	1	1	–	–	–
폭행, 가혹행위/ 과도한 장구사용	359	22	–	–	9	–	–	1	–	12	335	141	3	191	2
폭언, 욕설 등 인격권 침해	274	13	–	–	2	–	–	–	–	11	259	132	2	125	2
건강 · 의료권침해/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74	3	–	–	1	–	–	–	–	2	70	28	–	42	1
체포, 구속, 감금	151	13	–	–	6	–	–	–	–	7	136	65	–	71	2
불리한 진술 강요/ 심야, 장시간 조사/ 편파 부당수사	260	7	–	–	5	–	–	–	–	2	250	141	2	107	3
피의사실 유포/ 개인정보 관리 등	81	8	–	–	2	–	–	1	–	5	73	33	–	40	–
알권리/정보공개	2	–	–	–	–	–	–	–	–	–	2	2	–	–	–
생명권 침해	3	–	–	–	–	–	–	–	–	–	3	3	–	–	–
압수수색(주거) 등	11	1	–	–	–	–	–	–	–	1	10	5	–	5	–
종교의 자유	2	1	–	–	–	–	–	–	–	1	1	–	–	1	–
유치장 관련 인권침해	10	–	–	–	–	–	–	–	–	–	10	4	–	6	–
인터넷	1	–	–	–	–	–	–	–	–	–	1	–	–	1	–
기타	131	3	–	–	2	–	–	–	–	1	127	79	2	46	1

□ 군

<표 3-2-2-18> 군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용									미인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합의 권고	권고	고발	징계 권고	법률 구조	긴급 구제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누 계	1.177	75	4	1	47	1	2	4	1	15	1,100	875	8	213	4	2
2013	165	9	-	-	6	-	-	-	-	3	155	95	-	60		1
2012	166	10	-	-	8	-	-	2	-	-	155	117	1	37		1
2011	110	7	-	-	1	-	1	1	-	4	103	84	1	18	-	
2010	146	7	1	-	4	-	-	1	1	-	139	118	2	19	-	
2009	78	3	-	-	3	-	-	-	-	-	75	54	-	21	-	

<표 3-2-2-19> 군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기각·각하 사유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법 제32조제1항											법 제32조 제3항	법 제39조제1항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누 계	1,088	872	61	9	16	160	87	6	17	507	4	5	3	213	93	75	45
2013	155	94	16	-	3	9	1	1	5	57	2	-	1	60	31	24	5
2012	154	117	10	1	3	15	1	2	2	83	-	-	-	37	15	17	5
2011	102	84	4	1	3	8	1	1	1	65	-	-	-	18	7	6	5
2010	137	118	5	1	4	6	10	-	2	90	-	-	-	19	7	7	5
2009	75	54	6	1	-	7	4	-	2	34	-	-	-	21	6	6	9

<표 3-2-2-20> 2013년 군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내용별

(단위 : 건)

구 분	합계	인용									미인용				조사중지
		소계	수사의뢰	합의권고	권고	고발	징계권고	법률구조	긴급구제	합의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합 계	165	9	-	-	6	-	-	-	-	3	155	95	-	60	1
도 · 감청 등	-	-	-	-	-	-	-	-	-	-	-	-	-	-	-
압수수색(신체)	-	-	-	-	-	-	-	-	-	-	-	-	-	-	-
불리한 진술 강요/ 심야, 장시간 조사/ 편파 부당수사	8	-	-	-	-	-	-	-	-	-	8	4	-	4	-
폭행, 가혹행위/ 과도한 장구사용	20	1	-	-	1	-	-	-	-	-	19	12	-	7	-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	-	-	-	-	-	-	-	-	-	-	-	-	-	-
폭언, 욕설 등 인격권 침해	37	3	-	-	1	-	-	-	-	2	33	19	-	14	1
건강 · 의료권 침해/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31	1	-	-	1	-	-	-	-	-	30	16	-	14	-
체포, 구속, 감금	2	-	-	-	-	-	-	-	-	-	2	2	-	-	-
피의사실 유포/ 개인정보 관리 등	8	1	-	-	1	-	-	-	-	-	7	4	-	3	-
알권리 침해 / 정보공개	1	-	-	-	-	-	-	-	-	-	1	1	-	-	-
생명권 침해	4	-	-	-	-	-	-	-	-	-	4	2	-	2	-
부당한 제도 및 처분	21	-	-	-	-	-	-	-	-	-	21	18	-	3	-
압수수색(주거) 등	-	-	-	-	-	-	-	-	-	-	-	-	-	-	-
종교의 자유	1	-	-	-	-	-	-	-	-	-	1	-	-	1	-
영창관련 인권침해	8	2	-	-	1	-	-	-	-	1	6	4	-	2	-
인터넷	2	-	-	-	-	-	-	-	-	-	2	2	-	-	-
기타	22	1	-	-	1	-	-	-	-	-	21	11	-	10	-

□ 구금시설

<표 3-2-2-21> 구금시설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용								미인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합의 권고	권고	고발	징계 권고	법률 구조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누 계	20,278	355	2	1	241	1	16	8	86	19,920	12,174	682	6,975	89	3
2013	1,662	7	–	–	3	–	–	–	4	1,655	916	5	734		–
2012	1,772	13	–	–	5	–	–	–	8	1,756	1,043	6	707		3
2011	1,449	40	1	–	27	–	2	1	9	1,409	808	18	582	1	
2010	1,917	20	–	–	9	–	1	–	10	1,897	1,109	69	701	18	
2009	1,902	44	–	–	20	–	2	–	22	1,858	1,099	56	694	9	

<표 3-2-2-22> 구금시설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기각·각하 사유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법 제32조제1항										법 제32조 제3항	법 제39조제1항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누 계	19,149	12,154	934	267	328	199	608	8	154	9,506	140	10	20	6,975	3,121	3,331	523
2013	1,650	916	154	11	42	17	59	–	4	611	17	1	–	734	362	355	17
2012	1,750	1,043	230	22	35	13	74	2	32	614	20	1	–	707	322	356	29
2011	1,390	808	122	29	18	11	48	1	20	548	11	–	–	582	278	277	27
2010	1,810	1,109	129	22	43	16	68	1	14	804	12	–	–	701	350	312	39
2009	1,793	1.096	72	20	21	12	69	–	13	870	18	1	3	694	285	355	54

<표 3-2-2-23> 구금시설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부서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용								미인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합의 권고	권고	고발	징계 권고	법률 구조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누 계		20,278	355	2	1	241	1	16	8	86	19,920	12,174	682	6,975	89	3
2013	소계	1,662	7	-	-	3	-	-	-	4	1,655	916	5	734		-
	본부	782	-	-	-	-	-	-	-	-	782	496	1	285		-
	부산	319	2	-	-	-	-	-	-	2	317	146	1	170		-
	광주	296	2	-	-	2	-	-	-	-	294	118	2	174		-
	대구	265	3	-	-	1	-	-	-	2	262	156	1	105		-
2012	소계	1,772	13	-	-	5	-	-	-	8	1,756	1,043	6	707		3
	본부	803	2	-	-	2	-	-	-	-	798	520	3	275		3
	부산	384	9	-	-	1	-	-	-	8	375	177	-	198		-
	광주	355	2	-	-	2	-	-	-	-	353	198	1	154		-
	대구	230	-	-	-	-	-	-	-	-	230	148	2	80		-
2011	소계	1,449	40	1	-	27	-	2	1	9	1,409	808	18	582	1	
	본부	688	21	1	-	20	-	-	-	-	667	408	6	252	1	
	부산	210	2	-	-	-	-	-	-	2	208	105	1	102	-	
	광주	245	12	-	-	7	-	2	1	2	233	108	1	124	-	
	대구	306	5	-	-	-	-	-	-	5	301	187	10	104	-	
2010	소계	1,917	20	-	-	9	-	1	-	10	1,897	1,109	69	701	18	
	본부	865	5	-	-	4	-	-	-	1	860	517	37	303	3	
	부산	244	11	-	-	3	-	1	-	7	233	164	1	65	3	
	광주	262	2	-	-	-	-	-	-	2	260	159	8	93	-	
	대구	546	2	-	-	2	-	-	-	-	544	269	23	240	12	
2009	소계	1,902	44	-	-	20	-	2	-	22	1,858	1,099	56	694	9	
	본부	886	17	-	-	9	-	1	-	7	869	600	12	251	6	
	부산	422	16	-	-	6	-	-	-	10	406	204	10	192	-	
	광주	193	10	-	-	5	-	1	-	4	183	95	4	84	-	
	대구	401	1	-	-	-	-	-	-	1	400	200	30	167	3	

<표 3-2-2-24> 2013년 구금시설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내용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용								미인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합의 권고	권고	고발	징계 권고	법률 구조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합 계	1,662	7	-	-	3	-	-	-	4	1,655	916	5	734	-
건강/의료	410	2	-	-	2	-	-	-	-	408	208	1	199	-
외부교통 권리제한	118	1	-	-	1	-	-	-	-	117	58	1	58	-
조사/징벌/계구	223	-	-	-	-	-	-	-	-	223	103	-	120	-
폭행/가혹행위	163	3	-	-	-	-	-	-	3	160	88	3	69	-
처우관계/ 인격권 침해	577	-	-	-	-	-	-	-	-	577	350	-	227	-
시설/환경	101	-	-	-	-	-	-	-	-	101	65	-	36	-
기타	70	1	-	-	-	-	-	-	1	69	44	-	25	-

□ 다수인보호시설

<표 3-2-2-25> 다수인보호시설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용								미인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합의 권고	권고	고발	징계 권고	법률 구조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누 계	9,753	873	2	-	435	50	3	1	382	8,872	5,915	47	2,864	46	8
2013	2,650	224	-	-	53	1	1	-	169	2,423	1,781	2	640		3
2012	2,153	144	2	-	76	-	-	-	66	2,004	1,462	2	540		5
2011	1,373	133	-	-	46	3	-	-	84	1,240	889	1	349	1	
2010	1,242	118	-	-	74	1	1	-	42	1,124	731	11	370	12	
2009	656	64	-	-	50	1	-	-	13	592	274	1	311	6	

<표 3-2-2-26> 다수인보호시설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기각·각하 사유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법 제32조제1항											법 제32조 제3항	법 제39조제1항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누 계	8,779	5,914	216	77	182	118	127	17	115	5,024	38	–	1	2,864	964	1,586	314
2013	2,421	1,780	48	6	63	10	28	3	18	1,592	12	–	1	640	204	396	40
2012	2,002	1,462	37	6	57	15	22	7	40	1,273	5	–	–	540	184	300	56
2011	1,238	889	37	15	19	20	13	–	22	757	6	–	–	349	130	186	33
2010	1,101	731	21	11	16	20	12	2	16	624	9	–	–	370	124	207	39
2009	585	274	17	4	11	8	8	2	6	217	1	–	–	311	96	182	33

<표 3-2-2-27> 다수인보호시설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부서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용								미인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합의 권고	권고	고발	징계 권고	법률 구조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누 계		9,753	873	2	–	435	50	3	1	382	8,872	5,915	47	2,864	46	8
2013	소계	2,650	224	–	–	53	1	1	–	169	2,423	1,781	2	640		3
	본부	1,474	61	–	–	8	1	–	–	52	1,413	1,156	–	257		–
	부산	372	50	–	–	13	–	1	–	36	319	174	–	145		3
	광주	421	54	–	–	11	–	–	–	43	367	215	2	150		–
	대구	383	59	–	–	21	–	–	–	38	324	236	–	88		–
2012	소계	2,153	144	2	–	76	–	–	–	66	2,004	1,462	2	540		5
	본부	1,170	24	2	–	9	–	–	–	13	1,144	890	–	254		2
	부산	347	42	–	–	17	–	–	–	25	304	218	–	86		1
	광주	361	46	–	–	26	–	–	–	20	315	192	1	122		–
	대구	275	32	–	–	24	–	–	–	8	241	162	1	78		2
2011	소계	1,373	133	–	–	46	3	–	–	84	1,240	889	1	349	1	
	본부	689	56	–	–	9	–	–	–	47	633	537	1	95	–	
	부산	216	25	–	–	17	3	–	–	5	191	114	–	77	–	
	광주	284	25	–	–	8	–	–	–	17	259	122	–	137	–	
	대구	184	27	–	–	12	–	–	–	15	157	116	–	40	1	
2010	소계	1,242	118	–	–	74	1	1	–	42	1,124	731	11	370	12	
	본부	624	61	–	–	27	–	1	–	33	563	450	9	104	–	
	부산	237	25	–	–	24	–	–	–	1	212	102	–	109	1	
	광주	228	25	–	–	18	1	–	–	6	203	80	–	121	2	
	대구	153	7	–	–	5	–	–	–	2	146	99	2	36	9	
2009	소계	656	64	–	–	50	1	–	–	13	592	274	1	311	6	
	본부	328	19	–	–	16	–	–	–	3	309	156	–	147	6	
	부산	179	25	–	–	25	–	–	–	–	154	57	–	97	–	
	광주	114	17	–	–	9	1	–	–	7	97	36	1	60	–	
	대구	35	3	–	–	–	–	–	–	3	32	25	–	7	–	

<표 3-2-2-28> 2013년 다수인보호시설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내용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용								미인용				조사중지
		계	수사의뢰	합의권고	권고	고발	징계권고	법률구조	합의종결	계	각하	이송	기각	
합 계	2,650	224	-	-	53	1	1	-	169	2,423	1,781	2	640	3
불법/강제수용	1,437	118	-	-	31	-	-	-	87	1,318	934	1	383	1
폭행/가혹행위	343	30	-	-	10	-	1	-	19	313	219	1	93	-
외부교통권 제한	267	31	-	-	3	1	-	-	27	236	193	-	43	-
의료조치 미흡	115	2	-	-	-	-	-	-	2	113	84	-	29	-
강제노동	59	7	-	-	1	-	-	-	6	52	40	-	12	-
인격권 침해	110	10	-	-	1	-	-	-	9	100	81	-	19	-
시설/환경	83	9	-	-	3	-	-	-	6	73	59	-	14	1
퇴원요청	110	6	-	-	1	-	-	-	5	104	76	-	28	-
기타	126	11	-	-	3	-	-	-	8	114	95	-	19	1

□ 출입국관리기관

<표 3-2-2-29> 출입국관리기관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중지
		소계	수사의뢰고발	징계권고	권고합의권고	긴급구제	법률구조	조정	합의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중지	
누 계	97	4	-	-	1	-	-	-	3	93	69	-	24	-	-
2013	25	2	-	-	1	-	-	-	1	23	15	-	8		-
2012	22	-	-	-	-	-	-	-	-	22	14	-	8		-
2011	50	2	-	-	-	-	-	-	2	48	40	-	8	-	

<표 3-2-2-30> 출입국관리기관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기각·각하 사유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법 제32조제1항											법 제32조제3항	법 제39조제1항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누 계	93	69	11	1	1	-	2	-	5	48	1	-	-	24	12	10	2
2013	23	15	4	-	1	-	1	-	1	7	1	-	-	8	4	4	-
2012	22	14	7	1	-	-	-	-	3	3	-	-	-	8	3	4	1
2011	48	40	-	-	-	-	1	-	1	38	-	-	-	8	5	2	1

<표 3-2-2-31> 2013년 출입국관리기관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내용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고발	징계 권고	권고 합의 권고	긴급 구제	법률 구조	조정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합 계	25	2	-	-	1	-	-	-	1	23	15	-	8	-
욕설/반말	-	-	-	-	-	-	-	-	-	-	-	-	-	-
폭행/가혹행위	2	-	-	-	-	-	-	-	-	2	-	-	2	-
출입국 제한	2	-	-	-	-	-	-	-	-	2	2	-	-	-
사생활 비밀 침해	-	-	-	-	-	-	-	-	-	-	-	-	-	-
적법절차 준수 위반	1	1	-	-	1	-	-	-	-	-	-	-	-	-
위법/부당한 처분	19	1	-	-	-	-	-	-	1	18	12	-	6	-
부작위/거부등 소극적 처분	1	-	-	-	-	-	-	-	-	1	1	-	-	-
기타	-	-	-	-	-	-	-	-	-	-	-	-	-	-

□ 각급학교

<표 3-2-2-32> 각급학교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용					미인용					조사 중지
		소계	조정	권고	징계 권고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누 계	1,151	55	1	20	1	33	1,094	855	1	235	3	2
2013	422	22	-	5	1	16	399	307	-	92		1
2012	409	15	-	6	-	9	393	301	1	91		1
2011	156	2	1	1	-	-	154	119	-	33	2	
2010	161	14	-	6	-	8	147	127	-	19	1	
2009	3	2	-	2	-	-	1	1	-	-	-	

<표 3-2-2-33> 각급학교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기각·각하 사유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법 제32조제1항											법 제32조 제3항	법 제39조제1항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누 계	1,090	855	110	14	5	11	43	2	30	637	3	-	-	235	88	98	49
2013	399	307	50	2	3	5	15	-	17	215	-	-	-	92	28	41	23
2012	392	301	42	7	1	2	20	1	9	217	2	-	-	91	34	38	19
2011	152	119	8	5	1	3	7	1	2	91	1	-	-	33	16	12	5
2010	146	127	10	-	-	1	1	-	2	113	-	-	-	19	10	7	2
2009	1	1	-	-	-	-	-	-	-	1	-	-	-	-	-	-	-

<표 3-2-2-34> 2013년 각급학교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내용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용					미인용				조사 중지
		소계	조정	권고	징계 권고	합의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합 계	422	22	-	5	1	16	399	307	-	92	1
인격권 침해	214	9	-	2	1	6	204	155	-	49	1
체벌	36	3	-	1	-	2	33	28	-	5	-
징계부당	30	2	-	-	-	2	28	22	-	6	-
기타	142	8	-	2	-	6	134	102	-	32	-

3.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표 3-2-3-1>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고발	수사 의뢰	징계 권고	권고	조정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누 계	15,981	1,630	8	2	6	1,067	23	524	14,308	9,333	103	4,793	79	43
2013	2,858	216	1	-	1	101	2	111	2,621	1,631	11	979		21
2012	2,559	216	-	1	2	170	2	41	2,321	1,312	2	1,007		22
2011	1,898	272	4	1	-	187	1	79	1,626	872	5	737	12	
2010	2,108	207	3	-	-	103	1	100	1,901	1,224	23	626	28	
2009	1,660	169	-	-	-	78	1	90	1,491	875	9	589	18	
2008	1,143	119	-	-	2	88	2	27	1,024	765	14	240	5	
2007	1,253	152	-	-	1	111	3	37	1,101	901	22	171	7	
2006	899	148	-	-	-	115	10	23	751	552	11	183	5	
2005	837	62	-	-	-	55	-	7	775	650	2	121	2	
2004	368	26	-	-	-	21	1	4	342	263	3	74	2	
2003	296	33	-	-	-	30	-	3	263	215	-	48	-	
2002	102	10	-	-	-	8	-	2	92	73	1	18	-	

<표 3-2-3-2> 2013년 사유별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중지
		소계	고발	수사의뢰	징계권고	권고	조정	합의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합 계	2,858	216	1	-	1	101	2	111	2,621	1,631	11	979	21
성별	56	2	-	-	-	2	-	-	54	35	-	19	-
종교	7	1	-	-	-	1	-	-	6	5	-	1	-
장애	1,563	108	1	-	1	27	-	79	1,455	755	1	699	-
나이	157	8	-	-	-	6	-	2	147	90	-	57	2
사회적신분	179	21	-	-	-	19	-	2	154	114	-	40	4
출신지역	12	-	-	-	-	-	-	-	12	7	1	4	-
출신국가	27	1	-	-	-	-	-	1	26	23	-	3	-
출신민족	-	-	-	-	-	-	-	-	-	-	-	-	-
용모/신체조건	30	-	-	-	-	-	-	-	30	22	-	8	-
혼인여부	3	-	-	-	-	-	-	-	3	3	-	-	-
임신/출산	21	2	-	-	-	1	-	1	19	16	-	3	-
가족상황	11	1	-	-	-	1	-	-	10	6	1	3	-
인종	18	-	-	-	-	-	-	-	18	16	-	2	-
피부색	-	-	-	-	-	-	-	-	-	-	-	-	-
사상/정치적의견	3	-	-	-	-	-	-	-	3	3	-	-	-
전과	22	-	-	-	-	-	-	-	22	18	1	3	-
성적지향	8	1	-	-	-	1	-	-	7	6	-	1	-
병력	43	3	-	-	-	1	-	2	35	28	-	7	5
학벌/학력	130	4	-	-	-	4	-	-	124	110	1	13	2
성희롱	245	34	-	-	-	9	2	23	204	164	-	40	7
기타	323	30	-	-	-	29	-	1	292	210	6	76	1

<표 3-2-3-3> 2013년 영역별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고발	수사 의뢰	징계 권고	권고	조정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합 계		2.858	216	1		1	101	2	111	2,621	1,631	11	979	21
고용에서의 차별	소계	721	79	-	-	-	58	1	20	631	460	8	163	11
	모집	87	7	-	-	-	2	-	5	80	64	-	16	
	채용	158	5	-	-	-	4	-	1	150	92	1	57	3
	배치	36	-	-	-	-	-	-	-	36	28	-	8	-
	교육	9	3	-	-	-	2	-	1	6	2	-	4	-
	승진	21	5	-	-	-	2	-	3	16	7	-	9	-
	임금지급	74	6	-	-	-	6	-	-	68	50	1	17	-
	임금외 금품지급	38	13	-	-	-	12	1	-	24	18	2	4	1
	자금융자	3	-	-	-	-	-	-	-	3	2	-	1	-
	정년	52	23	-	-	-	23	-	-	29	19	-	10	-
	퇴직	15	2	-	-	-	1	-	1	13	9	-	4	-
	해고	46	1	-	-	-	-	-	1	42	35	-	7	3
	기타	182	14	-	-	-	6	-	8	164	134	4	26	4
재화등 공급이나 이용에서의 차별	소계	1,229	86	-	-	-	29	-	57	1,139	500	3	636	4
	용역의 공급이용	480	41	-	-	-	3	-	38	435	195	1	239	4
	재화의 공급이용	557	35	-	-	-	23	-	12	522	235	2	285	-
	교통수단의 공급이용	49	3	-	-	-	2	-	1	46	28	-	18	-
	상업시설의 공급이용	124	7	-	-	-	1	-	6	117	29	-	88	-
	주거시설의 공급이용	19	-	-	-	-	-	-	-	19	13	-	6	-
	토지의 공급이용	-	-	-	-	-	-	-	-	-	-	-	-	-
교육시설등 이용 차별	소계	147	14	-	-	1	6	-	7	132	63	-	69	1
	교육시설의 이용	138	12	-	-	1	4	-	7	125	58	-	67	1
	직업훈련기관의 이용	9	2	-	-	-	2	-	-	7	5	-	2	-
기타		761	37	1	-	-	8	1	27	719	608	-	111	5

<표 3-2-3-4>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기각 사유별

(단위 : 건, %)

구 분	합 계		법 제39조제1항제1호		법 제39조제1항제2호		법 제39조제1항제3호	
누 계	4,793	100.0	780	16.3	1,705	35.6	2,308	48.1
2013	979	100.0	148	15.1	240	24.5	591	60.4
2012	1,007	100.0	155	15.4	239	23.7	613	60.9
2011	737	100.0	136	18.5	277	37.6	324	44.0
2010	626	100.0	120	19.2	216	34.5	290	46.3
2009	589	100.0	81	13.8	250	42.4	258	43.8
2008	240	100.0	42	17.5	93	38.8	105	43.8
2007	171	100.0	23	13.5	88	51.5	60	35.1
2006	183	100.0	25	13.7	140	76.5	18	9.8
2005	121	100.0	21	17.4	75	62.0	25	20.7
2004	74	100.0	5	6.8	51	68.9	18	24.3
2003	48	100.0	14	29.2	30	62.5	4	8.3
2002	18	100.0	10	55.6	6	33.3	2	11.1

<표 3-2-3-5>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각하 사유별

(단위 : 건, %)

구 분	합 계		법 제32조제1항																법 제32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누 계	9,333	100.0	1,756	18.8	68	0.7	202	2.2	229	2.5	488	5.2	23	0.2	307	3.3	6,049	64.8	180	1.9	24	0.3	7	0.1
2013	1,631	100.0	361	22.1	14	1.0	44	2.7	17	1.0	72	4.4	1	0.1	65	4.0	1,035	63.4	20	1.1	1	0.1	1	0.1
2012	1,312	100.0	145	11.1	4	0.3	21	1.6	29	2.2	67	5.1	5	0.4	18	1.4	1,011	77.1	11	0.8	-	0.0	1	0.1
2011	872	100.0	147	16.9	7	0.8	24	2.8	16	1.8	39	4.5	2	0.2	24	2.8	586	67.2	24	2.8	3	0.3	-	0.0
2010	1,224	100.0	332	27.1	2	0.2	16	1.3	33	2.7	47	3.8	1	0.1	34	2.8	739	60.4	17	1.4	2	0.2	1	0.1
2009	875	100.0	174	19.9	4	0.5	15	1.7	15	1.7	42	4.8	2	0.2	24	2.7	572	65.4	23	2.6	1	0.1	3	0.3
2008	765	100.0	150	19.6	7	0.9	11	1.4	27	3.5	23	3.0	3	0.4	25	3.3	509	66.5	9	1.2	1	0.1	-	0.0
2007	901	100.0	132	14.7	14	1.6	25	2.8	11	1.2	35	3.9	6	0.7	43	4.8	623	69.1	11	1.2	-	0.0	1	0.1
2006	552	100.0	77	13.9	6	1.1	18	3.3	6	1.1	35	6.3	1	0.2	27	4.9	356	64.5	22	4.0	4	0.7	-	0.0
2005	650	100.0	130	20.0	7	1.1	18	2.8	15	2.3	46	7.1	1	0.2	38	5.8	350	53.8	43	6.6	2	0.3	-	0.0
2004	263	100.0	44	16.7	1	0.4	7	2.7	8	3.0	23	8.7	1	0.4	9	3.4	167	63.5	-	0.0	3	1.1	-	0.0
2003	215	100.0	39	18.1	2	0.9	1	0.5	46	21.4	52	24.2	-	0.0	-	0.0	69	32.1	-	0.0	6	2.8	-	0.0
2002	73	100.0	25	34.2	-	0.0	2	2.7	6	8.2	7	9.6	-	0.0	-	0.0	32	43.8	-	0.0	1	1.4	-	0.0

<표 3-2-3-6>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진정 처리 소요일수

(단위 : 건, 일)

구 분	합 계		인용		미인용	
	종결건수	평균소요일수	종결건수	평균소요일수	종결건수	평균소요일수
합계	15,981	137	1,630	216	14,351	127
2013	2,858	123	216	175.8	2,642	118.3
2012	2,559	206.6	216	372.4	2,343	191.3
2011	1,898	147.5	272	230.6	1,626	133.6
2010	2,108	105.4	207	140.8	1,901	101.5
2009	1,660	127.7	169	150.6	1,491	125.1
2008	1,143	99.6	119	190.7	1,024	89.0
2007	1,253	102.6	152	219.2	1,101	86.5
2006	899	156.2	148	210.2	751	145.5
2005	837	114.4	62	216.0	775	106.2
2004	368	139.6	26	247.7	342	131.4
2003	296	139.1	33	248.8	263	125.4
2002	102	162.9	10	189.2	92	160.1

※ 미인용 종결건수는 조사중지 포함 건수임

□ 성별

<표 3-2-3-7> 성별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고발	수사의뢰	징계권고	권고	조정	합의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중지	
누 계	493	49	-	-	-	46	-	3	444	312	2	119	11	-
2013	56	2	-	-	-	2	-	-	54	35	-	19	-	-
2012	35	2	-	-	-	2	-	-	33	17	-	16	-	-
2011	40	2	-	-	-	2	-	-	38	20	-	17	1	
2010	67	5	-	-	-	4	-	1	62	30	1	24	7	
2009	62	7	-	-	-	5	-	2	55	40	-	14	1	

<표 3-2-3-8> 성별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기각·각하 사유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법 제32조제1항											법 제32조 제3항	법 제39조제1항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누 계	431	312	41	2	7	24	15	-	6	215	1	1	-	119	16	77	26
2013	54	35	3	1	-	-	-	-	1	29	1	-	-	19	2	12	5
2012	33	17	2	-	1	-	-	-	-	14	-	-	-	16	2	10	4
2011	37	20	4	-	-	1	1	-	1	13	-	-	-	17	3	6	8
2010	54	30	5	-	-	-	3	-	1	21	-	-	-	24	6	16	2
2009	54	40	6	-	1	1	3	-	-	29	-	-	-	14	-	11	3

<표 3-2-3-9> 2013년 성별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중지
			소계	고발	수사의뢰	징계권고	권고	조정	합의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합 계		56	2	-	-	-	2	-	-	54	35	-	19	-
고용에서의 차별	소계	18	2	-	-	-	2	-	-	16	10	-	6	-
	모집	3	-	-	-	-	-	-	-	3	1	-	2	-
	채용	5	1	-	-	-	1	-	-	4	1	-	3	-
	배치	4	-	-	-	-	-	-	-	4	3	-	1	-
	교육	-	-	-	-	-	-	-	-	-	-	-	-	-
	승진	1	-	-	-	-	-	-	-	1	1	-	-	-
	임금지급	1	-	-	-	-	-	-	-	1	1	-	-	-
	임금외 금품지급	-	-	-	-	-	-	-	-	-	-	-	-	-
	자금융자	-	-	-	-	-	-	-	-	-	-	-	-	-
	정년	-	-	-	-	-	-	-	-	-	-	-	-	-
	퇴직	-	-	-	-	-	-	-	-	-	-	-	-	-
	해고	-	-	-	-	-	-	-	-	-	-	-	-	-
	기타	4	1	-	-	-	1	-	-	3	3	-	-	-
재화등 공급이나 이용에서의 차별	소계	25	-	-	-	-	-	-	-	25	15	-	10	-
	용역의 공급이용	9	-	-	-	-	-	-	-	9	8	-	1	-
	재화의 공급이용	8	-	-	-	-	-	-	-	8	5	-	3	-
	교통수단의 공급이용	-	-	-	-	-	-	-	-	-	-	-	-	-
	상업시설의 공급이용	6	-	-	-	-	-	-	-	6	2	-	4	-
	주거시설의 공급이용	2	-	-	-	-	-	-	-	2	-	-	2	-
	토지의 공급이용	-	-	-	-	-	-	-	-	-	-	-	-	-
교육 시설등 이용차별	소계	6	-	-	-	-	-	-	-	6	4	-	2	-
	교육시설의 이용	5	-	-	-	-	-	-	-	5	3	-	2	-
	직업훈련기관의 이용	1	-	-	-	-	-	-	-	1	1	-	-	-
기타		7	-	-	-	-	-	-	-	7	6	-	1	-

□ 임신 또는 출산

<표 3-2-3-10> 임신 또는 출산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고발	수사 의뢰	징계 권고	권고	조정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누 계	180	24	-	-	-	13	-	11	156	119	-	35	2	-
2013	21	2	-	-	-	1	-	1	19	16	-	3		-
2012	26	-	-	-	-	-	-	-	26	17	-	9		-
2011	20	4	-	-	-	3	-	1	16	12	-	3	1	
2010	41	3	-	-	-	-	-	3	38	24	-	13	1	
2009	16	6	-	-	-	3	-	3	10	6	-	4	-	

<표 3-2-3-11> 임신 또는 출산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기각·각하 사유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법 제32조제1항											법 제32조 제3항	법 제39조제1항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누 계	154	119	4	0	5	13	8	0	2	87	-	-	-	35	5	23	7
2013	19	16	-	-	-	-	-	-	-	16	-	-	-	3	-	3	-
2012	26	17	-	-	-	-	2	-	-	15	-	-	-	9	4	5	-
2011	15	12	2	-	1	-	3	-	-	6	-	-	-	3	-	1	2
2010	37	24	1	-	3	-	1	-	-	19	-	-	-	13	1	10	2
2009	10	6	-	-	-	-	1	-	1	4	-	-	-	4	-	3	1

<표 3-2-3-12> 2013년 임신 또는 출산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고발	수사 의뢰	징계 권고	권고	조정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합 계		21	2	-	-	-	1	-	1	19	16	-	3	-
고용에서의 차별	소계	16	2	-	-	-	1	-	1	14	13	-	1	-
	모집	-	-	-	-	-	-	-	-	-	-	-	-	-
	채용	4	2	-	-	-	1	-	1	2	2	-	-	-
	배치	1	-	-	-	-	-	-	-	1	1	-	-	-
	교육	-	-	-	-	-	-	-	-	-	-	-	-	-
	승진	1	-	-	-	-	-	-	-	1	1	-	-	-
	임금지급	2	-	-	-	-	-	-	-	2	1	-	1	-
	임금외 금품 지급	1	-	-	-	-	-	-	-	1	1	-	-	-
	자금융자	-	-	-	-	-	-	-	-	-	-	-	-	-
	정년	-	-	-	-	-	-	-	-	-	-	-	-	-
	퇴직	1	-	-	-	-	-	-	-	1	1	-	-	-
	해고	4	-	-	-	-	-	-	-	4	4	-	-	-
	기타	2	-	-	-	-	-	-	-	2	2	-	-	-
재화등 공급이나 이용에서의 차별	소계	5	-	-	-	-	-	-	-	5	3	-	2	-
	용역의 공급 이용	-	-	-	-	-	-	-	-	-	-	-	-	-
	재화의 공급 이용	2	-	-	-	-	-	-	-	2	1	-	1	-
	교통수단의 공급이용	2	-	-	-	-	-	-	-	2	2	-	-	-
	상업시설의 공급이용	1	-	-	-	-	-	-	-	1	-	-	1	-
	주거시설의 공급이용	-	-	-	-	-	-	-	-	-	-	-	-	-
	토지의 공급이용	-	-	-	-	-	-	-	-	-	-	-	-	-
교육 시설등 이용차별	소계	-	-	-	-	-	-	-	-	-	-	-	-	-
	교육시설의 이용	-	-	-	-	-	-	-	-	-	-	-	-	-
	직업훈련 기관의 이용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혼인 여부

<표 3-2-3-13> 혼인여부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고발	수사 의뢰	징계 권고	권고	조정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누 계	78	4	-	-	-	4	-	-	73	59	-	14	-	1
2013	3	-	-	-	-	-	-	-	3	3	-	-		-
2012	9	-	-	-	-	-	-	-	8	6	-	2		1
2011	3	-	-	-	-	-	-	-	3	1	-	2	-	
2010	5	-	-	-	-	-	-	-	5	1	-	4	-	
2009	8	-	-	-	-	-	-	-	8	7	-	1	-	

<표 3-2-3-14> 혼인여부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기각·각하 사유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법 제32조제1항											법 제32조 제3항	법 제39조제1항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누 계	73	59	7	-	2	2	2	-	-	46	-	-	-	14	3	3	8
2013	3	3	-	-	1	-	-	-	-	2	-	-	-	-	-	-	-
2012	8	6	2	-	-	-	2	-	-	2	-	-	-	2	1	-	1
2011	3	1	-	-	-	-	-	-	-	1	-	-	-	2	1	-	1
2010	5	1	-	-	-	-	-	-	-	1	-	-	-	4	-	1	3
2009	8	7	1	-	-	-	-	-	-	6	-	-	-	1	1	-	-

<표 3-2-3-15> 2013년 혼인여부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고발	수사 의뢰	징계 권고	권고	조정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합 계		3	-	-	-	-	-	-	-	3	3	-	-	-
고용에서의 차별	소계	1	-	-	-	-	-	-	-	1	1	-	-	-
	모집	-	-	-	-	-	-	-	-	-	-	-	-	-
	채용	-	-	-	-	-	-	-	-	-	-	-	-	-
	배치	1	-	-	-	-	-	-	-	1	1	-	-	-
	교육	-	-	-	-	-	-	-	-	-	-	-	-	-
	승진	-	-	-	-	-	-	-	-	-	-	-	-	-
	임금지급	-	-	-	-	-	-	-	-	-	-	-	-	-
	임금외 금품 지급	-	-	-	-	-	-	-	-	-	-	-	-	-
	자금융자	-	-	-	-	-	-	-	-	-	-	-	-	-
	정년	-	-	-	-	-	-	-	-	-	-	-	-	-
	퇴직	-	-	-	-	-	-	-	-	-	-	-	-	-
	해고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재화등 공급이나 이용에서의 차별	소계	1	-	-	-	-	-	-	-	1	1	-	-	-
	용역의 공급 이용	-	-	-	-	-	-	-	-	-	-	-	-	-
	재화의 공급 이용	-	-	-	-	-	-	-	-	-	-	-	-	-
	교통수단의 공급이용	-	-	-	-	-	-	-	-	-	-	-	-	-
	상업시설의 공급이용	-	-	-	-	-	-	-	-	-	-	-	-	-
	주거시설의 공급이용	1	-	-	-	-	-	-	-	1	1	-	-	-
	도지의 공급이용	-	-	-	-	-	-	-	-	-	-	-	-	-
교육 시설등 이용차별	소계	-	-	-	-	-	-	-	-	-	-	-	-	-
	교육시설의 이용	-	-	-	-	-	-	-	-	-	-	-	-	-
	직업훈련 기관의 이용	-	-	-	-	-	-	-	-	-	-	-	-	-
기타		1	-	-	-	-	-	-	-	1	1	-	-	-

□ 나이

<표 3-2-3-16> 나이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고발	수사 의뢰	징계 권고	권고	조정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누 계	1,173	147	-	-	-	124	1	22	1,023	711	-	309	3	3
2013	157	8	-	-	-	6	-	2	147	90	-	57		2
2012	148	7	-	-	-	6	-	1	140	103	-	37		1
2011	170	17	-	-	-	13	-	4	153	67	-	85	1	
2010	186	13	-	-	-	9	-	4	173	105	-	66	2	
2009	124	22	-	-	-	19	-	3	102	70	-	32	-	

<표 3-2-3-17> 나이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기각·각하 사유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법 제32조제1항										법 제32조 제3항	법 제39조제1항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누 계	1,020	711	56	7	7	12	28	3	20	574	4	-	-	309	93	79	137
2013	147	90	3	-	-	-	3	-	1	80	3	-	-	57	18	23	16
2012	140	103	3	-	1	1	3	-	1	94	-	-	-	37	16	8	13
2011	152	67	3	-	1	1	-	-	4	57	1	-	-	85	23	19	43
2010	171	105	16	-	-	1	12	-	2	74	-	-	-	66	20	15	31
2009	102	70	9	1	-	-	2	-	1	57	-	-	-	32	7	5	20

<표 3-2-3-18> 2013년 나이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고발	수사 의뢰	징계 권고	권고	조정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합 계		157	8	-	-	-	6	-	2	147	90	-	57	2
고용에서의 차별	소계	131	7	-	-	-	5	-	2	123	74	-	49	1
	모집	21	1	-	-	-	1	-	-	20	16	-	4	-
	채용	68	2	-	-	-	1	-	1	65	36	-	29	1
	배치	7	-	-	-	-	-	-	-	7	5	-	2	-
	교육	1	1	-	-	-	1	-	-	-	-	-	-	-
	승진	5	2	-	-	-	2	-	-	3	1	-	2	-
	임금지급	1	-	-	-	-	-	-	-	1	-	-	1	-
	임금외 금품 지급	1	-	-	-	-	-	-	-	1	1	-	-	-
	자금융자	-	-	-	-	-	-	-	-	-	-	-	-	-
	정년	7	-	-	-	-	-	-	-	7	4	-	3	-
	퇴직	2	-	-	-	-	-	-	-	2	1	-	1	-
	해고	11	1	-	-	-	-	-	1	10	5	-	5	-
	기타	7	-	-	-	-	-	-	-	7	5	-	2	-
재화등 공급이나 이용에서의 차별	소계	13	-	-	-	-	-	-	-	13	8	-	5	-
	용역의 공급 이용	8	-	-	-	-	-	-	-	8	4	-	4	-
	재화의 공급 이용	3	-	-	-	-	-	-	-	3	2	-	1	-
	교통수단의 공급이용	-	-	-	-	-	-	-	-	-	-	-	-	-
	상업시설의 공급이용	2	-	-	-	-	-	-	-	2	2	-	-	-
	주거시설의 공급이용	-	-	-	-	-	-	-	-	-	-	-	-	-
	토지의 공급이용	-	-	-	-	-	-	-	-	-	-	-	-	-
교육 시설등 이용차별	소계	7	1	-	-	-	1	-	-	5	3	-	2	1
	교육시설의 이용	6	-	-	-	-	-	-	-	5	3	-	2	1
	직업훈련 기관의 이용	1	1	-	-	-	1	-	-	-	-	-	-	-
기타		6	-	-	-	-	-	-	-	6	5	-	1	-

□ 인종 등[36]

<표 3-2-3-19> 인종 등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고발	수사 의뢰	징계 권고	권고	조정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누 계	329	19	-	-	-	14	-	5	309	210	7	87	5	1
2013	18	-	-	-	-	-	-	-	18	16	-	2		-
2012	22	1	-	-	-	1	-	-	20	14	-	6		1
2011	25	3	-	-	-	1	-	2	22	12	-	8	2	
2010	50	2	-	-	-	1	-	1	48	31	-	17	-	
2009	46	2	-	-	-	1	-	1	44	22	-	21	1	

<표 3-2-3-20> 인종 등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기각·각하 사유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법 제32조제1항											법 제32조 제3항	법 제39조제1항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누 계	297	209	60	3	2	4	12	-	25	102	1	-	1	87	19	33	35
2013	18	16	13	-	-	-	-	-	-	3	-	-	-	2	1	-	1
2012	20	14	3	-	-	-	2	-	1	7	1	-	-	6	1	4	1
2011	20	12	2	-	-	-	1	-	2	7	-	-	-	8	4	2	2
2010	48	31	4	-	-	-	-	-	9	18	-	-	-	17	2	6	9
2009	43	21	5	1	-	-	-	-	-	15	-	-	1	21	3	8	10

36) 인종 등 이라함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 사유 중 인종, 출신국가, 출신민족, 피부색을 말함

<표 3-2-3-21> 2013년 인종 등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고발	수사 의뢰	징계 권고	권고	조정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합 계		18	-	-	-	-	-	-	-	18	16	-	2	-
고용에서의 차별	소계	1	-	-	-	-	-	-	-	1	-	-	1	-
	모집	1	-	-	-	-	-	-	-	1	-	-	1	-
	채용	-	-	-	-	-	-	-	-	-	-	-	-	-
	배치	-	-	-	-	-	-	-	-	-	-	-	-	-
	교육	-	-	-	-	-	-	-	-	-	-	-	-	-
	승진	-	-	-	-	-	-	-	-	-	-	-	-	-
	임금지급	-	-	-	-	-	-	-	-	-	-	-	-	-
	임금외 금품 지급	-	-	-	-	-	-	-	-	-	-	-	-	-
	자금융자	-	-	-	-	-	-	-	-	-	-	-	-	-
	정년	-	-	-	-	-	-	-	-	-	-	-	-	-
	퇴직	-	-	-	-	-	-	-	-	-	-	-	-	-
	해고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재화등 공급이나 이용에서의 차별	소계	2	-	-	-	-	-	-	-	2	2	-	-	-
	용역의 공급 이용	1	-	-	-	-	-	-	-	1	1	-	-	-
	재화의 공급 이용	-	-	-	-	-	-	-	-	-	-	-	-	-
	교통수단의 공급이용	-	-	-	-	-	-	-	-	-	-	-	-	-
	상업시설의 공급이용	1	-	-	-	-	-	-	-	1	1	-	-	-
	주거시설의 공급이용	-	-	-	-	-	-	-	-	-	-	-	-	-
	토지의 공급이용	-	-	-	-	-	-	-	-	-	-	-	-	-
교육 시설등 이용차별	소계	1	-	-	-	-	-	-	-	1	1	-	-	-
	교육시설의 이용	1	-	-	-	-	-	-	-	1	1	-	-	-
	직업훈련 기관의 이용	-	-	-	-	-	-	-	-	-	-	-	-	-
기타		14	-	-	-	-	-	-	-	14	13	-	1	-

□ 용모·신체조건

<표 3-2-3-22> 용모·신체조건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고발	수사 의뢰	징계 권고	권고	조정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누 계	230	30	-	-	-	27	-	3	200	148	1	48	3	-
2013	30	-	-	-	-	-	-	-	30	22	-	8		-
2012	34	2	-	-	-	2	-	-	32	25	-	7		-
2011	20	3	-	-	-	1	-	2	17	9	-	8	-	
2010	28	6	-	-	-	6	-	-	22	11	1	10	-	
2009	19	3	-	-	-	2	-	1	16	8	-	6	2	

<표 3-2-3-23> 용모·신체조건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기각·각하 사유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법 제32조제1항											법 제32조 제3항	법 제39조제1항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누 계	196	148	10	1	3	1	1	-	8	121	3	-	-	48	16	17	15
2013	30	22	3	1	-	1	-	-	1	15	1	-	-	8	4	2	2
2012	32	25	2	-	-	-	-	-	-	23	-	-	-	7	2	1	4
2011	17	9	1	-	-	-	1	-	-	7	-	-	-	8	4	3	1
2010	21	11	2	-	1	-	-	-	-	8	-	-	-	10	2	7	1
2009	14	8	-	-	-	-	-	-	1	6	1	-	-	6	3	1	2

<표 3-2-3-24> 2013년 용모·신체조건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고발	수사의뢰	징계권고	권고	조정	합의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합 계		30	-	-	-	-	-	-	-	30	22	-	8	-
고용에서의 차별	소계	16	-	-	-	-	-	-	-	16	13	-	3	-
	모집	3	-	-	-	-	-	-	-	3	3	-	-	-
	채용	4	-	-	-	-	-	-	-	4	4	-	-	-
	배치	-	-	-	-	-	-	-	-	-	-	-	-	-
	교육	-	-	-	-	-	-	-	-	-	-	-	-	-
	승진	-	-	-	-	-	-	-	-	-	-	-	-	-
	임금지급	-	-	-	-	-	-	-	-	-	-	-	-	-
	임금외 금품지급	-	-	-	-	-	-	-	-	-	-	-	-	-
	자금융자	-	-	-	-	-	-	-	-	-	-	-	-	-
	정년	-	-	-	-	-	-	-	-	-	-	-	-	-
	퇴직	2	-	-	-	-	-	-	-	2	-	-	2	-
	해고	5	-	-	-	-	-	-	-	5	5	-	-	-
	기타	2	-	-	-	-	-	-	-	2	1	-	1	-
재화등 공급이나 이용에서의 차별	소계	6	-	-	-	-	-	-	-	6	3	-	3	-
	용역의 공급이용	1	-	-	-	-	-	-	-	1	-	-	1	-
	재화의 공급이용	2	-	-	-	-	-	-	-	2	-	-	2	-
	교통수단의 공급이용	-	-	-	-	-	-	-	-	-	-	-	-	-
	상업시설의 공급이용	3	-	-	-	-	-	-	-	3	3	-	-	-
	주거시설의 공급이용	-	-	-	-	-	-	-	-	-	-	-	-	-
	토지의 공급이용	-	-	-	-	-	-	-	-	-	-	-	-	-
교육 시설등 이용차별	소계	2	-	-	-	-	-	-	-	2	1	-	1	-
	교육시설의 이용	1	-	-	-	-	-	-	-	1	1	-	-	-
	직업훈련 기관의 이용	1	-	-	-	-	-	-	-	1	-	-	1	-
기타		6	-	-	-	-	-	-	-	6	5	-	1	-

□ 학력

<표 3-2-3-25> 학력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고발	수사 의뢰	징계 권고	권고	조정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누 계	498	32	-	-	-	27	-	5	463	270	5	185	3	3
2013	130	4	-	-	-	4	-	-	124	110	1	13		2
2012	41	1	-	-	-	1	-	-	39	28	-	11		1
2011	59	3	-	-	-	2	-	1	56	21	-	34	1	
2010	40	6	-	-	-	3	-	3	34	8	1	24	1	
2009	72	1	-	-	-	1	-	-	71	17	-	54	-	

<표 3-2-3-26> 학력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기각·각하 사유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법 제32조제1항											법 제32조 제3항	법 제39조제1항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누 계	455	269	35	2	1	4	-	-	25	192	8	2	1	185	18	44	123
2013	123	110	5	-	-	2	-	-	19	83	1	-	-	13	3	9	1
2012	39	28	6	-	-	-	-	-	-	22	-	-	-	11	2	4	5
2011	55	21	2	-	-	-	-	-	-	19	-	-	-	34	-	4	30
2010	35	8	3	-	-	-	-	-	1	4	-	-	-	24	2	2	20
2009	71	17	4	1	-	-	-	-	-	12	-	-	-	54	4	5	45

<표 3-2-3-27> 2013년 학력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고발	수사 의뢰	징계 권고	권고	조정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합 계		130	4	-	-	-	4	-	-	124	110	1	13	2
고용에서의 차별	소계	24	2	-	-	-	2	-	-	20	16	-	4	2
	모집	6	1	-	-	-	1	-	-	5	3	-	2	-
	채용	6	-	-	-	-	-	-	-	5	4	-	1	1
	배치	1	-	-	-	-	-	-	-	1	1	-	-	-
	교육	1	-	-	-	-	-	-	-	1	-	-	1	-
	승진	-	-	-	-	-	-	-	-	-	-	-	-	-
	임금지급	1	1				1							
	임금외 금품 지급	-	-	-	-	-	-	-	-	-	-	-	-	-
	자금융자	-	-	-	-	-	-	-	-	-	-	-	-	-
	정년	-	-	-	-	-	-	-	-	-	-	-	-	-
	퇴직	-	-	-	-	-	-	-	-	-	-	-	-	-
	해고	1	-	-	-	-	-	-	-	-	-	-	-	1
	기타	8	-	-	-	-	-	-	-	8	8	-	-	-
재화등 공급이나 이용에서의 차별	소계	7	1	-	-	-	1	-	-	6	3	1	2	-
	용역의 공급 이용	2	1	-	-	-	1	-	-	1	1	-	-	-
	재화의 공급 이용	4	-	-	-	-	-	-	-	4	1	1	2	-
	교통수단의 공급이용	-	-	-	-	-	-	-	-	-	-	-	-	-
	상업시설의 공급이용	1	-	-	-	-	-	-	-	1	1	-	-	-
	주거시설의 공급이용	-	-	-	-	-	-	-	-	-	-	-	-	-
	토지의 공급이용	-	-	-	-	-	-	-	-	-	-	-	-	-
교육 시설등 이용차별	소계	16	1	-	-	-	1	-	-	15	14	-	1	-
	교육시설의 이용	16	1	-	-	-	1	-	-	15	14	-	1	-
	직업훈련 기관의 이용	-	-	-	-	-	-	-	-	-	-	-	-	-
기타		83	-	-	-	-	-	-	-	83	77	-	6	-

□ 병력

<표 3-2-3-28> 병력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고발	수사 의뢰	징계 권고	권고	조정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누 계	306	29	-	-	-	18	-	11	272	203	-	68	1	5
2013	43	3	-	-	-	1	-	2	35	28	-	7		5
2012	27	3	-	-	-	1	-	2	24	18	-	6		-
2011	34	6	-	-	-	3	-	3	28	17	-	11	-	
2010	50	2	-	-	-	1	-	1	48	34	-	14	-	
2009	29	5	-	-	-	5	-	-	24	15	-	8	1	

<표 3-2-3-29> 병력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기각·각하 사유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법 제32조제1항											법 제32조 제3항	법 제39조제1항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누 계	271	203	15	-	4	7	4	-	3	170	-	-	-	68	19	35	14
2013	35	28	2	-	-	-	-	-	2	24	-	-	-	7	3	3	1
2012	24	18	-	-	-	-	1	-	-	17	-	-	-	6	3	2	1
2011	28	17	-	-	-	-	-	-	1	16	-	-	-	11	1	10	-
2010	48	34	4	-	-	1	-	-	-	29	-	-	-	14	3	6	5
2009	23	15	1	-	-	1	-	-	-	13	-	-	-	8	2	4	2

<표 3-2-3-30> 2013년 병력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고발	수사 의뢰	징계 권고	권고	조정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합 계		43	3	-	-	-	1	-	2	35	28	-	7	5
고용에서의 차별	소계	12	3	-	-	-	1	-	2	9	7	-	2	-
	모집	2	-	-	-	-	-	-	-	2	2	-	-	-
	채용	4	3	-	-	-	1	-	2	1	1	-	-	-
	배치	-	-	-	-	-	-	-	-	-	-	-	-	-
	교육	-	-	-	-	-	-	-	-	-	-	-	-	-
	승진	1	-	-	-	-	-	-	-	1	-	-	1	-
	임금지급	-	-	-	-	-	-	-	-	-	-	-	-	-
	임금외 금품 지급	-	-	-	-	-	-	-	-	-	-	-	-	-
	자금융자	-	-	-	-	-	-	-	-	-	-	-	-	-
	정년	-	-	-	-	-	-	-	-	-	-	-	-	-
	퇴직	-	-	-	-	-	-	-	-	-	-	-	-	-
	해고	2	-	-	-	-	-	-	-	2	2	-	-	-
	기타	3	-	-	-	-	-	-	-	3	2	-	1	-
재화등 공급이나 이용에서의 차별	소계	22	-	-	-	-	-	-	-	18	17	-	1	4
	용역의 공급 이용	20	-	-	-	-	-	-	-	16	15	-	1	4
	재화의 공급 이용	1	-	-	-	-	-	-	-	1	1	-	-	-
	교통수단의 공급이용	-	-	-	-	-	-	-	-	-	-	-	-	-
	상업시설의 공급이용	1	-	-	-	-	-	-	-	1	1	-	-	-
	주거시설의 공급이용	-	-	-	-	-	-	-	-	-	-	-	-	-
	토지의 공급이용	-	-	-	-	-	-	-	-	-	-	-	-	-
교육 시설등 이용차별	소계	3	-	-	-	-	-	-	-	3	1	-	2	-
	교육시설의 이용	1	-	-	-	-	-	-	-	1	-	-	1	-
	직업훈련 기관의 이용	2	-	-	-	-	-	-	-	2	1	-	1	-
기타		6	-	-	-	-	-	-	-	5	3	-	2	1

□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표 3-2-3-31>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고발	수사 의뢰	징계 권고	권고	조정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누 계	163	11	-	-	-	10	-	1	151	119	1	31	1
2013	22	-	-	-	-	-	-	-	22	18	1	3	-
2012	19	4	-	-	-	4	-	-	14	14	-	-	1
2011	15	1	-	-	-	1	-	-	14	8	-	6	-
2010	11	-	-	-	-	-	-	-	11	9	-	2	-
2009	14	1	-	-	-	-	-	1	13	12	-	1	-

<표 3-2-3-32>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기각·각하 사유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법 제32조제1항											법 제32조 제3항	법 제39조제1항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누 계	150	119	23	-	2	2	5	-	2	85	-	-	-	31	13	13	5
2013	21	18	3	-	-	-	-	-	-	15	-	-	-	3	2	1	-
2012	14	14	5	-	-	-	-	-	-	9	-	-	-	-	-	-	-
2011	14	8	2	-	-	-	-	-	-	6	-	-	-	6	2	4	-
2010	11	9	3	-	-	-	-	-	-	6	-	-	-	2	2	-	-
2009	13	12	3	-	-	-	1	-	1	7	-	-	-	1	-	1	-

<표 3-2-3-33> 2013년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고발	수사 의뢰	징계 권고	권고	조정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합 계		22	-	-	-	-	-	-	-	22	18	1	3	-
고용에서의 차별	소계	14	-	-	-	-	-	-	-	14	11	1	2	-
	모집	1	-	-	-	-	-	-	-	1	1	-	-	-
	채용	12	-	-	-	-	-	-	-	12	10	1	1	-
	배치	-	-	-	-	-	-	-	-	-	-	-	-	-
	교육	-	-	-	-	-	-	-	-	-	-	-	-	-
	승진	-	-	-	-	-	-	-	-	-	-	-	-	-
	임금지급	-	-	-	-	-	-	-	-	-	-	-	-	-
	임금외 금품 지급	-	-	-	-	-	-	-	-	-	-	-	-	-
	자금융자	-	-	-	-	-	-	-	-	-	-	-	-	-
	정년	-	-	-	-	-	-	-	-	-	-	-	-	-
	퇴직	-	-	-	-	-	-	-	-	-	-	-	-	-
	해고	-	-	-	-	-	-	-	-	-	-	-	-	-
	기타	1	-	-	-	-	-	-	-	1	-	-	1	-
재화등 공급이나 이용에서의 차별	소계	4	-	-	-	-	-	-	-	4	3	-	1	-
	용역의 공급 이용	3	-	-	-	-	-	-	-	3	2	-	1	-
	재화의 공급 이용	1	-	-	-	-	-	-	-	1	1	-	-	-
	교통수단의 공급이용	-	-	-	-	-	-	-	-	-	-	-	-	-
	상업시설의 공급이용	-	-	-	-	-	-	-	-	-	-	-	-	-
	주거시설의 공급이용	-	-	-	-	-	-	-	-	-	-	-	-	-
	도지의 공급이용	-	-	-	-	-	-	-	-	-	-	-	-	-
교육 시설등 이용차별	소계	-	-	-	-	-	-	-	-	-	-	-	-	-
	교육시설의 이용	-	-	-	-	-	-	-	-	-	-	-	-	-
	직업훈련 기관의 이용	-	-	-	-	-	-	-	-	-	-	-	-	-
기타		4	-	-	-	-	-	-	-	4	4	-	-	-

□ 사회적 신분

<표 3-2-3-34> 사회적 신분[37]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고발	수사 의뢰	징계 권고	권고	조정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누 계	1,506	136	-	-	-	124	2	10	1,365	961	13	386	5	5
2013	179	21	-	-	-	19	-	2	154	114	-	40		4
2012	134	2	-	-	-	1	-	1	131	95	-	36		1
2011	131	9	-	-	-	8	-	1	122	70	1	50	1	
2010	84	5	-	-	-	2	-	3	79	45	2	31	1	
2009	109	12	-	-	-	11	-	1	97	65	-	31	1	

<표 3-2-3-35> 사회적 신분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기각·각하 사유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법 제32조제1항											법 제32조 제3항	법 제39조제1항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누 계	1,347	960	214	7	13	14	54	4	48	586	15	5	1	386	84	252	50
2013	154	114	25	1	1	1	7	1	10	67	1	-	-	40	14	20	6
2012	131	95	13	1	-	2	5	-	2	70	2	-	-	36	21	12	3
2011	120	70	7	2	4	4	2	1	2	48	-	-	-	50	12	30	8
2010	76	45	8	-	1	2	1	-	2	31	-	-	-	31	6	15	10
2009	96	64	17	1	2	1	5	-	1	37	-	-	1	31	6	17	8

37) 위원회는 사회적 신분을 사람이 사회에 있어서 일시적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지위(국가인권위원회, 법령해석질의회신집, 2005.)라고 말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신분을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43 결정)이라고 해석하고 있음. 따라서 사회적 신분은 출생에 의하여 고정된 생래의 신분에 한정하는 선천적 신분은 물론 후천적으로 취득한 신분도 포함됨.

<표 3-2-3-36> 2013년 사회적 신분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중지
			소계	고발	수사의뢰	징계권고	권고	조정	합의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합 계		179	21	-	-	-	19	-	2	154	114	-	40	4
고용에서의 차별	소계	127	20	-	-	-	18	-	2	103	84	-	19	4
	모집	4	-	-	-	-	-	-	-	4	4	-	-	-
	채용	11	-	-	-	-	-	-	-	10	9	-	1	1
	배치	4	-	-	-	-	-	-	-	4	2	-	2	-
	교육	1	1	-	-	-	1	-	-	-	-	-	-	-
	승진	3	-	-	-	-	-	-	-	3	1	-	2	-
	임금지급	21	2	-	-	-	2	-	-	19	15	-	4	-
	임금외 금품지급	24	12	-	-	-	12	-	-	11	9	-	2	1
	자금융자	1	-	-	-	-	-	-	-	1	1	-	-	-
	정년	11	1	-	-	-	1	-	-	10	7	-	3	-
	퇴직	2	1	-	-	-	-	-	1	1	1	-	-	-
	해고	5	-	-	-	-	-	-	-	5	4	-	1	-
	기타	40	3	-	-	-	2	-	1	35	31	-	4	2
재화등 공급이나 이용에서의 차별	소계	38	-	-	-	-	-	-	-	38	23	-	15	-
	용역의 공급이용	17	-	-	-	-	-	-	-	17	12	-	5	-
	재화의 공급이용	11	-	-	-	-	-	-	-	11	6	-	5	-
	교통수단의 공급이용	1	-	-	-	-	-	-	-	1	1	-	-	-
	상업시설의 공급이용	7	-	-	-	-	-	-	-	7	3	-	4	-
	주거시설의 공급이용	2	-	-	-	-	-	-	-	2	1	-	1	-
	토지의 공급이용	-	-	-	-	-	-	-	-	-	-	-	-	-
교육 시설등 이용차별	소계	2	1	-	-	-	1	-	-	1	-	-	1	-
	교육시설의 이용	2	1	-	-	-	1	-	-	1	-	-	1	-
	직업훈련기관의 이용	-	-	-	-	-	-	-	-	-	-	-	-	-
기타		12	-	-	-	-	-	-	-	12	7	-	5	-

□ 기타사유

<표 3-2-3-37> 기타사유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고발	수사 의뢰	징계 권고	권고	조정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누 계	2,248	134	-	-	-	127	-	7	2,111	1,564	28	511	8	3
2013	323	30	-	-	-	29	-	1	292	210	6	76		1
2012	278	21	-	-	-	21	-	-	255	174	-	81		2
2011	182	19	-	-	-	18	-	1	163	105	-	58	-	
2010	213	17	-	-	-	14	-	3	196	133	3	58	2	
2009	225	7	-	-	-	7	-	-	218	131	2	81	4	

<표 3-2-3-38> 기타사유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기각·각하 사유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법 제32조제1항											법 제32조 제3항	법 제39조제1항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누 계	2,075	1,563	428	20	14	60	143	3	78	753	58	6	1	511	80	356	75
2013	286	210	69	4	1	7	21	-	22	83	3	-	-	76	19	42	15
2012	255	174	33	-	2	11	9	-	3	112	4	-	-	81	11	60	10
2011	163	105	18	1	2	5	4	-	6	65	4	-	-	58	14	32	12
2010	191	133	47	-	-	4	5	1	12	61	2	1	-	58	6	32	20
2009	212	130	62	-	1	3	2	-	9	51	2	-	1	81	8	69	4

<표 3-2-3-39> 2013년 기타사유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중지
			소계	고발	수사의뢰	징계권고	권고	조정	합의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합 계		323	30	-	-	-	29	-	1	292	210	6	76	1
고용에서의 차별	소계	205	27	-	-	-	26	-	1	178	128	6	44	-
	모집	27	-	-	-	-	-	-	-	27	23	-	4	-
	채용	18	-	-	-	-	-	-	-	18	7	-	11	-
	배치	13	-	-	-	-	-	-	-	13	11	-	2	-
	교육	2	-	-	-	-	-	-	-	2	1	-	1	-
	승진	5	-	-	-	-	-	-	-	5	1	-	4	-
	임금지급	38	4	-	-	-	3	-	1	34	25	-	9	-
	임금외 금품지급	10	-	-	-	-	-	-	-	10	6	2	2	-
	자금융자	1	-	-	-	-	-	-	-	1		-	1	-
	정년	34	22	-	-	-	22	-	-	12	8	-	4	-
	퇴직	2	-	-	-	-	-	-	-	2	2	-	-	-
	해고	8	-	-	-	-	-	-	-	8	8	-	-	-
	기타	47	1	-	-	-	1	-	-	46	36	4	6	-
재화등 공급이나 이용에서의 차별	소계	56	-	-	-	-	-	-	-	56	36	-	20	-
	용역의 공급이용	29	-	-	-	-	-	-	-	29	21	-	8	-
	재화의 공급이용	20	-	-	-	-	-	-	-	20	10	-	10	-
	교통수단의 공급이용	-	-	-	-	-	-	-	-	-	-	-	-	-
	상업시설의 공급이용	5	-	-	-	-	-	-	-	5	3	-	2	-
	주거시설의 공급이용	2	-	-	-	-	-	-	-	2	2	-	-	-
	토지의 공급이용	-	-	-	-	-	-	-	-	-	-	-	-	-
교육시설등 이용차별	소계	17	2	-	-	-	2	-	-	15	12	-	3	-
	교육시설의 이용	16	2	-	-	-	2	-	-	14	11	-	3	-
	직업훈련기관의 이용	1	-	-	-	-	-	-	-	1	1	-	-	-
기타		45	1	-	-	-	1	-	-	43	34	-	9	1

4. 성희롱 진정 처리결과

<표 3-2-3-40> 성희롱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고발	수사 의뢰	징계 권고	권고	조정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누 계	1,496	333	-	-	5	133	14	181	1,144	956	13	152	23	19
2013	245	34	-	-	-	9	2	23	204	164	-	40		7
2012	230	34	-	-	2	15	2	15	184	156	1	27		12
2011	211	47	-	-	-	15	1	31	164	131	-	29	4	
2010	197	61	-	-	-	36	-	25	136	111	-	18	7	
2009	172	43	-	-	-	12	-	31	129	106	1	18	4	

<표 3-2-3-41> 성희롱 진정 처리결과 - 기각·각하 사유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법 제32조제1항											법 제32조 제3항	법 제39조제1항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누 계	1,108	955	44	5	35	23	106	6	4	728	3	1	1	152	74	59	19
2013	204	164	7	2	4	3	17	-	1	129	1	-	-	40	22	12	6
2012	183	156	8	-	3	6	25	1	1	112	-	-	-	27	15	12	-
2011	160	131	9	1	8	1	10	-	1	100	1	-	-	29	11	14	4
2010	129	110	7	-	1	4	9	-	-	89	-	-	1	18	6	7	5
2009	124	106	3	-	2	4	13	1	-	82	1	-	-	18	6	10	2

<표 3-2-3-42> 2013년 성희롱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고발	수사의뢰	징계권고	권고	조정	합의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합 계		245	34	-	-	-	9	2	23	204	164	-	40	7
고용에서의 차별	소계	46	10	-	-	-	2	1	7	32	24	-	8	4
	모집	-	-	-	-	-	-	-	-	-	-	-	-	-
	채용	1	-	-	-	-	-	-	-	1	1	-	-	-
	배치	-	-	-	-	-	-	-	-	-	-	-	-	-
	교육	-	-	-	-	-	-	-	-	-	-	-	-	-
	승진	-	-	-	-	-	-	-	-	-	-	-	-	-
	임금지급	-	-	-	-	-	-	-	-	-	-	-	-	-
	임금외 금품지급	1	1	-	-	-	-	1	-	-	-	-	-	-
	자금융자	-	-	-	-	-	-	-	-	-	-	-	-	-
	정년	-	-	-	-	-	-	-	-	-	-	-	-	-
	퇴직	-	-	-	-	-	-	-	-	-	-	-	-	-
	해고	3	-	-	-	-	-	-	-	1	1	-	-	2
	기타	41	9	-	-	-	2	-	7	30	22	-	8	2
재화등 공급이나 이용에서의 차별	소계	3	-	-	-	-	-	-	-	3	2	-	1	-
	용역의 공급 이용	1	-	-	-	-	-	-	-	1	-	-	1	-
	재화의 공급 이용	-	-	-	-	-	-	-	-	-	-	-	-	-
	교통수단의 공급이용	-	-	-	-	-	-	-	-	-	-	-	-	-
	상업시설의 공급이용	2	-	-	-	-	-	-	-	2	2	-	-	-
	주거시설의 공급이용	-	-	-	-	-	-	-	-	-	-	-	-	-
	토지의 공급이용	-	-	-	-	-	-	-	-	-	-	-	-	-
교육 시설등 이용차별	소계	-	-	-	-	-	-	-	-	-	-	-	-	-
	교육시설의 이용	-	-	-	-	-	-	-	-	-	-	-	-	-
	직업훈련 기관의 이용	-	-	-	-	-	-	-	-	-	-	-	-	-
기타		196	24	-	-	-	7	1	16	169	138	-	31	3

5. 장애차별[38] 진정 처리결과

<표 3-2-3-43> 장애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고발	수사 의뢰	징계 권고	권고	조정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누 계	6,187	565	8	2	1	308	1	245	5,621	2,956	27	2,626	12	1
2013	1,563	108	1	-	1	27	-	79	1,455	755	1	699		-
2012	1,508	136	-	1	-	115	-	20	1,371	616	1	754		1
2011	952	156	4	1	-	119	-	32	796	381	4	410	1	
2010	1,101	85	3	-	-	25	1	56	1,016	663	15	332	6	
2009	716	55	-	-	-	8	-	47	661	351	6	300	4	

<표 3-2-3-44> 장애 진정 처리결과 - 기각·각하 사유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법 제32조제1항											법 제32조 제3항	법 제39조제1항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누 계	5,582	2,956	704	14	83	49	84	7	39	1,903	65	6	2	2,626	311	612	1,703
2013	1,454	754	215	5	37	2	20	-	6	459	9	1	1	699	62	102	535
2012	1,370	615	62	3	14	9	16	4	9	495	3	-	1	754	74	115	565
2011	791	381	94	3	7	4	17	1	7	228	17	3	-	410	59	146	205
2010	995	663	227	2	10	19	16	-	6	369	13	1	-	332	61	94	177
2009	651	351	56	-	9	5	14	1	10	236	19	1	-	300	39	107	154

<표 3-2-3-45> 장애차별 인용 현황 - 영역별

(단위 : 건)

구 분	소계	고용	교육	재화 · 용역	사법 · 행정	참정권	괴롭힘 등	기타
누 계	565	33	35	410	13	5	46	23
2013	108	4	6	78	2	-	8	10
2012	136	1	4	117	3	1	3	7
2011	156	8	1	126	4	-	14	3
2010	85	14	11	44	2	-	12	2
2009	55	5	5	35	1	-	8	1

3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8. 4. 11. 이후 접수된 진정사건에 한함.

<표 3-2-3-46> 2013년 장애차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단위 : 건)

구 분		합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중지
			소계	고발	수사의뢰	징계권고	권고	징계	합의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합 계		1,563	108	1	-	1	27	-	79	1,455	755	1	699	-
고용	모집·채용	29	1	-	-	-	-	-	1	28	17	-	11	-
	임금·복리후생	11	1	-	-	-	-	-	1	10	9	-	1	-
	배치	5	1	-	-	-	-	-	1	4	3	-	1	-
	승진	1	-	-	-	-	-	-	-	1	1	-	-	-
	직무관련	2	-	-	-	-	-	-	-	2	2	-	-	-
	퇴직·해고	13	-	-	-	-	-	-	-	13	10	-	3	-
	기타	9	1	-	-	-	-	-	1	8	7	-	1	-
교육	전·입학거부	6	-	-	-	-	-	-	-	6	6	-	-	-
	시설물접근·이용	5	1	-	-	-	-	-	1	4	2	-	2	-
	수업·시험 편의제공	4	1	-	-	-	-	-	1	3	2	-	1	-
	수업등교내활동배제	2	1	-	-	-	-	-	1	1	1	-	-	-
	특수학급설치	52	1	-	-	-	-	-	1	51	4	-	47	-
	괴롭힘	2	1	-	-	-	-	-	1	1	1	-	-	-
	기타	11	1	-	-	-	-	-	1	10	5	-	5	-
재화·용역	재화·용역	126	9	-	-	-	1	-	8	117	58	1	58	-
	보험·금융	130	15	-	-	-	1	-	14	115	60	-	55	-
	시설물접근	231	25	-	-	-	14	-	11	206	36	-	170	-
	이동교통수단	41	2	-	-	-	2	-	-	39	19	-	20	-
	정보접근·의사소통	268	4	-	-	-	3	-	1	264	121	-	143	-
	문화·예술·체육	111	21	-	-	-	4	-	17	90	18	-	72	-
	기타	18	2	-	-	-	-	-	2	16	13	-	3	-
사법행정		38	2	-	-	-	1	-	1	36	18	-	18	-
참정권		39	-	-	-	-	-	-	-	39	2	-	37	-
괴롭힘 등	따돌림	3	-	-	-	-	-	-	-	3	2	-	1	-
	유기·방치	4	1	-	-	-	-	-	1	3	1	-	2	-
	성폭행	2	-	-	-	-	-	-	-	2	2	-	-	-
	폭행·학대	22	2	-	-	1	-	-	1	20	17	-	3	-
	금전착취	18	-	-	-	-	-	-	-	18	17	-	1	-
	모욕·비하	226	5	-	-	-	-	-	5	221	212	-	9	-
	기타	10	-	-	-	-	-	-	-	10	9	-	1	-
기타		124	10	1	-	-	1	-	8	114	80	-	34	-

6. 기타 진정 처리결과

<표 3-2-4-1> 기타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의뢰/고발	징계권고	권고	긴급구제	법률구조	조정	합의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중지	
누 계	2,080	27	-	-	22	-	-	-	5	2,053	1,954	10	86	3	-
2013	119	-	-	-	-	-	-	-	-	119	118	-	1		-
2012	90	-	-	-	-	-	-	-	-	90	87	-	3		-
2011	39	-	-	-	-	-	-	-	-	39	36	-	3	-	
2010	26	-	-	-	-	-	-	-	-	26	26	-	-	-	
2009	20	-	-	-	-	-	-	-	-	20	19	1	-	-	
2008	35	-	-	-	-	-	-	-	-	35	35	-	-	-	
2007	54	1	-	-	1	-	-	-	-	53	52	-	1	-	
2006	57	-	-	-	-	-	-	-	-	57	51	-	6	-	
2005	381	11	-	-	6	-	-	-	5	370	348	6	13	3	
2004	505	10	-	-	10	-	-	-	-	495	459	3	33	-	
2003	364	3	-	-	3	-	-	-	-	361	341	-	20	-	
2002	390	2	-	-	2	-	-	-	-	388	382	-	6	-	

<표 3-2-4-2> 기타 진정 처리결과 - 기각 사유별

(단위 : 건, %)

구 분	합 계		법 제39조제1항제1호		법 제39조제1항제2호		법 제39조제1항제3호	
누 계	86	100.0	24	27.9	48	55.8	14	16.3
2013	1	100.0	1	100.0	-	0.0	-	0.0
2012	3	100.0	-	0.0	2	66.7	1	33.3
2011	3	100.0	2	66.7	1	33.3	-	0.0
2010	-	-	-	-	-	-	-	-
2009	-	-	-	-	-	-	-	-
2008	-	-	-	-	-	-	-	-
2007	1	100.0	-	0.0	1	100.0	-	0.0
2006	6	100.0	1	16.7	5	83.3	-	0.0
2005	13	100.0	3	23.1	5	38.5	5	38.5
2004	33	100.0	9	27.3	21	63.6	3	9.1
2003	20	100.0	4	20.0	12	60.0	4	20.0
2002	6	100.0	4	66.7	1	16.7	1	16.7

<표 3-2-4-3> 기타 진정 처리결과 - 각하 사유별

(단위 : 건, %)

구분	합계		법 제32조제1항																		법 제32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누 계	1,954	100.0	1,371	70.2	91	4.7	4	0.2	81	4.1	126	6.5	-	0.0	26	1.3	194	9.9	39	2.0	22	1.1	-	0.0
2013	118	100.0	109	92.4	-	0.0	-	0.0	1	0.8	2	1.7	-	0.0	-	0.0	6	5.1	-	0.0	-	0.0	-	0.0
2012	87	100.0	67	77.0	3	3.4	-	0.0	1	1.1	-	0.0	-	0.0	10	11.5	6	6.9	-	0.0	-	0.0	-	0.0
2011	36	100.0	31	86.1	2	5.6	-	0.0	-	0.0	-	0.0	-	0.0	1	2.8	2	5.6	-	0.0	-	0.0	-	0.0
2010	26	100.0	20	76.9	3	11.5	-	0.0	-	0.0	-	0.0	-	0.0	-	0.0	3	11.5	-	0.0	-	0.0	-	0.0
2009	19	100.0	16	84.2	2	10.5	-	0.0	1	5.3	-	0.0	-	0.0	-	0.0	-	0.0	-	0.0	-	0.0	-	0.0
2008	35	100.0	30	85.7	3	8.6	-	0.0	-	0.0	-	0.0	-	0.0	1	2.9	1	2.9	-	0.0	-	0.0	-	0.0
2007	52	100.0	45	86.5	3	5.8	-	0.0	-	0.0	1	1.9	-	0.0	-	0.0	3	5.8	-	0.0	-	0.0	-	0.0
2006	51	100.0	31	60.8	3	5.9	-	0.0	2	3.9	2	3.9	-	0.0	4	7.8	3	5.9	6	11.8	-	0.0	-	0.0
2005	348	100.0	248	71.3	25	7.2	1	0.3	14	4.0	15	4.3	-	0.0	4	1.1	26	7.5	13	3.7	2	0.6	-	0.0
2004	459	100.0	293	63.8	19	4.1	1	0.2	23	5.0	35	7.6	-	0.0	5	1.1	65	14.2	13	2.8	5	1.1	-	0.0
2003	341	100.0	200	58.7	19	5.6	1	0.3	24	7.0	32	9.4	-	0.0	-	0.0	47	13.8	6	1.8	12	3.5	-	0.0
2002	382	100.0	281	73.6	9	2.4	1	0.3	15	3.9	39	10.2	-	0.0	1	0.3	32	8.4	1	0.3	3	0.8	-	0.0

<표 3-2-4-4> 기타 진정 처리결과 - 진정 처리 소요일수

(단위 : 건, 일)

구 분	합 계		인 용		미인용	
	종결건수	평균소요일수	종결건수	평균소요일수	종결건수	평균소요일수
누 계	2,080	114.8	27	294.4	2,053	112.4
2013	119	51.5	-	-	119	51.5
2012	90	118.4	-	-	90	118.4
2011	39	47.1	-	-	39	47.1
2010	26	27.7	-	-	26	27.7
2009	20	25.8	-	-	20	25.8
2008	35	19.7	-	-	35	19.7
2007	54	60.2	1	844.0	53	45.5
2006	57	137.4	-	-	57	137.4
2005	381	95.1	11	293.2	370	89.2
2004	505	171.6	10	303.7	495	169.0
2003	364	99.4	3	194.3	361	98.6
2002	390	123.3	2	129.5	388	123.2

제4절 조사·구제

1. 구제율

<표 3-3-1> 조사중 해결[39] 및 구제율[40] 현황

(단위 : 건, %)

구 분	접 수	처리결과						조사 중지	조사중 해결(C)	구제율(%) (B+C)/A
		종결소계 (A)	인용 (B)	기각	각하	이송	조사 중지			
누 계	78,307	75,746	4,503	22,238	47,453	1,118	434	95	7,903	16.4
2013	10,052	10,387	576	3,491	6,291	29		42	804[41]	13.3
2012	9,582	9,534	480	3,239	5,791	24		53	725[42]	12.6
2011	7,357	7,095	532	2,648	3,843	40	32		699[43]	
2010	9,168	8,398	538	2,457	5,157	153	93		985[44]	
2009	6,985	6,788	534	2,226	3,868	88	72		1,086[45]	
2008	6,309	6,466	427	1,884	3,977	113	65		1,129[46]	
2007	6,274	6,064	392	1,387	4,105	138	42		1,338[47]	
2006	4,187	4,206	355	1,122	2,622	81	26		859[48]	
2005	5,617	5,350	317	1,452	3,376	155	50		278[49]	
2004	5,368	5,804	181	1,387	4,028	154	54			
2003	3,815	3,797	130	785	2,766	116	-			
2002	2,790	1,856	40	160	1,629	27	-			
2001	803	1	1	-	-	-	-			

39)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의 노력 또는 중재, 상세한 설명 등으로 진정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거나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는 등 진정 당사자들에게 만족할 만한 수준의 구제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조사중 해결'로 처리하고 있음.

40) '구제율'은 2011.11.28. 전원위원회에서 '진정사건 효율적 처리 개선 방안' 논의시 결정한 사항임.

41) 2013년 12월 31일 기준 조사중해결 건수는 804건(기각 406건, 각하 398건)

42) 2012년 12월 31일 기준 조사중해결 건수는 725건(기각 328건, 각하 397건)

43) 2011년 12월 31일 기준 조사중해결 건수는 699건(기각 292건, 각하 407건)

44) 2010년 12월 31일 기준 조사중해결 건수는 985건(기각 306건, 각하 679건)

45) 2009년 12월 31일 기준 조사중해결 건수는 1,086건(기각 264건, 각하 822건)

46) 2008년 12월 31일 기준 조사중해결 건수는 1,129건(기각 155건, 각하 974건)

47) 2007년 12월 31일 기준 조사중해결 건수는 1,338건(기각 125건, 각하 1,213건)

48) 2006년 12월 31일 기준 조사중해결 건수는 859건(기각 73건, 각하 786건)

49) 2005년 12월 31일 기준 조사중해결 건수는 278건(기각 44건, 각하 234건)

2. 권고수용현황[50]

<표 3-3-2> 진정사건 연도별 권고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권고건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A+B)/C
		소계(C)	수용(A)	일부수용(B)	불수용		
2013	2,845	2,750	1,996	448	306	95	88.9
2012	2,628	2,414	1,818	304	292	214	87.9

※ 진정사건 연도별 권고수행현황은 각 연도별 12월 31일 누계기준(위원회 전반 통계를 정립한 2012년도부터 실시)

<표 3-3-3> 2013년 진정사건 권고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권고건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A+B)/C
		소계(C)	수용(A)	일부수용(B)	불수용		
누 계	**2,845**	**2,750**	**1,996**	**448**	**306**	**95**	**88.9**
2013	217	143	102	38	3	74	97.9
2012	329	322	173	128	21	7	93.5
2011	321	317	265	29	23	4	92.7
2010	305	299	236	26	37	6	87.6
2009	319	317	196	13	108	2	65.9
2008	335	333	225	76	32	2	90.4
2007	276	276	209	40	27	-	90.2
2006	281	281	183	65	33	-	88.3
2005	224	224	205	12	7	-	96.9
2004	112	112	97	5	10	-	91.1
2003	93	93	87	1	5	-	94.6
2002	33	33	18	15	-	-	100.0

50) 진정사건 권고 수용률은 진정사건 권고(법 제44조), 징계권고(법 제45조제2항), 긴급구제조치(법 제48조)를 대상으로 함.

<표 3-3-4> 2013년 피권고기관별 진정사건 권고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피권고 기관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A+B)/C
		소계(C)	수용(A)	일부수용(B)	불수용		
합 계	**288**	**174**	**144**	**23**	**7**	**114**	**96.0**
공공기관	33	28	24	3	1	5	96.4
다수인보호시설	58	32	32	-	-	26	100.0
경찰	42	23	22	1	-	19	100.0
사법인	8	8	4	3	1	-	87.5
교육기관	9	6	4	2	-	3	100.0
기타국가기관	21	11	8	3	-	10	100.0
지방자치단체	70	46	37	9	-	24	100.0
군	9	3	2	-	1	6	66.7
각급학교	6	3	3	-	-	3	100.0
단체	2	-	-	-	-	2	-
구금시설	3	1	-	-	1	2	0.0
사인(개인)	9	4	3	-	1	5	75.0
개인회사	3	2	1	1	-	1	100.0
검찰	3	-	-	-	-	3	-
사법기관	3	3	2	-	1	-	66.7
기타	9	4	2	1	1	5	75.0

□ 인권침해 진정 권고수용현황

<표 3-3-5> 인권침해 진정사건 권고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권고건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A+B)/C
		소계 (C)	수용 (A)	일부수용 (B)	불수용		
누 계	**1,750**	**1,678**	**1,315**	**225**	**138**	**72**	**91.8**
2013	115	63	60	2	1	52	98.4
2012	157	151	117	27	7	6	95.4
2011	134	130	117	3	10	4	92.3
2010	202	196	179	10	7	6	96.4
2009	241	239	153	10	76	2	68.2

<표 3-3-6> 2013년 피권고기관별 인권침해 진정사건 권고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피권고 기관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A+B)/C
		소계 (C)	수용 (A)	일부수용 (B)	불수용		
합 계	**175**	**93**	**89**	**2**	**2**	**82**	**97.8**
다수인보호시설	57	32	32	-	-	25	100.0
경찰	39	23	22	1	-	16	100.0
군	7	2	2	-	-	5	100.0
기타국가기관	10	5	4	1	-	5	100.0
각급학교	6	3	3	-	-	3	100.0
구금시설	3	1	-	-	1	2	0.0
지방자치단체	45	23	23	-	-	22	100.0
검찰	3	-	-	-	-	3	-
사법기관	3	3	2	-	1	-	66.7
기타	2	1	1	-	-	1	100.0

□ 차별행위 진정 권고수용현황

<표 3-3-7> 차별행위 진정사건 권고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권고건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A+B)/C
		소계 (C)	수용 (A)	일부수용 (B)	불수용		
누 계	**1,073**	**1,050**	**663**	**221**	**166**	**23**	**84.2**
2013	102	80	42	36	2	22	97.5
2012	172	171	56	101	14	1	91.8
2011	187	187	148	26	13	-	93.0
2010	103	103	57	16	30	-	70.9
2009	78	78	43	3	32	-	59.0

<표 3-3-8> 2013년 피권고기관별 차별행위 진정사건 권고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피권고 기관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A+B)/C
		소계 (C)	수용 (A)	일부수용 (B)	불수용		
합 계	**113**	**81**	**55**	**21**	**5**	**32**	**93.8**
공공기관	33	28	24	3	1	5	96.4
사법인	8	8	4	3	1	-	87.5
교육기관	9	6	4	2	-	3	100.0
지방자치단체	25	23	14	9	-	2	100.0
기타국가기관	11	6	4	2	-	5	100.0
단체	2	-	-	-	-	2	-
사인(개인)	9	4	3	-	1	5	75.0
경찰	3	-	-	-	-	3	-
군대	2	1	-	-	1	1	0.0
개인회사	3	2	1	1	-	1	100.0
보호시설	1	-	-	-	-	1	-
검찰	-	-	-	-	-	-	-
기타	7	3	1	1	1	4	66.7

□ 기타 진정 권고수용현황

<표 3-3-9> 기타 진정사건 권고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권고건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A+B)/C
		소계(C)	수용(A)	일부수용(B)	불수용		
누 계	22	22	18	2	2	-	90.9
2013	-	-	-	-	-	-	-
2012	-	-	-	-	-	-	-
2011	-	-	-	-	-	-	-
2010	-	-	-	-	-	-	-
2009	-	-	-	-	-	-	-

3. 긴급구제

<표 3-3-10> 긴급구제[51] 결정 및 결정 내용

(단위 : 건)

구 분	상정건수	처리결과		계	긴급구제 결정 내용						
		긴급구제 결 정	부 결		법 제48조제1항						법 제48조2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누 계	48	15	33	15	7	-	-	4	2	1	1
2013	8	1	7	1	-	-	-	1	-	-	-
2012	2	1	1	1	-	-	-	-	-	1	-
2011	2	-	2	-	-	-	-	-	-	-	-
2010	6	1	5	1	1	-	-	-	-	-	-
2009	6	3	3	3	1	-	-	1	1	-	-
2008	7	3	4	3	-	-	-	1	1	-	1
2007	7	-	7	-	-	-	-	-	-	-	-
2006	3	1	2	1	-	-	-	1	-	-	-
2005	1	1	-	1	1	-	-	-	-	-	-
2004	1	-	1	-	-	-	-	-	-	-	-
2003	2	2	-	2	2	-	-	-	-	-	-
2002	3	2	1	2	2	-	-	-	-	-	-

※ 2013.4.4. 긴급구제 처리 절차와 기준 상임위 보고, 2013.6.1.부터 긴급구제사건 분리

4. 권고이행계획 회신현황

<표 3-3-11> 진정사건 권고이행계획 90일 이내 회신현황

(단위 : 건, %)

구 분	피권고 기관수(A)	검토중 (90일내)(B)	회신		미회신	90일 이내 회신율[52]
			90일 이내(C)	90일 초과		
2013	288	73	165	33	17	76.7
2012	293	-	227	56	10	77.5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2항[53] 2012.3.21.개정(2012년 권고 이행계획 회신 현황 작성기간은2012.3.21.~2012.12.31.)

51) 법 제48조(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52) 90일 이내 회신율 = $\left(\frac{\text{90일이내 회신건수}}{\text{피권고기관수} - \text{검토중(90일내)건수}}\right) * 100$

53) 법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2.3.21.〉

제5절 직권 및 방문조사

1. 직권조사[54)]

<표 3-4-1> 직권조사 결정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결정 건수	종결 건수	인용						미인용		
			소계	수사 의뢰	권고	고발	징계 권고	합의 종결	소계	기각	직권조사 중종결
누 계	208	206	139	3	111	19	5	1	67	7	60
2013	11	13	13	-	8	5	-	-	-	-	-
2012	14	15	11	1	7	3	-	-	4	-	4
2011	16	18	13	1	9	2	1	-	5	-	5
2010	10	3	3	-	2	1	-	-	-	-	-
2009	3	5	5	-	3	2	-	-	-	-	-
2008	17	18	14	-	12	-	2	-	4	-	4
2007	5	6	5	-	5	-	-	-	1	-	1
2006	9	83	35	-	31	3	1	-	48	7	41
2005	84	41	37	-	33	3	-	1	4	-	4
2004	37	3	2	1	-	-	1	-	1	-	1
2003	-	-	-	-	-	-	-	-	-	-	-
2002	2	1	1	-	1	-	-	-	-	-	-

<표 3-4-2> 직권조사 권고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권고건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A+B)/C
		소계(C)	수용(A)	일부수용(B)	불수용		
누 계	115	110	64	43	3	5	97.3
2013	7	4	4	-	-	3	100.0
2012	7	5	5	-	-	2	100.0
2011	10	10	9	1	-	-	100.0
2010	2	2	2	-	-	-	100.0
2009	3	3	2	1	-	-	100.0
2008	14	14	10	3	1	-	92.9
2007	5	5	-	4	1	-	80.0
2006	32	32	29	2	1	-	96.9
2005	33	33	1	32	-	-	100.0
2004	1	1	1	-	-	-	100.0
2003	-	-	-	-	-	-	-
2002	1	1	1	-	-	-	100.0

54) 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제3항

<표 3-4-3> 2013년 피권고기관별 직권조사 권고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피권고 기관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A+B)/C
		소계(C)	수용(A)	일부수용(B)	불수용		
합 계	**48**	**9**	**9**	**-**	**-**	**39**	**100.0**
사법인	3	-	-	-	-	3	-
경찰	1	1	1	-	-	-	100.0
검찰	1	1	1	-	-	-	100.0
기타국가기관	24	6	6	-	-	18	100.0
지방자치단체	13	1	1	-	-	12	100.0
보호시설	6	-	-	-	-	6	-

□ 인권침해 직권조사

<표 3-4-4>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정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결정 건수	종결 건수	인용						미인용		
			소계	수사 의뢰	권고	고발	징계 권고	합의 종결	소계	기각	직권조사 중종결
누 계	**95**	**94**	**88**	**1**	**73**	**11**	**3**	**-**	**6**	**-**	**6**
2013	5	7	7	-	5	2	-	-	-	-	-
2012	9	8	6	-	6	-	-	-	2	-	2
2011	7	7	7	-	6	-	1	-	-	-	-
2010	3	1	1	-	-	1	-	-	-	-	-
2009	2	4	4	-	2	2	-	-	-	-	-

<표 3-4-5> 인권침해 직권조사 권고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권고건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A+B)/C
		소계(C)	수용(A)	일부수용(B)	불수용		
누 계	**76**	**73**	**32**	**41**	**-**	**3**	**100.0**
2013	5	4	4	-	-	1	100.0
2012	6	4	4	-	-	2	100.0
2011	7	7	7	-	-	-	100.0
2010	-	-	-	-	-	-	-
2009	2	2	1	1	-	-	100.0

<표 3-4-6> 2013년 피권고기관별 인권침해 직권조사 권고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피권고 기관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A+B)/C
		소계(C)	수용(A)	일부수용(B)	불수용		
합 계	24	7	7	-	-	17	100.0
지방자치단체	8	-	-	-	-	8	-
경찰	1	1	1	-	-	-	100.0
기타국가기관	9	6	6	-	-	3	100.0
다수인보호시설	6	-	-	-	-	6	-

□ 차별행위 직권조사

<표 3-4-7> 차별행위 직권조사 결정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결정 건수	종결 건수	인용						미인용		
			소계	수사 의뢰	권고	고발	징계 권고	합의 종결	소계	기각	직권조사 중종결
누 계	113	112	51	2	38	8	2	1	61	7	54
2013	6	6	6	-	3	3	-	-	-	-	-
2012	5	7	5	1	1	3	-	-	2	-	2
2011	9	11	6	1	3	2	-	-	5	-	5
2010	7	2	2	-	2	-	-	-	-	-	-
2009	1	1	1	-	1	-	-	-	-	-	-

<표 3-4-8> 차별행위 직권조사 권고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권고건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A+B)/C
		소계(C)	수용(A)	일부수용(B)	불수용		
누 계	39	37	32	2	3	2	91.9
2013	2	-	-	-	-	2	-
2012	1	1	1	-	-	-	100.0
2011	3	3	2	1	-	-	100.0
2010	2	2	2	-	-	-	100.0
2009	1	1	1	-	-	-	100.0

<표 3-4-9> 2013년 피권고기관별 차별행위 직권조사 권고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피권고 기관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A+B)/C
		소계(C)	수용(A)	일부수용(B)	불수용		
합 계	24	2	2	-	-	22	100.0
기타국가기관	15	-	-	-	-	15	-
지방자치단체	5	1	1	-	-	4	100.0
사법인	3	-	-	-	-	3	-
검찰	1	1	1	-	-	-	100.0

2. 방문조사[55)]

<표 3-4-10> 방문조사 결정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결정 건수	종결 건수	처리결과				
			권고	의견표명	통보	직권조사의결	수사의뢰
누 계	45	42	18	2	21	-	1
2013	5	3	2	-	1	-	-
2012	5	6	3	-	3	-	-
2011	7	5	4	-	-	-	1
2010	4	6	3	-	3	-	-
2009	8	9	4	2	3	-	-
2008	6	3	1	-	2	-	-
2007	5	5	1	-	4	-	-
2006	3	3	-	-	3	-	-
2005	2	2	-	-	2	-	-

55) 법 제24조(시설의 방문조사)

<표 3-4-11> 방문조사 권고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권고건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A+B)/C
		소계(C)	수용(A)	일부수용(B)	불수용		
누 계	**18**	**14**	**8**	**6**	**-**	**4**	**100.0**
2013	2	-	-	-	-	2	-
2012	3	3	1	2	-	-	100.0
2011	4	4	3	1	-	-	100.0
2010	3	2	1	1	-	1	100.0
2009	4	3	2	1	-	1	100.0
2008	1	1	-	1	-	-	100.0
2007	1	1	1	-	-	-	100.0

<표 3-4-12> 2013년 피권고기관별 방문조사 권고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피권고 기관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A+B)/C
		소계 (C)	수용 (A)	일부수용 (B)	불수용		
합 계	2	-	-	-	-	2	-
법무부	1	-	-	-	-	1	-
국방부	1	-	-	-	-	1	-

<표 3-4-13> 구금·보호시설[56]별 방문조사 현황

(단위 : 건, 개소)

구 분	결정건수	교도소 등	경찰서 유치장 등	군 교도소 등	외국인 보호소	다수인 보호시설
누 계	**45**	**52**	**33**	**16**	**32**	**84**
2013	5	-	-	8	5	22
2012	5	4	6	-	3	5
2011	7	4	-	2	3	4
2010	4	13	18	-	4	3
2009	8	3	3	1	4	12
2008	6	6	2	2	4	9
2007	5	10	2	3	9	3
2006	3	10	2	-	-	15
2005	2	2	-	-	-	11

56) 법 제2조(정의)

<표 3-4-14> 다수인보호시설[57]별 방문조사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시설수	아동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정신 보건시설	노숙인 복지시설	노인 복지시설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시설	갱생 보호시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누 계	84	20	3	33	6	15	2	5	-
2013	22	11	-	11	-	-	-	-	-
2012	5	-	-	5	-	-	-	-	-
2011	4	-	1	1	-	2	-	-	-
2010	3	-	-	-	-	3	-	-	-
2009	12	-	-	4	-	3	-	5	-
2008	9	2	-	7	-	-	-	-	-
2007	3	-	-	-	3	-	-	-	-
2006	15	5	-	5	-	5	-	-	-
2005	11	2	2	-	3	2	2	-	-

57)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2조(다수인 보호시설)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자립지원시설
2.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3.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4.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숙인일시보호시설·노숙인자활시설·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5. 노인복지시설
   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
   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 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및 외국인여성 지원시설
7. 갱생보호시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8.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모자가족복지시설·부자가족복지시설·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중 기본생활지원을 제공하는 시설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일시지원복지시설

제4장 인권교육 및 협력

제1절 인권교육 및 협력의 이해

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문화 조성을 위하여 인권교육과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사후구제도 중요하지만 인권의식 및 인권감수성을 제고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법 제26조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고, 인권교육과 인권에 관한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시험, 연수 및 교육훈련 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출판, 문화 콘텐츠 개발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의 인권의식을 확산하고 인권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인권관련 정보공유, 업무협력 및 인적교류 등을 위하여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제2절 인권교육

1. 인권교육 현황

<표 4-1-1> 인권교육 실시 현황

(단위 : 회, 명)

구 분		합 계	교육과정	방문 프로그램	사이버교육	인권특강	콘텐츠공동 활용교육
누 계	횟수	8,634	1,054	831	536	5,642	571
	인원	758,414	49,347	22,397	122,940	527,398	36,332
2013	횟수	2,011	245	159	150	1,280	177
	인원	180,323	11,382	4,588	39,654	112,956	11,743
2012	횟수	1,456	214	119	109	858	156
	인원	140,867	10,456	2,204	21,550	90,727	15,930
2011	횟수	1,316	166	153	71	777	149
	인원	121,402	7,064	3,019	14,681	89,333	7,305
2010	횟수	1,137	177	88	65	739	68
	인원	90,917	6,518	1,726	10,538	71,297	838
2009	횟수	751	131	109	60	432	19
	인원	55,226	7,056	3,043	13,573	31,044	510
2008	횟수	828	45	66	31	684	2
	인원	63,264	2,643	1,972	12,394	46,249	6
2007	횟수	516	30	46	37	403	-
	인원	52,501	2,171	1,673	9,435	39,222	-
2006	횟수	226	20	34	12	160	-
	인원	15,356	1,197	991	973	12,195	-
2005	횟수	155	11	21	1	122	-
	인원	16,864	372	1,072	142	15,278	-
2004	횟수	89	6	23	-	60	-
	인원	7,161	180	1,224	-	5,757	-
2003	횟수	117	5	13	-	99	-
	인원	10,591	186	885	-	9,520	-
2002	횟수	32	4	-	-	28	-
	인원	3,942	122	-	-	3,820	-

2. 인권교육과정

<표 4-1-2> 교육과정 운영 현황

(단위 : 회, 명)

구 분	합 계		인권강사 양성과정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워크숍 등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누 계	1,054	49,347	80	2,004	840	40,032	134	7,311
2013	245	11,382	30	699	199	10,264	16	419
2012	214	10,456	10	183	184	9,813	20	460
2011	166	7,064	11	211	140	6,379	15	474
2010	177	6,518	8	202	153	5,592	16	724
2009	131	7,056	7	217	109	6,057	15	782

3. 방문프로그램

<표 4-1-3> 방문프로그램 운영 현황

(단위 : 회, 명)

구 분	합 계		공공영역		학교영역		시민영역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누 계	831	22,397	166	5,914	554	14,592	111	1,891
2013	159	4,588	5	82	126	4,060	28	446
2012	119	2,204	4	99	102	1,905	13	200
2011	153	3,019	15	318	105	2,097	33	604
2010	88	1,726	25	612	55	982	8	132
2009	109	3,043	39	1,126	62	1,830	8	87

<표 4-1-4> 부서별 방문프로그램 운영 현황

(단위 : 회, 명)

구 분	합 계		본부		인권사무소					
					부 산		광 주		대 구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누 계	831	22,397	444	13,636	63	1,045	230	5,812	94	1,904
2013	159	4,588	26	821	32	486	36	1,624	65	1,657
2012	119	2,204	32	674	6	153	76	1,323	5	54
2011	153	3,019	62	1,292	11	271	70	1,345	10	111
2010	88	1,726	50	1,083	8	103	25	507	5	33
2009	109	3,043	77	1,972	6	32	22	1,013	4	26

4. 사이버인권교육

<표 4-1-5> 사이버인권교육 대상별 이수 현황

(단위 : 명)

구 분	소 계	공직자	교사	시민	기타
누 계	122,940	50,193	59,032	9,566	4,149
2013	39,654	9,944	24,372	5,338	-
2012	21,550	10,776	8,747	2,027	-
2011	14,681	8,511	6,139	-	31
2010	10,538	6,276	3,995	-	267
2009	13,573	5,592	7,338	534	109

<표 4-1-6> 과정별 사이버인권교육 실시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인권의이해	인권의이해 (심화)	장애차별 예방	성차별 예방	교사인권+ (플러스)	행정과 인권	장차법의 이해	기타[58]
누 계	122,940	12,511	3,109	23,798	27,569	19,311	7,130	4,962	24,550
2013	39,654	3,499	612	8,407	9,876	10,984	2,350	2,320	1,606
2012	21,550	2,605	593	4,333	5,327	3,524	2,904	2,264	-
2011	14,681	1,910	581	3,237	3,839	2,860	1,876	378	-
2010	10,538	2,291	736	2,719	2,849	1,943	-	-	-
2009	13,573	2,206	587	5,102	5,678	-	-	-	-

58) 사이버인권교육은 2005년부터 실시하였으나 2009년부터 통계를 관리하여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합은 기타에 포함

5. 인권특강

<표 4-1-7> 인권특강 현황

(단위 : 횟수, 명)

구 분	합 계		공공영역		학교영역		시민영역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누 계	5,642	527,398	2,384	197,078	2,270	277,612	988	52,708
2013	1,280	112,956	226	24,283	711	69,989	343	18,684
2012	858	90,727	61	2,815	698	84,715	99	3,197
2011	777	89,333	334	28,965	302	54,518	141	5,850
2010	739	71,297	394	34,031	251	33,414	94	3,852
2009	432	31,044	265	17,462	86	8,930	81	4,652

<표 4-1-8> 지역별 인권특강 실시 현황

(단위 : 횟수, 명)

구 분	합 계		본부		인권사무소					
					부 산		광 주		대 구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누 계	5,642	527,398	3,345	354,259	920	63,688	663	41,412	714	68,039
2013	1,280	112,956	530	52,602	262	17,254	165	9,968	323	33,132
2012	858	90,727	538	64,756	111	9,676	106	9,219	103	7,076
2011	777	89,333	414	55,565	120	10,128	121	7,248	122	16,392
2010	739	71,297	478	55,627	115	6,201	84	5,085	62	4,384
2009	432	31,044	210	15,439	117	9,690	64	3,501	41	2,414

제3절 국내외 협력

1. 인권현장방문

<표 4-2-1> 인권현장방문 현황

(단위 : 회, 기관수)

구 분	누 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방문횟수	115	5	9	7	12	8	12	10	9	19	11	13
기관수	131	5	9	7	14	8	12	10	9	21	16	20

2. 보조금

<표 4-2-2> 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 단체수, 백만원)

구 분		누 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국내	지원단체수	257	23	26	20	33	30	32	33	15	16	15	14
	지원금액	2,090	200	150	150	275	275	275	275	130	130	115	115
국외 (APF)	지원단체수	9	-	-	1	1	1	1	1	1	1	1	1
	지원금액	900	-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3. 국제회의 및 외빈 방문

<표 4-3-1> 국제회의 개최 현황

(단위 : 회)

구 분	누 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누 계	45	2	1	9	6	5	6	4	6	3	3
정책일반	3	-	-	-	2	1	-	-	-	-	-
북한인권	11	1	1	1	1	1	2	1	1	1	1
정보인권	3	-	-	-	-	-	1	-	1	1	-
기업인권	3	-	-	-	1	-	1	-	1	-	-
국제인권	7	1	-	3	1	-	-	-	1	-	1
인권교육	3	-	-	-	1	1	-	-	1	-	-
자유권	3	-	-	1	-	-	1	1	-	-	-
이주인권	4	-	-	1	-	1	-	1	-	1	-
차별시정	1	-	-	1	-	-	-	-	-	-	-
여성인권	1	-	-	-	-	1	-	-	-	-	-
장애인인권	6	-	-	2	-	-	1	1	1	-	1

<표 4-3-2> 국제회의 등 참가 현황

(단위 : 회)

구 분	누 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337**	**14**	**21**	**17**	**32**	**40**	**33**	**33**	**37**	**29**	**28**	**27**	**26**
회의·교육	**195**	10	13	12	16	24	14	18	17	17	19	19	16
교류협력	**62**	4	5	4	8	10	5	3	12	6	2	3	2
조사	**12**	–	1	–	–	–	3	2	1	–	2	1	2
연구 및 훈련	**66**	–	2	1	8	6	11	10	7	6	5	4	6

<표 4-3-3> 외빈(국가, 인권단체 등) 방문 현황

(단위 : 회)

구 분	누 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방 문	**240**	15	19	19	26	25	18	17	29	13	24	24	11

제5장 일반행정

제1절 일반행정의 이해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는 심의·의결기관인 위원회와 위원회 사무처리를 담당하는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3인의 상임위원, 7명의 비상임위원 등 총 11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며, 인권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4인(상임위원 2명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1인의 인권위원 중 4인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전체 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참석하는 상임위원회, 그리고 침해구제제1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및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특정한 사안에 관한 한시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북한인권특별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위원회는 분야별로 차별, 성, 장애 및 인권침해 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분야별 조정위원회는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를 두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公私) 단체와 협의를 할 수 있다. 정책자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통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을 받고 있으며,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연구·검토하고 있다.

사무처는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3국·12과, 3개 소속기관(부산·광주·대구)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절 위원회 의사 운영

1. 심의·의결기구

□ 전원위원회

<표 5-1-1> 전원위원회 운영 현황

(단위 : 회, 건, %)

구 분	개최 횟수	상정안건				공개비율
		합 계	보고안건	심의안건	의결안건	
2013	23	59(15)	24(2)		35(13)	49.2
2012	24	58(17)	28		30(17)	72.4
2011	23	64(6)	27		37(6)	71.9
2010	19	63(17)	24(3)	1	38(14)	57.1
2009	24	58(14)	26(1)	1(1)	31(12)	48.3

※ ( )의 숫자는 재상정 안건수이고 공개비율에서 제외함.

□ 상임위원회

<표 5-1-2> 상임위원회 운영 현황

(단위 : 회, 건, %)

구 분	개최 횟수	상정안건				공개비율
		합 계	보고안건	심의안건	의결안건	
2013	47	113(7)	41(1)	14	58(6)	60.2
2012	44	125(12)	55	14	56(12)	72.8
2011	50	128(4)	47	21	60(4)	75.8
2010	41	102(10)	33	15(3)	54(7)	72.5
2009	52	120(18)	53(1)	14(3)	53(14)	74.2

※ ( )의 숫자는 재상정 안건수이고 공개비율에서 제외함.

□ 소위원회

<표 5-1-3> 침해구제제1위원회[59] 운영 현황

(단위 : 회, 건)

구 분	개최횟수	상정안건			
		합 계	보고안건	심의안건	의결안건
2013	12	1,077	150	–	927
2012	15	889	88	–	801
2011	16	716	72	1	643
2010	17	700	107	–	593
2009	18	858	109	1	748

<표 5-1-4> 침해구제제2위원회 운영 현황

(단위 : 회, 건)

구 분	개최횟수	상정안건			
		합 계	보고안건	심의안건	의결안건
2013	13	1,153	107	–	1,046
2012	14	1,151	143	–	1,008
2011	15	873	47	–	826
2010	16	1,059	63	4	992
2009	17	1,137	96	5	1,036

<표 5-1-5> 차별시정위원회[60] 운영 현황

(단위 : 회, 건)

구 분	개최횟수	상정안건			
		합 계	보고안건	심의안건	의결안건
2013	13	559	184	–	375
2012	14	530	192	–	338
2011	14	542	148	–	394
2010	18	597	104	2	491
2009	17	524	81	1	442

59)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검찰, 경찰, 군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구제,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구금·보호시설, 학교 및 기타 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

60) 차별시정위원회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장애를 사유로 하는 차별행위는 제외함)를 심의의결함.

<표 5-1-6>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61] 운영 현황

(단위 : 회, 건)

구 분	개최횟수	상정안건			
		합 계	보고안건	심의안건	의결안건
2013	13	1,656	445	–	1,211
2012	17	1,417	317	2	1,098
2011	16	818	182	2	634
2010	15	966	177	1	788
2009	15	905	100	–	805

※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 2008. 4. 22. ~ 현재

<표 5-1-7>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운영 현황

(단위 : 회, 건)

구 분	개최횟수	상정안건			
		합 계	보고안건	심의안건	의결안건
2013	7	19	18	1	–
2012	5	6	2	4	–
2011	17	18	2	16	–
2010	–	–	–	–	–
2009	6	6	1	5	–

※ 북한인권특별위원회 : 2011. 1. 27. ~ 현재

61)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시정기구로서 장애를 사유로 하는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

□ 조정위원회[62]

<표 5-1-8> 조정위원회 개최 현황

(단위 : 회)

구분	합 계	전체회의	차별 조정위원회	성차별 조정위원회	장애차별 조정위원회	인권침해 조정위원회
누 계	67	3	32	18	9	5
2013	5	1	2	2	–	–
2012	4	1	–	2	1	–
2011	3	–	1	1	–	1
2010	6	1	3	–	2	–
2009	4	–	2	–	–	2

<표 5-1-9> 조정신청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접수처리 (①+②+③)	종결				
		조정성립①	조정불성립②	조정갈음결정[63]		각하③
				조정성립	이의신청	
누 계	53	25	17	(3)	(5)	11
2013	5	2	2	–	(1)	1
2012	4	2	–	–	–	2
2011	3	2	1	(1)	–	–
2010	5	1	2	–	(1)	2
2009	4	2	2	(1)	–	–

<표 5-1-10> 차별조정위원회 조정신청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접수처리 (①+②+③)	종결				
		조정성립①	조정불성립②	조정갈음결정		각하③
				조정성립	이의신청	
누 계	21	5	12	(2)	(4)	4
2013	2	–	2	–	(1)	–
2012	–	–	–	–	–	–
2011	1	–	1	–	–	–
2010	2	–	2	–	(1)	–
2009	2	1	1	(1)	–	–

62) 법 제41조(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63) 조정갈음결정의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 또는 불성립에 포함(이하 같음)

<표 5-1-11> 성차별조정위원회 조정신청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접수처리 (①+②+③)	종결				
		조정성립①	조정불성립②	조정갈음결정		각하③
				조정성립	이의신청	
누 계	16	14	1	–	–	1
2013	3	2	–	–	–	1
2012	2	2	–	–	–	–
2011	1	1	–	–	–	–
2010	–	–	–	–	–	–
2009	–	–	–	–	–	–

<표 5-1-12> 장애차별조정위원회 조정신청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접수처리 (①+②+③)	종결				
		조정성립①	조정불성립②	조정갈음결정		각하③
				조정성립	이의신청	
누 계	10	4	2	–	(1)	4
2013	–	–	–	–	–	–
2012	2	–	–	–	–	2
2011	–	–	–	–	–	–
2010	2	1	–	–	–	1
2009	–	–	–	–	–	–

<표 5-1-13> 인권침해조정위원회 조정신청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접수처리 (①+②+③)	종결				
		조정성립①	조정불성립②	조정갈음결정		각하③
				조정성립	이의신청	
누 계	6	2	2	(1)	–	2
2013	–	–	–	–	–	–
2012	–	–	–	–	–	–
2011	1	1	–	(1)	–	–
2010	1	–	–	–	–	1
2009	2	1	1	–	–	–

2. 자문기구[64]

□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표 5-1-14>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 현황

(단위 : 회, 건)

구 분	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개최횟수	22	–	–	3	4	1
안건수	40	–	–	3	4	1
출석 기관수	126	–	–	13	31	8

□ 정책자문위원회

<표 5-1-15>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현황

(단위 : 회, 건)

구 분	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개최횟수	17	1	1	3	3	1
안건 수	48	1	4	12	9	3

□ 전문위원회

<표 5-1-16> 사회권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단위 : 회, 건)

구 분	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개최횟수	38	4	–	2	3	2
안건 수	96	5	–	5	4	3

※ 누계는 사회권전문위원회와 아동인권전문위원회의 합임

64) 법 제15조(자문 기구) 및 법 제20조(관계기관등과의 협의)제2항, 법 제12조(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제3항

<참고 1. 사회권전문위원회 및 아동인권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단위 : 회, 건)

구 분		누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소 계	개최횟수	38	10	10	7	4	–	2	3	2
	안건 수	96	24	37	18	5	–	5	4	3
사회권 전문위원회	개최횟수	30	8	9	4	2	–	2	3	2
	안건 수	84	21	35	13	3	–	5	4	3
아동인권 전문위원회	개최횟수	8	2	1	3	2	–	사회권 전문위로 통합		
	안건 수	12	3	2	5	2	–			

※ 아동인권전문위원회(2006. 3. 23. ~ 2010. 8.)

<표 5-1-17> 인권교육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단위 : 회, 건)

구 분	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개최횟수	25	1	2	3	2	2
안건 수	39	2	3	5	3	5

※ 누계는 인권교육 분야 전문위원회의 합임

<참고 2. 인권교육 관련 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단위 : 회, 건)

구 분		누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소 계	개최횟수	25	–	7	5	3	1	2	3	2	2
	안건 수	39	–	11	7	3	2	3	5	3	5
인권교육	개최횟수	10	–	–	–	–	1	2	3	2	2
	안건 수	18	–	–	–	–	2	3	5	3	5
학교인권	개최횟수	8	–	5	2	1	–				
	안건 수	10	–	7	2	1	–				
공공·시민	개최횟수	5	–	2	3	–	–				
	안건 수	9	–	4	5	–	–				
공공인권	개최횟수	1	–	–	–	1	–				
	안건 수	1	–	–	–	1	–				
시민인권	개최횟수	1	–	–	–	1	–				
	안건 수	1	–	–	–	1	–				

※ 인권교육전문위원회(제1기 임기기간 2005. 11. 1. ~ 2007.10. 31. 조직개편으로 2005년도 개최 없이 2005.12.31. 임기종료, 2009. 5. 1. ~ 현재)

※ 학교인권교육전문위원회, 공공·시민인권교육전문위원회(2006. 3. ~ 2008. 6.)

※ 학교인권교육전문위원회, 공공인권교육전문위원회, 시민인권교육전문위원회(2008. 8. ~ 2009. 4. 30.)

<표 5-1-18> 국제인권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단위 : 회, 건)

구 분	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개최횟수	22	2	2	5	4	5
안건 수	65	6	6	17	13	16

<표 5-1-19> 자유권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단위 : 회, 건)

구 분	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개최횟수	38	4	2	5	2	4
안건 수	78	13	4	10	6	11

※ 누계는 자유권 분야 전문위원회의 합임

<참고 3. 자유권 관련 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단위 : 회, 건)

구 분		누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소 계	개최횟수	38	5	7	9	4	2	5	2	4
	안건 수	78	7	11	16	13	4	10	6	11
자유권	개최횟수	9	–	–	–	–	2	3	2	2
	안건 수	22	–	–	–	–	4	6	6	6
검·경수사	개최횟수	3	1	–	1	1	–	–	–	–
	안건 수	5	1	–	2	2	–	–	–	–
군	개최횟수	4	1	1	2	–	–	–	–	–
	안건 수	4	1	1	2	–	–	–	–	–
교정	개최횟수	6	1	2	1	1	–	–	–	1
	안건 수	11	2	2	1	4	–	–	–	2
외국인	개최횟수	16	2	4	5	2	–	2	–	1
	안건 수	36	3	8	11	7	–	4	–	3

※ 검·경수사전문위원회, 군인권전문위원회, 교정전문위원회(2005. 8. 2. ~ 2009. 4. 30.)

※ 외국인인권전문위원회(2006. 3. 23. ~ 2011. 2. 17.)

※ 자유권전문위원회(2009. 5. 1. ~ 현재) : 검·경수사분야, 군분야, 교정분야, 외국인분야

<표 5-1-20> 차별시정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단위 : 회, 건)

구 분	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개최횟수	27	3	2	4	3	1
안건 수	105	9	5	21	17	7

※ 누계는 차별시정 분야 전문위원회의 합임

<참고 4. 차별 관련 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단위 : 회, 건)

구 분		누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소 계	개최횟수	27	3	5	6	3	2	4	3	1
	안건 수	105	4	21	21	9	5	21	17	7
차 별	개최횟수	7	2	2	3	–				
	안건 수	15	3	5	7	–				
성차별	개최횟수	9	1	3	3	2	–	–		
	안건 수	38	1	16	14	7	–	–		
고용차별	개최횟수	3				1	2	–		
	안건 수	7				2	5	–		
차별시정	개최횟수	8						4	3	1
	안건 수	45						21	17	7

※ 차별전문위원회(2005. 8. 2. ~ 2009. 4. 30.)

※ 성차별전문위원회(2005. 8. 2. ~ 2011. 2. 17.)

※ 고용차별전문위원회(2009. 5. 1. ~ 2011. 2. 17.)

※ 차별시정전문위원회(2011. 2. 18. ~ 현재)

<표 5-1-21> 장애인인권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단위 : 회, 건)

구 분	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개최횟수	31	6	3	4	5	1
안건 수	76	11	7	11	13	2

※ 누계는 장애인인권 분야 전문위원회의 합임

<참고 5. 장애인인권 관련 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단위 : 회, 건)

구 분		누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소 계	개최횟수	31	–	7	5	6	3	4	5	1
	안건 수	76	–	21	11	11	7	11	13	2
장애차별	개최횟수	10	–	3	5	2				
	안건 수	23	–	9	11	3				
다수인 보호시설	개최횟수	–	–	–	–	–				
	안건 수	–	–	–	–	–				
정신장애인 인권	개최횟수	4	–	4	–	–				
	안건 수	12	–	12	–	–				
장애인 인권	개최횟수	17				4	3	4	5	1
	안건 수	41				8	7	11	13	2

※ 장애차별전문위원회, 다수인보호시설전문위원회(2005. 8. 2. ~ 2009. 4. 30.)

※ 정신장애인인권전문위원회(2006. 12. 8. ~ 2009. 4. 30.)

※ 장애인인권전문위원회(2009. 5. 1. ~ 현재)

<표 5-1-22> 정보인권 특별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단위 : 회, 건)

구 분	누 계	2009	2010	2011	2012
개최횟수	4	1	2	1	–
안건 수	15	3	9	3	–

※ 2012. 9월 활동 종료

제3절 일반현황

1. 사무처 조직

<표 5-2-1> 조직 및 정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 년월일	기구	정원	증감내역	
			기구	정원
2002. 2. 4.	5국 18과, 1소속기관	180	-	-
2005. 3. 2.	〃	181	-	증 1명
2005. 5. 31.	〃	193	-	증 12명
2005. 6. 23.	5국 19과, 3소속기관	201	증 1과	증 8명
2005. 12. 30.	5본부 22팀, 3소속기관	〃	증 3팀	-
2007. 6. 21.	5본부 22팀, 4소속기관	208	증 1소속기관	증 7명
2009. 4. 6.	1관 2국 11과, 3소속기관	164	감 2본부 11팀, 1소속기관	감 44명
2011. 10. 10.	1관 2국 12과, 3소속기관	185	증 1과	증 21명
2012. 11. 12.	〃	187	-	증 2명
2013. 3. 23.	〃	186	-	감 1명
2013. 9. 17.	〃	190	-	증 4명
2013. 12. 11.	〃	188	-	감 2명

<표 5-2-2> 2013년도 직급별 정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정무직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록연구사	경감
정 원	188	4	4	2	13	8	61	44	21	9	20	1	1

<표 5-2-3> 연도별 예산 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B+C)	인건비 (A)	기본경비 (B)	주요사업비 (C)	비고
2013	24,091	11,368	7,047	5,676	
2012	23,055	10,770	7,222	5,063	
2011	22,079	10,316	6,948	4,815	
2010	22,285	10,869	6,813	4,603	
2009	23,373	11,308	7,200	4,865	

<표 5-2-4> 2013년 주요사업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단 위 사 업 명(세부사업명)		예 산
계		5,676
인권감수성의 사회적 확산		909
	① 인권의식 향상	368
	② 차별예방 및 인권문화조성	320
	③ 지역인권문화 확산	221
인권교육 활성화		880
	④ 인권교육센터 등 인권교육 운영	582
	⑤ 인권교육연구와 콘텐츠개발	298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보고		1,664
	⑥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	439
	⑦ 취약분야 인권개선	804
	⑧ 장애인 인권증진	421
인권제도 선진화		811
	⑨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629
	⑩ 북한인권개선	182
국내외 인권협력 강화		523
	⑪ 국제교류협력	292
	⑫ APF 및 ICC 활동지원	100
	⑬ 인권단체 공동협력	131
인권위 정보화(정보화)		889
	⑭ 인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	889

<표 5-2-5> 인권도서관 장서 보유현황

구분	자료유형		장서량
인쇄자료	단행본	계	28,564종 39,266권
		동양서	21,993종 31,164권
		서양서	6,571종 8,102권
	연속간행물	계	107종
		국내	90종(구독 45, 기증 45)
		국외	17종
전자자료	전자도서 (eBook)	계	5패키지 1,114종 1,393권
		국내	332종 609권
		국외	782종 784권
	전자저널 (E-Journal)	계	3,438종
		국내	3,091종
		국외	347종
	웹DB	계	5종
		국내	4종
		국외	1종
	기타 전자자료	계	해외석박사학위논문(pqdd) 원문 492종
특수자료		계	208종 227권(비도서 포함), 연간물 20종
		단행본	188종 204권
		비도서자료	20종 23점
		연속간행물	20종
비도서자료		계	4,064종 5,959점
		국내	3,435종 5,283점
		국외	629종 676점

※ 장서량은 2001년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장서보유 누계임

<표 5-2-6> 인권도서관 이용현황

구 분		누계	2009	2010	2011	2012	2013
직원대출		13,225명 34,903권	1,589명 4,797권	1,194명 3,473권	1,157명 2,798권	1,221명 3,263권	1,364명 3,732권
외부대출 서비스	개인	2,197명 5,672권	167명 472권	192명 544권	433명 962권	693명 1,473권	275명 637권
	단체	840건 3,173권	69건 229권	93건 310권	151건 497권	88건 332권	94건 318권
방문이용자		9,951명	450명	790명	1,439명	1,552명	2,786명

※ 2005.11.부터 외부대출서비스 실시, 2008.12.부터 개인자료회원제 도입

2. 정보공개[65]

<표 5-2-7> 정보공개 현황

(단위 : 건)

구 분	청구 건수	처 리 현 황							
		소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기 타			
						소계	취하	민원종결	타기관이송
누 계	3,524	3,281	1,932	1,009	340	243	119	53	71
2013	498	474	291	153	30	24	12	3	9
2012	491	467	241	169	57	24	5	13	6
2011	496	461	289	122	50	35	21	7	7
2010	521	478	249	173	56	43	28	6	9
2009	599	561	336	151	74	38	20	8	10

6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06.10.4.)에 따라 2007.1.1. 이후 현황 작성

<표 5-2-8> 비공개(부분공개) 사유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비공개/부분공개 처리건수	비공개 사유[66]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부존재
누 계	1,349	3	2	88	41	190	617	9	-	399
2013	183	-	1	2	3	15	80	1	-	81
2012	226	-	-	1	6	32	86	1	-	100
2011	172	-	-	27	9	41	62	-	-	33
2010	229	-	1	24	4	24	116	-	-	60
2009	225	1	-	7	4	35	88	7	-	83

6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표 5-2-9> 정보공개 불복신청 및 처리현황

(단위 : 건)

구분	이의신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				
	신청건수	처리결과				청구건수	계류중	심판결과			제기건수	계류중	소송결과		
		취하·각하	기각	인용	기각 및 인용			취하·각하	기각	인용			취하·각하	기각	인용
누 계	76	25	32	10	9	5	–	–	2	3	2	–	–	1	1
2013	8	5	2	–	1	1	–	–	1	–	–	–	–	–	–
2012	11	4	4	–	3	2	–	–	–	2	1	–	–	–	1
2011	9	6	3	–	–	–	–	–	–	–	–	–	–	–	–
2010	16	4	8	–	4	–	–	–	–	–	–	–	–	–	–
2009	6	–	6	–	–	–	–	–	–	–	1	–	–	1	–

3. 청문회

<표 5-2-10> 청문회 개최 현황

개최일시	청문회 주제	진술인(관계기관)
2001.12. 7.	테러방지법(안)의 정책과 대안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외
2003. 2.20.	기간제교원(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청문회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외 6인
2003. 4. 8.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쟁점과 대안에 대한 청문회	교육인적자원부 외
2003. 4. 9.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청문회	
2003.12. 9.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보장방안 마련을 위한 청문회	법무부, 보건복지부 외
2003.12.11.	채용신체검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청문회	노동부, 행정자치부, 국립보건원 외
2003.12.12.	범죄예방을 위한 CCTV와 인권에 대한 청문회	
2004. 4.28.	사형제도 개선을 위한 청문회	
2005. 1.18.	신원조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청문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외
2005. 3.16.	비정규근로관련 입법안에 대한 청문회	노동부 외
2005. 7.14.	난민의 인권보호 정책제안 청문회	법무부 외 9인
2005.10.19.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청문회	병무청, 국방부 외
2006. 7.11.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의 학습권 보장 방안 청문회	교육인적자원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외
2007. 8.17.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입법 청문회	노동부 외 7인
2007.10.30.	집회금지통고 제도 및 사전차단조치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 방안 마련을 위한 청문회	경찰청 외

4. 업무협약

<표 5-2-11> 업무협약 체결 현황

(단위 : 건)

구 분	누 계	2001~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체결건수	35	–	1	9	5	3	5	4	3	5
국가기관	–	–	–	–	–	–	–	–	–	–
지방자치단체	5	–	–	–	2	1	2	–	–	–
교육기관 (교육청, 대학교 등)	17	–	1	8	3	1	–	–	1	3
외국 국가인권기구	4	–	–	1	–	1	1	1	–	–
공·사단체	8	–	–	–	–	–	2	2	2	2
기업	1	–	–	–	–	–	–	1	–	–

5. 대한민국인권상, 인권보도상

<표 5-2-12> 대한민국 인권상 및 인권보도상 시상 현황

연 도	대한민국 인권상					인권보도상
	합 계	훈장	포장	위원장 표창	협조상	위원장 표창
누 계	192명 (52단체포함)	7명	7명	173명 (52단체)	5명	10개 언론사 (52명)
2013	17명 (3단체포함)	1명	1명	15명 (3단체포함)	–	6개 언론사 (35명)
2012	17명 (4단체포함)	1명	1명	15명 (4단체포함)	–	4개 언론사 (17명)
2011	16명 (7단체포함)	1명	1명	14명 (7단체포함)	–	
2010	11명 (1단체포함)	1명	1명	9명 (1단체포함)	–	
2009	12명 (5단체포함)	1명	–	11명 (5단체포함)	–	

6. 과태료 및 보상금

<표 5-2-13> 과태료 부과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건 수	5	1	1	-	-	-

※ 2002년 2건, 2007년 1건 부과, <표 5-2-14> 과태료 부과 내역 참고

<표 5-2-14> 과태료[67] 부과 내역

(단위 : 원)

연 도	부과대상자	부과사유	처분 금액	징수결과	비 고
2002	주한미군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10,000,000원 - 2호 5백만원 - 3호 5백만원	불납결손처리	시효완성(2007년)
2002	○○교도소 보안과장	법 제63조제1항제2호	1,000,000원	50만원 징수	과태료 재판결과, 50만원으로 감액
2007	○○정신병원	법 제63조제1항제3호	3,000,000원	전액 징수	-
2009	○○병원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5,000,000원 - 1호 2백만원 - 3호 3백만원	300만원 징수	과태료 재판결과, 3백만원으로 감액
2010	전 ○○구치소장	법 제63조제1항제3호	5,000,000원	-	과태료 재판결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

<표 5-2-15> 보상금[68] 지급 현황

(단위 : 만원, 건)

연 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지급건수 (합계)	침해	차별	비고
누 계	16,500	13,770	3,470	101건	55건 8,700	46건 5,070	
2013	800	950	-	6건	2건 300	4건 650	
2012	800	990	-	6건	2건 350	4건 640	
2011	800	1,000	-	11건	5건 500	6건 500	
2010	800	1,000	-	7건	4건 600	3건 400	
2009	1,000	1,000	-	5건	2건 350	3건 650	

67) 법 제63조(과태료)

68) 법 제55조(불이익 금지와 지원)제2항

제2부 국내 인권통계

제 1 장 총론 및 일반현황
제 1 절 총론
제 2 절 일반현황

제 2 장 주요 인권취약계층별 현황
제 1 절 여성
제 2 절 아동·청소년
제 3 절 장애인
제 4 절 노인
제 5 절 외국인, 난민
제 6 절 북한이탈주민, 재외동포
제 7 절 군

제 3 장 시민·정치적 권리
제 1 절 생명권
제 2 절 신체의 자유
제 3 절 공정한 재판을 보호받을 권리
제 4 절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제 5 절 거주·이전의 자유
제 6 절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제 7 절 언론·출판의 자유
제 8 절 집회·결사의 자유
제 9 절 참정권

제 4 장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제 1 절 사회보장권
제 2 절 노동권
제 3 절 건강권·환경권
제 4 절 교육권·문화권
제 5 절 주거권

제1장 총론 및 일반현황

제1절 총론

인권은 국민의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 영역은 국가 정책의 전 분야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로 광범위하다. 또한 민주주의의 발전과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권 증진의 요구는 물론 새로운 인권 문제가 끊임없이 복잡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는 사회의 인권상황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인권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여야할 필요와 책임이 날로 증대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필요성을 절감하고,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모아 '2012년 인권통계집'에 수록하였다. 그러나 당시 인권의 포괄적 특성에 따른 인권목록과 인권통계의 기준이 되는 지표의 개발이 미진하였던 관계로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하여 수록된 통계자료가 인권의 어떠한 가치 및 영역에 연관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2013년 국내 인권통계는 '2012년 인권통계집'에 수록된 통계자료의 축적이라는 연속성을 꾀하면서도 위원회의 2013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인 「국가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지표선정 및 지수개발」의 연구결과를 반영하였다. 그 결과 이번에 수록된 통계자료는 통계청을 비롯한 국가기관에서 발간한 통계연감 및 백서 등의 자료 중 국내 인권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기초통계를 인권 영역 및 대상별 인권지표를 기준에 두고 선정함으로써, 인권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였다.

이번 국내 인권통계는 위와 같은 관점에서 지난해와 다르게 인권의 영역을 시민 · 정치적 권리와 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로 대별하고, 주요 인권취약계층에 관한 통계를 배치하는 등 4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제2절 일반현황

일반현황은 총인구, 인구성장률, 성 및 연령별 인구, 지역별 인구로 구성하였다. 총인구, 인구성장률, 성 및 연령별 인구는 통계청에서 발간한 '2013 한국의 사회지표'를 인용한 바, 2013년 우리나라 인구는 5,022만 명으로 2030년 5,216만 명까지 성장하고, 이후로 감소해 2040년 5,109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역별 인구는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자료를 인용하였다.

<표 1-2-1> 총인구, 인구성장률

(단위 : 천명)

연 도	총인구[1] (연앙추계인구)	출 생[2)3)]	사 망[2)3)]	인 구 성 장 률[1)4)] (%)
1970	32,241	1 007	259	2.21
1975	35,281	874	271	1.70
1980	38,124	863	277	1.57
1985	40,806	655	240	0.99
1990	42,869	650	242	0.99
1995	45,093	715	243	1.01
2000	47,008	635	246	0.84
2005	48,138	435	244	0.21
2010	49,410	470	255	0.46
2011	49,779	471	257	0.75
2012	50,004	485	267	0.45
2013	50,220	437	267	0.43
2014	50,424	455	299	0.41
2015	50,617	456	308	0.38
2020	51,435	451	357	0.28
2025	51,972	442	403	0.16
2030	52,160	409	453	0.01
2035	51,888	358	507	-0.19
2040	51,091	325	576	-0.39

자료 : 통계청,「2013 한국의 사회지표」 2014. 3.
주 : 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1. 12.
2)「인구통태통계연보(총괄·출생·사망)」각 년도
3) 2014년 이후는 장래인구추계임
4) 전년비임

<표 1-2-2> 성 및 연령별 인구

(단위 : 천명)

	2013						2015					
	인 구 (1,000명)			구성비 (%)			인 구 (1,000명)			구성비 (%)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계	50,220	25,133	25,087	100.0	100.0	100.0	50 617	25 303	25 315	100.0	100.0	100.0
0~4 세	2,289	1,180	1,109	4.6	4.7	4.4	2 297	1 186	1 111	4.5	4.7	4.4
5~9 세	2,293	1,185	1,109	4.6	4.7	4.4	2 267	1 169	1 098	4.5	4.6	4.3
10~14 세	2,788	1,455	1,333	5.6	5.8	5.3	2 476	1 284	1 191	4.9	5.1	4.7
15~19 세	3,350	1,767	1,583	6.7	7.0	6.3	3 175	1 664	1 512	6.3	6.6	6.0
20~24 세	3,424	1,828	1,596	6.8	7.3	6.4	3 526	1 888	1 638	7.0	7.5	6.5
25~29 세	3,350	1,751	1,599	6.7	7.0	6.4	3 279	1 728	1 551	6.5	6.8	6.1
30~34 세	4,016	2,062	1,954	8.0	8.2	7.8	3 807	1 970	1 837	7.5	7.8	7.3
35~39 세	3,887	1,984	1,902	7.7	7.9	7.6	3 846	1 961	1 885	7.6	7.8	7.4
40~44 세	4,383	2,227	2,156	8.7	8.9	8.6	4 240	2 156	2 084	8.4	8.5	8.2
45~49 세	4,148	2,109	2,040	8.3	8.4	8.1	4 226	2 130	2 096	8.3	8.4	8.3
50~54 세	4,253	2,134	2,118	8.5	8.5	8.4	4 256	2 142	2 113	8.4	8.5	8.3
55~59 세	3,466	1,726	1,740	6.9	6.9	6.9	3 857	1 923	1 934	7.6	7.6	7.6
60~64 세	2,434	1,181	1,253	4.8	4.7	5.0	2 741	1 334	1 407	5.4	5.3	5.6
65~69 세	1,935	913	1,022	3.9	3.6	4.1	2 121	1 008	1 113	4.2	4.0	4.4
70~74 세	1,724	756	968	3.4	3.0	3.9	1 721	763	958	3.4	3.0	3.8
75~79 세	1,257	504	753	2.5	2.0	3.0	1 371	558	813	2.7	2.2	3.2
80~84 세	751	249	502	1.5	1.0	2.0	859	297	562	1.7	1.2	2.2
85~89 세	334	92	242	0.7	0.4	1.0	388	106	282	0.8	0.4	1.1
90~94 세	113	25	88	0.2	0.1	0.3	134	29	104	0.3	0.1	0.4
95~99 세	22	4	18	0.0	0.0	0.1	26	5	22	0.1	0.0	0.1
100세이상	3	0	2	0.0	0.0	0.0	3	0	3	0.0	0.0	0.0

자료 : 통계청,「2013 한국의 사회지표」2014. 3.

<표 1-2-3> 지역별 인구

(단위 : 명)

구 분 / 시·도별		시·군·구				행정시·자치구가 아닌구		세대수	인구(명)
		계	시	군	구	시	구		
계(17)		227	75	83	69	2	33	20,456,588	51,141,463
특별시	서울	25	–	–	25	–	–	4,182,351	10,143,645
광역시	부산	16	–	1	15	–	–	1,404,663	3,527,635
	대구	8	–	1	7	–	–	960,265	2,501,588
	인천	10	–	2	8	–	–	1,118,988	2,879,782
	광주	5	–	–	5	–	–	563,599	1,472,910
	대전	5	–	–	5	–	–	584,877	1,532,811
	울산	5	–	1	4	–	–	431,595	1,156,480
특별자치시	세종	–	–	–	–	–	–	50,045	122,153
도	경기	31	28	3	–	–	20	4,712,324	12,234,630
	강원	18	7	11	–	–	–	664,913	1,542,263
	충북	12	3	9	–	–	2	644,062	1,572,732
	충남	15	8	7	–	–	2	857,699	2,047,631
	전북	14	6	8	–	–	2	766,699	1,872,965
	전남	22	5	17	–	–	–	815,769	1,907,172
	경북	23	10	13	–	–	2	1,139,387	2,699,440
	경남	18	8	10	–	–	5	1,320,887	3,333,820
특별자치도	제주	–	–		–	2	–	238,465	593,806

자료 : 안전행정부,「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2014 4.
주 : 세대수·인구 : 2014.1.1 현재 주민등록 잠정 통계임

제2장 주요 인권취약계층별 현황

제1절 여성

1993년 채택된 '비엔나 인권선언 및 행동계획(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69]'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의 제거, 모든 형태의 성희롱, 착취, 인신매매의 제거 등을 설정하였고, 유엔인권 협약 가운데 1997년 채택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70]에서 남녀의 동등한 권리, 성별에 따른 차별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 등을 근거로 여성 관련 통계는 여성가구주,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 성폭력 발생(검거) 건수 현황,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범죄위험),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및 대처방법, 성별 경제활동인구, 성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로 구성하였다.

69) 1993년 비엔나에서 개최된 세계인권회의(The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에서 채택된 '비엔나 인권선언 및 행동계획'(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에서는 여성과 여아의 인권은 불가양, 불가결, 불가분한 보편적 인권의 한 부분이며, 국가, 지역, 국제차원에서 여성이 정치, 시민, 경제, 사회, 문화생활에 대한 동등한 참여와 모든 성차별의 철폐를 국제사회의 우선목표로 설정하고 있다.(「국가인권지수개발을 위한 지표선정 및 지수개발」 p170 참조)

70) 유엔인권 협약 가운데 1979년 채택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이하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는 '여성차별'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서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남녀동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으로 풀이했다.(「국가인권지수개발을 위한 지표선정 및 지수개발」 p169 참조)

<표 2-1-1> 여성가구주

(단위 : 천가구, %)

	가 구	여 성 가구주	여성가구주 비 율(%)	남 성 가구주
2000	14,507	2,683	18.5	11,824
2005	15,971	3,467	21.7	12,504
2010	17,359	4,457	25.7	12,903
2011	17,687	4,646	26.3	13,041
2012	17,951	4,812	26.8	13,138
2013	18,206	4,980	27.4	13,226
2014	18,458	5,147	27.9	13,310
2015	18,705	5,313	28.4	13,392
2020	19,878	6,114	30.8	13,764
2025	20,937	6,828	32.6	14,110
2030	21,717	7,374	34.0	14,342
2035	22,261	7,823	35.1	14,438

자료 : 통계청, 「2013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2014.6

<표 2-1-2> 강력범죄(흉악)[1] 피해자 중 여성비율

(단위: 건수, %)

구분	전체	여성	남성	불상	여성비율 %
2005년	18,860	14,847	3,736	277	78.7
2006년	20,038	15,938	3,838	262	79.5
2007년	20,449	16,006	4,355	88	78.3
2008년	22,430	17,479	4,712	239	77.9
2009년	25,188	19,254	5,649	285	76.4
2010년	27,074	20,930	4,403	1,741	77.3
2011년	28,854	23,544	4,553	757	81.6
2012년	26,328	22,381	3,754	193	85.0

자료 : 대검찰청(각 연도),「범죄분석」2013년 범죄분석(2013.10.16.발간) 매년

주 : 1) 살인, 강도, 강간, 방화를 포함

※「2013 인권통계」 신설

<표 2-1-3> 성폭력 발생(검거) 건수 현황

(단위: 건수,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발생건수	11,757	13,573	13,634	15,094	16,156	19,939	22,034	21,346
검거건수	10,365	12,501	12,361	13,577	14,902	17,652	18,591	17,892
검거율	88.2	92.1	90.7	89.9	92.2	88.5	84.4	83.8

자료 : 대검찰청(각 연도), 「범죄분석」 매년

※「2013 인권통계」 신설

<표 2-1-4>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범죄위험)

(단위: %)

구분		계	안전			보통	불안		
				매우	비교적			매우	비교적
2010년	여성	100.0	6.4	0.3	6.1	25.8	67.9	47.2	20.6
	남성	100.0	10.0	0.7	9.3	31.6	58.4	44.9	13.6
2012년	여성	100.0	6.8	0.4	6.4	23.8	69.4	45.2	24.2
	남성	100.0	11.4	0.9	10.5	29.8	58.7	42.5	16.2

자료 : 통계청(각 연도), 「사회조사」

주 : 조사대상이 15세 이상 인구

※「2013 인권통계」 신설

<표 2-1-5>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및 대처방법

(단위: %)

구분		계	두려운곳 없음	두려운곳 있음	야간보행대처방법						
					아는 사람 동행	택시 이용	두려운 곳 피해 다님	그냥 다님	낮이나 다음기회로 미룸	호신도구 휴대	기타
2001년	전체	100.0	51.4	48.6	7.1	8.3	13.4	60.1	10.4	0.2	0.5
	여성	100.0	41.2	58.8	8.4	9.2	14.3	55.5	11.9	0.2	0.4
	남성	100.0	62.2	37.8	4.9	6.7	12.0	67.6	7.9	0.3	0.5
2005년	전체	100.0	57.4	42.6	8.3	7.6	15.2	56.9	11.3	0.4	0.3
	여성	100.0	46.1	53.9	9.7	8.8	15.9	51.4	13.5	0.3	0.4
	남성	100.0	69.2	30.8	5.6	5.4	13.9	67.0	7.2	0.5	0.2
2010년	전체	100.0	59.4	40.6	6.9	6.0	14.6	56.2	14.9	0.4	1.1
	여성	100.0	48.3	51.7	8.2	7.0	15.7	48.8	18.7	0.4	1.2
	남성	100.0	70.9	29.1	4.4	4.1	12.5	69.9	7.8	0.3	1.0
2012년	전체	100.0	56.0	44.0	7.6	6.6	16.6	52.4	15.7	0.5	0.6
	여성	100.0	43.3	56.7	9.2	7.9	18.7	43.7	19.3	0.5	0.7
	남성	100.0	69.1	30.9	4.7	4.1	12.6	68.9	8.9	0.4	0.3

자료 : 통계청(각 연도), 「사회조사」

주 : 1) 야간보행대처방법의 총합은 100.0%

2) 15세 이상 인구(2012년은 13세 이상 인구)

※「2013 인권통계」 신설

<표 2-1-6> 성별 경제활동인구

(단위 : 천명, %, %p)

연도	전 체		여 성		남 성		남녀차이 (참가율)
	경제활동인구	참가율	경제활동인구	참가율	경제활동인구	참가율	
1970	10,062	57.6	3,615	39.3	6,447	77.9	38.6
1975	12,193	58.3	4,371	40.4	7,822	77.4	37.0
1980	14,431	59.0	5,412	42.8	9,019	76.4	33.6
1985	15,592	56.6	5,975	41.9	9,617	72.3	30.4
1990	18,539	60.0	7,509	47.0	11,030	74.0	27.0
1995	20,845	61.9	8,410	48.4	12,435	76.4	28.0
2000	22,134	61.2	9,101	48.8	13,034	74.4	25.6
2005	23,743	62.0	9,860	50.1	13,883	74.6	24.5
2010	24,748	61.0	10,256	49.4	14,492	73.0	23.6
2011	25,099	61.1	10,416	49.7	14,683	73.1	23.4
2012	25,501	61.3	10,609	49.9	14,891	73.3	23.4
2013	25,873	61.5	10,802	50.2	15,071	73.2	23.0

자료 : 통계청, 「2013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2014.6

주 : 1999년 이전은 실업자의 구직기간이 1주 기준

<표 2-1-7> 성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

(단위: 천명, %, %p)

연도	임금근로자				비정규직						
	전체	여성	남성	남녀 차이	전체	비율	여성	비율	남성	비율	남녀 차이
2003년	14,149	5,866	8,283	2,417	4,606	32.6	2,320	39.5	2,286	27.6	-34
2004년	14,584	6,096	8,489	2,393	5,394	37.0	2,662	43.7	2,732	32.2	70
2005년	14,968	6,286	8,682	2,396	5,483	36.6	2,747	43.7	2,736	31.5	-11
2006년	15,351	6,442	8,909	2,467	5,457	35.5	2,752	42.7	2,705	30.4	-47
2007년	15,882	6,647	9,235	2,588	5,703	35.9	2,796	42.1	2,907	31.5	111
2008년	16,104	6,737	9,366	2,629	5,445	33.8	2,746	40.8	2,699	28.8	-47
2009년	16,479	6,964	9,515	2,551	5,754	34.9	3,073	44.1	2,681	28.2	-392
2010년	17,048	7,265	9,783	2,518	5,685	33.3	3,037	41.8	2,649	27.1	-387
2011년	17,510	7,476	10,034	2,558	5,995	34.2	3,203	42.8	2,791	27.8	-412
2012년	17,734	7,600	10,134	2,534	5,911	33.3	3,154	41.5	2,757	27.2	-397
2013년	18,240	7,848	10,392	2,544	5,946	32.6	3,187	40.6	2,758	26.5	-429

자료 :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2013 인권통계」 신설

제2절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와 국가로부터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고, 법률로써 「아동복지법」 제2조[71]에 아동의 권리보장과 「청소년기본법」 제5조[72]에 청소년의 권리보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아동의 권리가 국제협약으로 제정된 것은 1989년 국제연합총회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73]을 채택하여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과 참여 등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규정 등을 근거로 아동·청소년 관련 통계는 국내외 입양 현황, 학령인구, 어린이집 현황(시·도), 어린이집 정·현원 현황, 어린이집 연도별 보육아동 현황, 아동복지시설 수 및 보호아동 현황, 연도별 요보호아동 발생 및 조치현황, 아동학대 사례 유형, 아동빈곤율, 연령별 3대 사망원인 구성비 및 사망률, 청소년성매매 발생 및 검거 조치 현황, 영양섭취부족자 및 에너지/지방과잉섭취자 분율 추이, 문제유형별 상담실적으로 구성하였다.

---

71) 「아동복지법」 제2조(기본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72) 「청소년기본법」 제5조 ①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② 청소년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③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④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청소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3.24]

73) 1989년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권리라는 4개의 주요 영역을 규정하고 있다. '생존의 권리'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발달의 권리'는 교육, 놀이, 여가, 정보를 누릴 권리, 문화활동,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보호받을 권리'는 각종 착취와 학대,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참여의 권리'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권리,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아동자신의 능력에 부응하여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말한다.(「국가인권지수개발을 위한 지표선정 및 지수개발」 p180 참조)

<표 2-2-1> 국내 외 입양 현황

(단위 : 명,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국 내	1,461	1,332	1,388	1,306	1,314	1,462	1,548	1,125
	41.0	41.2	52.3	51.1	53.9	59.1	62.8	59.8
국 외	2,101	1,899	1,264	1,250	1,125	1,013	916	755
	59.0	58.8	47.7	48.9	46.1	40.9	37.2	40.2
계	3,562	3,231	2,652	2,556	2,439	2,475	2,464	1,88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여성가족부,「2013 청소년 백서」, 2013.12

<표 2-2-2> 학령인구

(단위 : 천명)

연 도	계 (6~21세)	6~11세 (초등학교)	12~14세 (중학교)	15~17세 (고등학교)	18~21세 (대학교)
1960	8,552	3,629	1,566	1,417	1,941
1970	12,604	5,711	2,574	2,101	2,218
1980	14,401	5,499	2,599	2,671	3,632
1990	13,361	4,786	2,317	2,595	3,663
2000	11,383	4,073	1,869	2,166	3,275
2005	10,575	4,016	2,058	1,864	2,637
2010	10,012	3,276	1,974	2,090	2,672
2011	9,825	3,098	1,913	2,064	2,750
2012	9,596	2,923	1,859	2,019	2,795

자료 : 여성가족부,「2013 청소년 백서」, 2013.12

<표 2-2-3> 어린이집 현황(시·도)

(단위 : 개소)

구 분	계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 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계	43,770	2,332	1,439	868	14,751	23,632	129	619
서 울	6,742	750	39	167	2,337	3,258	26	165
부 산	1,897	152	84	38	814	776	5	28
대 구	1,590	39	123	34	726	646	5	17
인 천	2,263	125	10	22	799	1,255	8	44
광 주	1,251	31	108	24	401	658	9	20
대 전	1,680	28	42	17	437	1,121	4	31
울 산	933	32	13	5	459	402	2	20
세종시	118	5	8	4	36	61	–	4
경 기	13,364	546	72	134	4,035	8,387	54	136
강 원	1,265	83	115	46	412	585	4	20
충 북	1,212	56	109	35	434	552	5	21
충 남	2,083	65	126	61	660	1,139	4	28
전 북	1,647	54	147	97	497	841	–	11
전 남	1,222	80	178	54	389	506	1	14
경 북	2,273	132	85	39	924	1,067	–	26
경 남	3,626	133	102	51	1,115	2,197	2	26
제 주	604	21	78	40	276	181	–	8

자료 : 보건복지부, 「2013년 보육통계」, 2014.

<표 2-2-4> 어린이집 정원·현원 현황

(단위 : 명, %)

구 분		계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계	정 원	1,782,459	170,050	139,669	62,820	937,632	423,533	3,972	44,783
	현 원	1,486,980	154,465	108,834	51,684	770,179	364,113	3,226	34,479
	이용률	83.4	90.8	77.9	82.3	82.1	86.0	81.2	77.0
서 울	정 원	270,458	60,375	2,617	8,765	128,229	57,916	786	11,770
	현 원	242,648	56,064	2,371	7,613	114,716	52,102	673	9,109
	이용률	89.7	92.9	90.6	86.9	89.5	90.0	85.6	77.4
부 산	정 원	87,238	11,763	7,223	2,968	48,888	14,518	140	1,738
	현 원	74,317	10,694	5,829	2,524	40,823	13,029	111	1,307
	이용률	85.2	90.9	80.7	85.0	83.5	89.7	79.3	75.2
대 구	정 원	79,638	2,385	15,098	2,442	46,678	11,762	125	1,148
	현 원	63,505	2,077	11,813	1,952	37,185	9,576	109	793
	이용률	79.7	87.1	78.2	79.9	79.7	81.4	87.2	69.1
인 천	정 원	92,290	8,197	1,126	1,638	55,737	22,720	262	2,610
	현 원	81,796	7,637	955	1,456	49,126	20,685	185	2,022
	이용률	88.6	89.9	84.8	88.9	88.1	91.0	70.6	77.5
광 주	정 원	62,582	2,729	12,441	1,998	32,018	11,668	405	1,323
	현 원	51,274	2,294	9,335	1,629	26,419	10,203	332	1,062
	이용률	81.9	84.1	75.0	81.5	82.5	87.4	82.0	80.3
대 전	정 원	55,106	1,570	3,878	937	25,057	20,765	180	2,719
	현 원	47,163	1,471	3,398	842	21,299	17,775	124	2,254
	이용률	85.6	93.7	87.6	89.9	85.0	85.6	68.9	82.9
울 산	정원	39,629	2,174	962	516	27,387	7,432	34	1,124
	현원	34,269	2,093	916	461	23,303	6,613	11	872
	이용률	86.5	96.3	95.2	89.3	85.1	89.0	32.4	77.6
세종시	정원	6,321	488	997	397	2,380	1,170	–	889
	현원	5,158	484	794	374	1,978	1,012	–	516
	이용률	81.6	99.2	79.6	94.2	83.1	86.5	0.0	58.0

(단위 : 명, %)

구 분		계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경기도	정 원	472,497	38,832	6,308	10,677	253,796	150,539	1,468	10,877
	현 원	397,656	36,142	5,322	8,888	208,046	129,228	1,258	8,772
	이용률	84.2	93.1	84.4	83.2	82.0	85.8	85.7	80.6
강원도	정 원	56,846	6,397	9,786	3,172	25,567	10,705	98	1,121
	현 원	45,113	5,515	7,563	2,358	19,930	8,790	77	880
	이용률	79.4	86.2	77.3	74.3	78.0	82.1	78.6	78.5
충 북	정 원	62,739	4,217	11,343	3,120	32,492	9,862	233	1,472
	현 원	51,476	3,633	8,574	2,552	26,572	8,819	146	1,180
	이용률	82.0	86.2	75.6	81.8	81.8	89.4	62.7	80.2
충 남	정 원	88,126	3,954	11,595	4,088	46,599	19,714	128	2,048
	현 원	69,395	3,354	8,579	3,240	35,528	17,140	95	1,459
	이용률	78.7	84.8	74.0	79.3	76.2	86.9	74.2	71.2
전 북	정 원	75,181	3,568	12,678	7,420	36,364	14,639	–	512
	현 원	59,050	3,070	9,859	5,744	27,716	12,346	–	315
	이용률	78.5	86.0	77.8	77.4	76.2	84.3	0.0	61.5
전 남	정 원	69,771	5,194	17,976	4,402	32,039	8,998	73	1,089
	현 원	56,334	4,298	13,751	3,684	25,865	7,992	67	677
	이용률	80.7	82.7	76.5	83.7	80.7	88.8	91.8	62.2
경 북	정 원	97,889	7,062	8,834	2,998	58,899	18,212	–	1,884
	현 원	73,825	5,704	6,108	2,369	43,495	14,796	–	1,353
	이용률	75.4	80.8	69.1	79.0	73.8	81.2	0.0	71.8
경 남	정 원	132,963	9,687	8,538	3,860	69,345	39,524	40	1,969
	현 원	106,745	8,839	7,110	3,109	54,871	31,225	38	1,553
	이용률	80.3	91.2	83.3	80.5	79.1	79.0	95.0	78.9
제 주	정 원	33,185	1,458	8,269	3,422	16,157	3,389	–	490
	현 원	27,256	1,366	6,557	2,889	13,307	2,782	–	355
	이용률	82.1	93.7	79.3	84.4	82.4	82.1	0.0	72.4

자료 : 보건복지부,「2013년 보육통계」, 2014.

<표 2-2-5> 어린이집 연도별 보육아동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2013	계	1,486980	154,465	108,834	51,684	770,179	364,113	3,226	34,479
	남	768,523	79,934	57,048	26,670	397,270	187,899	1,735	17,967
	녀	718,457	74,531	51,786	25,014	372,909	176,214	1,491	16,512
2012	계	1,487,361	149,677	113,049	51,914	768,256	371,671	2,913	29,881
	남	769,573	77,321	59,562	26,867	397,021	191,722	1,572	15,508
	녀	717,788	72,356	53,487	25,047	371,235	179,949	1,341	14,373
2011	계	1,348,729	143,035	112,688	50,676	706,647	308,410	2,286	24,987
	남	699,806	73,850	59,408	26,341	366,164	159,878	1,248	12,917
	녀	648,923	69,185	53,280	24,335	340,483	148,532	1,038	12,070
2010		1,279,910	137,604	114,054	51,126	671,891	281,436	1,898	21,901
2005		989,390	111,911	125,820	56,374	552,360	129,007	933	12,985
2000		686,000	99,666	157,993	15,949	336,625	67,960	미분류	7,807
1995		293,747	78,831	77,187	591	92,634	42,116	미분류	2,388

자료 : 보건복지부, 「2013년 보육통계」, 2014.

<표 2-2-6> 아동복지시설 수 및 보호아동 현황

(단위: 개소, 명)

구 분	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시설수	입소자	퇴소자	연말 현재 수용자	시설수	입소자	퇴소자	연말 현재 수용자
2009	239	1,914	2,409	16,239	11	532	486	514
2010	238	1,983	2,435	15,787	11	646	665	495
2011	242	2,015	2,489	15,313	10	724	764	455
2012	243	1,996	2,609	14,700	11	759	717	497
서 울	35	284	386	2,519	2	213	191	130
부 산	19	257	334	1,782	1	22	27	30
대 구	18	80	118	768	1	5	4	34
인 천	9	100	111	647	–	–	–	–
광 주	9	55	87	586	–	–	–	–
대 전	12	125	158	456	1	273	258	128
울 산	1	20	21	104	–	–	–	–
세 종	1	4	9	47	–	–	–	–
경 기	27	236	299	1,698	2	89	66	58
강 원	9	32	70	402	–	–	–	–
충 북	11	80	118	648	1	30	31	28
충 남	13	89	109	683	–	–	–	–
전 북	14	123	147	782	1	65	63	58
전 남	21	238	265	1,257	1	54	71	17
경 북	15	97	143	895	–	–	–	–
경 남	24	125	174	1,120	1	8	6	14
제 주	5	51	60	306	–	–	–	–

자료 : 통계청,「2013 한국통계연감」 2014.

(단위: 개소, 명)

구 분	자립지원시설				일시보호시설			
	시설수	입소자	퇴소자	연말 현재 수용자	시설수	입소자	퇴소자	연말 현재 수용자
2009	12	112	107	262	13	3,458	3,420	368
2010	12	103	130	235	14	2,733	2,699	402
2011	12	126	112	249	12	2,401	2,442	361
2012	12	109	102	256	12	1,986	2,012	335
서 울	3	45	46	81	5	1,236	1,236	154
부 산	1	12	8	32	1	44	47	5
대 구	2	11	7	42	1	26	31	14
인 천	–	–	–	–	2	109	117	27
광 주	1	15	14	22	1	56	61	55
대 전	1	5	5	16	–	–	–	–
울 산	–	–	–	–	–	–	–	–
세 종	–	–	–	–	–	–	–	–
경 기	–	–	–	–	2	515	520	80
강 원	–	–	–	–	–	–	–	–
충 북	1	9	7	18	–	–	–	–
충 남	1	5	8	19	–	–	–	–
전 북	1	5	3	15	–	–	–	–
전 남	1	2	4	11	–	–	–	–
경 북	–	–	–	–	–	–	–	–
경 남	–	–	–	–	–	–	–	–
제 주	–	–	–	–	–	–	–	–

<표 2-2-7> 연도별 요보호아동 발생 및 조치현황

(단위 : 명)

구분	총아동 발생수	귀가 및 연고자 인도	요보호아동의 발생원인									
			계	기아	미혼모 아동	미아	비행, 가출, 부랑	학대	부모빈 곤실직	부모 사망	부모 질명	부모 이혼 등
2008년	11,672	2,388	9,284	202	2,349	151	706	891	1,036	732	274	2,943
2009년	10,500	1,472	9,028	222	3,070	35	707	1,051	710	763	230	2,240
2010년	9,960	1,370	8,590	191	2,804	210	772	1,037	586	772	203	2,015
2011년	8,436	953	7,483	218	2,515	81	741	1,125	418	536	154	1,695
2012년	8,003	1,077	6,926	235	1,989	50	708	1,122	448	533	166	1,675
2013년	6,834	814	6,020	285	1,534	21	512	1,117	338	545	133	1,535

자료 : 보건복지부(각 연도),「요보호아동 발생 및 조치현황」2014년

※「2013 인권통계」 신설

구분	계	조치내용									
		시설입소					가정보호				
		소계	양육 시설 등	일시보 호시설	장애아 동시설	공동생 활가정	소계	소년소녀 가장	입양	가정 위탁	입양전 위탁
2008년	9,284	4,964	2,997	1,261	39	667	4,320	178	1,304	2,838	–
2009년	9,028	4,767	2,406	1,640	35	686	4,261	213	1,314	2,734	–
2010년	8,590	4,842	2,445	1,751	23	623	3,748	231	1,393	2,124	–
2011년	7,483	3,752	2,246	862	32	612	3,731	128	1,253	2,350	–
2012년	6,926	3,748	2,272	676	25	775	3,178	117	772	2,289	–
2013년	6,020	3,257	1,731	801	39	686	2,763	20	478	1,749	516

<표 2-2-8> 아동학대 사례유형(중복포함)

(단위 : 건수)

구분	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 임	유 기	중복학대
2001년	2,105	476	114	86	672	134	623
2002년	2,478	254	184	65	814	212	949
2003년	2,921	347	207	134	965	113	1,155
2004년	3,891	364	350	177	1,367	125	1,508
2005년	4,633	423	512	206	1,635	147	1,710
2006년	5,202	439	604	249	2,035	76	1,799
2007년	5,581	473	589	266	2,107	59	2,087
2008년	5,578	422	683	284	2,237	57	1,895
2009년	5,685	338	778	274	2,025	32	2,238
2010년	5,657	348	773	258	1,870	14	2,394
2011년	6,058	466	909	226	1,783	53	2,621
2012년	6,403	461	936	278	1,713	-	3,015
2013년	6,796	753	1,101	242	1,778	-	2,922

자료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통계」 2014년

※「2013 인권통계」 신설

<표 2-2-9> 아동빈곤율

(단위: %, 명)

구분	절대아동빈곤율	상대아동빈곤율	절대아동빈곤수	상대아동빈곤수
<1인가구 제외>				
2003년	5.4	10.3	642,798	1,182,289
2004년	6.4	11.1	610,066	1,254,024
2005년	5.7	11.8	632,989	1,310,398
2006년	5.7	11.0	621,665	1,199,704
2007년	5.2	11.4	632,164	1,221,469
2008년	7.8	10.6	558,849	1,117,698
2009년	4.8	10.9	505,817	1,125,185
2010년	4.7	10.1	473,056	1,016,567
2011년	4.4	10.3	432,740	1,013,005
<1인가구 포함>				
2006년	5.7	10.6	621,665	1,156,079
2007년	5.7	11.1	632,164	1,189,325
2008년	5.2	10.1	558,849	1,064,976
2009년	4.8	10.2	505,817	1,052,925
2010년	4.7	9.5	473,056	956,177
2011년	4.4	9.9	432,740	973,665

자료 : 여성가족부, 「2013 청소년백서」 2013.12.

주 : 빈곤아동수는 아동빈곤율을 이용하여 추계함.

※「2013 인권통계」 신설

<표 2-2-10> 연령별 3대 사망원인 구성비 및 사망률

(단위 : %, 인구 10만 명 당)

연 령	1위			2위			3위		
	사 망 원 인	구성비	사망률	사 망 원 인	구성비	사망률	사 망 원 인	구성비	사망률
1-9세	악성신생물(암)	17.0	2.4	운수 사고	14.8	2.1	선천 기형	9.1	1.3
10-19세	고의적자해(자살)	28.4	4.9	운수 사고	19.1	3.3	악성신생물(암)	15.7	2.7
20-29세	고의적자해(자살)	42.6	18.0	운수 사고	16.9	7.2	악성신생물(암)	11.2	4.7
30-39세	고의적자해(자살)	36.3	28.4	악성신생물(암)	19.7	15.4	운수 사고	8.2	6.4
40-49세	악성신생물(암)	28.8	50.3	고의적자해(자살)	18.8	32.7	간 질환	8.3	14.6
50-59세	악성신생물(암)	38.3	146.3	고의적자해(자살)	10.0	38.1	심장 질환	7.5	28.7
60-69세	악성신생물(암)	44.0	361.5	심장 질환	8.1	66.2	뇌혈관 질환	7.7	63.1
70-79세	악성신생물(암)	34.4	852.2	뇌혈관 질환	11.2	277.4	심장 질환	9.7	239.9
80세이상	악성신생물(암)	16.6	1477.6	심장 질환	11.5	1026.8	뇌혈관 질환	11.4	1018.5

자료 : 통계청, 「2013 사망원인통계」 2014년

주 : 심장 질환에는 허혈성 심장 질환 및 기타 심장 질환이 포함

※「2013 인권통계」 신설

<표 2-2-11> 청소년성매매 발생 및 검거조치 현황

(단위: 건, 명)

연도	검거인원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구속	불구속
2006년	1,745	149	1,596
2007년	2,582	126	2,456
2008년	2,112	81	2,031
2009년	2,182	125	2,057
2010년	1,345	56	1,289
2011년	2,006	41	1,945
2012년	4,457	124	4,333

자료 : 여성가족부, 「2013 청소년백서」 2013.12.

※「2013 인권통계」 신설

<표 2-2-12> 영양섭취부족자 및 에너지/지방과잉섭취자 분율 추이

(단위: %)

연령	영양섭취부족자 분율[1]				에너지/지방과잉섭취자 분율[2]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2세	8.2	4.9	11.4	9.3	0.6	1.8	3.0	0.7
3-5세	7.4	7.0	6.0	7.6	1.2	3.7	5.0	2.9
6-11세	7.9	7.5	4.3	7.3	4.1	4.1	5.6	8.4
12-18세	21.9	15.6	14.9	17.0	2.1	9.4	6.0	7.4
19-29세	19.2	14.8	15.4	17.1	8.7	10.7	8.3	12.5

자료 : 보건복지부, 「2012 국민건강통계」 2013.12.

주 : 1) 영양소 섭취부족: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또는 영양권장량)의 75% 미만이면서 칼슘, 철, 비타민 A, 리보플라빈의 섭취량이 평균필요량 미만인 분율.

2) 에너지/지방 섭취과잉: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의 125% 이상이면서 지방 섭취량이 적정 에너지 섭취비율을 초과한 분율.

※「2013 인권통계」 신설

<표 2-2-13> 문제유형별 상담실적

(단위 : 건, %)

상담 방법	구 분	가 족	비 행	학업및 진로	성	대인 관계	성 격	정신 건강	생활습관 태도	기타상담	계
개인 상담	건수	437	247	442	53	583	204	607	1	391	2,965
	비율	14.7	8.3	14.9	1.8	19.7	6.9	20.5	0.0	13.2	100.0
전화 상담	건수	495	636	524	517	640	138	334	61	1,714	5,059
	비율	9.8	12.6	10.4	10.2	12.7	2.7	6.6	1.2	33.8	100.0
게시판 상담	건수	631	115	710	187	1,604	288	440	79	889	4,943
	비율	12.8	2.3	14.4	3.8	32.4	5.8	8.9	1.6	18.0	100.0
채팅 상담	건수	1,781	539	2,816	858	6,048	1,031	2,183	254	4,582	20,092
	비율	8.9	2.7	14.0	4.3	30.1	5.1	10.9	1.3	22.8	100.0
계	**건수**	**3,344**	**1,537**	**4,492**	**1,615**	**8,875**	**1,661**	**3,564**	**395**	**7,576**	**33,059**
	비율	**10.1**	**4.6**	**13.6**	**4.9**	**26.9**	**5.0**	**10.8**	**1.2**	**22.9**	**100.0**

자료 : 보건복지부, 「2012년 보육통계」, 2012.12

* 2013년 보육통계에 자료가 없어 「2012 인권통계」 p185 인용

제3절 장애인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되고, 우리 「헌법」 제34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인도 기본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국가로부터 보호되어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2006년 12월 유엔에서는 생활 전 영역에서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담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74]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규정들을 근거로 장애인 통계는 등록장애인 수, 보육시설 형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현황, 특수보육시설 및 장애아동 수, 장애인 생활시설 및 입소자 수, 장애인 생활시설 수 및 입소 현황, 정신요양 시설 수 및 입소자 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특수학교, 특수교육 규모, 특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특수학급 설치유치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특수학급 미설치 초·중·고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장애인에 대한 가족 내 차별·폭력 정도,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경험 여부,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등으로 구성하였다.

74)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은 전문, 총칙, 자유권 및 경제·사회·문화권, 통계와 모니터링, 비준 등의 절차에 대한 규정으로 총 5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장애인 권리침해에 대한 개인진정절차 등 협약의 절차법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 18개조로 이루어진 선택의정서를 별도로 포함하고 있다. 각 조에서는 장애인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규정을 명시하고, 장애인에게 다양한 형태의 접근성 보장, 장애로 인한 차별금지, 인간의 천부적 존엄성과 가치 존중, 다양성의 인정, 장애인 인권의 촉진과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표 2-3-1> 등록장애인 수 - 연도별, 장애유형별

(단위 : 명, 천명, %)

구 분	2000	2005	2010	2011	2012
장애인구	958,196	1,789,443	2,517,312	2,519,241	2,511,159
(증가율)	(37.4)	(11.1)	(3.6)	(0.08)	(-0.3)
등록인구	47,733	48,782	50,516	50,734	50,948
(비 율)	(2.0)	(3.7)	(5.0)	(5.0)	(4.9)
지 체	606,422	965,014	1,337,722	1,333,429	1,322,131
뇌병변	33,126	168,585	261,746	260,718	257,797
시 각	90,997	189,933	249,259	251,258	252,564
청각/언어	87,387	175,587	277,610	278,530	276,332
지 적	86,793	127,881	161,249	167,479	173,257
자폐성	1,514	9,518	14,888	15,857	16,906
정 신	23,559	63,642	95,821	94,739	94,638
신 장	23,427	41,823	57,142	60,110	63,434
심 장	4,971	12,807	12,864	9,542	7,744
호흡기	-	11,728	15,551	14,671	13,879
간	-	5,160	7,920	8,145	8,588
안 면	-	1,490	2,696	2,715	2,709
장루·요루	-	9,575	13,072	13,098	13,374
간 질	-	6,700	9,772	8,950	7,806

자료 : 고용노동부, 「2013 장애인 통계」, 2013.12

주 : 1) 증가율(%)은 전년 등록장애인 대비, 비율은 주민등록인구 대비 등록장애인 수를 말함

2) 장애유형 확대 : 5개 유형 → 10개 유형(200.1) → 15개 유형(2003.7)

3) 장애유형 용어변경(2008.2) : 정신지체 → 지적장애, 발달장애 → 자폐성장애

<표 2-3-2> 등록장애인 수 - 성별, 장애유형별

(단위 : 명, 천명, %)

구 분	전 체		남 성		남 성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전 체	2,511,159	100.0	1,460,490	58.2	1,050,669	41.8
지 체	1,322,131	52.6	765,820	57.9	556,311	42.1
뇌병변	257,797	10.3	147,871	57.4	109,926	42.6
시 각	252,564	10.1	150,815	59.7	101,749	40.3
청 각	258,589	10.3	142,029	54.9	116,560	45.1
언 어	17,743	0.7	12,807	72.2	4,936	27.8
지 적	173,257	6.9	104,770	60.5	68,487	39.5
자폐성	16,906	0.7	14,370	85.0	2,536	15.0
정 신	94,638	3.8	49,891	52.7	44,747	47.3
신 장	63,434	2.5	36,240	57.1	27,194	42.9
심 장	7,744	0.3	4,834	62.4	2.910	37.6
호흡기	13,879	0.6	10,587	76.3	3,292	23.7
간	8,588	0.3	6,319	73.6	2,269	26.4
안 면	2,709	0.1	1,573	58.1	1,136	41.9
장루·요루	13,374	0.5	8,281	61.9	5,093	38.1
간 질	7,806	0.3	4,283	54.9	3,523	45.1

자료 : 고용노동부, 「2013 장애인 통계」, 2013.12.
주 : 1) 2012년 12월 말 기준임

<표 2-3-3> 보육시설 형태

(단위 : 명, 천명, %)

구 분	전국추정수	전 체	일반 보육시설	장애아통합 보육시설	장애전담 보육시설	다니지 않음
전 체	**43,292**	**100.0**	**3.9**	**14.1**	**6.2**	**75.8**
지 체	4,499	100.0	2.4	0.0	0.0	97.6
뇌병변	6,031	100.0	0.0	15.8	15.9	68.3
시 각	2,878	100.0	0.0	0.0	17.0	83.0
청 각	1,253	100.0	28.7	51.3	0.0	20.0
언 어	2,789	100.0	15.3	0.0	9.5	75.3
지 적	14,792	100.0	3.3	18.2	0.0	78.5
자폐성	8,090	100.0	1.4	22.2	12.1	64.3
정 신	-	-	-	-	-	-
신 장	216	100.0	100.0	0.0	0.0	0.0
심 장	2,467	100.0	0.0	0.0	0.0	100.0
호흡기	206	100.0	0.0	0.0	0.0	100.0
간	-	-	-	-	-	-
안 면	71	100.0	0.0	0.0	0.0	100.0
장루·요루	-	-	-	-	-	-
간 질	-	-	-	-	-	-

자료 : 고용노동부, 「2013 장애인 통계」, 2013.12
주 : 1) 만 12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함
2) 2012년 기준임

<표 2-3-4>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 체	시설 수	288	314	347	397	452	490	1,348
	입소인원	20,598	21,709	22,250	23,243	24,395	25,345	30,640
지체장애인 시 설	시설 수	30	33	33	38	40	39	40
	입소인원	2,281	2,283	2,292	2,230	2,055	2,102	2,057
시각장애인 시 설	시설 수	15	14	14	14	14	15	16
	입소인원	824	792	784	760	744	787	786
청각·언어장애인 시 설	시설 수	12	11	11	11	10	9	8
	입소인원	728	521	546	519	462	361	335
지적장애인 시 설	시설 수	122	131	144	172	196	226	278
	입소인원	8,408	9,325	9,192	9,539	10,178	10,788	11,748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시설 수	102	116	136	153	182	191	201
	입소인원	8,038	8,345	8,981	9,728	10,365	10,798	11,006
장애영유아 시 설	시설 수	7	9	9	9	10	10	10
	입소인원	319	443	455	467	491	509	510

자료 : 고용노동부, 「2013 장애인 통계」, 2013.12

주 : 1) 정신지체 → 지적장애로 용어 변경(2008.2)

2) 각 연도의 12월 말 기준임

<표 2-3-5> 특수보육시설 및 장애아동 수

(단위 : 개소, 명)

구 분	장애아 전담시설			장애아 통합시설		
	시설 수	장애아동 수	종사자 수 장애아반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시설 수	장애아동 수	종사자 수 장애아반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전 체	171	5,994	2,527	836	3,565	1,285
국·공립 보육어린이집	34	1,040	440	527	2,470	911
법인 보육어린이집	100	3,845	1,629	43	165	63
법인 외 민간보육어린이집	7	260	108	42	201	68
민간 개인 보육어린이집	28	813	337	195	672	230
가정 보육어린이집	2	36	13	26	46	9
부모협동 보육어린이집	-	-	-	1	3	1
직장 보육어린이집	-	-	-	2	8	3

자료 : 고용노동부,「2013 장애인 통계」, 2013.12

주 : 1) 장애인전담 보육시설 : 장애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상시 18명 이상의 장애아를 보육하는 시설 중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로 지정한 시설

2) 장애아통합 보육시설 : 정원의 20% 내에서 장애아반을 편성·운영하거나 장애아반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채 장애아를 3명이상 통합 보육하고 있는 시설

3) 국·공립 보육시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4) 법인 보육시설 :「사회복지법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5) 부모협동 보육시설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6) 가정 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7) 직장 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8) 민간 보육시설 : 위 시설에 해당하지 않은 보육시설로서 사회복지법인 외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법인 외 보육시설, 민간 개인 보육시설)

9) 장애아동 수 : 아동자격이 영유아(장애아무상보육)인 아동 수

10) 2012년 12월 말 기준임

<표 2-3-6> 장애인 생활시설 및 입소자 수

(단위 : 개소, 명)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년
시설 수			288	314	347	397	452	490
입소자 수			1,696	1,965	2,070	1,835	4,760	6,480
퇴소자 수			1,221	1,224	1,252	1,342	1,272	1,182
연말 현재수용인원			20,598	21,709	22,250	23,243	24,395	25,345
성 별	남 성		12,416	13,149	13,447	14,148	14,929	15,486
	여 성		8,182	8,560	8,803	9,095	9,466	9,859
연령별	18세 미만	남 성	2,923	2,983	3,171	2,873	2,696	2,542
		여 성	1,950	1,971	1,842	1,876	1,672	1,593
	18세 이상	남 성	9,493	10,166	10,276	11,275	12,233	12,944
		여 성	6,232	6,589	6,961	7,219	7,794	8,266
장애유형별	지 체		2,754	2,781	2,893	2,230	3,673	3,818
	시 각		823	848	875	760	873	797
	청각/언어		454	422	479	519	386	358
	지 적		12,948	13,685	13,493	9,539	14,338	15,322
	기 타		3,619	3,973	4,510	10,195	5,125	5,050

자료 : 고용노동부, 「2013 장애인 통계」, 2013.12

주 : 1) 정신지체 → 지적장애로 용어 변경(2008.2)

2) 각 연도의 12월 말 기준임

<표 2-3-7> 장애인 생활시설수 및 입소 현황

(단위: 명)

구 분	시설수	입소자		퇴소자					연말현재이용인원		
		위탁자	무연고자	연고자 인도	취업	전원	사망	기타	성별		
									계	남	여
2008	347	1,800	270	481	85	398	191	97	22,250	13,447	8,803
2009	397	1,371	464	510	62	440	219	111	23,243	14,148	9,095
2010	452	3,772	988	474	48	394	220	136	24,395	14,929	9,466
2011	490	4,158	2,322	472	34	317	198	161	25,345	15,486	9,859
2012	1,348	6,604	1,423	1,243	77	659	290	457	30,640	18,838	11,802
서 울	264	717	213	202	14	126	36	101	4,356	2,768	1,588
부 산	65	271	164	35	1	21	21	20	1,553	916	637
대 구	48	170	31	27	1	23	22	13	1,700	1,059	641
인 천	67	212	132	37	9	37	7	12	1,135	732	403
광 주	39	86	50	34	3	25	10	6	797	378	419
대 전	57	264	47	95	–	38	7	4	1,055	621	434
울 산	23	98	8	31	3	12	2	14	608	376	232
세 종	3	5	–	3	–	–	5	–	154	120	34
경 기	304	1,451	275	344	17	156	63	194	6,377	4,008	2,369
강 원	64	525	19	29	3	25	7	5	1,401	816	585
충 북	59	456	66	45	7	37	14	26	1,899	1,166	733
충 남	54	552	27	65	2	19	13	13	1,807	1,106	701
전 북	69	372	93	79	3	35	17	14	1,847	1,067	780
전 남	44	533	96	100	3	47	21	6	1,278	817	461
경 북	74	332	24	49	7	20	14	15	2,172	1,379	793
경 남	85	472	173	48	4	34	26	6	1,929	1,194	735
제 주	29	88	5	20	–	4	5	8	572	315	257

자료 : 통계청,「2013 한국통계연감」 2014.

(단위: 명)

구 분	연말현재이용인원								
	18세미만		18세이상		장애종별				
	남	여	남	여	지체	시각	청각언어	정신지체	기타
2008	3,171	1,842	10,276	6,961	2,893	875	479	13,493	4,510
2009	2,873	1,876	11,275	7,219	2,230	760	519	9,539	10,195
2010	2,696	1,672	12,233	7,794	3,673	873	386	14,338	5,125
2011	2,542	1,593	12,944	8,266	3,818	797	358	15,322	5,050
2012	2,749	1,635	16,089	10,167	2,956	774	302	14,441	12,167
서 울	492	315	2,276	1,273	655	220	60	2,502	919
부 산	177	110	739	527	179	16	2	1,072	284
대 구	168	88	891	553	305	9	6	1,046	334
인 천	113	48	619	355	76	65	13	611	370
광 주	84	49	294	370	112	54	20	477	134
대 전	108	77	513	357	96	72	7	608	272
울 산	88	52	288	180	35	19	47	257	250
세 종	–	–	120	34	6	2	1	73	72
경 기	520	327	3,488	2,042	172	14	25	12	6,154
강 원	131	71	685	514	60	70	1	762	508
충 북	227	142	939	591	307	124	89	1,101	278
충 남	98	47	1,008	654	242	2	6	1,191	366
전 북	128	71	939	709	85	49	3	1,237	473
전 남	105	51	712	410	99	34	9	714	422
경 북	126	72	1,253	721	265	14	9	1,207	677
경 남	124	82	1,070	653	213	7	4	1,258	447
제 주	60	33	255	224	49	3	–	313	207

<표 2-3-8> 정신요양 시설 수 및 입소자 수

(단위: 명)

구 분	시설수	입소자		퇴소자				
		위탁자	무 연고자	연고자 인도	치유취업	전원	사망	기타
2008	59	9,152	2,836	207	25	70	28	51
2009	59	9,430	2,681	253	27	65	31	19
2010	59	7,191	2,881	230	17	76	36	39
2011	59	8,607	2,807	529	18	112	67	41
2012	59	8,587	2,557	355	3	97	84	67
서 울	3	353	333	1	–	9	3	1
부 산	3	524	85	13	–	7	1	–
대 구	3	282	220	27	–	8	–	–
인 천	2	179	34	8	–	5	–	–
광 주	4	301	326	2	–	–	4	–
대 전	4	616	162	10	–	2	1	1
울 산	1	120	–	2	–	1	–	–
세 종	1	114	82	4	–	–	3	–
경 기	6	1,287	145	57	3	47	5	45
강 원	–	–	–	–	–	–	–	–
충 북	4	350	577	6	–	1	4	–
충 남	10	1,279	123	84	–	3	39	16
전 북	4	601	155	60	–	1	5	–
전 남	4	684	218	11	–	–	13	–
경 북	5	949	70	35	–	–	4	2
경 남	4	748	24	35	–	11	2	–
제 주	1	200	3	–	–	2	–	2

자료 : 통계청,「2013 한국통계연감」 2014.

(단위: 명)

구 분	연말현재입소자							
	성별			증상별				
	계	남	여	정신 분열증	우울증	간질	정신지체	노인성 약물중독·기타
2008	11,988	6,949	5,039	10,303	221	187	555	722
2009	12,111	7,137	4,974	10,445	220	179	612	655
2010	11,613	6,683	4,930	9,809	354	200	607	643
2011	11,414	6,586	4,828	9,815	83	134	615	767
2012	11,144	6,376	4,768	9,516	130	128	645	725
서 울	686	291	395	612	–	54	11	9
부 산	609	275	334	512	7	5	36	49
대 구	502	274	228	455	3	4	22	18
인 천	213	127	86	208	–	–	3	2
광 주	627	262	365	498	8	5	87	29
대 전	778	445	333	687	1	6	17	67
울 산	120	77	43	93	–	–	12	15
세 종	196	103	93	187	–	–	–	9
경 기	1,432	833	599	1,085	81	20	163	83
강 원	–	–	–	–	–	–	–	–
충 북	927	517	410	742	9	6	112	58
충 남	1,402	854	548	1,258	13	5	28	98
전 북	756	477	279	655	3	2	20	76
전 남	902	578	324	779	–	10	60	53
경 북	1,019	639	380	895	1	4	57	62
경 남	772	491	281	651	4	7	14	96
제 주	203	133	70	199	–	–	3	1

<표 2-3-9>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단위 : 개, %)

구 분	2003			2008			증감 (%p)
	법정의무 설치 수(a)	실제 설치 수(b)	설치율 (b/a)	법정의무 설치 수(a)	실제 설치 수(b)	설치율 (b/a)	
전 체	691,638	500,003	72.3	3,760,792	2,915,369	77.5	5.2
공동주택	138,533	91,484	66.0	563,445	468,813	83.2	17.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538,453	399,854	74.3	3,160,937	2,422,520	76.6	2.3
공 원	14,652	8,665	59.1	36,410	24,036	66.0	6.9

자료 : 고용노동부,「2013 장애인 통계」, 2013.12

주 : 1) 설치대상수(법정의무설치 수)가 2003년 대비 2008년 조사 시 5배 이상 많아진 것은 편의시설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2008년도 조사항목이 세분화되고 항목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2) 설치율은 법정의무설치수 대비 편의시설 설치항목의 비율임

3) 도로 제외

<표 2-3-10> 특수학교

(단위: 개, 명)

구분	학교수	학급수					
		합계	유치원 과정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전공과 과정
합계	162	4,274	285	1,392	1,061	1,134	402
국립	5	174	23	59	39	41	12
공립	66	2,098	78	641	548	591	240
사립	91	2,002	184	692	474	502	150

자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3 교육통계연보」2013.

주 : 전공과 과정은 특수학교에 설치된 전문직업 교육과정임.

구분	학생수						교직원수		교실수
	합계	유치원 과정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전공과 과정	교원수	사무직원 수	
합계	25,161	1,117	6,636	6,304	7,525	3,579	8,012	1,796	4,199
국립	965	129	259	200	280	97	349	179	187
공립	12,200	258	2,982	3,104	3,688	2,168	4,008	702	1,998
사립	11,996	730	3,395	3,000	3,557	1,314	3,655	915	2,014

<표 2-3-11> 특수교육 규모

(단위 : 교, 학급, 명)

구 분	특수 학교 수	특수 학급 수	특수교육 대상학생 수							교원수
			소 계	장애영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2002년	136	3,953	54,470	-	1,809	32,006	11,356	8,491	808	8,695
2003년	137	4,102	53,404	-	1,932	30,838	11,055	8,779	800	9,175
2004년	141	4,366	55,374	-	2,677	30,329	11,326	10,207	835	9,846
2005년	142	4,697	58,362	-	3,057	31,064	12,493	10,756	992	10,429
2006년	143	5,204	62,538	-	3,243	32,263	13,972	11,851	1,209	11,259
2007년	144	5,753	65,940	-	3,125	32,752	15,267	13,349	1,447	12,249
2008년	149	6,352	71,484	-	3,236	33,974	16,833	15,686	1,755	13,165
2009년	150	6,924	75,187	288	3,303	34,035	17,946	17,553	2,062	13,997
2010년	150	7,792	79,711	290	3,225	35,294	19,375	19,111	2,416	15,244
2011년	155	8,415	82,665	356	3,367	35,124	20,508	20,439	2,871	15,934
2012년(A)	156	8,927	85,012	403	3,675	34,458	21,535	21,649	3,292	16,727
2013년(B)	162	9,343	86,633	578	4,190	33,518	22,241	22,466	3,640	17,446
B-A	6	416	1,621	175	515	-940	706	817	348	719

자료 : 고용노동부, 「2013 장애인 통계」, 2013.12

주 : 1)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장애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의미함

<표 2-3-12> 특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단위 : 교, %)

구 분	특수 학교 수	매개시설						내부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출입문		복도 손잡이		승강기 경사로 등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합 계	156	156	100.0	156	100.0	156	100.0	156	100.0	154	98.7	150	96.2
서 울	29	29	100.0	29	100.0	29	100.0	29	100.0	29	100.0	29	100.0
부 산	13	13	100.0	13	100.0	13	100.0	13	100.0	13	100.0	11	84.6
대 구	8	8	100.0	8	100.0	8	100.0	8	100.0	8	100.0	8	100.0
인 천	7	7	100.0	7	100.0	7	100.0	7	100.0	7	100.0	7	100.0
광 주	4	4	100.0	4	100.0	4	100.0	4	100.0	4	100.0	4	100.0
대 전	5	5	100.0	5	100.0	5	100.0	5	100.0	5	100.0	5	100.0
울 산	3	3	100.0	3	100.0	3	100.0	3	100.0	3	100.0	3	100.0
경 기	29	29	100.0	29	100.0	29	100.0	29	100.0	28	96.6	27	93.1
강 원	7	7	100.0	7	100.0	7	100.0	7	100.0	7	100.0	7	100.0
충 북	9	9	100.0	9	100.0	9	100.0	9	100.0	8	88.9	9	100.0
충 남	6	6	100.0	6	100.0	6	100.0	6	100.0	6	100.0	6	100.0
전 북	11	11	100.0	11	100.0	11	100.0	11	100.0	11	100.0	11	100.0
전 남	7	7	100.0	7	100.0	7	100.0	7	100.0	7	100.0	5	71.4
경 북	7	7	100.0	7	100.0	7	100.0	7	100.0	7	100.0	7	100.0
경 남	8	8	100.0	8	100.0	8	100.0	8	100.0	8	100.0	8	100.0
제 주	3	3	100.0	3	100.0	3	100.0	3	100.0	3	100.0	3	100.0

자료 : 교육부,「특수교육연차보고서(2012)」, 2012

※ 2013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자료에 없어 「2012 인권통계」 p176 인용

(단위 : 교, %)

구 분	위생시설				안내시설						평균 설치 비율
	화장실 대변기		화장실 소변기		점자블럭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합 계		**100.0**	**156**	**100.0**	**149**	**95.5**	**142**	**91.0**	**151**	**96.8**	**98.0**
서 울	29	100.0	29	100.0	29	100.0	29	100.0	29	100.0	100.0
부 산	13	100.0	13	100.0	13	100.0	13	100.0	13	100.0	98.6
대 구	8	100.0	8	100.0	8	100.0	8	100.0	8	100.0	100.0
인 천	7	100.0	7	100.0	5	71.4	6	85.7	7	100.0	96.1
광 주	4	100.0	4	100.0	4	100.0	4	100.0	3	75.0	97.7
대 전	5	100.0	5	100.0	4	80.0	4	80.0	5	100.0	96.4
울 산	3	100.0	3	100.0	2	66.7	2	66.7	2	66.7	90.9
경 기	29	100.0	29	100.0	27	93.1	27	93.1	27	93.1	97.2
강 원	7	100.0	7	100.0	7	100.0	7	100.0	7	100.0	100.0
충 북	9	100.0	9	100.0	8	88.9	8	88.9	9	100.0	97.0
충 남	6	100.0	6	100.0	6	100.0	6	100.0	6	100.0	100.0
전 북	11	100.0	11	100.0	11	100.0	11	100.0	11	100.0	100.0
전 남	7	100.0	7	100.0	7	100.0	2	28.6	7	100.0	90.9
경 북	7	100.0	7	100.0	7	100.0	4	57.1	6	85.7	94.8
경 남	8	100.0	8	100.0	8	100.0	8	100.0	8	100.0	100.0
제 주	3	100.0	3	100.0	3	100.0	3	100.0	3	100.0	100.0

<표 2-3-13> 특수학급 설치유치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단위 : 교, %)

구 분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수	매개시설						내부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출입문		복도 손잡이		승강기 경사로 등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합 계	305	299	98.0	292	95.7	293	96.1	290	95.1	229	75.1	251	82.3
서 울	38	37	97.4	34	89.5	33	86.8	33	86.8	15	39.5	24	63.2
부 산	12	12	100.0	12	100.0	12	100.0	12	100.0	12	100.0	10	83.3
대 구	8	7	87.5	7	87.5	7	87.5	7	87.5	7	87.5	7	87.5
인 천	15	15	100.0	14	93.3	15	100.0	14	93.3	10	66.7	15	100.0
광 주	8	8	100.0	8	100.0	8	100.0	8	100.0	3	37.5	7	87.5
대 전	27	27	100.0	26	96.3	27	100.0	27	100.0	10	37.0	21	77.8
울 산	6	6	100.0	5	83.3	6	100.0	6	100.0	6	100.0	6	100.0
경 기	85	81	95.3	81	95.3	79	92.9	77	90.6	63	74.1	67	78.8
강 원	13	13	100.0	13	100.0	13	100.0	13	100.0	13	100.0	13	100.0
충 북	14	14	100.0	14	100.0	14	100.0	14	100.0	12	85.7	12	85.7
충 남	21	21	100.0	21	100.0	21	100.0	21	100.0	21	100.0	16	76.2
전 북	9	9	100.0	9	100.0	9	100.0	9	100.0	8	88.9	5	55.6
전 남	21	21	100.0	21	100.0	21	100.0	21	100.0	21	100.0	21	100.0
경 북	7	7	100.0	6	85.7	7	100.0	7	100.0	7	100.0	7	100.0
경 남	16	16	100.0	16	100.0	16	100.0	16	100.0	16	100.0	15	93.8
제 주	4	4	100.0	4	100.0	4	100.0	4	100.0	4	100.0	4	100.0
세 종	1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자료 : 교육부,「특수교육연차보고서(2012)」, 2012

※ 2013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자료에 없어 「2012 인권통계」 p170 인용

(단위 : 교, %)

구 분	위생시설				안내시설						평균 설치 비율
	화장실 대변기		화장실 소변기		점자블럭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합 계	294	96.4	283	92.8	206	67.5	194	63.6	272	89.2	86.5
서 울	38	100.0	38	100.0	17	44.7	19	50.0	38	100.0	78.0
부 산	10	83.3	11	91.7	6	50.0	2	16.7	2	16.7	76.5
대 구	7	87.5	7	87.5	7	87.5	7	87.5	8	100.0	88.6
인 천	15	100.0	15	100.0	8	53.3	10	66.7	15	100.0	88.5
광 주	7	87.5	7	87.5	6	75.0	4	50.0	6	75.0	81.8
대 전	26	96.3	18	66.7	11	40.7	7	25.9	27	100.0	76.4
울 산	6	100.0	5	83.3	4	66.7	3	50.0	4	66.7	86.4
경 기	81	95.3	79	92.9	49	57.6	55	64.7	71	83.5	83.7
강 원	13	100.0	13	100.0	13	100.0	13	100.0	13	100.0	100.0
충 북	14	100.0	14	100.0	14	100.0	13	92.9	14	100.0	96.8
충 남	21	100.0	21	100.0	16	76.2	9	42.9	21	100.0	90.5
전 북	8	88.9	8	88.9	6	66.7	6	66.7	6	66.7	83.8
전 남	21	100.0	21	100.0	21	100.0	21	100.0	21	100.0	100.0
경 북	7	100.0	7	100.0	7	100.0	4	57.1	5	71.4	92.2
경 남	15	93.8	16	100.0	16	100.0	16	100.0	16	100.0	98.9
제 주	4	100.0	2	50.0	4	100.0	4	100.0	4	100.0	95.5
세 종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00.0

<표 2-3-14> 특수학급 미설치 초·중·고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단위 : 교, %)

구 분	특수학급 미설치 초·중·고 학교수	매개시설						내부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출입문		복도 손잡이		승강기 경사로 등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합 계	**5,146**	**4,544**	**88.3**	**4,927**	**95.7**	**4,563**	**88.7**	**4,389**	**85.3**	**3,504**	**68.1**	**2,941**	**57.2**
초	2,104	1,894	90.0	2,031	96.5	1,871	88.9	1,847	87.8	1,576	74.9	1,246	59.2
중	1,564	1,364	87.2	1,485	94.9	1,398	98.4	1,286	82.2	1,055	67.5	906	57.9
고	1,478	1,286	87.0	1,411	95.5	1,294	87.6	1,256	85.0	873	59.1	789	53.4
서 울	642	611	95.2	642	100.0	560	87.2	583	90.8	267	41.6	238	37.1
부 산	165	162	98.2	162	98.2	162	98.2	165	100.0	154	93.3	136	82.4
대 구	178	178	100.0	178	100.0	178	100.0	178	100.0	178	100.0	152	85.4
인 천	159	129	81.1	139	87.4	116	73.0	83	52.2	38	23.9	98	61.6
광 주	121	118	97.5	120	99.2	113	93.4	119	98.3	12	9.9	40	33.1
대 전	90	85	94.4	88	97.8	85	94.4	90	100.0	90	100.0	33	36.7
울 산	97	84	86.6	84	86.6	82	84.5	96	99.0	96	99.0	76	78.4
경 기	775	696	89.8	720	92.9	629	81.2	503	64.9	285	36.8	414	53.4
강 원	386	361	93.5	369	95.6	308	79.8	342	88.6	298	77.2	263	68.1
충 북	209	208	99.5	205	98.1	205	98.1	202	96.7	182	87.1	170	81.3
충 남	309	309	100.0	309	100.0	309	100.0	309	100.0	309	100.0	41	13.3
전 북	470	383	81.5	470	100.0	406	86.4	238	50.6	376	80.0	161	34.3
전 남	448	360	80.4	360	80.4	361	80.6	361	80.6	361	80.6	303	67.6
경 북	541	386	71.3	494	91.3	465	86.0	508	93.9	349	64.5	305	56.4
경 남	439	364	82.9	353	80.4	356	81.1	379	86.3	278	63.3	269	61.3
제 주	105	100	95.2	101	96.2	98	93.3	105	100.0	105	100.0	88	83.8
세 종	12	10	83.3	11	91.7	8	66.7	6	50.0	4	33.3	6	50.0

자료 : 교육부,「특수교육연차보고서(2012)」, 2012

※ 2013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자료에 없어 「2012 인권통계」 p174 인용

(단위 : 교, %)

구 분	위생시설				안내시설						평균 설치 비율
	화장실 대변기		화장실 소변기		점자블럭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합 계	**4,547**	**88.4**	**4,128**	**80.2**	**3,165**	**61.5**	**3,077**	**59.8**	**3,795**	**73.7**	**77.0**
초	1,853	88.0	1,681	79.9	1,314	62.5	1,272	60.5	1,582	75.2	78.5
중	1,373	87.8	1,267	81.0	989	63.2	946	60.5	1,166	74.6	76.9
고	1,321	89.4	1,180	79.8	862	58.3	859	58.1	1,047	70.8	74.9
서 울	602	93.8	602	93.8	240	37.4	251	39.1	642	100.0	74.2
부 산	162	98.2	162	98.2	145	87.9	142	86.1	142	86.1	93.3
대 구	177	99.4	177	99.4	175	98.3	174	97.8	174	97.8	98.0
인 천	138	86.8	138	86.8	159	100.0	159	100.0	159	100.0	77.5
광 주	119	98.3	92	76.0	81	66.9	119	98.3	22	18.2	71.8
대 전	85	94.4	54	60.0	37	41.1	24	26.7	90	100.0	76.9
울 산	83	85.6	72	74.2	67	69.1	61	62.9	64	66.0	81.1
경 기	681	87.9	574	74.1	215	27.7	265	34.2	356	45.9	62.6
강 원	305	79.0	305	79.0	294	76.2	280	72.5	258	66.8	79.7
충 북	198	94.7	197	94.3	178	85.2	177	84.7	188	90.0	91.8
충 남	309	100.0	309	100.0	110	35.6	24	7.8	309	100.0	77.9
전 북	359	76.4	166	35.3	250	53.2	253	53.8	262	55.7	64.3
전 남	361	80.6	361	80.6	361	80.6	361	80.6	361	80.6	79.4
경 북	426	78.7	382	70.6	326	60.3	305	56.4	253	46.8	70.6
경 남	352	80.2	316	72.0	312	71.1	271	61.7	287	65.4	73.2
제 주	98	93.3	89	84.8	87	82.9	87	82.9	104	99.0	91.9
세 종	12	100.0	11	91.7	5	41.7	3	25.0	5	41.7	61.4

<표 2-3-15> 장애인에 대한 가족 내 차별·폭력 정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2급)	경증 (3-6급)	
자주 있다	1.1	2.1	4.7	2.7	1.7	0.6	2.9	1.2	1.5
가끔 있다	5.7	5.5	12.8	7.5	5.8	3.9	10.5	4.2	5.6
없다	93.2	92.4	82.5	89.8	92.4	95.6	86.6	94.6	92.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 수	1,514,244	1,096,882	90,265	452,640	1,054,147	1,014,084	573,884	1,943,429	2,611,126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장애인실태조사」2012.
※「2013 인권통계」 신설

<표 2-3-16>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성	여성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2급)	경증 (3-6급)	
2008년	있다	0.3	2.1	1.8	3.1	0.9	0.0	2.1	0.7	1.0
	없다	99.7	97.9	98.2	96.9	99.1	100.0	97.9	99.3	99.0
	전국추정 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2011년	있다	0.0	2.0	5.0	2.6	0.4	0.1	1.4	0.7	0.8
	없다	100.0	98.0	95.0	97.4	99.6	99.9	98.6	99.3	99.2
	전국추정 수	1,514,244	1,096,882	90,265	452,630	1,054,147	1,014,084	573,884	1,943,429	2,611,126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장애인실태조사」
※「2013 인권통계」 신설

<표 2-3-17>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단위: %)

구분		2010.5.			2013.5.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장애인	전체	38.5	6.6	36.0	38.3	5.9	36.0
	남	48.4	6.1	45.4	49.9	6.0	46.9
	여	24.6	7.8	22.7	22.1	5.6	20.9
비장애인	전체	61.9	3.2	60.0	62.3	3.0	60.4
	남	73.8	3.5	71.2	73.9	3.2	71.6
	여	50.5	2.6	49.2	51.2	2.9	49.7

자료 : 고용노동부(각 연도)「장애인통계」
※「2013 인권통계」 신설

제4절 노인

1991년 유엔총회에서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UN Principles for Older Persons)[75]'이 채택되어 독립, 참여, 보살핌, 자아실현, 존엄성 5가지 영역의 18개의 항목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2002년 개최된 제2차 고령화 회의에서 '유엔의 마드리드 고령화에 관한 국제행동계획(MIPAA: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76]'을 발표하여 노인 인권의 범위를 구체화 할 수 있는 개념 틀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국제인권 기준 등을 바탕으로 노인 관련 통계는 고령가구, 노인복지 생활시설 수 및 생활자 현황, 노인학대 유형, 노인학대 주된 행위자, 노인(65세 이상)의 학대 경험률, 노인의 건강상태 만족도,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수급자 비율, 노인 경제활동참가율, 노인빈곤율로 구성하였다.

75) 1991년은 UN총회에서 '노인을 위한 UN원칙(UN Principles for Older Persons)'이 채택된다. 이 UN원칙은 독립, 참여, 보살핌, 자아실현, 존엄성의 5가지 영역의 18개의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76) 유엔의 마드리드 고령화에 관한 국제행동계획(MIPAA: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은 UN이 제시하고 있는 가장 최근의 고령화 관련 정책방향성으로, 기본 주제에 인권에 대한 강조뿐만 아니라 노인 인권의 범위를 구체화할 수 있는 개념 틀을 11개로 구성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 2-4-1> 고령가구

(단위 : 가구, %)

	총가구	고령가구[1]	구성비	독거노인가구[2]	구성비
2000	14,507,010	1,733,525	11.9	543,522	3.7
2005	15,971,010	2,432,247	15.2	776,996	4.9
2010	17,359,333	3,086,573	17.8	1,055,650	6.1
2011	17,687,001	3,239,307	18.3	1,124,099	6.4
2012	17,950,675	3,388,412	18.9	1,186,831	6.6
2013	18,206,328	3,546,108	19.5	1,252,012	6.9
2014	18,457,628	3,702,704	20.1	1,316,504	7.1
2015	18,705,004	3,851,742	20.6	1,379,066	7.4
2020	19,878,399	4,772,184	24.0	1,744,830	8.8
2025	20,937,339	6,172,120	29.5	2,247,735	10.7
2030	21,716,589	7,689,934	35.4	2,820,212	13.0
2035	22,260,603	9,024,633	40.5	3,429,621	15.4

자료 : 통계청,「2013 고령자 통계」2013.9.

주 : 1)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

2)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사는 가구

<표 2-4-2> 노인복지 생활시설 수 및 생활자 현황

(단위: 개소, 명)

구 분	계			노인주거복지시설								
				소 계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시설수	정 원	현 원	시설수	정 원	현 원	시설수	정 원	현 원	시설수	정 원	현 원
2007	1,498	64,324	50,032	384	13,014	9,402	384	13,014	9,402	–	–	–
2008	2,081	81,912	67,676	327	11,697	8,345	306	11,520	8,236	21	177	109
2009	2,992	102,774	79,438	341	11,999	8,069	285	11,561	7,744	56	438	325
2010	4,150	131,391	103,129	375	12,524	9,019	300	11,906	8,589	75	618	430
2011	4,469	138,524	113,451	390	13,219	9,478	303	12,509	8,993	87	710	485
2012	4,745	147,665	122,593	393	14,036	9,943	285	13,164	9,350	108	872	593
서 울	492	14,640	13,194	19	1,590	1,201	14	1,554	1,168	5	36	33
부 산	150	6,372	4,731	5	308	260	5	308	260	–	–	–
대 구	210	6,079	4,985	5	336	277	5	336	277	–	–	–
인 천	275	8,434	7,286	25	756	517	20	711	479	5	45	38
광 주	100	3,515	2,871	3	176	120	3	176	120	–	–	–
대 전	109	3,771	3,070	5	93	83	3	78	68	2	15	15
울 산	43	1,586	1,278	2	49	38	1	40	38	1	9	–
세 종	17	487	342	4	79	43	4	79	43	–	–	–
경 기	1,403	39,721	33,555	145	4,877	3,577	107	4,593	3,387	38	284	190
강 원	253	7,821	6,345	30	858	454	17	735	360	13	123	94
충 북	279	7,083	5,924	36	750	569	18	603	462	18	147	107
충 남	266	7,944	6,274	25	667	368	14	579	310	11	88	58
전 북	231	7,798	6,289	16	619	462	10	569	434	6	50	28
전 남	301	8,339	6,980	31	911	721	28	887	710	3	24	11
경 북	326	11,244	8,986	24	783	592	22	765	586	2	18	6
경 남	234	9,894	7,835	16	1,094	579	12	1,061	566	4	33	13
제 주	56	2,937	2,648	2	90	82	2	90	82	–	–	–

자료 : 통계청, 「2013 한국통계연감」 2014.

(단위: 개소, 명)

구 분	노인의료복지시설								
	소 계			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수	정 원	현 원	시설수	정 원	현 원	시설수	정 원	현 원
2007	1,114	51,310	40,630	1,114	51,310	40,630	-	-	-
2008	1,754	70,215	59,331	1,332	66,715	56,736	422	3,500	2,595
2009	2,651	90,775	71,369	1,642	82,271	65,476	1,009	8,504	5,893
2010	3,775	118,867	94,110	2,429	107,506	85,538	1,346	11,361	8,572
2011	4,079	125,305	103,973	2,489	111,457	92,570	1,590	13,848	11,403
2012	4,352	133,629	112,650	2,610	118,631	99,824	1,742	14,998	12,826
서 울	473	13,050	11,993	234	10,994	10,097	239	2,056	1,896
부 산	145	6,064	4,471	94	5,618	4,100	51	446	371
대 구	205	5,743	4,708	71	4,564	3,682	134	1,179	1,026
인 천	250	7,678	6,769	163	6,930	6,107	87	748	662
광 주	97	3,339	2,751	73	3,133	2,570	24	206	181
대 전	104	3,678	2,987	68	3,379	2,743	36	299	244
울 산	41	1,537	1,240	32	1,469	1,184	9	68	56
세 종	13	408	299	10	381	281	3	27	18
경 기	1,258	34,844	29,978	740	30,387	26,129	518	4,457	3,849
강 원	223	6,963	5,891	137	6,228	5,283	86	735	608
충 북	243	6,333	5,355	118	5,258	4,489	125	1,075	866
충 남	241	7,277	5,906	139	6,380	5,163	102	897	743
전 북	215	7,179	5,827	154	6,667	5,419	61	512	408
전 남	270	7,428	6,259	164	6,499	5,468	106	929	791
경 북	302	10,461	8,394	194	9,542	7,653	108	919	741
경 남	218	8,800	7,256	171	8,408	6,933	47	392	323
제 주	54	2,847	2,566	48	2,794	2,523	6	53	43

<표 2-4-3> 노인학대 유형

(단위 : 건, %)

	계	신 체	정 서	성	재 정	방 임	자기방임	유 기
2008	3,897	874	1,561	20	446	839	117	40
	100.0	22.4	40.1	0.5	11.4	21.5	3.0	1.0
2009	4,588	1,127	1,853	37	554	806	129	82
	100.0	24.6	40.4	0.8	12.1	17.5	2.8	1.8
2010	5,076	1,304	1,981	39	574	891	196	91
	100.0	25.7	39.0	0.8	11.3	17.6	3.9	1.8
2011	5,765	1,419	2,307	72	607	1,038	236	86
	100.0	24.6	40.0	1.3	10.5	18.0	4.1	1.5
2012	5,570	1,326	2,134	63	540	1,042	394	71
	100.0	23.8	38.3	1.1	9.7	18.7	7.1	1.3
2013	5,832	1,430	2,235	90	526	1,087	375	89
	100.0	24.5	38.3	1.5	9.0	18.6	6.4	1.5

자료 : 보건복지부, 「2013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 2014

<표 2-4-4> 노인학대 주된 행위자

(단위 : 명, %)

본 인	친 족								타인	기관	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소계			
375	551	1,619	240	519	28	81	54	3,092	253	293	4,013
9.3	13.7	40.3	6.0	13.0	0.7	2.0	1.3	77.0	6.3	7.3	100.0

자료 : 보건복지부, 「2013 노인학대보건복지부 길잡이 통계」 2014

<표 2-4-5> 노인(65세 이상)의 학대 경험률

(단위: %)

구분		학대 경험률	학대 유형				
			타인으로 부터의 신체적 고통	타인의 말과 행동	타인으로부터 금전적 피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돌보아 주지 않음	가족이나 보호자가 찾아오지 않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음
2008	전체	10.2	5.6	75.8	12.8	16.3	28.2
	여성	11.3	5.5	78.1	12.6	13.2	24.7
	남성	8.5	5.8	75.5	17.3	14.6	23.1
2011	전체	12.7	0.5	9.4	1.5	1.4	2.5
	여성	13.4	0.6	10.1	1.4	1.7	2.8
	남성	11.7	0.3	8.5	1.6	1.0	2.0

자료 : 보건복지부(각 연도)「노인실태조사」
※「2013 인권통계」 신설

<표 2-4-6> 노인의 건강상태 만족도

(단위: %)

구분		매우 만족	만족	그저 그렇다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 안함
2008	전체	2.0	22.2	21.2	40.2	14.4
	여성	1.6	18.3	22.5	43.6	14.0
	남성	3.9	36.1	19.9	29.4	10.7
2011	전체	3.0	31.0	21.3	36.1	8.7
	여성	1.2	23.8	23.5	41.9	9.6
	남성	5.3	40.6	18.4	28.4	7.4

자료 : 보건복지부(각 연도), 「노인실태조사」
※「2013 인권통계」 신설

<표 2-4-7>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수급자 비율

(단위: 가구,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체가구	809,745	831,692	852,420	854,205	882,925	878,799	850,689	821,879	810,544
노인가구	244,565	242,470	245,935	243,132	244,529	243,708	237,213	236,617	235,601
비율	30.2	29.2	28.9	28.5	27.7	27.7	27.9	28.8	29.1

자료 : 보건복지부(각 연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2013 인권통계」 신설

<표 2-4-8> 노인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체	29.8	30.0	30.5	31.3	30.6	30.1	29.4	29.5	30.7	31.4
여성	22.2	22.4	22.7	23.3	22.9	22.2	21.7	21.8	23.0	23.4
남성	41.4	41.2	42.0	42.8	41.8	41.5	40.6	40.6	41.6	42.6

자료 :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 「2013 인권통계」 신설

<표 2-4-9> 노인 빈곤율 - 절대적 빈곤율

(단위: %)

구 분	소득			지출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1인가구 제외					
2006	35.8	24.5	27.5	30.8	20.9
2007	36.6	24.7	27.5	31.4	22.1
2008	37.3	26.2	28.8	31.9	22.0
2009	41.1	27.2	30.2	39.1	26.6
2010	40.9	25.1	28.6	35.3	21.7
2011	42.0	27.2	30.2	38.0	24.3
2012	39.7	26.1	28.1	34.0	22.1
1인가구 포함					
2006	39.5	27.2	30.6	34.6	24.4
2007	40.4	27.6	30.9	34.4	25.0
2008	41.7	29.0	32.4	35.6	25.2
2009	47.8	32.2	35.5	44.6	31.8
2010	48.2	31.1	34.3	39.7	26.1
2011	48.8	33.0	36.1	40.8	26.6
2012	46.9	32.3	34.8	38.0	25.5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년 빈곤통계연보」 2013.

주 : 전가구 기준,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표 2-4-10> 노인 빈곤율 - 상대적 빈곤율

(단위: %)

구 분	소득									지출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1인가구 제외															
2006	40.0	49.2	56.4	29.7	40.7	48.7	29.0	39.2	47.5	17.3	26.6	37.3	18.9	29.3	40.9
2007	40.2	49.8	58.0	30.2	40.1	48.9	29.6	38.6	48.2	17.4	27.5	39.0	19.9	30.3	42.9
2008	39.1	48.3	55.4	29.9	39.4	46.7	29.7	39.2	46.4	15.2	25.7	37.4	18.5	29.9	41.6
2009	43.1	50.2	57.7	30.0	40.0	49.3	29.7	39.3	47.9	16.9	30.0	41.2	20.1	33.4	44.6
2010	42.5	52.3	59.1	29.8	40.1	49.2	29.8	39.1	48.0	15.9	30.6	42.5	18.7	33.4	44.9
2011	45.3	53.2	60.6	33.0	42.6	52.0	31.4	41.0	50.3	19.5	33.9	45.7	22.7	35.3	47.2
2012	43.4	51.9	59.5	32.1	41.3	49.5	31.0	39.5	49.0	17.7	29.4	42.1	20.9	31.9	43.5
1인가구 포함															
2006	45.2	54.5	62.1	35.0	46.1	54.5	34.7	44.9	53.3	21.4	32.9	43.6	24.7	35.7	47.1
2007	46.2	55.3	63.0	35.9	47.0	55.4	35.2	45.2	54.2	22.2	33.0	45.2	25.0	36.4	48.6
2008	45.8	54.6	62.3	36.5	46.5	54.1	36.1	46.0	53.2	21.1	33.3	45.4	25.0	37.3	48.1
2009	50.8	58.2	65.0	37.8	48.5	57.1	37.9	47.6	55.7	24.3	37.9	48.7	27.8	40.7	51.1
2010	51.0	59.1	65.6	37.6	47.8	56.8	38.3	47.2	55.1	23.2	36.7	48.6	25.8	39.8	50.9
2011	53.5	60.9	67.3	40.5	49.9	59.2	39.1	48.8	57.5	23.7	39.0	51.2	27.4	40.7	52.5
2012	52.3	60.0	66.5	41.2	50.6	58.1	39.6	48.0	56.4	22.7	35.8	47.7	26.4	38.5	50.2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년 빈곤통계연보」 2013.
주 : 전가구 기준(농어가가구 제외), 중위소득・지출

제5절 외국인, 난민

외국인은「헌법」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라고 명시하여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체류 등 자격이 주어지고,「국적법」에 의하여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한편 난민은 국제법 제정 또는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설립 이후 1951년「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77]과 1967년「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78]가 작성되어 난민보호의 기준을 정립한 바, 우리나라는 1992년「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을 하면서「난민 등의 지위 및 처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위와 같은 규정 등을 근거로 외국인, 난민 통계는 인구대비 체류외국인 현황, 체류외국인 자격별·연도별 현황, 체류외국인 국적별 현황, 연도별 결혼이민자 현황, 결혼이민자 국적별·성별 현황, 결혼이민자 지역별·성별 현황, 연도별 혼인귀화자 현황, 연도별 국적취득자 현황, 난민 인정률, 난민심사 현황으로 구성하였다.

<표 2-5-1> 인구대비 체류외국인 현황

(단위: 명, %)

구 분 \ 연 도	2009	2010	2011	2012	2013
체류외국인	1,168,477	1,261,415	1,395,077	1,445,103	1,576,034
인 구	49,773,145	50,515,666	50,734,284	50,948,272	50,219,669
인구대비 체류외국인비율	2.35	2.50	2.75	2.84	3.14

자료 : 법무부, 「2013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14. 5.
주 : 인구는 통계청(KOSIS)의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인용하였음.

77)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는 국제법상 최초로 난민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내렸음.

78)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 의정서의 체약국은 협약의 정의에 해당하는 난민에게 협약의 시간적, 지리적 제한없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하기로 동의함.
- 협약 및 또는 의정서의 당사국은 협약의 특정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혹은 수정할 경우에만 적용하겠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언급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유보는 협약 및 또는 의정서의 모든 당사국이 수용해야만 하는 제1조 (난민의 정의), 제3조 (인종, 종교 또는 출신국에 의한 무차별원칙), 및 제33조 (강제송환금지원칙) 등 핵심 조항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음.

<표 2-5-2> 체류외국인 자격별·연도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총 계	1,168,477	1,261,415	1,395,077	1,445,103	1,576,034
사증면제(B-1)	31,118	32,365	36,639	41,934	47,890
관광통과(B-2)	69,325	71,490	88,976	91,324	87,908
단기상용(C-2)	31,076	26,795	19,377	-	-
단기방문(C-3)	59,088	64,150	68,104	123,630	131,951
단기취업(C-4)	715	712	679	377	460
유 학(D-2)	62,451	69,600	68,039	64,030	60,466
기술연수(D-3)	13,325	5,350	4,324	3,854	3,648
일반연수(D-4)	19,923	37,809	36,819	22,195	23,005
종 교(D-6)	1,651	1,571	1,592	1,557	1,770
주 재(D-7)	1,492	1,530	1,646	1,563	1,659
기업투자(D-8)	7,907	7,557	7,405	7,122	6,053
무역경영(D-9)	3,282	4,477	4,472	4,854	8,272
교 수(E-1)	2,056	2,266	2,474	2,631	2,637
회화지도(E-2)	22,642	23,317	22,541	21,603	20,030
연 구(E-3)	2,066	2,324	2,606	2,820	2,997
예술흥행(E-6)	4,305	4,162	4,246	4,528	4,940
특정활동(E-7)	8,896	10,712	14,397	17,451	18,213
연수취업(E-8)	11,307	-	-	-	-
비전문취업(E-9)	188,363	220,319	234,295	230,237	246,695
선원취업(E-10)	5,207	6,716	9,661	10,424	12,163
방문동거(F-1)	45,632	42,212	45,092	52,674	60,927
거 주(F-2)	132,329	138,669	138,418	63,362	39,704
동 반(F-3)	14,652	15,409	17,607	18,795	20,150
재외동포(F-4)	50,664	84,912	136,702	189,508	235,953
영 주(F-5)	22,446	45,475	64,979	84,140	100,171
기 타(G-1)	3,806	4,045	4,988	6,079	7,003
방문취업(H-2)	306,283	286,586	303,368	238,765	240,178
기 타	46,470	50,885	55,631	139,646	191,191

자료 : 법무부, 「2013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14. 5.

<표 2-5-3> 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

(단위: 명, %)

구 분 \ 연 도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율
총 계	1,576,034	1,392,928	183,106	11.6
사증면제(B-1)	47,890	25,649	22,241	46.4
관광통과(B-2)	87,908	72,924	14,894	17.0
단기방문(C-3)	131,951	87,462	44,489	33.7
단기취업(C-4)	460	299	161	35.0
유 학(D-2)	60,466	57,822	2,644	4.4
기술연수(D-3)	3,648	1,475	2,173	59.6
일반연수(D-4)	23,005	17,887	5,118	22.2
종 교(D-6)	1,770	1,708	62	3.5
주 재(D-7)	1,659	1,635	24	1.4
기업투자(D-8)	6,053	5,455	598	9.9
무역경영(D-9)	8,272	8,233	39	0.5
교 수(E-1)	2,637	2,620	17	0.6
회화지도(E-2)	20,030	19,948	82	0.4
연 구(E-3)	2,997	2,987	10	0.3
기술지도(E-4)	222	220	2	0.9
전문직업(E-5)	667	643	24	3.6
예술흥행(E-6)	4,940	3,436	1,504	30.4
특정활동(E-7)	18,213	15,226	2,987	16.4
비전문취업(E-9)	246,695	191,637	55,058	22.3
선원취업(E-10)	12,163	7,685	4,478	36.8
방문동거(F-1)	60,927	56,591	4,336	7.1
거 주(F-2)	39,704	30,379	9,325	23.5
동 반(F-3)	20,150	19,643	507	2.5
재외동포(F-4)	235,953	234,386	1,567	0.7
영 주(F-5)	100,171	100,171	0	0.0
결혼이민(F-6)	117,007	115,538	1,469	1.3
방문취업(H-2)	240,178	233,915	6,263	2.6
기 타	80,298	77,354	2,944	3.7

자료 : 법무부, 「2013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14.5.
주 : 2013.12.31. 현재 기준임

<표 2-5-4> 체류외국인 국적별 현황

(단위: 명, %)

구 분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율
총 계	1,576,034	1,392,928	183,106	11.6
중 국[2]	778,113	708,870	69,243	8.9
한국계	497,989	478,875	19,114	3.8
미 국	134,711	131,569	3,142	2.3
베 트 남	120,069	92,829	27,240	22.7
일 본	56,081	55,139	942	1.7
필 리 핀	47,514	34,485	13,029	27.4
타 이	55,110	34,445	20,665	37.5
인도네시아	41,599	34,876	6,723	16.2
우즈베키스탄	38,515	34,545	4,970	12.9
몽 골	24,175	16,428	7,747	32.0
타 이 완	27,698	26,760	938	3.4
캐 나 다	23,655	23,013	642	2.7
스 리 랑 카	23,383	19,047	4,336	18.5
캄 보 디 아	31,986	29,656	2,330	7.3
방글라데시	13,600	9,075	4,525	33.3
네 팔	22,015	19,857	2,158	9.8
러시아(연방)	12,804	11,787	1,017	7.9
파 키 스 탄	10,423	7,243	3,180	30.5
오스트레일리아	12,203	11,853	350	2.9
인 도	9,174	8,204	970	10.6
미 얀 마	12,678	11,393	1,285	10.1
영 국	7,998	7,893	105	1.3
홍 콩	7,144	6,938	206	2.9
뉴 질 랜 드	4,310	4,186	124	2.9
기 타	61,076	53,837	7,239	11.9

자료 : 법무부, 「2013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14. 5.
주 : 1) 2013.12.31. 현재 기준임
2) 한국계 포함

<표 2-5-5> 연도별 결혼이민자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전년대비
현 황	125,087 100.0	141,654 113.2	144,681 115.7	148,498 118.7	150,865 120.6	101.6

자료 : 법무부, 「2013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14. 5.

<표 2-5-6> 결혼이민자 국적별·성별 현황

(단위: 명, %)

구 분 \ 연 도	총 계	남 자	여 자	남자비율	여자비율	국적별 구성비율
총 계	**150,865**	**22,039**	**128,826**	**14.6**	**85.4**	**100.0**
중 국	62,400	12,075	50,325	19.4	80.6	41.4
베 트 남	39,854	427	39,427	1.1	98.9	26.4
일 본	12,220	1,183	11,037	9.7	90.3	8.1
필 리 핀	10,383	292	10,091	2.9	97.2	6.9
캄보디아	4,650	12	4,638	0.3	99.7	3.1
타 이	2,643	63	2,580	2.4	97.6	1.8
미 국	2,845	2,195	650	77.2	22.8	1.9
몽 골	2,368	81	2,287	3.4	96.6	1.6
우즈베키스탄	2,141	65	2,076	3.0	97.0	1.4
러 시 아	1,311	81	1,230	6.2	93.8	0.9
캐 나 다	1,268	1,093	175	86.2	13.8	0.8
네 팔	1,112	147	965	13.2	86.8	0.7
파키스탄	847	769	78	90.8	9.2	0.6
기 타	6,823	3,556	3,267	52.1	47.9	4.5

자료 : 법무부, 「2013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2014.5.
주 : 2013.12.31. 현재 기준임

<표 2-5-7> 결혼이민자 지역별·성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 연도	총 계	남 자	여 자	남자비율	여자비율	구성비율
총 계	149,764	21,953	127,811	14.7	85.3	100.0
경 기 도	41,293	7,354	33,939	17.8	82.2	27.6
서울특별시	29,818	7,529	22,289	25.2	74.8	19.9
경상남도	9,514	820	8,694	8.6	91.4	6.4
인천광역시	8,794	1,386	7,408	15.8	84.2	5.9
충청남도	7,905	609	7,296	7.7	92.3	5.3
경상북도	7,673	486	7,187	6.3	93.7	5.1
전라남도	6,830	208	6,622	3.0	97.0	4.6
부산광역시	6,824	881	5,943	12.9	87.1	4.6
전라북도	5,858	289	5,569	4.9	95.1	3.9
충청북도	4,738	406	4,332	8.6	91.4	3.2
대구광역시	4,731	550	4,181	11.6	88.4	3.2
강 원 도	3,828	249	3,579	6.5	93.5	2.6
대전광역시	3,515	374	3,141	10.6	89.4	2.3
광주광역시	3,164	268	2,896	8.5	91.5	2.1
울산광역시	2,947	313	2,634	10.6	89.4	2.0
제주특별자치도	1,945	198	1,747	10.2	89.8	1.3
세종특별자치시	387	33	354	8.5	91.5	0.3

자료 : 법무부, 「2013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14.5.
주 : 2013.12.31. 현재 기준임

<표 2-5-8> 연도별 혼인귀화자 현황

(단위: 명)

구분 \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총 계	17,141	10,271	10,733	7,733	9,021
중 국	11,744	6,154	6,023	3,668	3,457
베 트 남	3,754	2,981	3,056	2,935	3,914
필 리 핀	809	436	488	327	513
몽 골	159	135	113	79	99
타 이	91	34	41	58	77
우즈베키스탄	96	38	52	61	78
파키스탄	44	62	24	9	25
기 타	444	431	936	596	858

자료 : 법무부, 「2013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14. 5.

<표 2-5-9> 연도별 국적취득자 현황

(단위: 명)

연도 \ 구분	총 계	귀 화	국적회복
2006	8,125	7,477	648
2007	10,319	8,536	1,783
2008	15,258	11,518	3,740
2009	26,756	25,044	1,712
2010	17,323	16,312	1,011
2011	18,355	16,090	2,265
2012	12,527	10,541	1,987
2013	13,956	11,270	2,686

자료 : 법무부, 「2013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14. 5.

<표 2-5-10> 난민 인정률

(단위: 명,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비고
인정자	377	254	123	
심사종료	4,653	3,906	747	
인정률[1)]	8.1	6.5	16.5	

자료 : 법무부,「2013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14. 5.

주 : 난민 인정률 =「인정자/심사종료자(인정+인도적체류+불인정+철회)」

※ 인도적 체류 : 난민협약상의 난민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출신국 내 인권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도적 견지에서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체류 허가

※ 2013.12.31. 현재 기준임

<표 2-5-11> 난민심사 현황

(단위: 명, %)

연도	신청	심사종료(4,653)				비고
		인정	인도적체류	불인정	철회	
총계	6,643	377	177	2,935	1,164	
1994~2000년	133	1	–	38	20	
2002년	34	1	8	7	14	
2003년	84	12	5	5	5	
2004년	148	18	1	7	9	
2005년	410	9	13	79	29	
2006년	278	11	13	114	43	
2007년	717	13	9	86	62	
2008년	364	36	14	79	109	
2009년	324	70	22	994	203	
2010년	423	47	35	168	62	
2011년	1,011	42	20	277	90	
2012년	1,143	60	31	558	187	
2013년	1,574	57	6	523	331	

자료 : 법무부, 「2013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14. 5.

제6절 북한이탈주민, 재외동포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으나, 부정적인 인식이 노동시장의 폐쇄성과 고용차별화, 교육권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재외동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 등을 근거로 북한이탈주민, 재외동포 관련 통계는 북한이탈주민 입국 인원 현황, 탈북청소년 연도별 입국 현황, 북한이탈청소년 재학현황, 북한이탈학생 학업중단 현황,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상태 변동 양상, 전후 납북자 현황(추정), 정부 발간 6·25 전쟁 중 납북자 명부, 6·25전쟁 납북자의 출신지 및 직업별 통계, 재외동포현황, 재외한국학교현황으로 구성하였다.

<표 2-6-1>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 현황

(단위: 명, %)

구 분	합 계	~'98	'99~'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남	7,949	831	565	510	474	626	424	515	573	608	662	591	795	404	371
여	18,175	116	478	632	811	1,272	960	1,513	1,981	2,195	2,252	1,811	1,911	1,098	1,145
합 계	**26,124**	**947**	**1,043**	**1,142**	**1,285**	**1,898**	**1,384**	**2,028**	**2,554**	**2,803**	**2,914**	**2,402**	**2,706**	**1,502**	**1,516**
여성비율	70	12	46	55	63	67	69	75	78	78	77	75	70	73	76

자료 : 통일부, 「2014 통일백서」 2014. 3.

<표 2-6-2> 탈북청소년 연도별 입국 현황

(단위: 명)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 (입국자수)	312	583	1,138	1,281	1,894	1,383	2,018	2,544	2,809	2,927	2,376	2,706	1,502
6~20세 (입국자수)	60	124	211	220	330	224	336	366	378	656	306	501	253

자료 : 여성가족부, 「2013 청소년 백서」 2013. 12.

<표 2-6-3> 북한이탈청소년 재학현황

(단위: 명)

구 분	정규학교						대안교육시설(전일제)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남	여	남	여	남	여		
재학현황	600	559	231	247	192	193	232	2,254
	1,159		478		385			
	2,022							

자료 : 여성가족부,「2013 청소년 백서」 2013. 12.
주 : 1) 2013년 4월 기준
2) 대안교육시설은 전일제 민간교육시설에서 수학하는 학생임

<표 2-6-4> 북한이탈학생 학업중단 현황

(단위: 명, %)

구분		초	중	고	계
2008년	2007. 4. 재학생 수	341	232	114	687
	학업중단 학생수	12	30	32	74
	학업중단율	3.5	12.9	28.1	10.8
2009년	2008. 4. 재학생 수	495	288	183	966
	학업중단 학생수	7	26	26	59
	학업중단율	1.4	9.0	14.2	6.1
2010년	2009. 4. 재학생 수	562	305	276	1,143
	학업중단 학생수	5	26	25	56
	학업중단율	0.9	8.5	9.1	4.9
2011년	2010. 4. 재학생 수	773	297	347	1,417
	학업중단 학생수	19	13	35	67
	학업중단율	2.5	4.4	10.1	4.7
2012년	2011. 4. 재학생 수	1,020	288	373	1,681
	학업중단 학생수	27	11	18	56
	학업중단율	2.6	3.8	4.8	3.3

자료 : 여성가족부, 「2012 청소년백서」 2012. 12.
주 : 1) 중도탈락률=학교급별(연도별 중도탈락자 총수/연도별 재학생수 총수)*100
※ 2013 청소년백서 자료에 없어 「2012 인권통계」 p251 인용

<표 2-6-5>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상태 변동 양상

(단위: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응답자 수			N=7,560명	N=9,493명	N=2,355명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률	87.9	92.5	90.3
		고용률	49.7	50.0	51.4
		실업률	12.1	7.5	9.7
	경제활동 참가율		56.5	54.1	56.9
비경제활동 비율			43.5	45.9	43.1
판별 불가			–	5.7	–

자료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3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3. 12.
※「2013 인권통계」 신설

<표 2-6-6> 전후 납북자 현황(추정)

(단위: 명)

구 분		어선원	대한항공(KAL)납치	군·경	기 타		계
					국 내	해 외	
피랍자		3,729	50	30	6	20	3,835
귀환자	송환	3,263	39	–	–	8	3,310
	탈북·귀환	9	–	–	–	–	9
미귀환자		457	11	30	6	12	516

자료 : 통일부,「2014 통일백서」 2014. 3.

<표 2-6-7> 정부 발간 6·25 전쟁 중 납북자 명부

(단위: 명)

명 부 명	작성 주체	시 기	인 원	존재 여부
서울특별시 피해자 명부	공보처 통계국	1950년	2,438	보존
6·25 사변 피랍치자 명부	공보처 통계국	1952년	82,959	보존
6·25 동란으로 인한 피랍치자 명부	내무부 치안국	1954년	17,940	보존
실향사민 명부	국방부	1963년	11,700	일부보존[1)]

자료 : 통일부,「2014 통일백서」 2014. 3.
주 : 성명별 가나다순으로 구성된 이 명부는 '1번 김0부터 11,700번 이00까지만 현존하고 뒷부분은 미상

<표 2-6-8> 6·25전쟁 납북자의 출신지 및 직업별 통계

(단위: 명)

구분 / 직업	합 계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합 계	88,331	18,480	16,996	10,930	22,764	9,230	9,931
국회의원	63	53	2	1	2	–	5
정당인	106	63	3	–	4	–	36
사회단체	879	466	125	11	119	29	129
행정공무원	2,919	1,516	555	137	333	88	290
경찰	1,613	539	295	29	296	80	374
판·검사	90	71	7	2	5	1	4
변호사	100	90	–	2	4	1	3
교수	111	98	9	1	3	–	–
교사	752	350	193	23	87	59	40
기자	89	69	5	2	4	3	6
기타언론인	75	64	3	2	5	–	1
의사	368	221	31	95	10	7	4
약사	158	14	2	132	6	–	4
간호사	56	43	8	2	1	1	1
통역	32	28	2	–	–	1	1
미군무원	54	49	3	1	1	–	–
기독교인	178	119	15	3	16	2	23
기타종교인	39	15	16	2	4	1	1
기업체임원	388	333	20	2	12	9	12
공업	712	346	156	54	96	29	31
임광업	224	26	8	135	52	3	–
상업	4,797	3,296	509	293	391	152	156
문인	23	22	1	–	–	–	–
연극영화	68	67	1	–	–	–	–
화가, 서예가	16	13	3	–	–	–	–
기술자	2,836	2,264	270	52	156	44	50
회사원	1,996	1,681	138	86	42	21	28
농업	58,373	880	13,174	9,445	19,566	8,189	7,119
어업	549	1	106	210	5	214	13
대학생이상	1,955	1,173	314	1	220	158	89
고등학생이상	2,268	1,222	280	9	445	144	168
노동자	3,984	2,095	918	480	272	42	177
군인및군속	879	365	279	13	112	29	81
무직	5,208	3,297	647	125	576	125	438
기타	439	172	54	14	65	45	89
미기재	3,616	1,227	118	11	754	26	1,480

자료 : 대한변호사협회,「2012 북한인권백서」2012. 10.

※ 2013 북한인권백서 자료에 없어 「2012 인권통계」 p253 인용

<표 2-6-9> 재외동포현황

(단위: 명, %)

구분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백분율	전년비 증감율
총계		7,041,684	6,822,606	7,167,342	7,012,492	100	-2.16
동북아시아	일본	893,740	912,655	904,806	892,704	12.73	-1.34
	중국	2,762,160	2,336,771	2,704,994	2,573,928	36.70	-4.85
	소계	3,655,900	3,249,426	3,609,800	3,466,632	49.44	-3.97
남아시아태평양		384,474	461,127	453,420	485,836	6.93	7.15
북미	미국	2,016,911	2,102,283	2,075,590	2,091,432	29.82	0.76
	캐나다	216,628	223,322	231,492	205,993	2.94	-11.02
	소계	2,233,539	2,325,605	2,408,490	2,297,425	32.76	-0.42
중남미		107,594	107,029	112,980	111,156	1.59	-1.61
유럽		645,249	655,843	656,707	615,847	8.78	-6.22
아프리카		8,485	9,577	11,072	10,548	0.15	-4.73
중동		6,440	13,999	16,302	25,048	0.36	53.65

자료 : 외교부, 「2013재외동포현황」 2013. 9.

주 : 본 자료는 2년에 한번씩 조사가 이루어지며, 홀수 년도 하반기에 업데이트 됨.

※「2013 인권통계」 신설

<표 2-6-10> 재외한국학교현황

(단위: 개, 명)

학교명	과정별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설립일자
총계		573	12,031	1,185	
유치원		59	926	105	
초등학교		269	5,424	510	
중학교		112	2,652	570	
고등학교		133	3,029		
일본		76	1,998	162	
동경한국학교	초등학교	18	654	37	1954. 04. 26.
	중학교	7	288	28	
	고등학교	6	243		
쿄토국제학교	중학교	3	38	23	1947. 05. 13.
	고등학교	6	83		
오사카금강학교	초등학교	6	120	11	1946. 04. 05.
	중학교	3	85	20	
	고등학교	6	86		
오사카건국학교	유치원	3	30	5	1962. 03. 16.
	초등학교	6	142	11	
	중학교	6	118	27	
	고등학교	6	111		
대만		14	89	16	
타이뻬이한국학교	유치원	2	6	2	1961. 10. 01.
	초등학교	5	31	5	
까오숑한국국제학교	유치원	1	9	2	1961. 01. 25.
	초등학교	6	43	7	
중국		268	5,880	559	
북경한국국제학교	유치원	5	80	5	1993. 09. 01.
	초등학교	18	501	25	
	중학교	9	242	50	
	고등학교	12	292		
천진한국국제학교	유치원	6	145	10	2001. 03. 07.
	초등학교	18	406	36	
	중학교	7	173	44	
	고등학교	9	188		
상해한국국제학교	초등학교	20	525	46	1999. 03. 01.
	중학교	9	258	54	
	고등학교	12	339		

학교명	과정별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설립일자
무석한국학교	유치원	3	69	3	2006. 09. 01.
	초등학교	8	187	19	
	중학교	6	117	28	
	고등학교	6	119		
연대한국학교	초등학교	10	218	25	2001. 03. 01.
	중학교	7	166	34	
	고등학교	8	211		
칭다오청운한국학교	유치원	5	85	8	2006. 03. 03.
	초등학교	13	300	24	
	중학교	8	176	29	
	고등학교	8	160		
대련한국국제학교	유치원	1	16	2	2003. 12. 23.
	초등학교	8	141	15	
	중학교	5	109	27	
	고등학교	6	128		
선양한국국제학교	유치원	3	20	4	2006. 03. 10.
	초등학교	6	87	12	
	중학교	3	46	13	
	고등학교	3	38		
연변한국학교	초등학교	6	57	10	1998. 02. 19.
	중학교	3	37	12	
	고등학교	3	57		
홍콩한국국제학교	유치원	2	30	4	1988. 03. 01.
	초등학교	6	70	12	
	중학교	3	21	8	
	고등학교	3	66		
사우디아라비아		7	21	6	
젯다한국학교	초등학교	4	11	2	1976. 09. 18.
리야드한국학교	초등학교	3	10	4	1979. 04. 24.
태국		12	110	20	
방콕한국국제학교	초등학교	6	45	9	2002. 02. 18.
	중학교	3	35	11	
	고등학교	3	30		
인도네시아		38	948	94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초등학교	18	396	42	1976. 01. 05.
	중학교	8	216	52	
	고등학교	12	336		

학교명	과정별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설립일자
베트남		66	1,772	126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유치원	2	38	3	1998. 09. 01.
	초등학교	18	559	31	
	중학교	10	292	43	
	고등학교	12	344		
하노이한국국제학교	초등학교	12	273	21	2006. 03. 21.
	중학교	6	146	28	
	고등학교	6	120		
싱가포르		23	372	58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유치원	7	113	10	1993. 02. 17.
	초등학교	10	159	24	
	중학교	3	49	24	
	고등학교	3	51		
이란		5	8	4	
테헤란한국학교	초등학교	5	8	4	1976. 04. 30.
이집트		6	27	6	
카이로한국학교	초등학교	6	27	6	1980. 4. 15.
러시아		9	98	12	
모스크바한국학교	유치원	3	44	3	1992. 02. 14.
	초등학교	6	54	9	
파라과이		9	115	10	
파라과이한국학교	유치원	2	27	2	1992. 03. 01.
	초등학교	7	88	8	
아르헨티나		18	317	76	
아르헨티나한국학교	유치원	10	154	38	1995. 01. 23.
	초등학교	8	163	38	
브라질		10	127	10	
브라질한국학교	유치원	4	60	4	1998. 02. 01.
	초등학교	6	67	6	
필리핀		12	149	26	
필리핀한국국제학교	초등학교	6	82	11	2005. 07. 11.
	중학교	3	40	15	
	고등학교	3	27		

자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3 교육통계연보」2013.

주 : 1)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은 통합되어 있어 교원수가 구분되지 않음.
2) 초·중등과정 시간강사는 전체 교원수에서 제외됨.
※「2013 인권통계」 신설

제7절 군

군 관련 통계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22사단 GOP 총기 사건, 28사단 구타·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사건 등 군 인권상황이 한계에 달함에 따라 '2012 인권통계'와 다르게 이 절에서는 군인권 관련 통계를 수록하였다.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군인 또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상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 절에서는 헌법의 기본적인 권리인 생명권, 신체의 자유 등을 중심으로 군 사망사고 현황, 민간인과의 자살사고 비교, 병에 대한 징계현황, 군교도소 수용자 입·출소 현황, 군 신분 및 형기별 수용자 현황 통계표로 구성하였다.

<표 2-7-1> 군 사망사고 현황

(단위: 명)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135	124	128	121	134	113	129	143	111	117
안전사고	65	50	50	39	58	32	46	42	38	37
- 차량	27	21	25	22	25	13	9	18	17	15
- 항공/함정	6	4	3	3	8	-	13	5	1	21
- 익사	13	11	7	5	7	7	4	2	2	6
- 폭발	3	1	-	-	1	-	-	1	-	-
- 추락/충격	4	6	2	2	9	8	8	5	5	7
- 화재	1	-	-	-	-	-	-	-	3	-
- 기타	11	7	13	7	8	4	12	11	10	7
군기사고	70	74	78	82	76	81	83	101	73	80
- 자살	67	64	77	80	75	81	82	97	72	79
- 총기	-	8	1	2	-	-	-	4	-	-
- 폭행	1	1	-	-	-	-	1	-	1	-
- 기타	2	1	-	-	1	-	-	-	-	1

자료 : 통계청, e-나라지표, 국방부 내부행정자료, 2014.

※「2013 인권통계」 신설

<표 2-7-2> 민간인과의 자살사고 비교

(단위: 명)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군	자살자 수	67	64	77	80	75	81	82	97	72	79
	10만명당 수	9.4	9.1	11.3	11.7	11.4	12.4	12.6	15.2	11.1	12.2
일반	자살자 수	675	712	588	726	832	948	938	990	813	-
	10만명당 수	16.7	18	15.1	19	22.2	25.3	25.7	28.2	23.5	-

자료 : 통계청, e-나라지표, 국방부 내부행정자료, 2014.

주 : 일반인은 20~29세 남성기준

※「2013 인권통계」신설

<표 2-7-3> 병에 대한 징계현황

(단위: 건, %)

연 도	합계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2001	16,179	39	12,746(79%)	3,473(21%)	456
2002	17,479	30	12,561(72%)	4,299(25%)	602
2003	19,704	31	13,741(70%)	5,278(27%)	595
2004	20,223	1	12,616(62%)	6,479(32%)	944
2005	18,217	-	8,817(48%)	6,796(37%)	2,336
2006	27,819	-	10,264(37%)	10,507(38%)	3,524
2007	24,968	5	9,253(37%)	12,094(48%)	3,616
2008	29,472	3	9,315(32%)	16,175(55%)	3,979
2009	35,626	5	11,835(33%)	19,291(54%)	4,495
2010	38,527	9	12,763(33%)	21,416(56%)	4,339
2011	44,689	19	14,546(33%)	25,587(57%)	4,537
2012	50,047	15	15,667(31%)	29,097(58%)	5,268

자료 : 군 영창제도의 관련 토론문(국방부 법무담당관), 2013.

※「2013 인권통계」신설

<표 2-7-4> 군교도소 수용자 입 · 출소 현황

(단위 :명)

연도	전년말 수형자	당해년 입소자	출소자								연도말 수형자
			소계	형기 종료	사면	집행 면제	가석방	집행 정지	기타	일반 교도소 이송자	
2003	113	354	346	31	7	–	38	–	152	118	121
2004	121	295	318	56	–	–	29	–	104	129	98
2005	98	196	207	31	16	–	33	–	63	64	87
2006	87	198	181	29	–	–	27	–	68	57	104
2007	104	247	249	33	–	–	30	–	89	97	102
2008	102	243	229	31	7	–	21	–	97	73	116
2009	116	229	236	32	4	–	23	–	100	77	109
2010	109	161	157	42	–	–	20	–	49	46	113
2011	113	173	184	53	–	–	39	–	35	57	102
2012	102	163	170	47	–	–	25	1	41	56	95

자료 : 국방부, 「2013 국방통계연보」 2014.

※「2013 인권통계」 신설

<표 2-7-5> 군 신분별 수용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8				2009				2010			
	계	육군	해군	공군	계	육군	해군	공군	계	육군	해군	공군
계	243	233	8	2	229	208	11	10	161	156	3	2
장교	7	6	1	–	32	27	1	4	9	8	1	–
사병	160	158	1	1	114	111	2	1	83	81	–	2
군무원	1	1	–	–	2	1	1	–	3	3	–	–
민간인	–	–	–	–	1	1	–	–	–	–	–	–
상근 예비역	53	49	4	–	51	50	1	–	47	47	–	–
준사관	–	–	–	–	–	–	–	–	1	1	–	–
부사관	22	19	2	1	29	18	6	5	18	16	2	–

구 분	2011				2012			
	계	육군	해군	공군	계	육군	해군	공군
계	173	163	7	3	163	147	10	6
장교	4	4	–	–	9	6	1	2
사병	91	88	2	1	86	83	3	–
군무원	3	2	1	–	1	–	–	1
민간인	–	–	–	–	–	–	–	–
상근 예비역	55	52	3	–	46	42	4	–
준사관	1	–	–	1	1	–	–	1
부사관	19	17	1	1	20	16	2	2

자료 : 국방부, 「2013 국방통계연보」 2014.

※「2013 인권통계」 신설

<표 2-7-6> 군 형기별 수용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2008				2009				2010			
	계	육군	해군	공군	계	육군	해군	공군	계	육군	해군	공군
계	243	233	8	2	229	208	11	10	161	156	3	2
무기	1	1	–	–	1	1	–	–	–	–	–	–
10년 이상	4	4	–	–	4	4	–	–	1	1	–	–
3~10년 미만	18	17	–	1	27	23	2	2	23	22	1	–
2~3년 미만	23	22	1	–	26	22	3	1	18	17	–	1
1~2년 미만	150	143	6	1	113	106	3	4	70	68	1	1
1년 미만	47	46	1	–	40	37	2	1	49	48	1	–
기타	–	–	–	–	18	15	1	2	–	–	–	–

구 분	2011				2012			
	계	육군	해군	공군	계	육군	해군	공군
계	173	163	7	3	163	147	10	6
무기	–	–	–	–	–	–	–	–
10년 이상	3	3	–	–	1	–	1	–
3~10년 미만	21	18	2	1	34	28	4	2
2~3년 미만	19	18	1	–	19	16	2	1
1~2년 미만	79	74	3	2	66	63	2	1
1년 미만	51	50	1	–	42	40	–	2
기타	–	–	–	–	1	–	1	–

자료 : 국방부, 「2013 국방통계연보」 2014.

※「2013 인권통계」 신설

제3장 시민·정치적 권리

제1절 생명권

생명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 「헌법」 제10조에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규정하고 있고, 「세계인권선언」 제3조에 생명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물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제6조[79]에는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지고,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 등을 근거로 생명권은 사형집행 인원 및 사면·감형 인원 현황, 자살자 연령대별 현황, 인구 십만 명당 살인건수 비율, 인공임신중절 사유, 모성사망비, 실종아동·장애인 신고접수 및 발견현황, 영아사망률로 구성하였다.

<표 3-1-1> 사형집행 인원 및 사면·감형 인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03~'07	2008년	'09~'12
집행인원	23	23	–	–	–	–	–	–	–	–
기타 (사면·감형 등)	19	–	2	5	2	–	4	–	6	–

자료 : 법무부, 「2013 법무연감」 2013.

79)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제6조
1.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사형을 폐지하지 아니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 사형은 범죄 당시의 현행법에 따라서 또한 이 규약의 규정과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법률에 의하여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될 수 있다. 이 형벌은 권한 있는 법원이 내린 최종판결에 의하여서만 집행될 수 있다.
3. 생명의 박탈이 집단살해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의 당사국이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의 규정에 따라 지고 있는 의무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위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한다.
4.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누구나 사면 또는 감형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사형선고에 대한 일반사면, 특별사면 또는 감형은 모든 경우에 부여될 수 있다.
5. 사형선고는 18세 미만의 자가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 되며, 또한 임산부에 대하여 집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6.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의 당사국에 의하여 사형의 폐지를 지연시키거나 또는 방해하기 위하여 원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표 3-1-2> 자살자 연령대별 현황

(단위: 명)

직업·학력 \ 연령별		총합계	10세 미만	10 ~ 20세	21 ~ 30세	31 ~ 40세	41 ~ 50세	51 ~ 60세	61세 이상	미상
직 업	계	13,940	1	415	1,386	2,227	2,694	2,553	4,651	13
	농·입·수산업	680	-	-	3	18	64	137	458	-
	자 영 업	1,071	-	5	46	225	397	291	107	-
	전 문 직	216	-	-	40	70	57	35	14	-
	공 무 원	119	-	-	8	29	52	30	-	-
	일반봉급자	880	-	9	216	295	231	110	19	-
	유흥업종사자	50	-	1	21	20	4	4	-	-
	일용노동자	349	-	1	13	50	109	143	33	-
	기타피고용자	780	-	7	108	165	230	169	101	-
	무 직 자	6,841	-	90	550	844	987	1,083	3,287	-
	기 타	2,954	1	302	381	511	563	551	632	13
학 력	계	13,940	1	415	1,386	2,227	2,694	2,553	4,651	13
	불취학	533	-	-	1	5	11	24	492	-
	초교재중	6	1	5	-	-	-	-	-	-
	초교중퇴	191	-	1	1	2	15	36	136	-
	초교졸업	1,141	-	1	-	7	61	217	855	-
	중교재중	57	-	57	-	-	-	-	-	-
	중교중퇴	133	-	8	19	20	19	38	29	-
	중교졸업	765	-	12	20	46	128	229	330	-
	고교재중	131	-	131	-	-	-	-	-	-
	고교중퇴	211	-	27	46	52	42	18	26	-
	고교졸업	3,098	-	62	341	709	950	659	377	-
	대학재중	248	-	68	170	4	5	-	1	-
	대학중퇴	215	-	7	81	71	22	17	17	-
	대학졸업	1,356	-	3	315	441	334	161	102	-
	대학원재중	29	-	3	17	8	1	-	-	-
	대학원중퇴	9	-	-	2	4	3	-	1	-
	대학원졸업	87	-	-	8	29	24	18	8	-
	미 상	5,730	-	30	365	829	1,079	1,136	2,278	13

자료 : 경찰청,「2012 경찰통계연보」 2013.10.

<표 3-1-3> 인구 십 만 명당 살인건수 비율

(단위 : 십만 명 당)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발생비율 (인구 십 만 명당)	2.3	2.8	2.5	2.4	2.0
발생건수	1,111	1,374	1,252	1,204	995

자료 : 경찰청,「2012 범죄통계」2013
※「2013 인권통계」 신설

<표 3-1-4> 인공임신중절 사유(15~44세)

(단위 : %)

인공임신중절 사유	2006년	2009년	2012년		
			전국	동부	읍·면부
계 (수)	100.0 (1,833)	100.0 (1,273)	100.0 (784)	100.0 (669)	100.0 (115)
자녀불원	30.0	32.1	34.3	33.2	40.9
터울조절	16.4	14.6	12.0	12.0	12.2
임부의 건강상/자궁외 임신	10.0	14.1	18.9	19.9	13.0
태아이상에 의한 임부위험 등	5.0	12.2	9.7	10.0	7.8
혼전임신	7.9	9.5	6.1	5.8	7.8
가정문제	1.3	2.3	0.4	0.4	-
경제적 곤란	13.4	10.7	10.7	10.9	9.6
태아가 딸이므로	2.0	1.3	0.9	0.7	1.7
취업중이어서	2.5	2.4	2.0	2.2	0.9
기타	11.5	0.9	5.0	4.8	6.1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전국출산력 및 가족아동보건복지실태조사」2013
※「2013 인권통계」 신설

<표 3-1-5> 모성사망비 등

(단위 : 명, 출생아 십 만 명, 가임여성 십 만 명,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모성사망자 수	60	74	81	48
모성사망비[1)]	13.5	15.7	17.2	9.9
모성사망률[2)]	0.22	0.55	0.61	0.37
생애모성사망위험[3)]	1/5,377	1/4,319	1/3,897	1/6,486
출생아수	444,849	470,171	471,265	484,550

자료 : 통계청(각 연도),「영아사망·모성사망 출생전후기 사망통계」

주 : 1) 모성사망비 = $\left(\frac{\text{당해연도모성사망자수}}{\text{당해연도연간출생아수}} * 100{,}000\right)$

2) 모성사망률 : 임신과 관련된 원인으로 임신 또는 분만 후 42일 이내에 발생한 여성사망자수를 해당 연도의 가임기(15~49세) 여성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00분비로 표시

$\left(\frac{\text{당해연도 모성사망자수}}{\text{당해연도가임기여성의연앙인구}} * 100{,}000\right)$

3) 생애모성사망위험 : 여성의 가임기간중 임신 및 분만과 관련하여 사망할 위험 나타내는 지표

※「2013 인권통계」 신설

<표 3-1-6> 실종 아동·장애인 신고접수 및 발견현황

(단위 : 명)

구분	일반아동(14세미만)			장애인[1)](연령불문)		
	발생건수	발견현황		발생건수	발견현황	
		보호자인계(가정복귀율)	미발견		보호자인계(가정복귀율)	미발견
2007년	8,602	8,600(99.9%)	2	7,239	7,221(99.8%)	18
2008년	9,470	9,469(99.9%)	1	4,864	4,844(99.6%)	20
2009년	9,240	9,207(99.6%)	33	5,564	5,417(97.4%)	147
2010년	10,829	10,780(99.5%)	62	6,699	6,529(97.5%)	170
2011년	11,425	11,364(99.5%)	61	7,377	7,309(99.1%)	68
2012년	10,825	10,655(98.4%)	170	7,434	7,228(97.2%)	206

자료 : 보건복지부,「2012 보건복지백서」 2013. 9.

주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연령제한 없음) 중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

※「2013 인권통계」 신설

<표 3-1-7> 영아사망률[1)]

(단위 : 천 명, 명)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사망률 (출생아 천 명당)	4.2	3.8	3.5	3.4	3.2	3.2	3.0	2.9
사망수(명)	1,800	1,707	1,703	1,580	1,415	1,508	1,435	1,405

자료 : 통계청(각 연도),「사망원인통계」

주 : 1) 출생 후 1년 이내(365일 미만)에 사망아 수를 해당연도의 출생아 수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표시

※「2013 인권통계」 신설

제2절 신체의 자유

신체의 자유는 헌법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권이다.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국가권력의 남용으로 말미암아 인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동조에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3조에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선언하였으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9조[80]에 이를 구체화 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 등을 근거로 신체의 자유 관련 통계는 교정시설 수용현황, 경찰유치장 현황, 보호소년의 연간 신수용인원 및 1일 평균수용인원, 소년보호사건 처리내역, 벌금 미납에 의한 노역장 유치인원 수, 영장사건 처리상황, 형사공판사건(인원수) 중 구속사건 비율, 구속영장 발부율, 범죄자 기소인원 중 구속인원 및 구속률,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인별 처리상황, 보석청구사건 처리상황으로 구성하였다.

80)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9조
1.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체포된 사람은 누구든지 체포시에 체포이유를 통고받으며, 또한 그에 대한 피의 사실을 신속히 통고받는다.
3. 형사상의 죄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된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관헌에게 신속히 회부되어야 하며, 또한 그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을 받거나 또는 석방될 권리를 가진다. 재판에 회부되는 사람을 억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석방은 재판 기타 사법적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출두 및 필요한 경우 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출두할 것이라는 보증을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4. 체포 또는 억류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법원이 그의 억류의 합법성을 지체없이 결정하고, 그의 억류가 합법적이 아닌 경우에는 그의 석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에 절차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5. 불법적인 체포 또는 억류의 희생이 된 사람은 누구든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표 3-2-1> 교정시설 수용현황

(단위: 명)

연 도	수용정원	1일평균 수용인원	기결수형자			미결수형자		
			소 계	수형자	노역 수형자	소 계	피의자	피고인
1980	50,000	48,755	27,476	27,245	231	21,279	3,422	17,857
1985	53,000	52,050	30,395	30,001	394	21,655	2,280	19,375
1990	54,300	53,169	28,397	28,267	130	24,772	3,015	21,757
1995	55,800	60,166	33,381	32,895	486	26,785	3,158	23,627
2000	58,000	62,959	38,647	37,040	1,607	24,312	2,341	21,971
2005	46,090	52,403	35,110	32,933	2,177	17,293	1,341	15,952
2010	45,930	47,471	32,652	30,607	2,045	14,819	786	14,033
2011	45,690	45,845	31,644	29,820	1,824	14,201	724	13,477
2012	45,690	45,488	31,302	29,448	1,854	14,186	703	13,483

자료 : 법무부(각 연도),「법무연감」

<표 3-2-2> 경찰 유치장 현황

(단위: 명)

구 분	유치실수			1일 수용능력			연수용			
	계	경찰 관계	교도소 대용	계	경찰 관계	교도소 대용	계	경찰 관계	교도소 대용	타기관
2005	1,554	1,440	114	11,015 (25,935)	10,205 (23,974)	810 (1,961)	781,478	604,837	119,388	57,253
2006	1,370	1,249	121	10,132 (16,208)	9,079 (14,524)	1,053 (1,684)	567,195	440,579	83,651	42,965

구 분	유치장 수	유치실 수	근무자 현황				유치인 실제 수용인원		
			계	경찰관 (남)	경찰관 (여)	의경	계	남자	여자
2007	172	1,286	1,428	1,379	39	10	167,727	147,212	20,515
2008	154	1,201	1,288	1,228	52	8	159,925	141,422	18,503
2009	138	1,122	1,254	1,157	90	7	170,448	152,898	17,550
2010	137	1,118	1,371	1,099	89	6	121,916	110,468	11,448
2011	112	925	1,075	965	110	–	100,956	91,894	9,062
2012	112	925	1,073	968	105	–	92,310	84,560	7,750
서 울	28	257	236	221	15	–	20,477	18,604	1,873
부 산	6	50	73	55	18	–	6,299	5,716	583
대 구	5	36	48	38	10	–	4,721	4,409	312
인 천	4	30	49	41	8	–	4,772	4,322	450
광 주	3	28	35	32	3	–	2,073	1,923	150
대 전	2	19	27	21	6	–	2,124	1,894	230
울 산	1	8	14	11	3	–	2,419	2,209	210
경 기	25	108	182	147	35	–	18,962	17,467	1,495
강 원	10	67	54	54	–	–	3,740	3,398	342
충 북	5	30	47	47	–	–	3,172	2,922	250
충 남	8	25	43	43	–	–	4,019	3,691	328
전 북	5	44	51	49	2	–	2,835	2,595	240
전 남	11	42	40	40	–	–	2,747	2,528	219
경 북	11	101	84	81	3	–	5,704	5,235	469
경 남	12	72	77	76	1	–	6,730	6,277	453
제 주	1	8	13	12	1	–	1,516	1,370	146

자료 : 경찰청,「2012 경찰통계연보」 2013. 10.

<표 3-2-3> 보호소년의 연간 신수용인원 및 1일 평균수용인원

(단위 : 명)

구분	신수용인원[1]			1일 평균수용인원
	계	남	여	
2000년	2,931	2,750	181	2,197
2001년	2,738	2,565	173	2,713
2002년	2,415	2,215	200	2,045
2003년	2,101	1,928	173	1,758
2004년	1,804	1,661	143	1,563
2005년	1,543	1,395	148	1,464
2006년	1,468	1,284	184	1,118
2007년	1,511	1,293	218	1,503
2008년	1,732	1,415	317	1,161
2009년	2,775	2,337	438	1,191
2010년	2,822	2,404	418	1,162
2011년	2,960	2,534	426	1,264
2012년	3,429	2,994	435	1,390

자료 : 법무연수원, 「2013 범죄백서」 2014. 3.

주 : 1) 당해연도 법원 소년부의 결정에 의해 소년보호교육기관에 송치 또는 위탁된 인원과 임시퇴원 취소, 유치 등으로 새로 입원한 인원

※「2013 인권통계」 신설

<표 3-2-4> 소년보호사건 처리내역

(단위: 건, %)

구분	합 계	보호처분	심리불개시	불처분	타법원에 이송	검사에게 송치
소년보호사건	50,771	36,150	9,209	2,278	2,441	693
구성비	(100.0)	(71.2)	(18.1)	(4.5)	(4.8)	(1.4)

자료 : 법원행정처, 「2013 사법연감」 2013

<표 3-2-5> 벌금미납에 의한 노역장 유치인원 수(1일 평균 수용인원)

(단위 : 명, %)

구분	1일 평균 수용인원	수용내용		
		수형자	미결수용자	노역장유치
2000년	63,472(100.0)	37,120	24,745	1,607(2.5)
2001년	62,235(100.0)	37,036	23,763	1,436(2.4)
2002년	61,084(100.0)	37,111	22,911	1,062(1.7)
2003년	58,945(100.0)	36,458	21,253	1,234(2.1)
2004년	57,184(100.0)	34,609	20,638	1,937(3.4)
2005년	52,403(100.0)	32,933	17,293	2,177(4.2)
2006년	46,721(100.0)	29,923	14,816	1,982(4.3)
2007년	46,313(100.0)	29,289	15,227	1,797(3.9)
2008년	46,684(100.0)	30,280	14,368	2,036(4.4)
2009년	49,467(100.0)	30,749	16,288	2,430(4.9)
2010년	47,471(100.0)	30,607	14,819	2,045(4.3)
2011년	45,845(100.0)	29,820	14,201	1,824(4.0)
2012년	45,488(100.0)	29,448	14,186	1,854(4.1)

자료 : 법무연수원, 「2013 범죄백서」
주 : 1) 법무부 교정본부 통계
2) 피보호감호자 포함
※「2013 인권통계」 신설

<표 3-2-6> 영장사건 처리상황 - 전심급

(단위: 명, %)

구분 / 종류		청구인원	발부인원	기각인원	발부율	직권발부
합 계		282,070	254,948	27,130	90.4	25,736
구속영장		34,549	27,341	7,216	79.1	25,736
체포영장		49,969	49,318	651	98.7	-
감호영장		18	18	-	100.0	-
압수수색검증영장		122,240	107,499	14,741	87.9	-
감정유치장		698	694	4	99.4	-
통신제한조치허가서		132	113	19	85.6	-
통신사실제공요청		68,616	64,155	4,461	93.5	-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120	112	8	93.3	-
보호관찰 소장신청	구인장	3,590	3,571	19	99.5	-
	유치허가장	2,138	2,127	11	99.5	-

자료 : 법원행정처, 「2013 사법연감」 2013

주 : 1) 발부율은 수사를 위한 청구인원 대 발부인원의 비율임.

2) 기각인원에는 일부기각인원이 포함되어 있음(압수수색검증영장 13,064건, 통신제한조치허가서 14건,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3,501건,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3건이 일부기각 인원임).

3) 통신제한조치허가서란에는 기간연장이 포함됨.

<표 3-2-7> 형사공판사건(인원수) 중 구속사건 비율 - 접수

(단위: 명, %)

구분 / 심급	2011년			2012년		
	합 계	구 속	불구속	합 계	구 속	불구속
총 계	368,058	60,472	307,832	378,058	58,513	319,545
제 1 심						
합 계	277,744	28,326	249,418	292,707	27,169	265,538
	(100.0)	(10.2)	(89.8)	(100.0)	(15.5)	(84.5)
합 의	19,267	8,212	11,055	30,932	8,398	22,534
단 독	258,477	20,114	238,363	261,775	17,771	243,004
항 소 심						
합 계	69,056	24,406	44,650	66,178	23,427	42,751
	(100.0)	(35.3)	(64.7)	(100.0)	(35.4)	(64.6)
고등법원	10,042	5,564	4,478	12,128	6,199	5,929
지방법원	59,014	18,842	40,172	54,050	17,228	36,822
상 고 심						
합 계	21,504	7,740	13,764	19,173	7,917	11,256
	(100.0)	(36.0)	(64.0)	(100.0)	(41.3)	(58.7)
1심합의	3,731	2,176	1,555	3,686	2,345	1,341
1심단독	17,646	5,487	12,159	15,360	5,505	9,855
군사재판	127	77	50	127	67	60

자료 : 법원행정처(각 연도), 「사법연감」
주 : 1) 치료감호소 사건은 제외함(이하같음).
2) ( )내의 수는 구성비(%)임.

<표 3-2-8> 구속영장 발부율

(단위: 명, %)

	청구 및 신청 (A)	기각 (B)		발부 (E)	미집행	발부율 및 기각률		
		검사 (C)	판사 (D)			발부율 (E/A)	검사기각률 (C/A)	판사기각률 (D/A)
<2006>								
계	71 408	9 643	10 214	51 482	506	72.1	13.5	14.3
검 사	6 664	–	1 150	5 497	–	82.5	–	17.3
사 경	64 744	9 643	9 064	45 985	506	71.0	14.9	14.0
<2007>								
계	67 801	8 890	12 891	46 062	795	67.9	13.1	19.0
검 사	5 901	–	1 270	4 653	–	78.9	–	21.5
사 경	61 900	8 890	11 621	41 409	795	66.9	14.4	18.8
<2008>								
계	64 534	7 648	13 785	43 032	263	66.7	11.9	21.4
검 사	6 526	–	1 496	4 996	–	76.6	–	22.9
사 경	58 008	7 648	12 289	38 036	263	65.6	13.2	21.2
<2009>								
계	65 903	8 835	14 159	42 727	49	64.8	13.4	21.5
검 사	6 573	–	1 521	5 014	–	76.3	–	23.1
사 경	59 330	8 835	12 638	37 713	49	63.6	14.9	21.3
<2010>								
계	50 396	7 032	10 332	32 516	13	64.5	14.0	20.5
검 사	6 670	–	1 610	4 728	–	70.9	–	24.1
사 경	43 726	7 032	8 722	27 788	13	63.6	16.1	19.9

자료 : 대법원,「2012 사법연감」 2012.

※ 2013 사법연감 자료에 없어 「2012 인권통계」 p238 인용

<표 3-2-9> 범죄자 기소인원 중 구속인원 및 구속률

(단위 : 명, %)

구분	기소인원	구속인원	구속률
2000년	1,200,986	91,933	7.7
2001년	1,306,204	93,030	7.1
2002년	1,333,682	89,165	6.7
2003년	1,288,885	83,160	6.5
2004년	1,272,709	63,650	5.0
2005년	1,021,230	46,126	4.5
2006년	954,253	38,056	4.0
2007년	1,042,473	33,632	3.2
2008년	1,268,627	38,507	3.0
2009년	1,154,372	39,453	3.4
2010년	877,420	26,253	3.0
2011년	817,289	26,515	3.2
2012년	769,833	27,615	3.6

자료 : 대검찰청(각 연도),「범죄분석」

※「2013 인권통계」 신설

<표 3-2-10>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인별 처리상황

(단위: 건, %)

사건 \ 심급	합 계	변호인	비변호인
접 수	2,141	1,196	945
처리계	2,106	1,187	919
	(100.0)	(100.0)	(100.0)
석방명령	447	325	122
	(21.3)	(27.4)	(13.3)
무조건부	145	100	45
조건부	302	225	77
청구기각	1,595	820	775
	(75.7)	(69.1)	(84.3)
기 타	64	42	22
	(3.0)	(3.5)	(2.4)

자료 : 법원행정처,「2013 사법연감」 2013
주 : ( )내의 수는 구성비(%)임.

<표 3-2-11> 보석청구사건 처리상황

(단위: 건, %)

법원 \ 구분	금년접수	처리					직권보석
		계	허가	불허가	기 타	허가율	
합 계	6,705	6,613	2,541	3,978	94	38.4	206
지방법원	6,247	6,168	2,414	3,666	88	39.1	192
고등법원	410	399	127	268	4	31.8	12
대 법 원	48	46	-	44	2	-	2

자료 : 법원행정처,「2013 사법연감」 2013.
주 : 1) 허가율 = (허가건수/처리건수) * 100
2) 직권보석은 접수, 처리계란에 포함되지 않음.

제3절 공정한 재판을 보호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보호받을 권리는 침해당한 사람의 구제받을 권리의 하나이다. 우리 「헌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국선변호인제도, 자백의 증거능력제한, 신속한 공개재판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이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담당 국가법원에 의하여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했으며, 또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4조 제1항[81]에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의 결정 또는 민사상의 권리 및 의무의 다툼에 관한 결정을 위해 법률에 의해 설치된 권한 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 등을 근거로 공정한 재판을 보호받을 권리 관련 통계는 국선변호인 선정 사건 수 및 피고인 수, 형사보상처리 인용률, 구속영장 기각률로 구성하였다.

8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4조
1. 모든 사람은 재판에 있어서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의 결정 또는 민사상의 권리 및 의무의 다툼에 관한 결정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권한 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보도기관 및 공중에 대하여서는, 민주 사회에 있어서 도덕,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거나 또는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공개가 사법상 이익을 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견해로 엄격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도에서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 기타 소송에서 선고되는 판결은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당해 절차가 혼인관계의 분쟁이나 아동의 후견문제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다.

<표 3-3-1> 국선변호인 선정 사건수 및 피고인수

(단위: 명, %)

심급 / 선정사유	합 계		제 1 심				항 소 심				상고심	
			합 의		단 독		고등법원		지방법원			
	사건수	인원수	사건수	인원수	사건수	인원수	사건수	인원수	사건수	인원수	사건수	인원수
합 계	109,571	120,483	12,468	13,549	61,585	68,504	5,097	5,684	22,595	24,449	7,826	8,297
사형,무기, 단기3년이상 징역·금고	9,431	10,493	2,499	2,756	4,090	4,509	2,055	2,307	410	492	377	429
미성년자	2,297	3,048	132	212	2,035	2,692	6	8	109	121	15	15
70세이상의자	3,498	3,636	73	75	2,540	2,635	15	16	522	543	348	367
농아자	68	76	1	1	54	59	–	–	13	16	–	–
심신장애자	158	159	15	15	91	92	3	3	29	29	20	20
빈곤등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때	94,100	103,051	9,748	10,490	52,775	58,517	3,018	3,350	21,512	23,248	7,047	7,446
군사상고	19	20	–	–	–	–	–	–	–	–	19	20

자료 : 대법원,「2013 사법연감」 2013.

주 : 1) 선정사유가 중복된 경우에는 그 중 한 사유란에만 기재함.

2) 치료감호처분 사건에 대한 국선변호인 64명 및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인원 1,048명이 포함됨.

<표 3-3-2> 형사보상처리 인용률

(단위 : 건명, %)

연도별	처리건수	결정건수	인용률	기각	각하	청구취소 기 타
2003년	189	161	85.2	–	–	–
2004년	272	233	85.7	–	–	–
2005년	160	148	92.5	–	–	–
2006년	177	145	81.9	–	–	–
2007년	239	195	81.6	25	15	4
2008년	250	222	88.8	19	3	6
2009년	251	216	86.1	14	13	8
2010년	8,349	8,230	98.6	37	11	71
2011년	20,802	20,625	99.1	66	54	57
2012년	41,908	41,732	99.6	73	45	58

자료 : 법원행정처(각 연도), 「사법연감」
※「2013 인권통계」 신설

<표 3-3-3> 구속영장 기각률

(단위 : 명, %)

구분	청구인원	발부인원	기각인원[1)]	기각률	직권발부
2003년	109,620	94,741	14,879	13.6	27,191
2004년	100,693	85,916	14,767	14.7	26,625
2005년	74,613	65,150	9,592	12.9	21,211
2006년	62,160	51,990	10,178	16.4	22,589
2007년	59,109	46,274	12,868	21.8	27,543
2008년	56,845	42,903	13,852	24.4	28,273
2009년	57,019	42,732	14,295	25.1	26,816
2010년	42,999	32,573	10,435	24.3	25,572
2011년	37,948	28,960	9,042	23.8	24,091
2012년	34,549	27,341	7,216	20.9	25,736

자료 : 법원행정처(각 연도), 「사법연감」
주 : 1) 기각인원에는 일부기각 인원이 포함되어 있음
※「2013 인권통계」 신설

제4절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는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살 권리로서 「헌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음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12조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선언하였다. 또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7조[82]에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 등을 근거로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 공공기관 CCTV 설치 운영, 공공기관 개인정보 노출 및 유출현황, 권리침해정보 위반유형별 시정요구 현황으로 구성하였다.

8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7조
1.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2.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표 3-4-1>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

(단위 : 건수)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35,167	54,832	122,215	166,801	177,736
신고	2,139	1,788	2,556	2,058	2,347
상담	33,028	53,044	119,659	164,743	175,389

자료 : 안전행정부, 「2014 안전행정통계연보」 2014. 6.
※「2013 인권통계」 신설

<표 3-4-2> 공공기관 CCTV 설치/운영

(단위 : 갯수)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총계	241,415	309,227	364,302	461,746	565,723
범죄예방	59,917	107,258	141,791	188,168	260,098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170,460	192,662	207,343	249,947	278,002
교통단속	7,088	6,288	11,636	15,046	17,111
교통정보 수집·분석 및 제공	3,950	3,019	3,532	8,585	10,512

자료 : 안전행정부, 「2014 안전행정통계연보」 2014. 6.

<표 3-4-3> 공공기관 개인정보 노출 및 유출현황

(단위 : 횟수, 건수)

구분 (모니터링 횟수)	점검사이트 수	노출사이트 수	주민번호 노출건수			
			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2006년 하반기 (1회점검)	304	189	72,927	5,218	31,300	36,409
2007년 (6회 점검)	6,961 (531×1회) (1,286×5회)	704	92,587	1,416	41,559	49,612
2008년 (7회 점검)	24,680 (1,766×4회) (5,872×3회)	556	31,684	2,309	11,746	17,629
2009년 (10회 점검)	69,700 (6,670×7회) (7,670×3회)	478	23,183	1,671	13,455	8,057

자료 : 안전행정부, 「2010년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0. 8.
※「2013 인권통계」 신설

<표 3-4-4> 권리침해정보 위반유형별 시정요구 현황

(단위 : 건수)

연도	구분	심의	시정요구			
			삭제	접속차단	이용해지	소계
2011년	명예훼손 등	2,338	244	99	1	344
	초상권	495	104	220	–	324
	지적재산권	808	69	211	399	679
	소계	3,641	417	530	400	1,347
2012년	명예훼손 등	1,674	276	244	2	522
	초상권	1,130	330	714	–	1,044
	지적재산권	627	16	110	489	615
	소계	3,431	622	1,068	491	2,181
2013년	명예훼손 등	2,436	1,073	88	2	1,163
	초상권	2,259	315	1,634	–	1,949
	지적재산권	869	151	92	601	844
	소계	5,564	1,539	1,814	603	3,956
합계		12,636	2,578	3,412	1,494	7,484

자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2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백서」 2014. 4.
주 : 명예훼손 등 :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유포 정보
※「2013 인권통계」 신설

제5절 거주·이전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는 누구나 각국의 영역 내에서 이전과 거주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의미한다. 「헌법」 제14조는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세계인권선언」 제13조 및 제14조[83]는 각국의 영역내외에서의 이전과 거주의 자유에 관한 권리,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비호를 향유할 권리를 각각 선언하였다. 또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2조[84]에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 등을 근거로 거주·이전의 자유 관련 통계는 출입국자 연도별 추이, 연도별 출입국사범 처리 현황, 저상버스 도입현황,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및 이용률로 구성하였다.

83) 「세계인권선언」 제13조 및 제14조
제13조 1. 모든 사람은 각국의 영역 내에서 이전과 거주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로부터도 출국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1.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비호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이 권리는 비정치적인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만으로 인하여 제기된 소추의 경우에는 활용될 수 없다.

84)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2조
1. 합법적으로 어느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영역 내에서 이동의 자유 및 거주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
3. 상기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또한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기타 권리와 양립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4. 어느 누구도 자국에 돌아올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표 3-5-1> 출입국자 연도별 추이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출입국자 총수	총 계	35,206,504	42,988,101	45,422,910	50,322,102	54,966,229
	국 민	19,586,995	25,585,627	26,064,463	28,136,628	30,352,303
	외국인	15,619,509	17,402,474	19,358,447	22,185,474	24,613,926
지난해 대비	총 계	92.2	122.1	105.7	110.8	109.2
	국 민	79.4	130.6	101.9	108.0	107.9
	외국인	115.5	111.4	111.2	114.6	110.9
지수(2009년도 기준)	총 계	100	122.1	129.0	142.9	156.1
	국 민	100	130.6	133.1	143.6	155.0
	외국인	100	111.4	123.9	142.0	157.6

자료 : 법무부, 「2013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14. 5.
※「2013 인권통계」 신설

<표 3-5-2> 연도별 출입국사범 처리 현황

(단위: 건, 천원)

구분	총계	강제 퇴거	출국 명령	출국 권고	통고처분		고발	과태료		기타
					건	금액(천)		건	금액(천)	
2009년	100,337	29,043	1,180	2,401	23,851	31,989,135	2,470	11,434	1,546,146	29,958
2010년	94,232	13,474	1,472	2,781	33,109	43,505,440	1,171	11,987	1,700,448	30,238
2011년	92,970	18,034	2,250	2,862	31,417	44,874,390	928	10,435	1,520,690	27,044
2012년	96,799	18,248	3,340	2,676	24,279	30,740,620	819	13,796	1,955,220	33,641
2013년	101,763	18,268	5,655	3,775	25,148	31,614,430	1,234	10,189	1,391,510	37,494

※ 강제퇴거, 출국명령, 출국권고는 통고처분 등 병과 처분이 없는 경우임
자료 : 법무부, 「2013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14. 5.
※「2013 인권통계」 신설

<표 3-5-3> 저상버스 도입현황

(단위 : 대, %)

구분	보급률	전체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국	10.0	3,206	162	364	304	500	978	838
서울	19.3	1,468	67	194	108	260	482	322
부산	4.4	112	5	7	7	5	25	60
대구	7.7	128	5	10	20	30	35	26
인천	7.2	149	20	20	30	17	28	30
광주	6.9	62	10	10	10	8	12	10
대전	9.0	87	14	8	8	8	12	25
울산	7.8	50	3	10	7	10	6	12
경기	7.6	717	–	77	89	125	200	226
강원	14.3	79	–	6	6	12	18	37
충북	13.0	70	3	9	8	6	36	8
충남	2.0	14	–	–	–	3	5	6
전북	2.1	17	–	–	–	4	10	11
전남	2.5	17	–	–	1	–	5	3
경북	1.6	18	–	8	1	2	3	4
경남	13.8	208	30	–	9	10	101	58
제주	6.1	10	5	5	–	–	–	–

자료 : 고용노동부, 「2013 장애인통계」 2013.12.

<표 3-5-4>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및 이용률

(단위 : 대, %)

구 분	보급률		이용률	
	보급대수	지표값	연간 이용 장애인 수	지표값
전 국	1,476	-		-
서울	300	31.2	702,840	7.3
부산	100	25.5	229,057	5.9
대구	60	21.4	151,327	5.4
인천	112	39.3	310,379	10.9
광주	40	25.8	61,932	4.0
대전	60	36.7	82,584	5.1
울산	24	23.2	66,451	6.4
경기	212	18.6	114,077	0.7
강원	110	48.0	22,899	2.2
충북	61	27.8	21,979	2.9
충남	31	10.3	30,149	1.8
전북	77	26.6	28,968	6.4
전남	20	5.5	36,509	1.2
경북	55	13.8	39,776	1.2
경남	209	50.3	41,559	5.3
제주	5	6.3	7,910	2.6

자료 : 고용노동부, 「2013 장애인통계」, 2013.12.

주 : 1)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의 개인용무 수행을 위한 차량이동을 지원하는 것임

2)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은 등록장애인(1, 2급) 1만 명에 대하여 인허가 된 특별교통수단의 보급대수로 산정함

3) 특별교통수단 이용률은 등록장애인(1, 2급) 대비 연간 이용 장애인 수(2009년)를 기준으로 산정함

제6절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는 시민적 권리로 국가의 통치권에 대항해 발전해 온 고전적 인권으로 「헌법」 제19조 및 제20조[85]에 각각 열거하고 있고, 「세계인권선언」 제18조는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라고 선언하였다. 또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8조[86]에도 명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 등을 근거로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관련 통계는 입영 및 집총 거부자(양심적 병역거부) 발생 및 처리현황,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기소 및 구속자 수, 종교별 교세현황, 종립 전문대학 이상 현황, 종립 초·중·고등·특수학교 현황으로 구성하였다.

<표 3-6-1> 입영 및 집총 거부자(양심적 병역거부) 발생 현황

(단위 : 명)

구 분		병역거부자 발생현황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계		174	598	633	721	728
거부 사유	여호와의 증인	172	597	627	715	723
	기 타	2	1	6	6	5

자료 : 병무청,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2013년 국정감사 요구자료
주 : 1) 2013. 7. 31.현재까지 자료임.
2) 기타내역 : 전쟁반대, 평화주의, 신념적 자유 등
※「2013 인권통계」 신설

85) 「헌법」 제19조 및 제20조
제19조(양심의 자유)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종교의 자유)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86)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8조
1. 사람은 누구나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자기가 선택하는 종교 또는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이는 자유, 자기 혼자서 또는 남들과 함께, 공공연히 또는 은밀하게 예배·의식·행사·강론이라는 형태로 자기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밝히는 자유가 포함된다.
2. 아무도 자기가 선택하는 종교 또는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이는 자유를 해칠 우려가 있는 강제를 강요당하지 않는다.
3.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또 공공의 안녕·공공질서·공중건강·도덕·타인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한에 의해서만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가 제약 받는다.
4. 이 협약의 가맹국은 부모(경우에 따라서는 법정후견인)가 자신의 신념에 따라 그 자녀에게 종교적 및 도덕적 교육을 베푸는 자유를 존중할 의무를 진다.

<표 3-6-2> 입영 및 집총 거부자(양심적 병역거부) 처리 현황

(단위 : 명)

구 분	병역거부자 처리현황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계	174	598	633	721	728
징 역	5	415	608	714	722
집행유예	–	5	3	1	–
무 혐 의[1]	1	1	3	4	5
기소유예[2]	–	–	4	1	1
재판계류중	168	177	15	1	–

자료 : 병무청,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2013년 국정감사 요구자료

주 : 1) 무혐의 사유 : 입영 통지서 송달기일(30일전) 미준수 등

2) 기소유예 사유 : 종교적 신념 변화 등 → 현역병 입영

※「2013 인권통계」 신설

<표 3-6-3>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기소 및 구속자수

(단위: 명)

구분	입건자수	기소				불기소	기타
		소계	구공판		구약식		
			구속	불구속			
2001년	222	126	110	16	–	96	–
2002년	236	145	115	30	–	91	–
2003년	149	101	72	29	–	48	–
2004년	98	69	31	38	–	29	–
2005년	67	37	11	26	–	28	2
2006년	50	29	11	18	–	20	1
2007년	45	28	13	15	–	14	3
2008년	34	26	13	13	–	6	2
2009년	53	38	15	23	–	10	5
2010년	52	38	16	22	–	14	–
2011년	53	38	14	22	2	13	2
2012년	88	74	26	48	–	14	–

자료 : 대검찰청(각 연도), 「범죄분석」

※「2013 인권통계」 신설

<표 3-6-4> 종교별 교세현황

(단위: 개소, 명)

구 분 / 종교별	2011년 총단체수	수치파악			신도수		
		2011년 교당 수	2011년 교직자 수	비 고	인구 및 주택센서스 집계 ('05.11.1)	인구 및 주택센서스 집계 ('95.11.1)	인구 및 주택센서스 집계 ('85.11.1)
불 교	265	26,791	46,905	137개 종단	10,726,463	10,321,012	8,059,624
개신교	232	77,966	140,483	118개 종단	8,616,438	8,760,336	6,489,282
천주교	1	1,609	15,918	성당수	5,146,147	2,950,730	1,865,397
유 교	1	234	235	향교수	104,575	210,927	483,366
천도교	1	105	630		45,835	28,184	26,818
원불교	1	550	1,979		129,907	86,823	92,302
대종교	1	22	11		3,766	7,603	11,030
그 밖의 종교	64	2,391	26,650	20개 종단	197,635	232,209	175,477
계	**566**	**109,668**	**232,811**		**24,970,766**	**22,597,824**	**17,203,296**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1년 한국의 종교현황」

주 : 1) 단체수, 교당수, 교직자수, 2012년 3월 20일까지 각 종단 협조 자료의 수치를 집계한 것임

2) '95.11.1. 기준 통계청 집계 우리나라 전체 인구소 : 44,553,710명

3) '05.11.1. 기준 통계청 집계 우리나라 전체 인구소 : 47,041,434명

※ 한국의 종교현황 통계 업데이트된 자료가 없어 「2012 인권통계」 p231 인용

<표 3-6-5> 종립 전문대학 이상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불 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그 밖의 종교	계
일반대학	4	52	14	2	2	74
대학원대학교 (전문대학원)	2	20		3	–	25
전문대학 (종교계)	–	29	1	1	1	32
원격대학교	2	1		2	–	5
각종학교	–	3	–	–	–	3
계	**8**	**105**	**15**	**8**	**3**	**139**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1년 한국의 종교현황」 2012.
※ 한국의 종교현황 업데이트된 자료가 없어「2012 인권통계」 p232 인용

<표 3-6-6> 종립 초·중·고등·특수학교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천주교	개신교	불 교	기타종교	계
초등학교	6	22	1	8	37
중학교	28	90	15	88	221
고등학교	38	126	16	117	297
계	**72**	**238**	**32**	**213**	**555**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1년 한국의 종교현황」 2012.
주 : 기타 종교 범주 : 원불교 등이 포함됨.
※ 한국의 종교현황 업데이트된 자료가 없어「2012 인권통계」 p232 인용

제7절 언론·출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으로 「헌법」 제21조 및 제22조는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고, 「세계인권선언」 제19조는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라고 선언하였다. 또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9조[87] 제1항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명시하고, 같은 규약 제2항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 등을 근거로 언론·출판의 자유 관련 통계는 연도별 통신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제제종류별 방송심의 의결 현황, 행정정보 공개율, 정보격차지수로 구성하였다.

87)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9조
1.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제1항).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3.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a)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b)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표 3-7-1> 연도별 통신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단위 : 건, %)

연도	심의건수	시정요구					
		계	삭제	접속차단	이용정지	이용해지	기타
2008년	29,589	15,004(50.7%)	6,442	4,731	80	3,686	65
2009년	24,346	17,636(72.4%)	4,538	7,043	–	5,829	226
2010년	45,758	41,103(89.8%)	7,320	22,853	–	10,771	159
2011년	57,944	53,485(92.3%)	9,058	31,357	–	12,398	672
2012년	75,661	71,925(95.1%)	17,827	39,296	–	14,342	460
2013년	110,714	104,400(94.3%)	22,986	62,658	–	16,914	1,842

자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각 연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백서」

주 : 1) 심의 건수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건수가 포함됨

2) ( )는 심의 건수 대비 시정요구 비율

※「2013 인권통계」 신설

<표 3-7-2> 제재종류별 방송심의 의결 현황

(단위 : 건,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비고
과징금		12	1	13	
법정제재	사과[1]	64	18	–	
	정정,중지	13	24	5	
	징계	–	–	–	
	경고	115	120	158	
	주의	171	191	241	
	병과[2]	29	17	60	
	소계	392	370	464	
행정지도	권고	297	342	418	
	의견제시	107	155	96	
	소계	404	497	514	
문제없음		134	100	92	
합계		942	968	1,083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제2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백서」 2014. 4.

주 : 1) 시청자에 대한 사과 : 위헌판결(헌법재판소, 2012. 8. 23.)

2) 심의대상 방송프로그램(또는 방송광고)에 대해 「방송법」 제100조 제1항 각 호의 제제조치를 동시에 의결한 경우

※「방송법」 제100조 제1항(제재조치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제33조의 심의규정 및 제74조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다음 각호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에 따른 시청자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6.10.27, 2008.2.29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9.7.31, 2013.3.23]

1. 삭제 [2013.3.23]
2.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3.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 주의 또는 경고

※「2013 인권통계」 신설

<표 3-7-3> 행정정보 공개율

(단위 : 건,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정보공개율	90.5	90.8	91.1	91.4	89.7	90.7	95.0
청구건수	132,964	197,617	229,650	301,332	322,018	335,706	333,006
전부공개	106,423	157,958	183,722	244,604	259,739	272,779	285,669
부분공개	13,970	21,479	25,516	30,682	29,271	31,791	30,777
비공개	12,571	18,180	20,412	26,046	33,008	31,136	16,560

자료 : 안전행정부(각 연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

※「2013 인권통계」 신설

<표 3-7-4> 정보격차지수

(단위 : %)

구분	전체국민	소외계층					비고
		평균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장노년층	
2004년	100	45.0	57.5	55.6	33.8	40.9	
2005년	100	53.3	65.2	64.2	41.7	49.3	
2006년	100	62.0	73.9	73.0	49.8	58.4	
2007년	100	65.9	76.0	75.5	54.6	62.6	
2008년	100	68.0	78.8	78.1	57.9	64.2	
2009년	100	69.7	80.3	79.5	60.3	65.9	
2010년	100	71.1	81.3	80.5	61.8	67.5	
2011년	100	72.4	82.2	81.4	63.6	69.2	
2012년	100	74.0	83.4	82.2	64.8	71.2	
2013년	100	75.2	83.8	83.2	67.8	72.6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2013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보고서」 2014. 3.

주 : 평균은 소외계층별 규모를 고려한 가중 평균이며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층, 장노년층은 50대 이상 연령층 기준임

제8절 집회 · 결사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는 현대사회의 보편적 기본권으로 「헌법」 제21조 1항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세계인권선언」 제20조는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선언하였다. 또한 「시민적·정칙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21조[88]는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되고,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며,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도덕의 보호,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해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 등을 근거로 집회·결사의 자유 관련 통계는 집회시위 발생현황, 신고 및 미신고집회 개최 현황, 연도별 집회시위 금지통고 현황,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 위반 현황, 단체조직의 자유 정도로 구성하였다.

88) 「시민적·정칙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21조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표 3-8-1> 집회시위 발생현황

(단위: 회)

구 분	계	학 원	사회·문화	노 정	경 제
2005	28,036	2,466	9,022	10,401	6,147
2006	25,861	1,939	9,775	8,868	5,279
2007	23,704	1,884	9,014	8,251	4,555
2008	28,400	3,606	11,100	9,148	4,546
2009	28,621	1,987	11,052	9,234	6,348
2010	54,212	2,931	15,716	17,726	17,839
2011	42,398	2,587	12,154	16,140	11,517
2012	40,261	2,463	13,771	14,344	9,683
서 울	10,727	1,053	4,003	3,160	2,511
부 산	3,116	146	1,129	1,333	508
대 구	1,572	79	584	738	171
인 천	2,520	123	594	641	1,162
울 산	511	58	111	254	88
광 주	1,168	42	560	390	176
대 전	911	90	222	505	94
경 기	6,559	292	2,349	2,460	1,458
강 원	634	36	229	115	254
충 북	1,934	72	819	721	322
충 남	1,156	60	223	498	375
전 북	2,388	68	662	1,148	510
전 남	2,662	188	962	662	850
경 북	2,011	80	326	1,194	411
경 남	2,128	69	823	502	734
제 주	264	7	175	23	59

자료 : 경찰청,「2012 경찰통계연보」 2013.10.

<표 3-8-2> 신고 및 미신고집회 개최 현황

(단위: 회, %)

구 분		총집회 횟수	신고집회 횟수	미신고집회 횟수
2013년	횟수	43,071	42,562	509
				(1.18%)
	인원	2,237,682	2,183,681	54,001
				(2.41%)
2012년	횟수	40,261	40,038	223
				(0.55%)
	인원	1,958,225	1,922,962	35,263
				(1.80%)
2011년	횟수	42,397	42,129	268
				(0.63%)
	인원	1,975,365	1,938,897	36,468
				(1.85%)
2010년	횟수	54,212	53,682	530
				(0.98%)
	인원	1,969,086	1,904,254	64,832
				(3.29%)
2009년		28,621	27,641	980
				(3.42%)
2008년		28,400	25,245	3,155
				(11.11%)
2007년		23,704	23,116	588
				(2.48%)

자료 :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정보공개자료실)

<표 3-8-3> 연도별 집회시위 금지통고 현황

(단위 : 건, %)

연도별	집회신고 건수	금지통고 건수	금지통고율	비고
2007년	96,142	368	0.39	
2008년	123,495	299	0.24	
2009년	155,030	900	0.58	
2010년	195,213	957	0.49	
2011년	164,032	352	0.21	
2012년	148,301	203	0.14	

자료 : 경찰청(각 연도), 「경찰백서」

※「2013 인권통계」 신설

<표 3-8-4>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 위반 현황

(단위 : 건)

연도별	입건자 수	기소	불기소	기타 (기소중지 등	비고
2007년	1,483	1,051	416	16	
2008년	2,006	1,514	460	32	
2009년	1,615	1,195	400	20	
2010년	1,200	656	515	29	
2011년	1,184	657	487	40	
2012년	1,122	708	378	36	

자료 : 경찰청(각 연도), 「경찰백서」

※「2013 인권통계」 신설

<표 3-8-5> 단체조직의 자유 정도(공무원노동조합 조직현황)

(단위 : 개소, 명, %, 천명)

연도별	노동조합수	조합원수(명)	조직률	가입대상 공무원 (천 명)
2007년	98	173,125	59.7	290
2008년	95	215,537	72.1	299
2009년	95	158,910	53.1	299
2010년	96	164,147	55.6	295
2011년	99	165,566	56.1	295
2012년	110	164,703	55.8	295

자료: 고용노동부(각 연도), 「고용노동백서」

※「2013 인권통계」 신설

제 9 절 참정권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정치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헌법」 제24조 및 제25조에 의하여 법률로 정하는 선거권, 공무를 맡을 권리를 각각 규정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1조[89],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25조[90]에 명시하고 있다. 또한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제7조 가호, 나호[91] 및 「인종차별철폐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제5조 c항[92] 등에 의하여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 등을 근거로 참정권 관련 통계는 투표율 추이, 국회 및 지방의회 여성의원 비율, 관리직(5급 이상) 여성공무원 현황, 장애인선거에 대한 투표편의 제공, 선거사범 처리현황으로 구성하였다.

89) 「세계인권선언」 제21조
1.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자를 통해, 자국의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의 공무에 취임할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3. 국민의 의사는 정부의 권위의 기초가 된다. 이 의사는 보통 및 평등 선거권에 의거하며, 또한 비밀투표 또는 이와 동등한 자유로운 투표 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를 통하여 표현된다.

90)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25조 모든 사람은 차별이나 불합리한 제한 없이 다음의 권리 및 기회를 가진다.
(a)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
(b) 보통, 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투표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선거인의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을 보장하는 진정한 정기적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피선되는 것
(c) 일반적인 평등 조건 아래서 자국의 공무에 취임하는 것

91) 선거·국민투표에서의 투표권 및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공공기구에의 피선거권을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보장하고 정책입안·정책시행에의 참여, 공직담당 및 공무수행할 권리를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보장함.

92)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선거에 참가할 권리, 보통·평등 선거의 기초 위에서 투표하고 입후보할 권리, 공무행사는 물론 정부에 참여할 권리 등을 평등하게 보장함.

<표 3-9-1> 투표율 추이

(단위 : %)

구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2000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2002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2004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2006년)
투표율	57.2	48.9	70.8	60.6	51.6
제17대 대통령선거 (2007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2008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2010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2012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2014년)
63.0	46.1	54.5	54.2	75.8	56.8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각 선거별), 「투표율 분석」
※「2013 인권통계」 신설

<표 3-9-2> 국회 및 지방의회 여성의원 비율

(단위 : 명)

연 도	국회 의원수			지방의회 의원수		
		여성국회 의 원 수	비 율(%)		지방의회 여성의원수	비 율(%)
1963	175	2	1.1	–	–	–
1967	175	3	1.7	–	–	–
1971	204	5	2.5	–	–	–
1973	146	12	8.2	–	–	–
1978	154	1	0.6	–	–	–
1981	276	8	2.9	–	–	–
1985	276	8	2.9	–	–	–
1988	299	6	2.0	–	–	–
1991	–	–	–	5,169	48	0.9
1992	299	3	1.0	–	–	–
1995	–	–	–	5,511	127	2.3
1996	299	9	3.0	–	–	–
1998	–	–	–	4,179	97	2.3
2000	273	16	5.9	–	–	–
2002	–	–	–	4,167	140	3.4
2004	299	39	13.0	–	–	–
2006	–	–	–	3,621	525	14.5
2008	299	41	13.7	–	–	–
2010	–	–	–	3,649	739	20.3
2012	300	47	15.7	–	–	–

자료 : 통계청, 「2013 한국의 사회지표」, 2014. 3.

<표 3-9-3> 관리직(5급 이상) 여성공무원 현황

(단위 : 명, %)

구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전체	여성	여성비율	전체	여성	여성비율
2001년	31,703	1,605	5.1	16,367	864	5.3
2002년	32,503	1,749	5.4	16,493	877	5.3
2003년	33,496	1,975	5.9	17,056	929	5.4
2004년	33,605	2,222	6.6	17,261	1,019	5.9
2005년	34,582	2,186	6.3	17,496	1,036	5.9
2006년	35,742	2,487	7.0	18,313	1,199	6.5
2007년	37,557	2,920	7.8	18,959	1,349	7.1
2008년	38,348	2,724	7.1	19,076	1,457	7.6
2009년	36,286	3,021	8.3	19,579	1,595	8.1
2010년	37,075	3,348	9.0	20,078	1,730	8.6
2011년	37,703	3,720	9.9	20,390	1,869	9.2
2012년	43,784	4,932	11.3	20,934	2,064	9.9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한국의 성 인지 통계」 2014. 2. 28.
※「2013 인권통계」 신설

<표 3-9-4> 장애인선거에 대한 투표편의 제공

구분		단위	제17대 대통령 선거 (2007.12.19.)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2008.4.9.)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2012.4.11.)	제18대 대통령선거 (2012.12.19.)
1층 투표소		%	95.7 (12,613/13,178)	95.7 (12,680/13,246)	92.2 (12,412/13,470)	92.5 (12,523/13,542)
점자투표 안내문 작성·발송		부	76,450	31,801	67,111	65,505
음성투표 안내문 게시		기관	280	280	280	280
이동편의시설(5종)[1]		개소	7,944	9,051	12,489	12,821
투표안내요원		명/투표소	3.5	3.5	3.9	4.7
장애인용 기표대		개	전투표소 설치	전투표소 설치	전투표소 설치	전투표소 설치
투표 보조 용구		조	전투표소 비치 선거별1매	전투표소 비치 선거별1매	전투표소 비치 선거별1매	전투표소 비치 선거별1매
중증장애인 투표지원	보조인	명	2,132	2,541	1,490	1,720
	차량	대	1,041	1,112	798	927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8대 대통령선거 총람」
주 : 1) 이동편의시설(5종) : 승강기, 휠체어리프트, 장애인 통로, 도움벨, 점자유도 블록
※「2013 인권통계」 신설

<표 3-9-5> 선거사범 처리현황

(단위 : 명)

구분	2007년 12월	2008년 4월	2012년 4월	2012년 12월
선거명	제17대 대통령 선거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제18대 대통령 선거
입건	1,450	1,990	2,557	739
구속	38	68	117	19
불구속	1,412	1,922	2,440	720

자료 : 대검찰청(선거관리시스템)

※「2013 인권통계」 신설

제4장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제1절 사회보장권

사회보장권은 인간의 존엄에 상응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해 일정한 내용의 적극적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헌법」 제34조는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를 총괄한 조항으로서 제1항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제2항에서는 국가가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2조, 제25조에서는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선언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를 포함하여 실업, 질병, 장애, 사별, 노령 등 각종 사회적 위험과 생애주기상 겪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제10조에서는 가족의 성립, 어린이 양육과 교육을 위한 지원, 임산부 보호, 어린이와 연소자를 위한 보호를 규정하고, 제11조에서는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개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93].

위와 같은 규정 등을 근거로 사회보장권 통계는 연도별 최저생계비, 건강보험 적용인구, 국민연금 가입자 수, 공공연금 가입자 수,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류별 시설수와 평균 종사자 수 및 수용인원, 모자보호

93)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제10조 및 제11조
제10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
1.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인 가정에 대하여는, 특히 가정의 성립을 위하여 그리고 가정이 부양 어린이의 양육과 교육에 책임을 맡고 있는 동안에는 가능한 한 광범위한 보호와 지원이 부여된다. 혼인은 혼인 의사를 가진 양당사자의 자유로운 동의하에 성립된다.
2. 임산부에게는 분만 전후의 적당한 기간 동안 특별한 보호가 부여된다. 동 기간 중의 근로 임산부에게는 유급휴가 또는 적당한 사회보장의 혜택이 있는 휴가가 부여된다.
3. 가문 또는 기타 조건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어린이와 연소자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와 원조의 조치가 취하여진다.…… 당사국은 또한 연령제한을 정하여 그 연령에 달하지 않은 어린이에 대한 유급노동에의 고용이 법률로 금지되고 처벌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취지에서 자유로운 동의에 입각한 국제적 협력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권리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생활시설 수 및 생활 현황, 노숙인 생활시설 수 및 생활인원 현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 및 지급 실적,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인정현황, 산재보험적용 근로자 수, 지니계수 및 상대적 빈곤율 추이로 구성하였다.

<표 4-1-1> 연도별 최저생계비

(단위: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05	401,466	668,504	907,929	1,136,332	1,302,918	1,477,800
2006	418,309	700,849	939,849	1,170,422	1,353,242	1,542,382
2007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1,609,630
2008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1,487,878	1,712,186
2009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2010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2011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2012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2013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자료 : 보건복지부,「2013 보건복지통계연보」 2013. 11.

<표 4-1-2> 건강보험 적용인구 - 지역별, 시도별

(단위: 명)

구 분	총 계	직장건강보험(근로자)		
		적용인구	가입자	피부양자
2009	48,613,534	26,761,318	10,583,549	16,177,769
2010	48,906,795	27,746,938	11,189,387	16,557,551
2011	49,299,165	28,649,521	11,809,642	16,839,879
2012	49,662,097	29,526,657	12,388,338	17,138,319
서 울	9,999,304	6,042,078	2,726,910	3,315,168
부 산	3,391,000	2,015,581	837,779	1,177,802
대 구	2,401,027	1,376,715	547,447	829,268
인 천	2,777,871	1,704,577	734,399	970,178
광 주	1,402,811	823,665	329,919	493,746
대 전	1,477,310	857,732	354,239	503,493
울 산	1,137,466	793,796	327,419	466,377
세 종	109,917	61,433	25,191	36,242
경 기	11,986,934	7,460,460	3,220,457	4,240,003
강 원	1,471,210	722,676	285,959	436,717
충 북	1,522,357	892,139	365,920	526,219
충 남	1,985,794	1,143,059	461,492	681,567
전 북	1,776,589	960,651	359,683	600,968
전 남	1,817,523	953,723	337,337	616,386
경 북	2,599,481	1,497,322	572,594	924,728
경 남	3,244,280	1,938,230	788,540	1,149,690
제 주	561,223	282,820	113,053	169,767

자료 : 통계청,「2013 한국통계연감」 2014. 3.
주 : 연도말 기준

(단위: 명)

구 분	직장건강보험(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지역건강보험	
	적용인구	가입자	피부양자	세대수	가입자
2009	4,651,422	1,562,232	3,089,190	8,110,855	17,200,794
2010	4,636,588	1,574,342	3,062,246	7,940,227	16,523,269
2011	4,607,053	1,587,071	3,019,982	7,901,928	16,042,591
2012	4,579,377	1,602,306	2,977,071	7,834,587	15,556,063
서 울	776,289	298,656	477,633	1,633,692	3,180,937
부 산	289,432	100,633	188,799	540,443	1,085,987
대 구	255,187	85,550	169,637	371,578	769,125
인 천	190,427	72,129	118,298	434,447	882,867
광 주	171,688	53,546	118,142	207,207	407,458
대 전	182,545	64,493	118,052	216,299	437,033
울 산	62,947	25,573	37,374	142,238	280,723
세 종	16,499	5,900	10,599	16,416	31,985
경 기	884,975	332,460	552,515	1,794,397	3,641,499
강 원	249,913	86,884	163,029	262,251	498,621
충 북	167,121	55,512	111,609	236,819	463,097
충 남	202,738	65,713	137,025	324,941	639,997
전 북	240,192	73,589	166,603	299,443	575,746
전 남	219,291	67,109	152,182	336,781	644,509
경 북	276,117	85,908	190,209	421,550	826,042
경 남	320,563	105,526	215,037	491,388	985,487
제 주	73,453	23,125	50,328	104,697	204,950

<표 4-1-3> 국민연금 가입자수 - 가입형태별, 시도별

(단위: 명)

구 분	총가입자수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소득신고자	납부예외자		
2009	18,623,845	979,861	9,866,681	3,627,597	5,052,264	36,368	40,935
2010	19,228,875	1,031,358	10,414,780	3,574,709	5,099,783	90,222	49,381
2011	19,885,911	1,103,570	10,976,501	3,775,873	4,899,557	171,134	62,846
2012	20,329,060	1,196,427	11,464,198	3,903,217	4,665,179	207,890	88,576
서 울	5,812,644	313,579	3,889,422	768,146	1,081,094	53,553	20,429
부 산	1,244,404	76,951	599,954	268,324	355,364	14,724	6,038
대 구	834,278	50,734	385,749	200,255	232,232	11,917	4,125
인 천	1,000,649	60,268	495,711	210,666	280,679	10,230	3,363
광 주	475,761	28,644	231,264	107,452	128,240	6,516	2,289
대 전	549,479	30,112	289,440	114,478	135,524	7,735	2,302
울 산	430,757	21,336	262,848	74,553	88,442	3,817	1,097
세 종	44,245	2,841	26,569	8,265	8,728	402	281
경 기	4,535,535	290,668	2,494,177	899,551	1,071,274	54,612	15,921
강 원	484,152	31,689	219,964	124,405	132,211	4,706	2,866
충 북	552,179	33,127	294,073	122,484	127,420	5,121	3,081
충 남	743,283	42,419	406,262	163,278	163,810	5,322	4,611
전 북	590,440	37,454	272,612	149,836	157,125	5,651	5,216
전 남	602,821	36,716	279,189	157,892	155,687	4,875	5,178
경 북	985,634	54,709	534,304	219,163	219,097	8,239	4,831
경 남	1,237,884	71,711	688,897	262,589	271,591	9,384	5,423
제 주	204,915	13,469	93,763	51,880	56,661	1,086	1,525

자료 : 통계청,「2013 한국통계연감」2014. 3.

주 : 1)「국민연금법」제3조제1항제9호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자"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65세가 될 때까지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신청을 하여 계속가입자로 된 자를 말한다.

<표 4-1-4> 공공연금 가입자수 - 연금형태별

(단위: 명)

연 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2005	17,124,449	986,339	236,726	-	4,566
2006	17,739,939	1,009,145	245,520	-	4,426
2007	18,266,742	1,021,771	250,652	-	4,319
2008	18,335,409	1,030,256	256,840	-	4,289
2009	18,623,845	1,047,897	261,608	-	4,189
2010	19,228,875	1,052,407	267,481	-	4,089
2011	19,885,911	1,057,958	272,899	-	4,043
2012	20,329,060	1,064,472	271,415	-	3,959

자료 : 보건복지부,「2013 보건복지통계연보」 2013. 11.

<표 4-1-5>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총 계	1종				
		소 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시설보호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2006	1,828,627	1,028,536	822,484	85,118	85,214	6,335
2007	1,852,714	1,062,263	852,748	86,655	84,332	7,933
2008	1,841,339	1,024,848	829,751	85,929	85,110	9,035
2009	1,677,237	1,036,291	837,297	85,814	86,810	10,377
2010	1,674,396	1,071,686	863,080	91,622	85,366	12,691
2011	1,609,481	1,087,268	866,341	89,389	83,495	15,039
2012	1,507,044	1,058,223	849,216	88,251	77,925	15,506
세대주	988,012	809,196	648,919	87,695	43,760	9,869
세대원	519,032	249,027	200,297	556	34,165	5,637
서 울	217,707	153,910	122,417	12,060	11,550	4,123
부 산	144,004	99,963	84,947	6,569	6,040	670
대 구	105,550	64,322	52,074	5,703	5,076	542
인 천	75,491	51,978	42,489	3,809	3,064	1,563
광 주	69,515	39,105	26,814	2,953	2,993	480
대 전	48,191	31,684	25,172	2,958	2,654	391
울 산	17,067	12,773	10,456	955	936	151
세 종	3,701	2,953	2,090	606	215	6
경 기	210,259	160,139	127,557	12,495	11,718	4,120
강 원	63,802	46,325	37,247	3,621	4,372	449
충 북	53,942	40,462	30,312	5,424	3,622	531
충 남	62,353	46,209	37,317	4,376	3,157	589
전 북	102,080	66,167	54,342	5,475	4,888	377
전 남	96,415	68,982	54,394	5,906	5,927	300
경 북	111,779	80,684	66,775	7,071	5,145	586
경 남	102,047	77,976	63,424	6,216	5,732	520
제 주	23,141	14,627	11,389	2,054	836	108

자료 : 보건복지부,「2013 보건복지통계연보」 2013. 11.

주 : 1)「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2) 2010. 3월부터 전산관리

3)「의료급여법」제3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

(단위: 명)

구 분	1종									2종
	인간 문화재	광주민주화 운동관련자[1]	이재민	의사상자 및 유족	국내입양 아동	군 입대자	행려자[2]	노숙인	차상위 (희귀난치성)	
2006	317	9,281	59	732	1,223		–		17,773	800,091
2007	312	9,249	13	791	2,241		–		17,989	790,451
2008	244	10,520	–	811	3,448		–		–	816,491
2009	233	10,358	–	866	4,536		–		–	640,946
2010	224	10,360	–	887	5,600		1,856		–	602,710
2011	172	10,310	13,378	918	6,819		1,407		–	522,213
2012	180	10,368	985	916	7,739	5,469	1,346	322	–	448,821
세대주	97	3,254	413	447	7,605	5,469	1,346	322	–	178,816
세대원	83	7,114	572	469	134	–	–	–	–	270,005
서 울	21	1,232	–	127	1,169	681	254	276	–	63,797
부 산	16	140	–	38	335	645	540	23	–	44,041
대 구	–	110	–	50	282	433	38	14	–	41,228
인 천	10	193	–	32	543	264	11	–	–	23,513
광 주	–	5,322	–	30	275	235	3	–	–	30,410
대 전	–	91	–	25	209	177	3	4	–	16,507
울 산	–	26	–	19	126	79	24	1	–	4,294
세 종	–	1	–		22	13	–	–	–	748
경 기	23	891	3	199	2,117	730	285	1	–	50,120
강 원	5	81	–	39	279	228	1	3	–	17,477
충 북	2	68	–	41	241	176	45	–	–	13,480
충 남	10	75	–	32	404	229	20	–	–	16,144
전 북	15	264	–	53	411	324	18	–	–	35,913
전 남	33	1,676	–	61	382	302	1	–	–	27,433
경 북	25	80	–	91	403	431	41	–	–	31,131
경 남	15	91	982	54	453	427	62	–	–	24,071
제 주	5	27	–	25	88	95	–	–	–	8,514

<표 4-1-6>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

(단위: 명)

구 분	총수급자[1]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가 구	인 원	가 구	인 원	
2011	850,689	1,469,254	850,689	1,379,865	89,389
2012	821,879	1,394,042	821,879	1,300,499	93,543
서 울	120,704	199,310	120,704	188,017	11,293
부 산	82,491	135,973	82,491	128,650	7,323
대 구	54,784	99,473	54,784	93,208	6,265
인 천	40,840	70,860	40,840	66,713	4,147
광 주	31,148	60,684	31,148	57,528	3,156
대 전	24,471	44,992	24,471	41,819	3,173
울 산	10,090	15,804	10,090	14,819	985
세 종	1,872	3,442	1,872	2,813	629
경 기	117,096	192,170	117,096	178,155	14,015
강 원	35,609	58,820	35,609	54,936	3,884
충 북	28,553	49,669	28,553	43,908	5,761
충 남	34,513	58,363	34,513	53,594	4,769
전 북	53,778	95,656	53,778	89,906	5,750
전 남	51,926	87,670	51,926	81,249	6,421
경 북	63,987	105,193	63,987	97,784	7,409
경 남	58,408	93,977	58,408	87,559	6,418
제 주	11,609	21,986	11,609	19,841	2,145

자료 : 통계청,「2013 한국통계연감」 2014. 3.

주 : 1) 시설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자를 제외한 수치임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하며, 시설수급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입소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말한다.

<표 4-1-7>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류별 시설수와 평균 종사자수 및 수용인원

(단위: 개소, 명)

구 분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시설수[1]	평균 종사자	평균 생활인원	시설수[2]	평균 종사자	평균 생활인원	시설수	평균 종사자	평균 생활인원
2000	269	12	66	250	13	56	196	25	88
2005	282	17	68	825	16	41	265	34	74
2006	282	18	67	1,181	15	36	288	35	72
2007	282	19	65	1,498	14	33	314	33	69
2008	285	18	63	2,081	15	33	347	32	64
2009	280	19	63	2,992	14	27	397	30	59
2010	280	19	61	4,150	14	25	452	28	54
2011	280	19	59	4,469	14	25	490	27	52
2012	281	20	57	4,745	15	26	1,348	12	23

구 분	결핵 및 한센			정신요양시설			부랑인		
	시설수	평균 종사자	평균 생활인원	시설수	평균 종사자	평균 생활인원	시설수	평균 종사자	평균 생활인원
2000	5	16	173	55	18	230	45	22	290
2005	5	20	131	56	31	223	38	22	238
2006	5	20	135	57	31	213	38	23	216
2007	5	20	111	59	31	207	38	20	202
2008	5	20	103	59	31	203	37	21	257
2009	5	20	102	59	32	205	37	21	250
2010	5	19	92	59	32	197	37	21	242
2011	5	20	87	59	33	193	37	22	236
2012	6	16	73	59	33	189	124	11	87

자료 : 통계청,「2013 한국의 사회지표」 2014. 3.

주 : 1)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제외

2) 노인복지주택 제외

3) 2012년부터 단기 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 포함

4) 2012년말 기준의 노숙인생활시설은 노숙인자활·재활·요양시설이 포함된 수치임.

<표 4-1-8> 모자보호 생활시설수 및 생활 현황

(단위: 명)

구 분	시설수	연말현재수용인원				입소자				퇴소자			
			모	부양자녀	노령부양자		모	부양자녀	노령부양자		모	부양자녀	노령부양자
2007	41	2,426	893	1,532	1	793	294	498	1	910	329	579	2
2008	41	2,373	876	1,495	2	827	304	522	1	886	322	564	–
2009	41	2,293	851	1,441	1	805	302	503	–	858	317	540	1
2010	41	2,298	855	1,443	–	652	254	398	–	826	307	519	–
2011	41	2,232	849	1,382	1	830	326	504	–	711	274	437	–
2012	41	2,174	836	1,337	1	768	301	467	–	855	326	529	–
서 울	6	225	99	126	–	101	43	58	–	166	75	91	–
부 산	6	308	114	194	–	113	44	69	–	106	39	67	–
대 구	5	403	154	249	–	115	45	70	–	121	45	76	–
인 천	1	46	20	26	–	25	11	14	–	28	11	17	–
광 주	1	57	21	36	–	15	6	9	–	17	6	11	–
대 전	1	39	15	24	–	6	3	3	–	19	7	12	–
울 산	1	66	27	39	–	28	10	18	–	24	8	16	–
경 기	2	113	43	70	–	32	12	20	–	56	18	38	–
강 원	1	53	21	32	–	22	9	13	–	8	3	5	–
충 북	1	57	21	36	–	43	16	27	–	13	6	7	–
충 남	2	84	32	52	–	28	12	16	–	28	10	18	–
전 북	4	195	71	124	–	71	28	43	–	106	36	70	–
전 남	2	108	39	69	–	34	11	23	–	25	9	16	–
경 북	5	252	96	156	–	87	33	54	–	81	33	48	–
경 남	2	122	47	74	1	31	13	18	–	38	13	25	–
제 주	1	46	16	30	–	17	5	12	–	19	7	12	–

자료 : 통계청,「2013 한국통계연감」 2014. 3.

<표 4-1-9> 노숙인 생활시설수 및 생활인원 현황 - 시도별

(단위: 명)

구 분	시설수	입소자			퇴소자					
		행정기관 의뢰	전입	기타	연고자 인도	직업 자활	전원	무단 퇴소	사망	기타
2006	38	4,352	984	5,653	650	111	739	524	285	8,991
2007	38	3,722	185	5,656	596	97	502	576	235	8,062
2008	37	3,340	378	910	443	72	158	457	272	3,380
2009	37	3,546	439	701	364	44	112	637	279	3,475
2010	37	2,878	271	854	307	30	122	660	261	2,931
2011	37	2,601	403	1,315	288	30	141	674	241	2,488
2012	124	1,890	827	4,625	311	672	411	1,520	340	4,318
서 울	47	631	668	1,941	124	313	225	549	118	2,172
부 산	8	51	19	475	17	119	3	182	18	200
대 구	6	157	8	165	44	26	19	65	42	166
인 천	7	252	6	756	14	8	2	410	20	466
광 주	2	67	4	28	8	41	4	32	3	14
대 전	5	76	1	170	3	15	9	47	18	156
울 산	1	-	-	5	-	-	-	3	-	4
세 종	1	6	-	3	-	-	-	3	10	3
경 기	13	139	61	386	33	60	62	67	22	325
강 원	7	74	12	50	11	10	8	17	9	58
충 북	3	25	38	99	1	-	55	53	23	109
충 남	1	3	5	4	-	2	3	-	-	-
전 북	5	90	4	55	4	4	9	7	7	99
전 남	7	139	-	70	23	67	-	11	28	74
경 북	5	9	-	3	1	-	2	3	9	10
경 남	4	28	1	54	6	4	8	6	8	49
제 주	2	143	-	361	22	3	2	65	5	413

자료 : 보건복지부, 「2013 보건복지통계연보」 2013. 11.

주 : 1) 2006~2007년 연말 현재 생활자 수에는 입원자가 제외된 수치임.

2) 2012년 연말 현재 생활자 수에는입원자가 포함된 수치임.

3)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시행('12.6.8.)으로 기존 이용시설이었던 노숙인쉼터가 생활시설인 노숙인자활시설로 변경됨에 따라 2012년도 현황에서는 기존 부랑인시설(노숙인재활·요양)에 노숙인자활시설이 포함됨.

(단위: 명)

구 분	연말현재수용자									
	성별			상태별						
	계	남	여	정상인	정신 질환	지체 장애	시각 장애	언어 청각	지적 장애	기타
2006	8,193	5,604	2,589	808	3,742	686	80	157	1,565	1,155
2007	7,689	5,228	2,461	746	3,451	629	78	149	1,570	1,066
2008	9,492	6,187	3,305	572	1,770	619	100	157	1,677	4,597
2009	9,266	6,046	3,220	753	1,724	570	98	145	1,473	4,503
2010	8,958	5,795	3,163	671	1,549	718	99	133	1,550	4,238
2011	8,742	5,668	3,074	646	1,989	687	93	135	1,563	3,629
2012	10,774	7,686	3,088	4,436	2,852	598	110	125	1,634	1,019
서 울	3,711	2,658	1,053	2,433	662	180	30	39	230	137
부 산	779	569	210	321	179	47	6	2	167	57
대 구	1,201	725	476	125	696	46	15	22	185	112
인 천	417	318	99	63	114	24	5	–	48	163
광 주	126	100	26	57	28	7	4	2	25	3
대 전	314	253	61	150	74	10	3	4	35	38
울 산	23	23	–	23	–	–	–	–	–	–
세 종	127	103	24	35	26	10	1	6	41	8
경 기	812	615	197	232	193	50	8	5	114	210
강 원	313	236	77	95	103	21	3	5	66	20
충 북	848	625	223	305	67	85	14	12	280	85
충 남	29	29	–	27	–	–	–	–	–	2
전 북	224	158	66	121	33	13	3	3	48	3
전 남	792	571	221	182	372	42	2	10	112	72
경 북	423	260	163	53	144	20	4	4	148	50
경 남	463	308	155	158	139	27	6	6	112	15
제 주	172	135	37	56	22	16	6	5	23	44

<표 4-1-10>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 및 지급 실적 - 시도별

(단위: 명, %, 백만원)

구 분	전체 노인 대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명)			지급실적(백만원)		
	전체 노인	수급자 수	수급률	계	국 비	지방비
2011	5,700,972	3,818,186	67.0	3,780,518	2,811,341	969,177
2012	5,980,060	3,933,095	65.8	4,007,671	2,985,694	1,021,977
서 울	1,105,583	550,248	49.8	560.188	382,470	177,718
부 산	442,199	310,543	70.2	316,247	227,416	88,831
대 구	274,152	189,026	68.9	192,248	137,306	54,942
인 천	267,059	183,424	68.7	186,172	132,703	53,469
광 주	144,732	98,043	67.7	99,457	70,724	28,733
대 전	142,979	92,621	64.8	94,303	66,012	28,291
울 산	85,736	57,091	66.6	58,665	41,066	17,599
세 종	17,214	10,664	61.9	5,494	4,395	1,099
경 기	1,135,242	648,480	57.1	660,747	448,917	211,830
강 원	241,694	170,680	70.6	174,115	135,021	39,094
충 북	215,245	156,141	72.5	159,338	127,765	31,573
충 남	309,840	220,057	71.0	228,126	185,724	42,402
전 북	303,586	234,418	77.2	238,544	192,189	46,355
전 남	366,524	306,735	83.7	312,772	261,926	50,846
경 북	437,519	343,718	78.6	350,405	286,911	63,494
경 남	414,831	312,401	75.3	321,066	250,300	70,766
제 주	75,925	48,805	64.3	49,784	34,849	14,935

자료 : 통계청,「2013 한국통계연감」 2014. 3.

<표 4-1-11>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인정현황 - 시도별

(단위: 명)

구 분	신청자수	등급판정자수	인정자수			
			계	1등급	2등급	3등급
2008	376,030	265,371	214,480	57,396	58,387	98,697
2009	596,235	390,530	286,907	54,368	71,093	161,446
2010	759,339	465,777	315,994	46,994	73,833	195,167
2011	617,081	478,446	324,412	41,326	72,640	210,446
2012	643,409	495,445	341,788	38,262	70,619	232,907
서 울	95,118	72,279	57,737	7,746	12,796	37,195
부 산	41,677	28,907	18,190	1,750	3,548	12,892
대 구	27,201	20,869	14,195	1,606	3,028	9,561
인 천	31,661	25,747	18,710	1,978	3,941	12,791
광 주	19,654	14,986	9,096	785	1,577	6,734
대 전	18,864	14,689	10,431	1,105	1,947	7,379
울 산	9,016	6,371	4,555	459	865	3,231
세 종	1,959	1,356	1,011	140	220	651
경 기	122,931	94,704	71,673	8,447	14,566	48,660
강 원	26,590	20,435	14,880	2,296	3,345	9,239
충 북	22,483	16,988	12,294	1,700	3,120	7,474
충 남	36,432	27,732	19,569	2,189	4,407	12,973
전 북	39,615	31,341	17,263	1,336	2,911	13,016
전 남	44,173	35,992	20,257	1,667	4,325	14,265
경 북	48,300	38,274	24,991	2,541	4,972	17,478
경 남	48,504	37,270	21,523	1,819	3,979	15,725
제 주	9,231	7,505	5,413	698	1,072	3,643

자료 : 보건복지부,「2013 보건복지통계연보」 2013. 11.

<표 4-1-12> 산재보험적용 근로자수

(단위: 명, 개소)

구 분	산재보험적용 근로자수	산재보험적용 사업체수	사업체당 평균 적용 근로자수
2005	12,069,599	1,175,606	10.3
2006	11,688,797	1,292,696	9.0
2007	12,528,879	1,429,885	8.8
2008	13,489,986	1,594,793	8.5
2009	13,884,927	1,560,949	8.9
2010	14,198,748	1,608,361	8.8
2011	14,362,372	1,738,196	8.3

자료 : 보건복지부,「2013 보건복지통계연보」 2013. 11.

<표 4-1-13> 지니계수 및 상대적 빈곤율 추이

(단위: %)

소득별	연도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전국전가구	전국가구 (1인 및 농가 제외)	도시가구 (1인 및 농가 제외)	전국전가구	전국가구 (1인 및 농가 제외)	도시가구 (1인 및 농가 제외)
시장소득	2005	-	0.306	0.298	-	14.7	13.6
	2006	0.330	0.312	0.305	16.6	14.8	13.8
	2007	0.340	0.321	0.316	17.3	15.5	14.9
	2008	0.344	0.323	0.319	17.5	15.0	14.7
	2009	0.345	0.320	0.320	18.1	15.4	15.4
	2010	0.341	0.314	0.315	18.0	14.9	14.9
	2011	0.342	0.313	0.313	18.3	14.9	15.0
	2012	0.338	0.311	0.310	17.6	14.3	14.4
가처분 소득	2005	-	0.287	0.281	-	12.9	11.9
	2006	0.306	0.291	0.285	14.3	12.6	11.9
	2007	0.312	0.295	0.292	14.8	12.9	12.6
	2008	0.314	0.296	0.294	15.2	12.9	12.5
	2009	0.314	0.294	0.295	15.3	13.0	13.1
	2010	0.310	0.288	0.289	14.9	12.5	12.5
	2011	0.311	0.288	0.289	15.2	12.3	12.4
	2012	0.307	0.285	0.285	14.6	12.2	12.1

자료 : 보건복지부,「2013 보건복지통계연보」 2013. 11.

제 2 절 노동권

노동권은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로서 「헌법」 제32조에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하며,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3조에 근로의 권리,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및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선언하였다. 또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제6조[94]에 근로의 권리를 인정하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 등을 근거로 노동권 관련 통계는 성별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구성비, 고용형태별 임금 및 근로시간, 고용형태별 임금총액 현황, 성별 시간당 임금총액, 학력별 시간당 임금총액, 고용형태별 총 근로시간 및 소정 실근로시간 현황, 학력별 총 근로시간, 성별 총 근로시간,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상여금·퇴직금 적용률 및 노조 가입률, 성별 15세 이상 인구(천명) 고용률과 실업률, 실업률과 장기실업자 비중, 실업급여 수급인원, 평균수급일수 및 임금대체율, 산업재해 현황으로 구성하였다.

94)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제6조
1. 국가는 근로의 권리를 인정하며, 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국가의 완전한 근로권 실현을 위하여 취하는 제반조치에는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조건하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과 기술 및 직업의 지도, 훈련계획, 정책 및 기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표 4-2-1> 성별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구성비

(단위 : 천명, %)

연 도	취업자수	18시간미만 근로자	임금 근로자수	상 용	임 시	일 용	비임금 근로자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전 체										
2000	21,156	2.8	13,360	47.9	34.5	17.6	7,795	18.7	56.5	24.8
2005	22,856	3.5	15,185	52.1	33.3	14.6	7,671	21.7	58.8	19.5
2010	23,829	4.4	16,971	59.4	29.9	10.7	6,858	21.9	59.7	18.5
2011	24,244	4.8	17,397	61.3	28.7	10.0	6,847	22.0	59.7	18.3
2012	24,681	4.5	17,712	62.7	28.2	9.2	6,969	22.2	59.8	18.0
2013	25,066	4.7	18,195	64.4	26.9	8.7	6,872	22.0	60.3	17.8
남 성										
2000	12,387	2.0	7,963	59.2	26.5	14.3	4,423	27.0	67.5	5.5
2005	13,330	2.5	8,794	62.3	24.8	12.9	4,536	29.3	67.0	3.7
2010	13,915	2.9	9,740	68.4	21.5	10.1	4,175	28.1	67.5	4.4
2011	14,153	3.3	9,970	69.4	21.0	9.6	4,184	28.2	67.8	4.1
2012	14,387	2.9	10,094	70.5	20.6	9.0	4,294	28.1	67.9	3.9
2013	14,573	3.0	10,353	72.0	19.3	8.7	4,219	27.4	68.8	3.9
여 성										
2000	8,769	3.8	5,397	31.1	46.2	22.6	3,372	7.8	42.1	50.1
2005	9,526	4.9	6,391	38.2	45.0	16.9	3,135	10.7	46.9	42.4
2010	9,914	6.6	7,230	47.3	41.1	11.6	2,683	12.1	47.6	40.4
2011	10,091	6.9	7,428	50.3	39.0	10.7	2,664	12.2	47.1	40.7
2012	10,294	6.6	7,619	52.3	38.2	9.5	2,675	12.7	46.8	40.4
2013	10,494	7.0	7,841	54.4	36.9	8.7	2,653	13.3	46.7	39.9

자료 : 통계청,「2013 한국의 사회지표」 2014. 3.

주 : 1) “18시간 미만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2) “비임금 근로자”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형태의 근로자를 말한다.

<표 4-2-2> 고용형태별 임금 및 근로시간

(단위 : 일, 시간, 천원, 원, %)

구 분	총근로일수	총근로시간	소정실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월급여	정액급여			초과급여	연간특별급여	시간당정액급여
						평균	상대표준오차	중위수			
전체근로자[1]	20.3	167.9	156.2	11.6	2,288	2,140	0.5	1,734	149	3,942	14,075
(특수형태 포함)[2]	–	–	–	–	2,310	2,169	0.7	1,735	141	3,741	–
정규직	21.0	178.0	164.6	13.4	2,566	2,390	0.5	1,951	176	5,022	15,00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17.9	134.4	128.6	5.8	1,372	1,312	1.4	1,100	60	380	11,019
	(84.9)	(75.5)	(78.1)	(43.4)	(53.5)	(54.9)		(56.4)	(34.0)	(7.6)	(73.5)
(특수형태 포함)	–	–	–	–	1,626	1,578	2.6	1,181	48	329	–
					(63.4)	(66.0)		(60.5)	(27.5)	(6.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	–	–	2,690	2,690	6.4	1,803	–	119	–
재택/가내근로자	19.5	133.9	132.8	1.1	1,238	1,228	13.4	1,122	9	360	9,229
파견/용역근로자	19.6	181.3	172.1	9.2	1,540	1,448	1.4	1,297	92	387	8,913
일일근로자	14.7	116.1	114.6	1.5	1,459	1,436	3.6	1,125	23	4	12,770
단시간근로자	16.8	81.7	80.5	1.1	707	699	1.9	613	8	81	10,743
기간제근로자	20.5	175.3	160.3	15.0	1,900	1,750	1.6	1,400	150	1,156	11,325
한시적근로자	20.0	165.7	163.7	1.9	1,432	1,410	2.6	1,296	23	136	9,104

자료 : 고용노동부, 「2013년도 고용형태별 근로 실태조사」 2014.6

주 : 1) 특수형태근로조사자를 제외

2) 특수형태근로조사자를 포함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시간 등이 파악되지 않으며, 임금은 보수 개념

※ ( )는 정규직근로자 대비 비정규직근로자의 비율

<표 4-2-3> 고용형태별 임금총액 현황

(단위 : 천원, 원, %)

구 분	월급여	정액급여		초과급여	연간 특별급여	시간당 정액급여
		평균	중위수			
전 체	2,288	2,140	1,734	149	3,942	14,075
정규직근로자	2,566	2,390	1,951	176	5,022	15,001
비정규직근로자	1,372	1,312	1,100	60	380	11,019
(정규직 대비 비율)	(53.5)	(54.9)	(56.4)	(34.0)	(7.6)	(73.5)
파견/용역근로자	1,540	1,448	1,297	92	387	8,913
일일근로자	1,459	1,436	1,125	23	4	12,770
단시간근로자	707	699	613	8	81	10,743
기간제근조자	1,900	1,750	1,400	150	1,156	11,325
비기간제 한시적근로자	1,432	1,410	1,296	23	136	9,014
재택/가내근로자	1,238	1,228	1,122	9	360	9,229

자료 : 고용노동부, 「2013년도 고용형태별 근로 실태조사」 2014.6
주 : ( )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근로자의 급여부분 비율

<표 4-2-4> 성별 시간당 임금총액

(단위: 원, %)

구 분	전체	남성	여성	성별차이
전 체	14,075	16,071	10,968[68.2]	5,104
정규직근로자	15,001	16,845	11,620[69.0]	5,226
비정규직근로자	11,019	12,647	9,501[75.1]	3,146
(정규직 대비 비율)	(73.5)	(75.1)	(81.8)	
파견/용역근로자	8,913	9,150	8,642[94.4]	508
일일근로자	12,770	14,685	9,274[63.2]	5,410
단시간근로자	10,743	12,813	9,856[76.9]	2,957
기간제근조자	11,325	12,565	9,965[79.3]	2,600
비기간제 한시적근로자	9,104	9,921	8,517[85.9]	1,404
재택/가내근로자	9,229	9,797	9,109[93.0]	689

자료 : 고용노동부, 「2013년도 고용형태별 근로 실태조사」 2014.6
주 : ( )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간로자의 시간당 정액급여 비율
[ ]는 남성 대비 여성의 시간당 정액급여 비율

<표 4-2-5> 학력별 시간당 임금총액

(단위: 원, %)

구 분	전체근로자	정규직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전 체	14,075	15,001	11,019	(73.5)
중졸이하	9,420	9,650	9,213	(95.5)
고졸	11,021	11,539	9,851	(85.4)
전문대졸	12,793	13,180	10,183	(77.3)
대졸	18,321	18,872	14,111	(74.8)
대학원졸	28,496	28,407	28,936	(101.9)

자료 : 고용노동부, 「2013년도 고용형태별 근로 실태조사」 2014.6
주 : ( )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간로자의 시간당 정액급여 비율

<표 4-2-6> 고용형태별 총 근로시간 및 소정 실근로시간 현황

(단위: 일, 시간, %)

구 분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	소정 실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전 체	**20.3**	**167.9**	**156.2**	**11.6**
정규직근로자	21.0	178.0	164.6	13.4
비정규직근로자	17.9	134.4	128.6	5.8
(정규직 대비 비율)	(84.9)	(75.5)	(78.1)	(43.4)
파견/용역근로자	19.6	181.3	172.1	9.2
일일근로자	14.7	116.1	114.6	1.5
단시간근로자	16.8	81.7	80.5	1.1
기간제근조자	20.5	175.3	160.3	15.0
비기간제 한시적근로자	20.0	165.7	163.7	1.9
재택/가내근로자	19.5	133.9	132.8	1.1

자료 : 고용노동부, 「2013년도 고용형태별 근로 실태조사」 2014.6.
주 : ( )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근로자의 수준(비율)

<표 4-2-7> 학력별 총 근로시간

(단위: 시간, %)

구 분	전체근로자	정규직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전 체	**167.9**	**178.0**	**134.4**	**(75.5)**
중졸이하	163.6	196.4	133.9	(68.2)
고졸	172.6	188.8	136.1	(72.1)
전문대졸	172.3	176.8	142.0	(80.3)
대졸	162.0	165.6	134.5	(81.2)
대학원졸	149.1	161.6	87.6	(54.2)

자료 : 고용노동부, 「2013년도 고용형태별 근로 실태조사」 2014.6
주 : ( )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근로자의 수준(비율)

<표 4-2-8> 성별 총 근로시간

(단위: 시간, %)

구 분	전체	남성	여성	성별차이
전 체	167.9	173.0	159.9[92.4]	13.1
정규직근로자	178.0	179.4	175.4[97.7]	4.1
비정규직근로자	134.4	144.4	125.2[86.7]	19.2
(정규직 대비 비율)	(75.5)	(80.5)	(71.4)	
파견/용역근로자	181.3	198.5	161.8[81.5]	36.6
일일근로자	116.1	116.8	115.0[98.4]	1.8
단시간근로자	81.7	79.1	82.8[104.7]	-3.7
기간제근조자	175.3	186.2	163.4[87.8]	22.8
비기간제 한시적근로자	165.7	164.8	166.3[100.9]	-1.4
재택/가내근로자	133.9	129.8	134.8[103.9]	-5.1

자료 : 고용노동부, 「2013년도 고용형태별 근로 실태조사」 2014.6
주 : ( )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간로자의 시간당 정액급여 비율
[ ]는 남성 대비 여성의 시간당 정액급여 비율

<표 4-2-9>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상여금·퇴직금 적용률 및 노조 가입률

고용형태	고용보험[1]	건강보험[2]	국민연금[3]	산재보험[4]	상여금	퇴직금	노조가입
전체(특수형태 제외)	88.6	87.6	87.6	97.5	59.3	78.6	11.0
정규직 근로자	95.6	97.4	97.2	97.8	70.4	89.6	13.9
비정규직(특수형태 제외)	60.9	50.6	47.0	96.4	22.4	42.3	1.4
재택/가내근로자	54.5	58.9	56.3	97.8	35.7	51.1	0.1
파견/용역근로자	90.0	90.7	88.3	94.9	29.8	83.1	1.3
일일근로자	44.6	10.7	9.5	97.8	2.2	5.8	0.4
단시간근로자	50.5	44.7	42.1	94.4	13.3	28.1	0.7
기간제근로자	85.3	90.3	85.5	98.3	51.3	81.5	3.3
한시적근로자	34.7	24.4	22.5	93.1	14.8	23.3	0.9

자료 : 고용노동부, 「2013년도 고용형태별 근로 실태조사」 2014.6.
주 : 1) 교육서비스업, 65세이상, 60시간미만 시간제근로자 제외
2) 교육서비스업, 60시간미만 시간제근로자 제외
3) 교육서비스업, 18세미만, 60세이상, 60시간미만 시간제근로자 제외
4) 교육서비스업, 상용근로자 1인미만, 상용근로자 5인미만 농림어업 제외

<표 4-2-10> 성별 15세 이상 인구(천명) 고용률과 실업률

(단위 : 천명, %)

구분		15세 이상 인구 (천명)	경제활동인구 (천명)	취업자(천명)	실업률	고용률
2008년	전체	39,598	24,347	23,577	3.2	59.5
	남성	19,324	14,208	13,703	3.6	70.9
	여성	20,273	10,139	9,874	2.6	48.7
2009년	전체	40,092	24,394	23,506	3.6	58.6
	남성	19,596	14,319	13,734	4.1	70.1
	여성	20,496	10,076	9,772	3.0	47.7
2010년	전체	40,590	24,748	23,829	3.7	58.7
	남성	19,849	14,492	13,915	4.0	70.1
	여성	20,741	10,256	9,914	3.3	47.8
2011년	전체	41,052	25,099	24,244	3.4	59.1
	남성	20,076	14,683	14,153	3.6	70.5
	여성	20,976	10,416	10,091	3.1	48.1
2012년	전체	41,582	25,501	24,681	3.2	59.4
	남성	20,328	14,891	14,387	3.4	70.8
	여성	21,254	10,609	10,294	3.0	48.4
2013년	전체	42,096	25,873	25,066	3.1	59.5
	남성	20,583	15,071	14,573	3.3	70.8
	여성	21,513	10,802	10,494	2.9	48.8

자료 :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2013 인권통계」 신설

<표 4-2-11> 실업률과 장기실업자 비중

(단위: %)

연 도	실 업 률			장기실업자[1]비중		
	전 체	남 자	여 자	전 체	남 자	여 자
2000	4.4	5.0	3.6	14.1	16.7	9.0
2005	3.7	4.0	3.4	11.6	13.0	9.3
2010	3.7	4.0	3.3	7.0	8.7	4.1
2011	3.4	3.6	3.1	6.8	8.1	4.6
2012	3.2	3.4	3.0	8.5	9.7	6.6
2013	3.1	3.3	2.9	7.9	8.6	6.8

자료 : 통계청,「2013 한국의 사회지표」2014. 3.

주 : 6개월이상실업자

<표 4-2-12> 실업급여 수급인원, 평균수급일수 및 임금대체율

(단위: 명, 천원, 일, %)

연 도	수급인원[1] (명)	수급금액[1] (천원)	평균수급일수[2][3] (일)	임금대체율[2][4] (%)
1997	49,117	78,736,735	-	-
1998	411,686	799,415,649	-	-
1999	484,772	936,163,242	-	-
2000	332,692	470,793,421	-	-
2001	428,156	845,116,472	-	-
2002	416,041	839,315,171	-	-
2003	502,211	1,030,303,636	-	-
2004	707,432	1,448,305,645	-	-
2005	812,768	1,751,973,902	-	-
2006	943,542	2,074,003,793	-	46.4
2007	1,009,180	2,434,032,350	111.9	48.5
2008	1,162,534	2,865,255,574	109.7	49.4
2009	1,301,132	4,116,403,896	110.7	49.6
2010	1,238,665	3,686,530,282	114.4	50.0
2011	1,202,066	3,561,353,431	114.3	48.8
2012	1,187,247	3,676,665,863	114.6	49.8

자료 : 통계청,「2013 한국의 사회지표」 2014. 3.

주 : 1) 행정처리일 기준으로 일용근로자가 포함됨

2)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 기준임

3)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자 중 수급이 종료된 전직 풀타임 상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4) (구직급여일액/평균임금일액)*100

<표 4-2-13> 산업재해 현황

(단위: 명, %)

연 도	산업재해자수 (명)	사망자수(명)	산업재해율 (%)	재해도수율 (%)	재해강도율 (%)	사망만인률 (만명당)
2003	94,924	2,701	0.90	3.68	2.35	2.55
2004	88,874	2,586	0.85	3.51	2.48	2.47
2005	85,411	2,282	0.77	3.25	2.67	2.06
2006	89,910	2,238	0.77	3.31	2.65	1.91
2007	90,147	2,159	0.72	3.15	2.26	1.72
2008	95,806	2,146	0.71	3.41	2.53	1.59
2009	97,821	1,916	0.70	3.37	1.80	1.38
2010	98,645	1,931	0.69	3.27	1.89	1.36
2011	93,292	1,860	0.65	3.05	1.80	1.30
2012	92,256	1,864	0.59	2.81	1.68	1.20

자료 : 고용노동부(각 연도),「산업재해현황분석」

주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 제3조(정의)

1) 재해율이란 임금근로자수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수의 비율을 말하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재해율 = (재해자수 / 임금근로자수) × 100
2) 도수율(빈도율)이란 1,000,000 근로시간당 요양재해발생 건수를 말하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도수율(빈도율) = (요양재해건수 / 연근로시간수) × 1,000,000
3) 강도율이란 근로시간 합계 1,000시간당 요양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를 말하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강도율 = (총요양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수) × 1,000
4) 사망만인율이란 임금근로자수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의 비율을 말하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사망만인율 = (사망자수 / 임금근로자수) × 10,000

제 3 절 건강권·환경권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고, 청정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헌법」 제36조 제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5조에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선언하였다. 또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제12조[95]에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 등을 근거로 건강권 및 환경권 관련 통계는 기대수명,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간호사 수 및 병상 수, 연도별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 건강검진 종별 수검률 추이, 주관적 건강 인지율, 천식·알레르기성비염·아토피피부염 유병률 추이, 주요 대도시 소음도 현황으로 구성하였다.

95)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제12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제1항).
2. 이 규약당사국이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에는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포함된다.
(a) 사산율과 유아사망률의 감소 및 어린이의 건강한 발육
(b) 환경 및 산업위생의 모든 부문의 개선
(c)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 치료 및 통제
(d) 질병 발생시 모든 사람에게 의료와 간호를 확보할 여건의 조성(제2항).

<표 4-3-1> 기대수명

(단위: 년)

구분	전체	여성	남성	차이 (여성-남성)
1970년	61.9	65.6	58.7	6.9
1980년	65.7	70.0	61.8	8.3
1990년	71.3	75.5	67.3	8.2
2001년	76.5	80.0	72.8	7.2
2002년	77.0	80.5	73.4	7.1
2003년	77.4	80.8	73.9	6.9
2004년	78.0	81.4	74.5	6.8
2005년	78.6	81.9	75.1	6.8
2006년	79.2	82.4	75.7	6.6
2007년	79.6	82.7	76.1	6.6
2008년	80.1	83.3	76.5	6.7
2009년	80.5	83.8	77.0	6.8
2010년	80.8	84.1	77.2	6.9
2011년	81.2	84.5	77.6	6.8
2012년	81.4	84.6	77.9	6.7

자료 : 통계청(각 연도), 「생명표」

※「2013 인권통계」 신설

<표 4-3-2>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간호사 수 및 병상 수

(단위: 명, 갯수)

구분	의사 수	인구천 명당[1)]	간호사 수	인구천 명당[1)]	급성기병상 수	인구천 명당[1)]
2006년	88,214	1.8	223,781	4.6	327,443	6.8
2007년	91,475	1.9	235,687	4.8	344,305	7.1
2008년	95,088	1.9	246,840	5.0	359,761	7.3
2009년	98,434	2.0	258,568	5.3	364,744	7.4
2010년	101,443	2.1	270,274	5.5	363,931	7.4
2011년	104,397	2.1	282,656	5.7	383,075	7.7
2012년	107,295	2.1	295,254	5.9	390,291	7.8

자료 : 통계청, 「2013 한국의 사회지표」 2014. 3.

주 : 1)「장래인구추계」2011.12.

※「2013 인권통계」 신설

<표 4-3-3> 연도별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

(단위: %)

구분	건강보험 보장률[1)]			비고
	건강보험 보장률(표준오차)	법정본인 부담률(표준오차)	비급여본인 부담률(표준오차)	
2006년	64.5	22.1	13.4	
2007년	65.0	21.3	13.7	
2008년	62.6	21.9	15.5	
2009년	65.0	21.3	13.7	
2010년	63.6(0.6)	20.6(0.5)	15.8(0.7)	
2011년	63.0(0.5)	20.0(0.4)	17.0(0.5)	
2012년	62.5(0.6)	20.3(0.3)	17.2(0.6)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2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2014.2.20.

주 : 1) 건강보험보장률 : 건강보험 환자의 전체 진료비 중 보험자 부담금(본인 부담액 상한제 사후환급금, 임신출산 지원금 등 현금지급 포함)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2013 인권통계」 신설

<표 4-3-4> 건강검진 종별 수검률 추이

(단위: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일반건강검진	60.0	65.3	66.0	68.2	72.6	72.9
암검진	35.4	40.0	45.3	47.8	50.1	39.4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46.1	53.2	56.1	65.2	70.7	71.7
영유아건강검진[1)]	-	36.7	40.7	50.1	53.8	55.4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2 건강검진통계연보」

주 : 1) 영유아건강검진은 2008년부터 시행

※「2013 인권통계」 신설

<표 4-3-5> 주관적 건강 인지율[1)](19세 이상 표준화)

(단위: 명)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체	32.4	42.8	43.9	36.6	36.0	33.1
남성	36.2	47.1	47.7	40.3	38.9	37.9
여성	28.7	38.7	40.2	32.9	33.2	28.3

자료 : 보건복지부(각 연도), 「2013년 보건복지통계연보」 2013. 11.

주 : 1) 주관적 건강 인지율 : 평소에 본인의 건강이 '매우좋음' 또는 '좋음'이라고 생각하는 분율

※「2013 인권통계」 신설

<표 4-3-6> 천식·알레르기성비염·아토피피부염 유병률 추이(만19세 이상)

(단위: %)

구분	천식 유병률[1]			알레르기성비염 유병률[2]			아토피피부염 유병률[3]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2007년	2.2	1.8	2.6	12.0	10.9	13.1	2.4	2.3	2.4
2008년	2.7	2.2	3.2	12.1	10.4	13.9	3.2	2.8	3.5
2009년	2.8	2.5	3.0	11.9	10.6	13.3	2.9	2.7	3.1
2010년	3.1	3.2	3.0	15.7	15.3	16.2	3.3	3.3	3.3
2011년	3.0	2.6	3.4	14.5	12.5	16.6	3.4	3.4	3.4
2012년	2.7	2.7	2.7	16.8	14.7	18.9	3.2	2.6	3.9

자료 : 보건복지부, 「2012 국민건강통계」 2013.12.

주 : 1) 천식 유병률 : 의사로부터 천식 진단을 받은 분율

2) 알레르기성비염 유병률 : 의사로부터 알레르기성비염 진단을 받은 분율

3) 아토피피부염 유병률 : 의사로부터 아토피피부염 진단을 받은 분율

※「2013 인권통계」 신설

<표 4-3-7> 주요 대도시 소음도 현황

(단위: dB)

구분	2009		2010		2011		2012	
	낮	밤	낮	밤	낮	밤	낮	밤
서울	68	64	68	65	68	65	68	65
부산	67	63	67	63	67	62	67	62
대구	68	64	67	63	67	62	68	63
인천	67	63	66	63	66	62	67	63
광주	63	58	64	59	64	59	63	58
대전	62	56	62	56	61	55	61	55

자료 : 환경부, 『2013 환경통계연감』 2013. 12.

주 : 도로변 주거지역 환경기준(낮: 65dB, 밤: 55dB). 낮(6:00-22:00), 밤(22:00-6:00).

※「2013 인권통계」 신설

제 4 절 교육권·문화권

교육권은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양과 능력을 함양하게 하는 인간다운 생활권보장의 성격이며, 「헌법」 제31조에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7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이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선언하였다. 또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제15조[96]에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 등을 근거로 교육권, 문화권 관련 통계는 취학률, 학교급 및 성별 진학률, 학교급 및 성별 학업중단율,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도시규모별 문화예술 관람률, 여가활용 만족여부 및 불만족 이유로 구성하였다.

96)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제15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의 다음 권리를 인정한다.
   (a)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b)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c) 자기가 저작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창작품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
2. 이 규약의 당사국이 그러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에는 과학과 문화의 보존, 발전 및 보급에 필요한 제반조치가 포함된다.
3. 이 규약의 당사국은 과학적 연구와 창조적 활동에 필수 불가결한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적 접촉의 장려와 발전 및 과학과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으로부터 이익이 초래됨을 인정한다.

<표 4-4-1> 취학률

(단위: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유치원	39.5	40.2	40.9	44.0	47.4
초등학교	98.5	99.2	99.1	98.6	97.2
중학교	95.9	97.0	96.7	96.1	96.2
고등학교	91.4	91.5	91.9	92.6	93.6
전체고등교육기관	70.4	70.1	71.0	68.4	69.0

자료 : 교육부, 「2013 간추린 교육통계」 2013. 10.

주 : 1) 취학률 = (취학 적령 재적 학생 수/취학 적령 인구)*100

2) 취학 적령 인구는 통계청(2010)의 '장래 인구 추계'를 기준하였음. 2010년까지는 확정 인구이며, 2011년 이후는 잠정 추계치이므로 다음 추계시 변경될 수 있음.

3) 취학 적령은 유치원의 경우 3~5세, 초등학교는 6~11세, 중학교는 12~14세, 고등학교는 15~17세, 고등교육기관은 18~21세임.

4) 고등학교에는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가 포함됨.

5) 전체 고등교육기관 재적학생수에는 연도 및 기관에 따라 17세 이하의 학생이 포함됨.

※「2013 인권통계」 신설

<표 4-4-2> 학교급 및 성별 진학률

(단위: %)

구분	초등학교 → 중학교[1)2)]	중 학 교 → 고등학교[1)]			
		전 체	일반계	전문계	특수목적
<전 체>					
2000	99.9	99.6	68.8	30.7	-
2005	99.9	99.7	74.3	25.4	-
2010	99.9	99.7	75.6	20.9	3.1
<남 자>					
2000	99.9	99.5	69.1	30.4	-
2005	99.9	99.7	73.7	26.0	-
2010	99.9	99.7	75.2	21.8	2.6
<여 자>					
2000	99.9	99.6	68.5	31.1	-
2005	99.9	99.8	75.0	24.7	-
2010	99.9	99.7	76.1	19.9	3.7

구분	초등학교 → 중학교[1)2)]	중 학 교 → 고등학교[1)4)]					
		전체	일반	특수목적	특성화	자율	기타
<전 체>							
2011	99.9	99.7	72.4	3.0	18.8	3.9	1.5
2012	99.9	99.7	71.6	3.2	18.8	5.1	1.0
2013	99.9	99.7	70.6	3.3	18.4	0.1	0.8
<남 자>							
2011	99.9	99.7	71.4	2.6	19.4	4.8	1.5
2012	99.9	99.7	70.2	2.8	19.5	6.2	1.0
2013	99.9	99.7	68.8	3.1	19.0	8.0	0.8
<여 자>							
2011	99.9	99.7	73.6	3.6	18.2	2.9	1.5
2012	99.9	99.7	73.3	3.6	18.0	3.8	1.0
2013	99.9	99.7	72.5	3.6	17.9	5.0	0.8

자료 : 통계청, 「2013 한국의 사회지표」 2014. 3.

주 : 1) 기타학교 진학 포함

2)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절사하였음

3) 2011년부터 4월 1일 현재 대학등록자 기준. 단, 재수자 제외

4) 2011년부터 고등학교 유형이 변경됨

5) 2011년부터 고등학교 유형이 개정되어 기존 유형 졸업자는 2013년까지 발생함.

(단위: %)

고등학교 → 고등교육기관[1]										
전체	일반계고					전문계고				
	전체	전문대학	교육대학	일반대학	기타	전체	전문대학	교육대학	일반대학	기타
<전 체>										
68.0	83.9	17.1	0.7	65.7	0.5	42.0	30.5	0.0	11.0	0.4
82.1	88.3	15.2	1.1	71.5	0.5	67.6	41.9	0.1	25.2	0.4
79.0	81.5	17.7	0.8	62.7	0.4	71.1	46.0	0.1	24.5	0.5
<남 자>										
68.3	79.6	14.6	0.3	64.3	0.4	48.2	36.0	0.0	11.9	0.3
83.3	87.8	13.4	0.7	73.1	0.6	72.7	45.0	0.0	27.2	0.5
77.6	79.6	15.4	0.4	63.2	0.5	71.6	47.1	0.1	23.9	0.5
<여 자>										
67.6	89.3	20.2	1.2	67.4	0.5	35.7	25.1	0.1	10.0	0.5
80.8	88.8	17.2	1.4	69.8	0.4	62.0	38.5	0.1	23.0	0.3
80.5	83.6	20.1	1.1	62.0	0.3	70.6	44.7	0.1	25.3	0.5

고등학교 → 고등교육기관[1)3)5)]										
전체	일반계고					전문계고				
	전체	전문대학	교육대학	일반대학	기타	전체	전문대학	교육대학	일반대학	기타
<전 체>										
72.5	75.2	21.0	0.5	53.3	0.3	63.7	41.6	0.1	21.5	0.5
71.3	76.2	22.0	0.5	53.3	0.4	54.9	35.4	0.1	18.9	0.5
70.7	77.5	22.3	0.6	54.3	0.3	47.4	30.0	0.1	17.0	0.4
<남 자>										
70.2	72.0	18.4	0.3	53.0	0.4	64.4	42.9	0.1	20.9	0.6
68.6	73.2	19.5	0.3	53.1	0.4	53.9	35.1	0.0	18.2	0.6
67.4	74.3	19.9	0.4	53.6	0.4	44.4	28.6	0.0	15.2	0.5
<여 자>										
75.0	78.6	23.8	0.8	53.7	0.3	62.9	40.1	0.1	22.2	0.4
74.3	79.5	24.8	0.8	53.6	0.3	56.1	35.6	0.1	19.9	0.5
74.5	81.0	24.9	0.8	55.1	0.3	51.0	31.6	0.1	19.0	0.3

<표 4-4-3> 학교급 및 성별 학업중단율

(단위 : 명, %)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1)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2000	1.0	1.0	1.0	2.5	2.9	2.1	5.5	5.7	5.2	3.9	3.9	3.9
2005	0.8	0.8	0.7	1.3	1.4	1.2	7.5	8.0	6.6	4.2	4.3	3.9
2010	1.0	0.9	1.0	2.0	2.2	1.8	7.4	8.1	6.3	4.0	4.4	3.4
2011	0.9	0.9	0.9	1.9	2.1	1.7	7.1	7.8	6.1	4.0	4.4	3.3
2012	0.9	0.9	0.9	1.8	2.0	1.6	7.7	8.7	6.1	4.0	4.5	3.2
서울	1.3	1.3	1.2	1.9	2.1	1.7	6.7	7.2	6.3	2.5	2.6	2.4
부산	0.9	0.9	0.9	1.9	2.1	1.6	8.9	9.9	7.2	4.6	5.1	3.7
대구	0.6	0.6	0.6	1.5	1.6	1.4	7.3	8.2	5.7	3.2	3.6	2.5
인천	0.9	0.9	0.8	1.6	1.8	1.4	10.6	13.3	6.7	2.6	2.8	2.1
광주	0.6	0.6	0.7	1.7	1.8	1.6	5.5	5.9	5.0	5.0	5.8	4.0
대전	1.0	1.1	1.0	2.1	2.1	2.0	9.3	10.8	6.7	4.6	5.2	3.6
울산	0.7	0.8	0.7	1.6	1.6	1.6	5.8	6.5	4.5	3.1	3.6	2.0
세종2)	–	–	–	–	–	–	–	–	–	–	–	–
경기	1.1	1.0	1.1	2.0	2.2	1.7	6.8	7.5	5.9	4.0	4.2	3.7
강원	0.8	0.7	0.8	2.2	2.5	1.9	4.6	5.0	3.9	4.7	5.1	3.6
충북	0.7	0.7	0.6	1.8	2.0	1.6	6.8	7.5	5.5	4.1	4.4	3.6
충남	0.7	0.7	0.8	1.9	2.1	1.6	6.2	6.8	5.2	4.2	4.6	3.4
전북	0.6	0.6	0.6	1.6	1.7	1.5	7.5	8.7	6.1	4.7	5.4	3.5
전남	0.5	0.6	0.5	1.8	2.0	1.7	6.8	8.0	5.5	5.6	6.5	3.8
경북	0.5	0.5	0.5	1.6	1.7	1.5	13.2	16.7	8.5	4.9	5.6	3.6
경남	0.6	0.5	0.6	1.6	1.8	1.4	7.4	8.6	5.2	5.1	5.8	3.6
제주	0.5	0.6	0.4	1.6	1.7	1.6	7.8	9.4	5.5	4.6	5.7	2.7

자료 : 통계청, 「2013 한국의 사회지표」 2014. 3.

주 : 1) 일반대학

2) 2012년도 재적 학생수가 확인되지 않아 산출 불가

※ 「2013 인권통계」 신설

<표 4-4-4>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단위: 만 원, %, %p)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년비(차)		전년비(차)		전년비(차)		전년비(차)
사교육비(만 원, %)		24.2	24.0	−0.8	24.0	0.0	23.6	−1.7	23.9	1.3
	초등학교	24.5	24.5	0.0	24.1	−1.6	21.9	−9.1	23.2	5.9
	중학교	26.0	25.5	−1.9	26.2	2.7	27.6	5.3	26.7	−3.3
	고등학교	21.7	21.8	0.5	21.8	0.0	22.4	2.8	22.3	−0.4
	일반고	26.9	26.5	−1.5	25.9	−2.3	26.5	2.3	26.2	−1.1
참여율(%, %p)		75.0	73.6	−1.4	71.7	−1.9	69.4	−2.3	68.8	−0.6
	초등학교	87.4	86.8	−0.6	84.6	−2.2	80.9	−3.7	81.8	0.9
	중학교	74.3	72.2	−2.1	71.0	−1.2	70.6	−0.4	69.5	−1.1
	고등학교	53.8	52.8	−1.0	51.6	−1.2	50.7	−0.9	49.2	−1.5
	일반고	62.8	61.1	−1.7	58.7	−2.4	57.6	−1.1	55.9	−1.7

자료 : 통계청, 「2013 사교육비조사 보고서」 2014. 4.

※「2013 인권통계」 신설

<표 4-4-5> 도시규모별 문화예술 관람률

(단위: %)

구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전체		65.8	67.3	67.2	69.6
도시규모	대도시	69.6	70.6	68.8	72.5
	중소도시	63.2	67.6	67.7	73.9
	군 지역	57.0	48.9	56.8	−
	읍면지역	−	−	−	52.7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2 문화향수실태조사」 2012. 12.

※「2013 인권통계」 신설

<표 4-4-6> 여가활용 만족여부 및 불만족 이유

(단위: %)

구분	계	만족	보통	불만족	소계	경제적 부담	시간 부족	교통 혼잡 및 불편	여가시설 및 정보부족	적당한 취 미 없 음	체력이나 건강이 좋지않음	여가를 함께할 사람없음	기타
2011년	100.0	19.3	48.6	32.1	100.0	60.9	23.2	1.0	2.9	3.4	6.8	1.6	0.3
2013년	100.0	27.1	47.8	25.1	100.0	57.7	21.1	1.6	3.0	4.7	9.3	2.3	0.2
도 시(동 부)	100.0	27.8	47.6	24.6	100.0	59.9	20.7	1.6	2.7	4.9	7.8	2.1	0.2
농어촌(읍면부)	100.0	23.8	48.9	27.3	100.0	48.3	22.7	1.9	3.9	4.0	15.7	3.3	0.2
남 자	100.0	28.4	47.9	23.8	100.0	59.3	21.5	1.6	2.7	5.3	6.9	2.4	0.3
여 자	100.0	25.8	47.8	26.4	100.0	56.4	20.8	1.7	3.2	4.2	11.4	2.2	0.1
100만원 미만	100.0	16.1	47.3	36.6	100.0	65.3	4.9	0.6	1.1	2.5	22.4	3.2	0.0
100~200만원 미만	100.0	19.4	49.1	31.5	100.0	67.0	15.5	1.2	2.7	4.0	7.4	2.1	0.1
200~300만원 미만	100.0	24.9	49.7	25.4	100.0	59.8	24.0	1.6	2.9	4.8	4.8	1.8	0.3
300~400만원 미만	100.0	30.4	50.2	19.4	100.0	52.8	27.3	2.3	4.7	5.5	4.7	2.5	0.2
400~500만원 미만	100.0	34.8	46.2	18.9	100.0	40.5	39.2	3.5	3.4	6.7	4.7	1.2	0.8
500~600만원 미만	100.0	39.8	44.1	16.0	100.0	34.5	40.3	3.8	4.2	8.3	4.9	3.9	-
600만원 이상	100.0	45.6	40.1	14.3	100.0	24.2	48.0	1.9	6.6	10.2	6.8	2.1	0.3

자료 : 통계청, 「2013년 사회조사」 2013. 12.

※「2013 인권통계」 신설

제 5 절 주거권

우리나라 「헌법」에는 주거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세계인권선언」 제25조[97]는 주택 관련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선언하였다. 또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제11조 1.[98]에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규약을 비준함으로써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헌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 등을 근거로 주거권 관련 통계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 주택 자가보유율, 월평균 주거비 지출 현황, 주거환경 만족도 추이, 홈리스 수로 구성하였다.

97) 「세계인권선언」 제25조
1.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역무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불구,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그 밖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다른 생계 결핍의 경우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모자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어린이는 부모의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사회적 보호를 향유한다.

98)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제11조
1. 이 규약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취지에서 자유로운 동의에 입각한 국제적 협력의 본질적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권리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표 4-5-1>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

(단위: 만, %)

구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 (총가구대비 미달가구 비율, %)	268 (16.6%)	212 (12.7%)	184 (10.6%)	127.7 (7.2%)

자료 : 국토교통부, 「2012 주거실태조사」 2012. 12.

※「2013 인권통계」 신설

<표 4-5-2> 주택 자가보유율

(단위: %)

구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전국	61.0	60.9	60.3	58.4
수도권	56.8	56.6	54.6	52.3
광역시	59.3	60.3	61.2	59.0
도지역	68.1	67.7	68.3	67.2

자료 : 국토교통부(각 연도), 「주거실태조사」

※「2013 인권통계」 신설

<표 4-5-3> 월평균 주거비 지출 현황

(단위: 만 원, %)

구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월평균 주거비(만 원)	18.7	21.2	24.2	24.7
소득대비 월평균 주거비(%)	8.5	8.9	8.6	11.7

자료 : 국토교통부(각 연도), 「주거실태조사」

※「2013 인권통계」 신설

<표 4-5-4> 주거환경 만족도 추이(최저1~최고5점)

(단위:1~5점)

구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평균	3.58	3.44	3.55	3.50

자료 : 국토교통부(각 연도), 「주거실태조사」

※「2013 인권통계」 신설

<표 4-5-5> 홈리스 수

(단위: 명)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15,785	15,173	14,266	14,288	13,930	13,152	13,145	12,391
노숙인(재활·요양시설)	11,063	10,317	9,722	9,492	9,266	8,958	8,742	8,569
노숙인(자활시설·일시보호)	3,763	3,563	3,363	3,479	3,404	3,117	3,282	2,741
거리노숙인	959	1,293	1,181	1,317	1,260	1,077	1,121	1,081
쪽방주민	–	–	–	6,119	6,394	6,232	5,991	5,891

자료 : 보건복지부, 「2012 보건복지백서」 2013.9.

※「2013 인권통계」 신설

제3부 국제 인권통계

제1장 국제기구 통계
제2장 비정부기구(NGO) 통계
제3장 학술기관 통계

제1장 국제기구 통계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각종 통계 자료들은 다른 나라의 삶의 질을 측정·비교하기 위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자료들은 각 나라들이 직접 제공한 정보들로 구성된다. 이 장에서는 유엔(UN) 및 그 전문기관,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 지역 인권재판소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료를 주로 인용하였다.

유엔 및 그 전문기관의 자료로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국제인권조약 비준과 국가인권기구 승인 등급에 관한 국가별 자료와 인권조약에 기초한 조약감시기구의 진정 접수 및 처리결과 통계가 있다. 그리고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지수(HDR) 자료와 유엔난민기구(UNHCR), 유엔글로벌콤팩(UN Global Compact), 유엔 공공행정네트워크(UN Public Administration Network),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노동기구(ILO), 지역 인권재판소 및 세계은행(WB)이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였다.

인권조약에 기초한 조약감시기구에 관한 자료는 자유권규약위원회(CCPR), 고문방지위원회(CAT),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O), 그리고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EW)에서 접수·처리한 진정 통계를 제시하였고, 지역 인권조약에 근거하여 설립된 인권재판소에 관한 자료는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 미주인권재판소(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및 아프리카 인권재판소(Africa Court of Human and People's Rights)에 관한 통계를 소개하였다. 참고로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의 인권재판소들이 오랜 기간 동안 운영되어 온 반면, 아프리카의 인권재판소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설립되어 2008년에 첫 소송을 접수하였다.

다음으로 주요 국가들의 비교기준점들을 제공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여성 국회의원의 정치 참여 자료를 제시하는 국제의원연맹(Inter-Parliamentary Union)의 자료를 소개한다. 국제의원연맹은 엄밀히 말하면 각국 국회를 회원으로 하는 국가간 기구임을 밝힌다.

<표 1-1> 18개의 국제인권조약 비준

(단위: 개)

국가명	조약 비준 개수
아르헨티나(Argentina)	15-18
오스트리아(Austria)	15-18
브라질(Brazil)	15-18
칠레(Chile)	15-18
프랑스(France)	15-18
독일(Germany)	15-18
멕시코(Mexico)	15-18
포르투갈(Portugal)	15-18
스페인(Spain)	15-18
호주(Australia)	10-14
벨기에(Belgium)	10-14
캐나다(Canada)	10-14
체코(Czech Republic)	10-14
덴마크(Denmark)	10-14
에스토니아(Estonia)	10-14
핀란드(Finland)	10-14
그리스(Greece)	10-14
헝가리(Hungary)	10-14
아이슬란드(Iceland)	10-14
인도네시아(Indonesia)	10-14
아일랜드(Ireland)	10-14
이탈리아(Italy)	10-14
룩셈부르크(Luxembourg)	10-14
네덜란드(Netherlands)	10-14
뉴질랜드(New Zealand)	10-14
노르웨이(Norway)	10-14
폴란드(Poland)	10-14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10-14
러시아(Russian Federation)	10-14
슬로바키아(Slovak Republic)	10-14
슬로베니아(Slovenia)	10-14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10-14
스웨덴(Sweden)	10-14
스위스(Switzerland)	10-14
터키(Turkey)	10-14
영국(United Kingdom)	10-14
중국(China)	5-9
인도(India)	5-9
이스라엘(Israel)	5-9
일본(Japan)	5-9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5-9
미국(United States)	5-9

자료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2013. 1.
http://www.ohchr.org/Documents/Issues/HRIndicators/Ratification//Status_Total.pdf

주 : 1) 범위(Scale) : 0-4; 5-9; 10-14; 15-18
2) 출판 빈도: 연 2회, 국가 수: 193개국
3) 대한민국 조약 비준 개수 : 11개
4) 18개의 국제인권조약은 다음과 같다.(대한민국 비준 조약은 굵은 글씨임)

1.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ICERD)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3.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4.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5. **고문 및 그 밖에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CAT)
6.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7.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ICRMW)
8.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CPED)
9.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10.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OP)
1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OP1)
12.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ICCPR-OP2)
13.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OP-CEDAW)
14.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OP-CRC-AC)
15. **아동 매매·아동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OP-CRC-SC)
16. 개인청원권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a Communications Procedure)
17. 고문 및 그 밖에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OP-CAT)
18.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P-CRPD)

<표 1-2> 국가인권기구(NHRI) 승인 등급

승인 등급	국가 및 국가인권기구
A	아르헨티나 : Defensoria del Pueblo de la Nación Argentina
A	호주 :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A	캐나다 : 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
A	칠레 : Instituto Nacional de Derechos Humanos
A	덴마크 :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A	프랑스 : Commission Nationale Consultative des Droits de l'Homme
A	독일 : Deutsches Institut fűr Menschenrechte
A	인도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India
A	인도네시아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Indonesia(Komnas HAM)
A	그리스 : National Commission for Human Rights
A	아일랜드 : Irish Human Rights Commission
A	뉴질랜드 : New Zealand Human Rights Commission
A	룩셈부르크 : Commission Consultative des Droits de l'Homme du Grand-Duchě de Luxembourg
A	멕시코 : Comisión Nacional de los Derechos Humanos
A	폴란드 : Human Rights Defender
A	포르투갈 : Provedor de Justi□a
A	대한민국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	러시아 :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n the Russian Federation
A	남아프리카공화국 : South African Human Rights Commission
A	스페인 : El Defensor del Pueblo
A	영국(북아일랜드) : Northern Ireland Human Rights Commission
	영국 : Equal and Human Rights Commission
	영국(스코틀랜드) : Scottish Human Rights Commission
B	오스트리아 : The Austrian Ombudsman Board
B	벨기에 : The Centre for equal opportunities and opposition to racism
B	헝가리 : Parliamentary Commissioner for Civil Rights
B	네덜란드 : Equal Treatment Commission of the Netherlands
B	노르웨이 Norwegian Centre for Human Rights
B	슬로바키아 : National Centre for Human Rights(SNCHR)
B	슬로베니아 : Republic of Slovenia Human Rights Ombudsman
B	스웨덴 : Equal Ombudsman of Sweden
C	스위스 : Commission fěděrale pour les questions fěminines(CFQF)
	스위스 : Federal Commission against Racism(FCR)
C	프에르토리코 : Oficina del Procurador del Ciudadano del Estado Libre Asociado de Puerto Rico

자료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2013. 2.
http://www.ohchr.org/Documents/Issues/HRIndicators/Accreditation//NHRI_May2012_map.pdf

주 : 1) 등급 : A(파리 원칙 준수), B(완벽하게 준수 하지 않음), C(비준수)
2) 출판 빈도: 연 2회, 국가 수: 101개국
3) 브라질, 중국, 체코, 에스토니아, 핀란드,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터기 자료없음

<표 1-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에 의한 개인청원

(단위: 건)

국가명	소계	진행중 (Living cases)		처리결과			
		계류중 (Pending)	적격심사 허용 (Admissible)	허용성 심사 부적격 (Inadmissible)	종결 (Discontinued)	침해 (Violation)	기각 (No violation)
합 계(115개국)	2,145	325	5	582	317	764	152
아르헨티나(Argentina)	11	2	–	5	–	4	–
호주(Australia)	133	24	–	32	43	28	6
오스트리아(Austria)	25	3	–	10	1	5	6
벨기에(Belgium)	7	1	–	2	–	1	3
브라질(Brazil)	–	–	–	–	–	–	–
캐나다(Canada)	165	17	–	82	37	17	12
칠레(Chile)	9	–	–	7	2	–	–
중국(China)	해당조약 비준국 아님						
체코(Czech Republic)	63	10	–	20	4	29	–
덴마크(Denmark)	26	11	–	9	4	2	–
에스토니아(Estonia)	7	1	–	–	2	1	3
핀란드(Finland)	33	1	–	15	3	5	9
프랑스(France)	81	4	–	45	11	9	12
독일(Germany)	20	–	–	17	1	1	1
그리스(Greece)	10	–	2	3	–	3	2
헝가리(Hungary)	11	–	–	5	2	3	1
아이슬란드(Iceland)	4	–	–	2	1	1	–
인도(India)	선택의정서 비준국 아님						
인도네시아(Indonesia)	선택의정서 비준국 아님						
아일랜드(Ireland)	5	–	–	3	–	1	1
이스라엘(Israel)	선택의정서 비준국 아님						
이탈리아(Italy)	15	–	–	10	3	1	1
일본(Japan)	선택의정서 비준국 아님						
룩셈부르크(Luxembourg)	–	–	–	–	–	–	–
멕시코(Mexico)	–	–	–	–	–	–	–
네덜란드(Netherlands)	99	6	–	64	3	9	20
뉴질랜드(New Zealand)	32	2	–	10	8	4	8
노르웨이(Norway)	17	2	–	9	–	3	3
폴란드(Poland)	9	–	–	4	2	1	2
포르투갈(Portugal)	7	–	–	3	1	2	1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126	3	–	1	1	119	2
러시아(Russian Federation)	67	25	1	16	7	15	3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해당조약 비준국 아님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2	–	–	–	–	1	1
스페인(Spain)	119	7	–	70	7	22	13
슬로바키아(Slovak Republic)	7	2	–	4	–	1	–
슬로베니아(Slovenia)	–	–	–	–	–	–	–
스웨덴(Sweden)	16	1	–	5	2	2	6
스위스(Switzerland)	선택의정서 비준국 아님						
터키(Turkey)	2	–	–	–	–	2	–
영국(United Kingdom)	선택의정서 비준국 아님						
미국(United States)	선택의정서 비준국 아님						

자료 : OHCHR, Statistical survey of indivisual complaints dealt with by the Human Rights Committee under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23 April 2012

<표 1-4> 고문방지협약 제22조 절차에 의한 개인청원

(단위: 건)

국가명	소계	진행중 (Living cases)	적격심사 허용 (Admissible)	처리결과			
				허용성 심사 부적격 (Inadmissible)	종결 (Discontinued)	침해 (Violation)	기각 (No violation)
합 계(66개국)	617	141	1	67	170	88	150
아르헨티나(Argentina)	4	–	–	3	–	–	1
호주(Australia)	42	10	–	1	16	3	12
오스트리아(Austria)	4	1	–	1	–	1	1
벨기에(Belgium)	–	–	–	–	–	–	–
브라질(Brazil)	–	–	–	–	–	–	–
캐나다(Canada)	111	36	–	15	38	7	15
칠레(Chile)	–	–	–	–	–	–	–
중국(China)	해당조약 제22조 유보						
체코(Czech Republic)	–	–	–	–	–	–	–
덴마크(Denmark)	27	9	–	2	6	2	8
에스토니아(Estonia)	해당조약 제22조 유보						
핀란드(Finland)	12	6	–	–	3	2	1
프랑스(France)	33	–	–	6	21	3	3
독일(Germany)	2	–	–	–	–	1	1
그리스(Greece)	1	–	–	–	–	–	1
헝가리(Hungary)	1	–	–	1	–	–	–
아이슬란드(Iceland)	–	–	–	–	–	–	–
인도(India)	해당조약 비준국 아님						
인도네시아(Indonesia)	해당조약 제22조 유보						
아일랜드(Ireland)	–	–	–	–	–	–	–
이스라엘(Israel)	해당조약 제22조 유보						
이탈리아(Italy)	1	1	–	–	–	–	–
일본(Japan)	해당조약 제22조 유보						
룩셈부르크(Luxembourg)	–	–	–	–	–	–	–
멕시코(Mexico)	1	1	–	–	–	–	–
네덜란드(Netherlands)	17	3	–	1	1	1	11
뉴질랜드(New Zealand)	–	–	–	–	–	–	–
노르웨이(Norway)	6	–	–	3	–	2	1
폴란드(Poland)	–	–	–	–	–	–	–
포르투갈(Portugal)	–	–	–	–	–	–	–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1	1	–	–	–	–	–
러시아(Russian Federation)	5	2	–	1	1	1	–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해당조약 제22조 유보						
슬로바키아(Slovak Republic)	–	–	–	–	–	–	–
슬로베니아(Slovenia)	–	–	–	–	–	–	–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	–	–	–	–	–	–
스페인(Spain)	11	–	–	6	–	4	1
스웨덴(Sweden)	123	13	–	15	34	20	41
스위스(Switzerland)	155	36	–	8	48	10	52
터키(Turkey)	1	–	–	1	–	–	–
영국(United Kingdom)	해당조약 제22조 유보						
미국(United States)	해당조약 제22조 유보						

자료 : OHCHR, Status of Communications dealt with by CAT under Art. 22 Procedure , 2014.8.

<표 1-5>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4조 절차에 의한 개인청원

(단위: 건)

국가명	소계	진행중 (Living cases)	처리결과			
			허용성 심사 부적격 (Inadmissible)	중결 (Discontinued)	침해 (Violation)	기각 (No violation)
합 계(54개국)	45	4	17	–	10	14
아르헨티나(Argentina)	–	–	–	–	–	–
호주(Australia)	8	1	3	–	–	4
오스트리아(Austria)	–	–	–	–	–	–
벨기에(Belgium)	–	–	–	–	–	–
브라질(Brazil)	–	–	–	–	–	–
캐나다(Canada)	해당조약 제14조 유보					
칠레(Chile)	–	–	–	–	–	–
중국(China)	해당조약 제14조 유보					
체코(Czech Republic)	–	–	–	–	–	–
덴마크(Denmark)	20	2	8	–	4	6
에스토니아(Estonia)	–	–	–	–	–	–
핀란드(Finland)	–	–	–	–	–	–
프랑스(France)	2	–	1	–	–	1
독일(Germany)	1	–	1	–	–	–
그리스(Greece)	해당조약 제14조 유보					
헝가리(Hungary)	–	–	–	–	–	–
아이슬란드(Iceland)	–	–	–	–	–	–
인도(India)	해당조약 제14조 유보					
인도네시아(Indonesia)	해당조약 제14조 유보					
아일랜드(Ireland)	–	–	–	–	–	–
이스라엘(Israel)	해당조약 제14조 유보					
이탈리아(Italy)	–	–	–	–	–	–
일본(Japan)	해당조약 제14조 유보					
룩셈부르크(Luxembourg)	–	–	–	–	–	–
멕시코(Mexico)	–	–	–	–	–	–
네덜란드(Netherlands)	3	–	–	–	2	1
뉴질랜드(New Zealand)	해당조약 제14조 유보					
노르웨이(Norway)	3	–	1	–	1	1
폴란드(Poland)	–	–	–	–	–	–
포르투갈(Portugal)	–	–	–	–	–	–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	–	–	–	–	–
러시아(Russian Federation)	1	1	–	–	–	–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해당조약 제14조 유보					
슬로바키아(Slovak Republic)	3	–	–	–	2	1
슬로베니아(Slovenia)	–	–	–	–	–	–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	–	–	–	–	–
스페인(Spain)	–	–	–	–	–	–
스웨덴(Sweden)	3	–	3	–	–	–
스위스(Switzerland)	–	–	–	–	–	–
터키(Turkey)	해당조약 제14조 유보					
영국(United Kingdom)	해당조약 제14조 유보					
미국(United States)	해당조약 제14조 유보					

자료 : OHCHR, Status of Communications dealt with by CERD under Art. 14 Procedure , 2011.3

<표 1-6>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에 의한 개인청원

(단위: 건)

국가명	소계	진행중 (Living cases)	처리결과		
			종결 (Discontinued)	허용성 심사 부적격 (Inadmissible)	침해 (Violation)
합 계(102개국)	27	10	3	8	6
아르헨티나(Argentina)	–	–	–	–	–
호주(Australia)	–	–	–	–	–
오스트리아(Austria)	2	–	–	–	2
벨기에(Belgium)	–	–	–	–	–
브라질(Brazil)	1	1	–	–	–
캐나다(Canada)	4	3	1	–	–
칠레(Chile)	선택의정서 비준국 아님				
중국(China)	선택의정서 비준국 아님				
체코(Czech Republic)	–	–	–	–	–
덴마크(Denmark)	–	–	–	–	–
에스토니아(Estonia)	선택의정서 비준국 아님				
핀란드(Finland)	–	–	–	–	–
프랑스(France)	2	–	–	2	–
독일(Germany)	1	–	–	1	–
그리스(Greece)	–	–	–	–	–
헝가리(Hungary)	2	–	–	–	2
아이슬란드(Iceland)	–	–	–	–	–
인도(India)	선택의정서 비준국 아님				
인도네시아(Indonesia)	선택의정서 비준국 아님				
아일랜드(Ireland)	–	–	–	–	–
이스라엘(Israel)	선택의정서 비준국 아님				
이탈리아(Italy)	2	2	–	–	–
일본(Japan)	선택의정서 비준국 아님				
룩셈부르크(Luxembourg)	–	–	–	–	–
멕시코(Mexico)	–	–	–	–	–
네덜란드(Netherlands)	4	–	2	1	1
뉴질랜드(New Zealand)	–	–	–	–	–
노르웨이(Norway)	–	–	–	–	–
폴란드(Poland)	–	–	–	–	–
포르투갈(Portugal)	–	–	–	–	–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	–	–	–	–
러시아(Russian Federation)	–	–	–	–	–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선택의정서 비준국 아님				
슬로바키아(Slovak Republic)	–	–	–	–	–
슬로베니아(Slovenia)	–	–	–	–	–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	–	–	–	–
스페인(Spain)	1	–	–	1	–
스웨덴(Sweden)	–	–	–	–	–
스위스(Switzerland)	–	–	–	–	–
터키(Turkey)	1	–	–	1	–
영국(United Kingdom)	2	–	–	2	–
미국(United States)	해당조약 비준국 아님				

자료 : OHCHR, CEDAW - Optional protocol Status of Registered cases , As of 2 March 2011

<표 1-7> 유엔 글로벌콤팩트 가입 기업의 수

(단위: 개)

국가명	기업수
스페인(Spain)	1,055
프랑스(France)	803
일본(Japan)	376
브라질(Brazil)	327
미국(United States)	292
멕시코(Mexico)	268
덴마크(Denmark)	238
독일(Germany)	235
중국(China)	223
영국(United Kingdom)	207
아르헨티나(Argentina)	155
스웨덴(Sweden)	150
인도(India)	148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138
터키(Turkey)	117
이탈리아(Italy)	101
네덜란드(Netherlands)	80
호주(Australia)	70
노르웨이(Norway)	63
스위스(Switzerland)	62
칠레(Chile)	58
폴란드(Poland)	51
캐나다(Canada)	48
그리스(Greece)	47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45
핀란드(Finland)	41
포르투갈(Portugal)	40
벨기에(Belgium)	39
인도네시아(Indonesia)	38
오스트리아(Austria)	33
러시아(Russian Federation)	26
이스라엘(Israel)	18
룩셈부르크(Luxembourg)	15
슬로베니아(Slovenia)	10
체코(Czech Republic)	9
아이슬란드(Iceland)	8
아일랜드(Ireland)	7
슬로바키아(Slovak Republic)	7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6
헝가리(Hungary)	4
에스토니아(Estonia)	3
뉴질랜드(New Zealand)	3

자료 : 유엔 글로벌 콤팩트 (UN Global Compact), 2013.4.6.
http://www.unglobalcompact.org/participants/search
주 : 1) 대한민국 가입 현황 : 2013.4.6. 현재 231개 기관 가입, 그 중 기업은 138개

<표 1-8> 난민, 망명신청자, 국내실향민, 귀환자, 무국적자의 현황

(단위: 명, 건)

국가명	망명국 기준(by country of asylum)		출신국 기준(by origin)		무국적자 (거주국 기준)
	난민	망명 신청자	난민	망명 신청자	
전세계 난민수	10,497,957	928,226			3,335,777
독일(Germany)	589,737	85,560	182	26	5,683
중국(China)	301,037	265	193,453	15,358	–
미국(United States)	262,023	18,966	4,456	432	–
프랑스(France)	217,865	49,885	100	49	268,960
영국(United Kingdom)	149,799	18,916	153	48	205
인도(India)	185,656	3,559	14,258	6,652	–
캐나다(Canada)	163,756	32,643	123	10	–
스웨덴(Sweden)	92,872	18,014	20	19	9,596
네덜란드(Netherlands)	71,909	10,420	71	34	2,005
이탈리아(Italy)	64,779	14,330	66	64	470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65,233	230,442	420	236	–
스위스(Switzerland)	50,747	21,709	17	4	69
오스트리아(Austria)	51,730	22,429	12	6	542
이스라엘(Israel)	48,505	5,699	1,340	415	14
노르웨이(Norway)	42,822	9,354	9	6	2,313
호주(Australia)	30,083	11,051	48	9	–
벨기에(Belgium)	22,024	15,036	93	16	3,898
폴란드(Poland)	15,911	2,390	1,640	323	10,825
터키(Turkey)	267,063	14,051	135,372	8,819	780
덴마크(Denmark)	11,814	1,563	9	1	3,623
핀란드(Finland)	9,919	1,881	7	6	2,017
아일랜드(Ireland)	6,327	5,471	9	17	73
헝가리(Hungary)	4,054	386	1,087	3,734	111
브라질(Brazil)	4,689	1,441	1,076	251	1
스페인(Spain)	4,510	2,790	52	89	36
러시아(Russian Federation)	3,178	844	110,588	15,100	178,000
아르헨티나(Argentina)	3,488	1,921	447	48	–
룩셈부르크(Luxembourg)	2,910	1,239	–	1	177
일본(Japan)	2,581	4,711	172	41	1,100
체코(Czech Republic)	2,805	574	622	207	1,502
뉴질랜드(New Zealand)	1,517	276	20	9	–
멕시코(Mexico)	1,520	357	8,435	3,603	7
칠레(Chile)	1,695	353	1,152	66	–
그리스(Greece)	2,100	36,183	51	125	154
인도네시아(Indonesia)	1,819	6,126	15,523	503	–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577	99	818	149	70,000
슬로바키아(Slovakia)	662	194	239	631	1,523
포르투갈(Portugal)	483	197	32	50	553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487	1,548	558	186	179
슬로베니아(Slovenia)	176	100	34	12	4
아이슬란드(Iceland)	60	118	3	2	119
에스토니아(Estonia)	376,393	844	456	28	–

자료 : 유엔 난민기구(UNHCR), UNHCR Statistical Yearbook(2013), 2012
http://www.unhcr.org/516282cf5.html
주 : 1) 출판 빈도 : 매년, 국가 수 : 제공되지 않음

<표 1-9> 망명신청 및 난민지위 결정 현황

(단위: 명, 건)

국가명	심사중인건수 (2012.1.1.)	2012 신청건수	결정건수				심사중인건수 (2012.12.31.)
			소계	인정 (보호지위포함)	기각	종결	
전세계 합계	**891,258**	**915,412**	**915,023**	**261,909**	**437,969**	**205,351**	**928,226**
독일(Germany)	62,686	77,651	61,826	17,160	30,700	13,986	85,560
중국(China)	30	309	74	52	4	18	265
미국(United States)	11,857	66,101	82,564	25,268	10,331	46,965	18,966
프랑스(France)	49,240	97,643	79,968	9,946	70,022	–	49,885
영국(United Kingdom)	16,907	37,066	32,706	10,041	18,820	3,845	18,916
인도(India)	3,518	3,389	3,348	2,087	818	443	3,559
캐나다(Canada)	41,852	20,223	29,439	10,294	14,448	4,697	32,643
스웨덴(Sweden)	18,138	43,876	49,145	13,708	28,114	7,323	18,014
네덜란드(Netherlands)	10,420	13,102	14,501	5,921	8,580	–	10,420
이탈리아(Italy)	13,525	17,352	22,442	8,544	13,898	–	14,330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222,645	117,188	104,928	7,950	96,890	88	230,442
스위스(Switzerland)	17,258	32,359	32,570	4,092	3,402	17,447	21,709
오스트리아(Austria)	21,034	17,413	18,353	5,730	10,745	1,878	22,429
이스라엘(Israel)	6,460	1,999	2,626	30	57	643	5,699
노르웨이(Norway)	11,166	18,309	19,182	5,421	11,046	2,746	9,354
호주(Australia)	5,242	20,127	18,567	8,367	9,443	757	11,051
벨기에(Belgium)	19,009	38,570	35,781	5,603	27,716	2,157	15,036
폴란드(Poland)	2,886	12,266	12,144	340	2,857	8,947	2,390
터키(Turkey)	10,964	17,557	14,470	10,892	626	2,952	14,051
덴마크(Denmark)	666	7,529	4,928	1,994	2,935	–	1,563
핀란드(Finland)	2,283	2,922	3,514	1,335	1,132	1,047	1,881
아일랜드(Ireland)	5,458	2,256	2,243	140	1,683	420	5,471
헝가리(Hungary)	360	2,157	2,205	356	385	1,464	386
브라질(Brazil)	1,021	1,124	704	192	492	20	1,441
스페인(Spain)	2,665	2,579	2,636	520	2,080	36	2,790
러시아(Russian Federation)	962	2,321	2,439	750	1,689	–	844
아르헨티나(Argentina)	1,222	1,467	768	135	406	227	1,921
룩셈부르크(Luxembourg)	1,694	2,146	2,906	55	1,972	879	1,239
일본(Japan)	3,698	4,329	3,316	133	2,880	303	4,711
체코(Czech Republic)	566	753	814	198	308	308	574
뉴질랜드(New Zealand)	239	508	478	157	306	15	276
멕시코(Mexico)	172	811	626	271	173	182	357
칠레(Chile)	364	168	179	10	169	–	353
그리스(Greece)	44,302	17,338	27,665	627	12,214	14,824	36,183
인도네시아(Indonesia)	3,235	7,223	4,332	1,223	77	3,032	6,126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80	19	–	–	–	–	99
슬로바키아(Slovak Republic)	185	732	757	136	201	420	194
포르투갈(Portugal)	213	299	315	105	4	206	197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1,182	1,361	987	110	468	413	1,548
슬로베니아(Slovenia)	103	305	308	34	167	107	100
아이슬란드(Iceland)	81	159	91	1	13	77	118
에스토니아(Estonia)	9	77	69	13	44	12	7

자료 : 유엔 난민기구(UNHCR), UNHCR Statistical Yearbook(2013), 2012
http://www.unhcr.org/516282cf5.html

주 : 1) 출판 빈도 : 매년, 국가 수 : 제공되지 않음

<표 1-10> 인간개발지수(HDI)

(단위: 년, $)

국가명	인간개발지수 (2013)		기대여명 (2013)	평균교육연수 (2012)
	순위	지수		
노르웨이(Norway)	1	0.944	81.5	12.6
호주(Australia)	2	0.933	82.5	12.8
스위스(Switzerland)	3	0.917	82.6	12.2
네덜란드(Netherlands)	4	0.915	81.0	11.9
미국(United States)	5	0.914	78.9	12.9
독일(Germany)	6	0.911	80.7	12.9
뉴질랜드(New Zealand)	7	0.910	81.1	12.5
캐나다(Canada)	8	0.902	81.5	12.3
덴마크(Denmark)	10	0.900	79.4	12.1
아일랜드(Ireland)	11	0.899	80.7	11.6
스웨덴(Sweden)	12	0.898	81.8	11.7
아이슬란드(Iceland)	13	0.895	82.1	10.4
영국(United Kingdom)	14	0.892	80.5	12.3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15	0.891	81.5	11.8
일본(Japan)	17	0.890	83.6	11.5
이스라엘(Israel)	19	0.888	81.8	12.5
프랑스(France)	20	0.884	81.8	11.1
오스트리아(Austria)	21	0.881	81.1	10.8
벨기에(Belgium)	21	0.881	80.5	10.9
룩셈부르크(Luxembourg)	21	0.881	80.5	11.3
핀란드(Finland)	24	0.879	80.5	10.3
슬로베니아(Slovenia)	25	0.875	79.6	11.9
이탈리아(Italy)	26	0.872	82.4	10.1
스페인(Spain)	27	0.869	82.1	9.6
체코(Czech Republic)	28	0.861	77.7	12.3
그리스(Greece)	29	0.853	80.8	10.2
에스토니아(Estonia)	33	0.840	74.4	12.0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34	0.836	75.5	8.7
폴란드(Poland)	35	0.834	76.4	11.8
슬로바키아(Slovakia)	37	0.830	75.4	11.6
칠레(Chile)	41	0.822	80.0	9.8
포르투갈(Portugal)	41	0.822	79.9	16.3
헝가리(Hungary)	43	0.818	74.6	11.3
아르헨티나(Argentina)	49	0.808	76.3	9.8
러시아(Russian Federation)	57	0.778	68.0	11.7
터키(Turkey)	69	0.759	75.3	7.6
멕시코(Mexico)	71	0.756	77.5	8.5
브라질(Brazil)	79	0.744	73.9	7.2
중국(China)	91	0.719	75.3	7.5
인도네시아(Indonesia)	108	0.684	70.8	7.5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118	0.658	56.9	9.9
인도(India)	135	0.586	66.4	4.4

자료 : 유엔 개발계획(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14
http://hdr.undp.org/en/content/human-development-report-2014

주 : 1) 범위(Scale) : 0 - 1(가장 발달됨)
2) 출판 빈도: 매년, 국가 수: 187개국

(단위: 년, $)

국가명	1인당 국민총소득 (2011 PPP $)	불평등 보정HDI (IHDI)(2012)	성불평등지수 (2012)	
			순위	지수
노르웨이(Norway)	63,909	0.891	9	0.068
호주(Australia)	41,524	0.860	19	0.113
스위스(Switzerland)	53,762	0.847	2	0.030
네덜란드(Netherlands)	42,397	0.854	7	0.057
미국(United States)	52,308	0.755	47	0.262
독일(Germany)	43,049	0.846	3	0.046
뉴질랜드(New Zealand)	32,569	No data	34	0.185
캐나다(Canada)	41,887	0.833	23	0.136
덴마크(Denmark)	42,880	0.838	5	0.056
아일랜드(Ireland)	33,414	0.832	20	0.115
스웨덴(Sweden)	43,201	0.840	4	0.054
아이슬란드(Iceland)	35,116	0.843	14	0.088
영국(United Kingdom)	35,002	0.812	35	0.193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30,345	0.736	17	0.101
일본(Japan)	36,747	0.779	25	0.138
이스라엘(Israel)	29,966	0.793	17	0.101
프랑스(France)	36,629	0.804	12	0.080
오스트리아(Austria)	42,930	0.818	5	0.056
벨기에(Belgium)	39,471	0.806	9	0.068
룩셈부르크(Luxembourg)	58,695	0.814	29	0.154
핀란드(Finland)	37,366	0.830	11	0.075
슬로베니아(Slovenia)	26,809	0.824	1	0.021
이탈리아(Italy)	32,669	0.768	8	0.067
스페인(Spain)	30,561	0.775	16	0.100
체코(Czech Republic)	24,535	0.813	13	0.087
그리스(Greece)	24,658	0.762	27	0.146
에스토니아(Estonia)	23,387	0.767	29	0.154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52,109	No data	56	0.321
폴란드(Poland)	21,487	0.751	26	0.139
슬로바키아(Slovakia)	25,336	0.778	32	0.164
칠레(Chile)	20,804	0.661	68	0.355
포르투갈(Portugal)	24,130	0.739	21	0.116
헝가리(Hungary)	21,239	0.757	45	0.247
아르헨티나(Argentina)	17,297	0.680	74	0.381
러시아(Russian Federation)	22,617	0.685	52	0.314
터키(Turkey)	18,391	0.639	69	0.360
멕시코(Mexico)	15,854	0.583	73	0.376
브라질(Brazil)	14,275	0.542	85	0.441
중국(China)	11,477	No data	37	0.202
인도네시아(Indonesia)	8,970	0.553	103	0.500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11,788	No data	94	0.461
인도(India)	5,150	0.418	127	0.563

주 : 3) 인간개발지수(HDI)는 경제력과 교육수준, 건강수준을 고려한 지표로 UNDP가 매년 발표하고 있음. 불평등 보정 HDI(Inequality-adjusted HDI, IHDI)는 보건, 교육, 소득의 불평등으로 인한 인간개발의 손실을 파악하기 위한 지수임.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GII)는 재생산과 관련된 보건, 권한, 그리고 노동시장 참가의 성불평등 정도를 측정한 지수임.

<참고 6> 성불평등지수

국가명	순위	점수	모 성 사망비 (10만명당) 2010	십대 출산율 (1천명당) 2010	여성의원 비율 (%) 2012	중등 이상 교육 받은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여성 2010	남성 2010	여성 2011	남성 2011
〈2012〉									
한국	27	0.153	16	5.8	15.7	79.4	91.7	49.2	71.4
스웨덴	2	0.055	4	6.5	44.7	84.4	85.5	59.4	68.1
독일	6	0.075	7	6.8	32.4	96.2	96.9	53.0	66.5
아이슬란드	10	0.089	5	11.6	39.7	91.0	91.6	70.8	78.4
프랑스	9	0.083	8	6.0	25.1	75.9	81.3	51.1	61.9
일본	21	0.131	5	6.0	13.4	80.0	82.3	49.4	71.7
영국	34	0.205	12	29.7	22.1	99.6	99.8	55.6	68.5
미국	42	0.256	21	27.4	17.0	94.7	94.3	57.5	70.1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한국의 성 인지 통계」 2014.2.28.
(원자료)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s」
주 : 146개국 대상, 성불평등지수는 0점은 성평등, 1점은 성불평등

<표 1-11> 유엔 전자정부발전지수

순위	국가명	전자정부발전 지수	온라인서비스 지수	정보통신 인프라지수	인적자본지수
1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0.9283	1.0000	0.8356	0.9494
2	네덜란드(Netherlands)	0.9125	0.9608	0.8342	0.9425
3	영국(United Kingdom)	0.8960	0.9739	0.8135	0.9007
4	덴마크(Denmark)	0.8889	0.8562	0.8615	0.9489
5	미국(United States)	0.8687	1.0000	0.6860	0.9202
6	프랑스(France)	0.8635	0.8758	0.7902	0.9244
7	스웨덴(Sweden)	0.8599	0.8431	0.8225	0.9141
8	노르웨이(Norway)	0.8593	0.8562	0.7870	0.9347
9	핀란드(Finland)	0.8505	0.8824	0.7225	0.9467
11	캐나다(Canada)	0.8430	0.8889	0.7163	0.9238
12	호주(Australia)	0.8390	0.8627	0.6543	1.0000
13	뉴질랜드(New Zealand)	0.8381	0.7843	0.7318	0.9982
15	스위스(Switzerland)	0.8134	0.6732	0.8782	0.8888
16	이스라엘(Israel)	0.8100	0.8497	0.6859	0.8945
17	독일(Germany)	0.8079	0.7516	0.7750	0.8971
18	일본(Japan)	0.8019	0.8627	0.6460	0.8969
19	룩셈부르크(Luxembourg)	0.8014	0.6993	0.8644	0.8404
20	에스토니아(Estonia)	0.7987	0.8235	0.6642	0.9085
21	오스트리아(Austria)	0.7840	0.7451	0.6977	0.9091
22	아이슬란드(Iceland)	0.7835	0.5425	0.8772	0.9310
23	스페인(Spain)	0.7770	0.7582	0.6318	0.9409
24	벨기에(Belgium)	0.7718	0.6471	0.7420	0.9264
25	슬로베니아(Slovenia)	0.7492	0.6667	0.6509	0.9300
27	러시아(Russian Federation)	0.7345	0.6601	0.6583	0.8850
31	헝가리(Hungary)	0.7201	0.6863	0.5677	0.9065
32	이탈리아(Italy)	0.7190	0.5752	0.6697	0.9120
33	포르투갈(Portugal)	0.7165	0.6536	0.6028	0.8931
34	아일랜드(Ireland)	0.7149	0.5359	0.6553	0.9535
37	그리스(Greece)	0.6872	0.5752	0.5531	0.9332
39	칠레(Chile)	0.6769	0.7516	0.4001	0.8788
41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0.6658	0.7974	0.4323	0.7677
46	체코(Czech Republic)	0.6491	0.5425	0.5151	0.8898
47	폴란드(Poland)	0.6441	0.5359	0.4921	0.9044
53	슬로바키아(Slovak Republic)	0.6292	0.5033	0.5147	0.8696

자료 : 유엔 공공행정네트워크, E-Government Survey 2014
http://unpan1.un.org/intradoc/groups/public/documents/un/unpan048065.pdf
주 : 1) 범위(Scale): 0 - 1(매우 좋음)
2) 출판 빈도: 매년, 국가 수: 190개국

<참고 7> 국제정보화지수

(단위: 순위)

[작성기관] 지수명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최근 발표일	주요국 순위
[UN] 전자정부 발전지수 (구.전자정부 준비지수)	5 (191)			6 (192)		1 (192)		1 (193)	2012.2	네덜란드 2위, 영국 3위, 덴마크 4위, 미국 5위, 일본 18위, 러시아 27위, 중국 78위, 인도 125위
[UN] 온라인참여 지수1)	4 (191)			2 (192)		1 (192)		1 (193)	2012.2	네덜란드 1위(tie) 카자흐스탄 2위, 싱가포르 2위(tie) 영국/미국 3위(tie), 이스라엘 4위
[ITU] ICT발전 지수(IDI)2)	1 (40)	1 (180)	1 (180)		2* (159) 2 (154)	1* (159) 3 (159)	1 (152)	–	2011.9 ('12.10. 발표예정)	스웨덴 2위, 아이슬란드 3위, 덴마크 4위, 일본 13위, 미국 17위, 중국 80위
[WEF] 네트워크 준비지수	24 (104)	14 (115)	19 (122)	9 (127)	11 (134)	15 (133)	10 (138)	12 (142)	2012.4	스웨덴 1위, 싱가포르 2위, 핀란드 3위, 덴마크 4위, 미국 8위, 대만 11위, 일본 18위, 중국 51위
[WEF] 3) 국가경쟁력지수 (기술준비도부문)	11 (117)	12* (125) 18 (125)	7 (131)	13 (134)	15 (133)	19 (139)	18 (142)	18 (144)	2012.9	스웨덴 1위, 룩셈부르크 2위, 덴마크 3위, 홍콩 4위, 싱가포르 5위, 미국 11위, 일본 16위
[IMD] 4) 국가경쟁력지수 (기술인프라부문)	2* (51) 2 (60)	6* (53) 6 (61)	6 (55)	14 (55)	14 (57)	18 (58)	14 (59)	14 (59)	2012.5	홍콩 1위, 미국 2위, 싱가포르 3위, 대만 4위, 덴마크 7위, 일본 24위, 중국 26위

(단위: 순위)

[작성기관] 지수명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최근 발표일	주요국 순위
[EIU] 디지털경제지수 (구.e-비즈니스 준비도)	18 (65)	18 (68)	16 (69)	15 (70)	19 (70)	13 (70)	-	-	2010.6	스웨덴 1위 덴마크 2위 미국 3위 핀란드 4위 홍콩 7위 싱가포르 8위 일본 16위 중국 56위 인도 58위
[EIU] IT산업 경쟁력지수			3 (64)	8 (66)	16 (66)		19 (66)	-	2011.9	미국 1위, 핀란드 2위, 싱가포르3위, 스웨덴 4위, 대만 13위, 일본 16위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9

주 : 1) UN의 온라인참여지수는 2008~2010년과 나머지 연도(공동순위 인정) 간 순위 계산방식이 상이하므로 유의

2) ITU의 ICT발전지수의 * 표시 중 2009년 발표 지수(2007년 기준)는 조사대상국 확대 및 UN 인구통계 자료 개정에 따라 조정된 순위이며, 2010년 발표 지수(2009년 기준)는 3위로 평가되었으나, 2011년 9월 발표 자료에서 1위로 순위가 조정됨

3) WEF의 국가경쟁력지수(기술준비도부문)의 * 표시는 2007년을 기준으로 이전연도 순위를 조정한 순위임. 2004년까지의 순위는 WEF의 성장경쟁력지수 중 정보통신지수에 대한 순위임
WEF의 국가경쟁력지수 중 기술준비도 부문에 대한 순위이며, WEF의 국가경쟁력지수 종합 순위는 29위('04)→19위('05)→23위*('06, 24위)→11위('07)→13위('08)→19위('09)→22위('10)→24위('11)→19위('12)임

4) IMD 국가경쟁력지수(기술인프라부문)의 * 표시는 2007년 조정된 55개국을 기준으로 이전연도 순위를 조정한 순위임. IMD의 국가경쟁력지수 중 기술인프라 부문에 대한 순위이며, IMD의 국가경쟁력 종합 순위는 29위('02)→32위*('03, 37위)→31위*('04, 35위)→27위*('05, 29위)→32위*('06, 38위)→29위('07)→31위('08)→27위('09)→23위('10)→22위('11)→22위('12)임

5) 표기된 순위는 지수 발표연도 기준임

<표 1-12> 5세 미만 영유아사망률

(단위: 명)

국가명	5세 미만 영유아사망률 (유아 1,000명당)
핀란드(Finland)	3
아이슬란드(Iceland)	2
일본(Japan)	3
룩셈부르크(Luxembourg)	2
노르웨이(Norway)	4
포르투갈(Portugal)	3
슬로베니아(Slovenia)	3
스웨덴(Sweden)	4
오스트리아(Austria)	4
벨기에(Belgium)	4
체코(Czech Republic)	4
덴마크(Denmark)	4
에스토니아(Estonia)	4
독일(Germany)	4
그리스(Greece)	5
아일랜드(Ireland)	4
이스라엘(Israel)	4
이탈리아(Italy)	4
네덜란드(Netherlands)	4
스페인(Spain)	5
스위스(Switzerland)	4
호주(Australia)	5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4
영국(United Kingdom)	5
캐나다(Canada)	5
헝가리(Hungary)	6
뉴질랜드(New Zealand)	6
폴란드(Poland)	5
슬로바키아(Slovak Republic)	8
미국(United States)	7
칠레(Chile)	9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9
러시아(Russian Federation)	10
아르헨티나(Argentina)	14
중국(China)	14
터키(Turkey)	14
브라질(Brazil)	14
멕시코(Mexico)	16
인도네시아(Indonesia)	31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45
인도(India)	56

자료 : 유니세프(UNICEF), Levels and Trends in Child Mortality(2013), 2013
http://www.childinfo.org/files/Child_Mortality_Report_2013.pdf
주 : 1) 출판 빈도 : 매년, 국가 수 : 제공되지 않음(Not Given)

<표 1-13> 자살률

(단위: 명)

국가명	자살률 (인구 100,000명당)		
	계	남성	여성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31.0	39.9	22.1
러시아(Russian Federation)	30.1	53.9	9.5
헝가리(Hungary)	24.6	40.0	10.6
일본(Japan)	24.4	36.2	13.2
슬로베니아(Slovenia)	21.9	34.6	9.4
벨기에(Belgium)	19.4	28.8	10.3
핀란드(Finland)	19.3	29.0	10.0
에스토니아(Estonia)	18.1	30.6	7.3
스위스(Switzerland)	18.0	24.8	11.4
프랑스(France)	16.3	24.7	8.5
오스트리아(Austria)	15.0	23.8	7.1
폴란드(Poland)	14.9	26.4	4.1
체코(Czech Republic)	14.0	23.9	4.4
중국(China)	13.9	13.0	14.8
슬로바키아(Slovak Republic)	12.6	22.3	3.4
독일(Germany)	12.3	17.9	6.0
스웨덴(Sweden)	12.1	18.7	6.8
덴마크(Denmark)	11.9	17.5	6.4
아이슬란드(Iceland)	11.9	16.5	7.0
노르웨이(Norway)	11.9	17.3	6.5
아일랜드(Ireland)	11.8	19.0	4.7
뉴질랜드(New Zealand)	11.7	18.1	5.5
캐나다(Canada)	11.3	17.3	5.4
칠레(Chile)	11.1	18.2	4.2
미국(United States)	11.0	17.7	4.5
인도(India)	10.5	13.0	7.8
룩셈부르크(Luxembourg)	9.6	16.1	3.2
포르투갈(Portugal)	9.6	15.6	4.0
네덜란드(Netherlands)	9.3	13.1	5.5
호주(Australia)	8.2	12.8	3.6
아르헨티나(Argentina)	7.7	12.6	3.0
스페인(Spain)	7.6	11.9	3.4
영국(United Kingdom)	6.9	10.9	3.0
이탈리아(Italy)	6.5	10.0	2.8
브라질(Brazil)	4.8	7.7	2.0
이스라엘(Israel)	4.3	7.0	1.5
멕시코(Mexico)	4.2	7.0	1.5
그리스(Greece)	3.5	6.0	1.0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0.9	1.4	0.4

자료 : 세계보건기구(WHO), 2012.
http://www.who.int/mental_health/prevention/suicide/country_reports/en/

주 : 1) 2011년 자료가 최신이나 해당자료가 없을 시 각국 최신 연도 통계
2) 국가 수: 85개국
3)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터기 국가에 대한 통계는 없음

<표 1-14> 근로시간 및 경제활동인구

(단위: 시간, 천명)

국가명	근로시간 (시간 / 1주)	경제활동인구
터키(Turkey)	47.4	25,641.0
중국(China)	47.0	783,880.0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45.1	24,748.4
멕시코(Mexico)	43.1	48,172.3
일본(Japan)	40.3	65,900.0
그리스(Greece)	40.1	5,021.0
아르헨티나(Argentina)	40.0	16,371.5
폴란드(Poland)	39.5	17,660.1
슬로바키아(Slovak Republic)	39.0	2,706.5
에스토니아(Estonia)	38.4	686.8
헝가리(Hungary)	38.2	4,256.0
미국(United States)	38.2	153,889
룩셈부르크(Luxembourg)	38.0	230.9
체코(Czech Republic)	37.4	5,268.9
프랑스(France)	37.0	30,151.8
이탈리아(Italy)	37.0	24,974.7
핀란드(Finland)	36.4	2,671.8
스위스(Switzerland)	36.2	4,484.1
스웨덴(Sweden)	35.8	4,963.0
포르투갈(Portugal)	35.0	5,580.7
아일랜드(Ireland)	34.9	2,139.3
덴마크(Denmark)	34.6	2,924.4
스페인(Spain)	34.3	23,088.9
노르웨이(Norway)	34.1	2,602.0
슬로베니아(Slovenia)	33.9	1,042.0
뉴질랜드(New Zealand)	33.8	2,332.5
벨기에(Belgium)	33.0	4,894.6
오스트리아(Austria)	32.8	4,284.6
독일(Germany)	32.4	41,886.9
영국(United Kingdom)	32.0	31,352.8
네덜란드(Netherlands)	30.9	8,761.0
호주(Australia)	자료 없음	11,832.6
브라질(Brazil)	자료 없음	101,110.2
캐나다(Canada)	자료 없음	18,525.1
칠레(Chile)	자료 없음	7,917.6
아이슬란드(Iceland)	자료 없음	자료 없음
인도(India)	자료 없음	자료 없음
인도네시아(Indonesia)	자료 없음	116,527.5
이스라엘(Israel)	자료 없음	3,147.1
러시아(Russian Federation)	자료 없음	75,439.9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자료 없음	8,611.0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자료 없음	17,393.0

자료 : 세계노동기구(ILO), 2013.5
http://www.ilo.org/ilostat/
주 : 1) 출판 빈도: 매년, 국가 수: 56개국

<표 1-15> 유럽인권재판소 통계

1. 일반현황

구 분		2012	2013
접수건수(Application allocated)		64,900	65,900
잠정적 조치 건수(Interim procedural events)		5,236	7,931
처리건수 (Application decided)	소 계(By decision or judgment)	87,879	93,396
	판 결(By judgment delivered)	1,678	3,659
	결 정 (By decision(inadmissible or struck out))	86,201	89,737
심사중인 건수 (Pending application)	소 계 (Application pending before a judicial formation)	128,100	99,900
	대재판부(Chamber(7 judges))	43,050	39,000
	지정재판부(Chamber(3 judges))	25,200	34,400
	단독재판관(Single-Judge formation)	59,850	26,500
허용성 심사 단계 (Pre-judicial formations)	허용성 심사 건수 (Application at pre-judicial stage)	20,300	21,950
	행정조치 건수(종결) (Application disposed of administratively(application not pursued))	18,700	13,600

2. 제소자 출신국가 현황(심사중인 제소건)

구 분	심사중인 제소건수(건, %)	
소 계	99,900	100.0
러시아(Russia)	16,800	16.8
터키(Turkey)	10,950	11.0
이탈리아(Italy)	14,400	14.4
우크라이나(Ukraine)	13,300	13.3
세르비아(Serbia)	11,250	11.3
루마니아(Romania)	6,150	6.2
불가리아(Bulgaria)	2,450	2.5
영국(United Kingdom)	2,500	2.5
슬로베니아(Slovenia)	1,800	1.8
조지아(Georgia)	2,450	2.5
기타 37 개국	17,850	17.9

자료 : 1) Eurpoean Court of Human Rights, Analysis of statistics 2013
http://www.echr.coe.int/Doucments/stats_annual_2013_ENG.pdf
http://www.echr.coe.int/Doucments/stats_pending_2013_BIL.pdf

<표 1-16> 미주인권재판소 통계

1. 2012년 접수된 계쟁사건수 : 12건

2. 2012년 처리현황

구 분		합 계	94차 정기회의	45차 특별회의	95차 정기회의	96차 정기회의	46차 특별회의	97차 정기회의
계쟁사건 공개심리 건수 (Public hearing on contentious cases)		14	5	3	4	2	–	–
재판소 판결의 이행 감독 (Monitoring compliance with judgment)	공개 심리	1	–	–	–	1	–	–
	비공개 심리	5	3	–	2	–	–	–
잠정조치 (Provisional measures)	공개 심리	2	2	–	–	–	–	–
	비공개 심리	1	1	–	–	–	–	–
판결 (Judgments)		21	2	2	3	5	2	7
명령 (Orders)	잠정 조치	28	5	3	4	9	4	3
	재판소 판결의 이행 감독	22	6	–	8	4	3	1
	기타	2	2	–	–	–	–	–

자료 : 1)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2012 Annual Report (2013)

<표 1-17> 아프리카 인권재판소 통계

년도	제출된 탄원 수	처리된 탄원 수	자문 의견 요청
2012	7	4	2
2011	14	8	1
2010	–	–	–
2009	–	–	–
2008	1	1	–

자료 : 1) Africa Court of Human and People's Rights, 2013.5.
http://www.african-court.org

<표 1-18> 실업률, 기대여명, 1인당 국내총생산(OECD)

국가명	실업률(%)		기대여명(년)		1인당 국내총생산(US$)	
	순위	실업률	순위	기대여명	순위	GDP
노르웨이(Norway)	1	3.3	10	81.0	2	61,870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2	3.4	19	80.3	21	30,254
오스트리아(Austria)	3	4.1	15	80.4	6	42,132
스위스(Switzerland)	4	4.1	2	82.3	3	48,657[1]
네덜란드(Netherlands)	5	4.5	14	80.6	5	42,847
일본(Japan)	6	4.6	1	83.0	18	33,785[1]
룩셈부르크(Luxembourg)	7	4.9	13	80.7	1	89,801
호주(Australia)	8	5.1	5	81.6	9	40,790[1]
멕시코(Mexico)	9	5.2	30	75.3	35	15,195[1]
이스라엘(Israel)	10	5.6	6	81.6	25	26,531[1]
독일(Germany)	11	5.9	17	80.3	12	39,187
브라질(Brazil)	12	6.0	36	72.6	36	11,239[1]
뉴질랜드(New Zealand)	13	6.5	11	80.8	22	29,711[1]
러시아(Russian Federation)	14	6.6	38	68.7	32	19,833[1]
체코(Czech Republic)	15	6.7	28	77.3	26	26,054
인도네시아(Indonesia)	15	6.7	37	71.2	39	4,394[1]
아이슬란드(Iceland)	17	7.1	7	81.5	15	36,084
칠레(Chile)	17	7.1	26	78.4	33	17,312
벨기에(Belgium)	19	7.2	20	80.0	13	38,711
캐나다(Canada)	20	7.5	12	80.7	11	40,440
스웨덴(Sweden)	20	7.5	8	81.4	7	41,348
덴마크(Denmark)	22	7.6	24	79.0	8	40,929
핀란드(Finland)	23	7.8	21	80.0	14	37,642
영국(United Kingdom)	24	8.0	16	80.4	16	35,441
슬로베니아(Slovenia)	25	8.2	25	79.0	23	27,402
이탈리아(Italy)	26	8.4	3	81.8	19	32,939
터키(Turkey)	27	8.8	34	73.8	34	15,604[1]
미국(United States)	28	9.0	27	78.2	4	46,588[1]
프랑스(France)	29	9.7	9	81.0	17	35,133
폴란드(Poland)	29	9.7	29	75.8	31	19,908[1]
헝가리(Hungary)	31	10.9	33	74.0	30	21,547
에스토니아(Estonia)	32	12.5	31	75.0	29	21,938
포르투갈(Portugal)	33	12.9	23	79.5	27	25,352
슬로바키아(Slovak Republic)	34	13.6	32	75.0	28	24,018
아일랜드(Ireland)	35	14.4	22	80.0	10	40,478[1]
그리스(Greece)	36	17.7	18	80.3	24	26,934
스페인(Spain)	37	21.6	4	81.8	20	32,501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38	24.9	40	51.7	37	10,498[1]
중국(China)		자료없음	35	73.3	38	7,519[1]
인도(India)		자료없음	39	64.1	40	3,339[1]

자료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ECD Factbook 2013(2013)
http://stats.oecd.org/

주 : 1) 출판 빈도: 매년, 국가 수: 40개국(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는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2) 1표시는 2011년 데이터가 없어 2010년 데이터를 인용한 것임

<표 1-19> 국가관리지수(세계은행,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국가명	민의 반영도		정치적 안정성		정부의 효율성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노르웨이(Norway)	1	1.63	7	1.35	9	1.76
스위스(Switzerland)	1	1.63	16	1.29	6	1.89
덴마크(Denmark)	3	1.61	29	1.11	2	2.17
스웨덴(Sweden)	4	1.59	17	1.26	4	1.96
룩셈부르크(Luxembourg)	5	1.57	9	1.33	12	1.73
핀란드(Finland)	7	1.54	6	1.38	1	2.25
뉴질랜드(New Zealand)	8	1.54	7	1.35	5	1.93
네덜란드(Netherlands)	9	1.52	25	1.12	8	1.79
아이슬란드(Iceland)	10	1.46	20	1.22	16	1.57
호주(Australia)	11	1.43	55	0.87	11	1.74
오스트리아(Austria)	12	1.41	23	1.19	15	1.66
캐나다(Canada)	12	1.41	32	1.04	7	1.85
벨기에(Belgium)	14	1.40	53	0.88	14	1.67
아일랜드(Ireland)	16	1.32	38	1.00	24	1.42
독일(Germany)	17	1.31	59	0.86	18	1.53
영국(United Kingdom)	18	1.27	85	0.37	17	1.55
프랑스(France)	25	1.20	70	0.61	26	1.36
미국(United States)	31	1.13	77	0.54	25	1.41
포르투갈(Portugal)	33	1.12	65	0.70	46	0.97
스페인(Spain)	35	1.10	105	0.13	39	1.02
에스토니아(Estonia)	36	1.09	73	0.59	33	1.20
칠레(Chile)	41	1.06	75	0.56	35	1.17
폴란드(Poland)	45	1.04	31	1.09	61	0.68
슬로베니아(Slovenia)	47	1.03	61	0.84	44	0.99
일본(Japan)	48	1.02	44	0.97	27	1.35
체코(Czech Republic)	51	0.98	25	1.12	40	1.02
슬로바키아(Slovak Republic)	54	0.95	46	0.97	51	0.86
이탈리아(Italy)	55	0.94	73	0.59	72	0.45
헝가리(Hungary)	58	0.85	63	0.75	58	0.71
그리스(Greece)	62	0.82	118	−0.06	69	0.48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68	0.71	96	0.23	30	1.23
이스라엘(Israel)	70	0.65	190	−1.30	33	1.20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73	0.57	111	0.02	75	0.37
브라질(Brazil)	78	0.50	115	−0.04	95	−0.01
인도(India)	87	0.41	186	−1.20	97	−0.03
아르헨티나(Argentina)	91	+0.35	99	0.20	109	−0.16
멕시코(Mexico)	100	+0.09	159	−0.70	78	0.32
인도네시아(Indonesia)	113	−0.08	168	−0.82	113	−0.24
터키(Turkey)	121	−0.17	175	−0.93	74	0.41
러시아(Russian Federation)	166	−0.94	169	−0.88	123	−0.40
중국(China)	204	−1.64	159	−0.70	84	0.12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207	−1.84	135	−0.30	126	−0.43

자료 : 세계은행 (World Bank), 2011
http://info.worldbank.org/governance/wgi/sc_country.asp
주 : 1) 범위(Scale): -2.5 ~ +2.5(최상위)
2) 출판 빈도: 매년, 국가 수: 215개국

국가명	규제의 질		법치		부패통제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노르웨이(Norway)	19	1.41	5	1.89	5	2.17
스위스(Switzerland)	12	1.64	10	1.76	10	2.02
덴마크(Denmark)	1	1.93	3	1.92	1	2.42
스웨덴(Sweden)	5	1.84	2	1.95	3	2.22
룩셈부르크(Luxembourg)	4	1.86	7	1.81	5	2.17
핀란드(Finland)	9	1.77	1	1.96	4	2.19
뉴질랜드(New Zealand)	2	1.91	4	1.91	2	2.33
네덜란드(Netherlands)	5	1.84	6	1.82	5	2.17
아이슬란드(Iceland)	42	1.01	15	1.69	12	1.94
호주(Australia)	8	1.79	9	1.78	8	2.16
오스트리아(Austria)	19	1.41	7	1.81	23	1.44
캐나다(Canada)	10	1.68	10	1.76	11	1.98
벨기에(Belgium)	29	1.25	23	1.45	17	1.58
아일랜드(Ireland)	11	1.65	10	1.76	20	1.52
독일(Germany)	16	1.51	19	1.61	16	1.68
영국(United Kingdom)	13	1.62	17	1.67	19	1.54
프랑스(France)	38	1.11	22	1.50	21	1.51
미국(United States)	18	1.49	20	1.60	32	1.23
포르투갈(Portugal)	56	0.66	40	1.12	37	1.09
스페인(Spain)	39	1.09	31	1.20	39	1.06
에스토니아(Estonia)	21	1.40	32	1.18	46	0.91
칠레(Chile)	15	1.54	26	1.37	18	1.57
폴란드(Poland)	43	0.96	62	1.01	61	0.51
슬로베니아(Slovenia)	58	0.63	36	1.07	45	0.93
일본(Japan)	47	0.90	29	1.27	22	1.50
체코(Czech Republic)	29	1.25	41	1.01	71	0.32
슬로바키아(Slovak Republic)	41	1.03	67	0.65	72	0.29
이탈리아(Italy)	53	0.75	79	0.41	91	−0.01
헝가리(Hungary)	40	1.05	58	0.77	70	0.34
그리스(Greece)	65	0.51	72	0.57	94	−0.15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45	0.95	41	1.01	64	0.45
이스라엘(Israel)	25	1.35	43	0.98	58	0.68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72	0.44	88	0.10	87	0.03
브라질(Brazil)	94	0.17	96	0.01	79	0.17
인도(India)	126	−0.34	102	−0.08	138	−0.56
아르헨티나(Argentina)	159	−0.74	142	−0.56	123	−0.39
멕시코(Mexico)	83	0.35	132	−0.49	117	−0.36
인도네시아(Indonesia)	123	−0.33	148	−0.66	152	−0.66
터키(Turkey)	74	0.42	90	0.08	83	0.10
러시아(Russian Federation)	129	−0.35	160	−0.78	184	−1.09
중국(China)	116	−0.20	125	−0.43	146	−0.62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101	0.00	92	0.07	110	−0.29

<표 1-20> 행복지수(Better Life Index)

국가명	평균	주거	소득	일자리	공동체	교육	환경	시민 참여	건강	생활 만족도	안전	일과 생활의 균형
호주(Australia)	7.91	7.5	4.6	7.7	8.3	7.6	8.8	9.5	9.3	8.1	9.5	6.6
스웨덴(Sweden)	7.91	6.2	4.7	7.2	7.6	8.3	9.7	8.7	8.8	9.3	8.2	8.8
캐나다(Canada)	7.87	7.8	5.9	7.7	8.4	7.6	8.4	6.1	9.2	8.8	9.7	7.5
노르웨이(Norway)	7.85	7.4	3.9	8.6	8.0	7.2	9.2	6.4	8.1	9.7	9.1	9.1
스위스(Switzerland)	7.81	6.0	7.8	8.9	8.6	7.3	8.3	3.6	9.3	10.0	8.7	7.9
미국(United States)	7.64	7.8	10.0	7.4	6.8	7.0	7.9	5.8	8.4	7.6	9.0	6.7
덴마크(Denmark)	7.62	5.9	4.0	7.5	8.4	7.5	8.9	7.0	7.3	9.2	8.8	9.8
네덜란드(Netherlands)	7.55	7.0	5.5	8.2	8.4	7.1	6.9	5.3	8.3	9.0	8.3	9.5
아이슬란드(Iceland)	7.53	6.0	3.1	7.8	10.0	7.5	9.2	5.8	8.8	9.4	9.4	6.2
영국(United Kingdom)	7.49	6.1	5.6	7.8	8.8	6.0	9.6	7.1	8.3	7.0	9.6	7.3
뉴질랜드(New Zealand)	7.48	6.3	3.4	7.3	8.0	7.5	8.8	7.3	9.4	8.3	9.5	7.2
핀란드(Finland)	7.40	6.2	3.5	6.5	7.6	9.5	8.8	6.1	7.4	8.8	9.2	8.2
룩셈부르크(Luxembourg)	7.29	6.2	7.3	8.2	7.2	4.5	8.5	6.9	7.9	7.4	8.3	8.6
오스트리아(Austria)	7.32	5.9	5.2	8.0	8.4	6.2	7.8	6.5	7.6	8.8	9.2	7.2
아일랜드(Ireland)	7.27	7.5	3.5	5.5	9.2	6.7	8.2	6.2	8.6	7.4	9.2	8.6
벨기에(Belgium)	7.16	7.1	6.1	6.7	7.6	7.4	6.9	5.9	7.8	7.3	7.4	9.1
독일(Germany)	7.07	6.2	5.1	7.4	7.8	7.6	8.8	3.9	7.1	6.6	8.9	8.6
프랑스(France)	6.71	6.4	5.1	6.2	8.0	5.5	7.9	4.4	7.9	6.4	8.3	8.2
슬로베니아(Slovenia)	6.33	5.7	2.2	6.2	7.6	7.6	7.0	6.4	6.5	4.5	8.8	7.7
스페인(Spain)	6.26	6.7	3.0	4.0	8.0	4.8	6.3	5.2	8.6	5.2	8.7	9.1
일본(Japan)	6.16	4.6	5.6	7.0	6.8	9.0	7.1	5.2	5.0	4.2	10.0	4.1
체코(Czech Republic)	5.87	4.5	1.6	5.9	6.4	7.5	7.7	4.2	5.6	5.3	9.0	7.2
이탈리아(Italy)	5.86	5.2	4.8	5.6	5.2	4.8	5.9	5.2	7.9	3.7	8.4	8.2
이스라엘(Israel)	5.61	4.1	3.6	6.1	6.6	4.8	5.1	2.2	8.9	7.8	7.4	5.5
폴란드(Poland)	5.48	3.1	1.1	5.2	7.2	7.9	5.3	5.5	5.0	3.9	9.6	7.1
슬로바키아(Slovak Republic)	5.38	4.0	1.3	4.0	6.4	6.4	7.9	3.8	5.1	4.0	9.0	7.8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5.35	5.7	2.2	5.4	1.6	7.9	5.4	7.5	4.9	4.3	9.2	5.4
포르투갈(Portugal)	5.12	6.6	2.7	4.9	4.8	4.3	7.6	3.6	5.8	1.0	7.9	7.5
헝가리(Hungary)	4.87	3.7	1.0	4.3	6.8	6.8	7.1	3.1	4.1	0.0	8.8	8.3
그리스(Greece)	4.85	3.7	2.2	4.2	3.2	6.1	4.6	4.1	8.1	1.3	8.7	7.8
에스토니아(Estonia)	4.74	3.9	0.6	4.1	5.2	7.6	7.7	2.5	4.3	2.2	7.2	7.4
러시아(Russian Federation)	4.56	5.9	1.3	5.8	5.6	6.1	4.3	2.3	0.6	3.0	7.2	8.6
브라질(Brazil)	4.35	3.9	0.0	4.7	6.2	1.5	6.5	4.5	4.7	6.4	2.8	7.3
칠레(Chile)	4.27	3.5	0.7	4.9	3.6	4.0	2.9	4.4	5.7	6.0	6.3	5.5
멕시코(Mexico)	3.38	4.2	0.6	3.9	1.2	0.7	5.3	5.5	4.7	8.5	0.0	3.0
터키(Turkey)	2.69	1.3	0.7	2.3	0.0	1.5	3.1	6.2	5.0	2.0	7.8	0.0

자료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3.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
주 : 1) 범위(Scale): 0 - 10(최고)
2) 출판 빈도: 매년, 국가 수: OECD 34국과 브라질, 러시아 포함

<표 1-21> 국회 여성의원 비율

(단위 : %)

순위	OECD 고소득 국가	여성의원 비율
4	스웨덴(Sweden)	45.0
7	핀란드(Finland)	42.5
8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42.3
10	아이슬란드(Iceland)	39.7
11	노르웨이(Norway)	39.6
13	덴마크(Denmark)	39.1
14	네덜란드(Netherlands)	38.7
17	벨기에(Belgium)	38.0
18	멕시코(Mexico)	36.8
19	아르헨티나(Argentina)	36.6
20	독일(Germany)	36.5
21	스페인(Spain)	36.0
24	오스트리아(Austria)	33.3
26	뉴질랜드(New Zealand)	32.2
26	슬로베니아(Slovenia)	32.2
29	이탈리아(Italy)	31.4
30	포르투갈(Portugal)	31.3
32	스위스(Switzerland)	31.0
35	룩셈부르크(Luxembourg)	28.3
39	프랑스(France)	26.9
44	호주(Australia)	26.0
48	캐나다(Canada)	24.7
55	폴란드(Poland)	23.7
56	중국(China)	23.4
59	영국(United Kingdom)	22.5
59	이스라엘(Israel)	22.5
64	그리스(Greece)	21.0
65	에스토니아(Estonia)	20.8
69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19.9
72	체코(Czech Republic)	19.5
74	슬로바키아(Slovak Republic)	18.7
76	인도네시아(Indonesia)	18.6
80	미국(United States)	17.8
87	칠레(Chile)	15.8
88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15.7
88	아일랜드(Ireland)	15.7
92	터키(Turkey)	14.4
96	러시아(Russian Federation)	13.6
116	헝가리(Hungary)	8.8
121	일본(Japan)	8.1

자료 : 국제의원연맹 (Inter-Parliamentary Union), 2013.12.
http://www.ipu.org/wmn-e/classif.htm
주 : 출판 빈도: 매년, 국가 수: 143개국

제2장 비정부기구(NGO) 통계

비정부 기구의 인권 통계는 국가간 인권수준을 비교하는 데 중요한 자료 중 하나다. 특히 1972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의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 지수(Freedom House Political Rights and Civil Liberties Indices)는 비정부 기구의 인권 통계 가운데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지표이다(프리덤 하우스는 최근에 인터넷 및 언론의 자유 지수도 개발했다). 또한 특정 이슈와 관련하여 활동하는 비정부 기구의 자료도 있다. 즉 국경없는 기자회의 언론자유지수,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민주주의 지수,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과 이민정책그룹(Migration Policy Group)이 함께 생산하는 이민자 통합정책지수(Index Integration Und Migration III), 그리고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의 아동발달지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다수의 하부지수들을 변수로 구성하여 국가간 비교를 시도하는 자료들을 소개한다. 경제사회권강화계획(Economic and Social Rights Empowerment Initiative)이 개발한 SERF 지수(The Economic and Social Rights Fulfillment Index)는 식량권, 건강권, 교육권, 그리고 노동권의 4가지 하부지수를 통해 국가들의 경제사회권 이행 정도를 평가하고,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The World Justice Project)의 사법정의 지수는 법치주의에 관한 8개의 지표를 통해 국가간 비교를 시도한다. 레가툼연구소(Legatum Institute)의 번영지수는 교육, 건강 및 개인의 자유 등에 관한 하부지수들을 통해 국가간 순위를 제공한다.

<표 2-1>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 및 시민적 자유(Civil Liberties) 지수

국가명	정치적 권리 지수	시민적 자유 지수
호주(Australia)	1	1
오스트리아(Austria)	1	1
벨기에(Belgium)	1	1
캐나다(Canada)	1	1
칠레(Chile)	1	1
체코(Czech Republic)	1	1
덴마크(Denmark)	1	1
에스토니아(Estonia)	1	1
핀란드(Finland)	1	1
프랑스(France)	1	1
독일(Germany)	1	1
아이슬란드(Iceland)	1	1
아일랜드(Ireland)	1	1
룩셈부르크(Luxembourg)	1	1
네덜란드(Netherlands)	1	1
뉴질랜드(New Zealand)	1	1
노르웨이(Norway)	1	1
폴란드(Poland)	1	1
포르투갈(Portugal)	1	1
슬로바키아(Slovak Republic)	1	1
슬로베니아(Slovenia)	1	1
스페인(Spain)	1	1
스웨덴(Sweden)	1	1
스위스(Switzerland)	1	1
영국(United Kingdom)	1	1
미국(United States)	1	1
이탈리아(Italy)	1	1
일본(Japan)	1	1
헝가리(Hungary)	1	2
이스라엘(Israel)	1	2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2	2
아르헨티나(Argentina)	2	2
브라질(Brazil)	2	2
그리스(Greece)	2	2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2	2
인도(India)	2	3
인도네시아(Indonesia)	2	4
멕시코(Mexico)	3	3
터키(Turkey)	3	4
러시아(Russian Federation)	6	5
중국(China)	7	6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7	7

자료 : 1)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 Freedom in the World 2014(2013.1.1-2013.12.31.)
http://www.freedomhouse.org/report/freedom-world/freedom-world-2014

주 : 1) 범위(Scale): 1(최고) - 7
2) 출판 빈도: 매년, 국가 수: 195개국

<표 2-2> 인터넷 및 언론자유 지수(프리덤하우스)

국가명	인터넷의 자유		언론자유지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아이슬란드(Iceland)	1	6	10	14
에스토니아(Estonia)	2	9	13	16
독일(Germany)	3	17	19	17
미국(United States)	4	17	23	18
호주(Australia)	5	18	31	21
프랑스(France)	6	20	35	22
일본(Japan)	7	22	40	24
헝가리(Hungary)	8	23	74	36
이탈리아(Italy)	8	23	68	33
영국(United Kingdom)	10	24	31	21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13	26	71	35
아르헨티나(Argentina)	14	27	109	52
브라질(Brazil)	19	32	91	46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20	32	64	31
멕시코(Mexico)	25	38	134	61
인도네시아(Indonesia)	26	41	96	49
인도(India)	35	47	79	38
터키(Turkey)	38	49	120	56
러시아(Russian Federation)	41	54	176	81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52	70	182	84
중국(China)	58	86	179	83
오스트리아(Austria)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31	21
벨기에(Belgium)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3	11
캐나다(Canada)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29	20
칠레(Chile)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64	31
체코(Czech Republic)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27	19
덴마크(Denmark)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6	12
핀란드(Finland)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3	11
그리스(Greece)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83	41
아일랜드(Ireland)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13	16
이스라엘(Israel)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64	31
룩셈부르크(Luxembourg)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6	12
네덜란드(Netherlands)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3	11
뉴질랜드(New Zealand)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13	16
노르웨이(Norway)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1	10
폴란드(Poland)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47	26
포르투갈(Portugal)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19	17
슬로바키아(Slovak Republic)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35	22
슬로베니아(Slovenia)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40	24
스페인(Spain)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52	27
스위스(Switzerland)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6	12
스웨덴(Sweden)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1	10

자료 : 1) 프리덤 하우스, Freedom on the Net 2013, Freedom of the Press 2013
http://www.freedomhouse.org/report/freedom-world/freedom-net-2013

주 : 1) 범위(Scale): 0(가장 자유로움) - 100
2) 출판 빈도: 매년(공통), 인터넷의 자유 국가 수: 47개국, 언론자유지수 국가 수: 197개국

<표 2-3> 언론자유지수(국경없는기자회)

순위	국가명	점수
1	핀란드(Finland)	6.38
2	네덜란드(Netherlands)	6.48
3	노르웨이(Norway)	6.52
4	룩셈부르크(Luxembourg)	6.68
6	덴마크(Denmark)	7.08
8	뉴질랜드(New Zealand)	8.38
9	아이슬란드(Iceland)	8.49
10	스웨덴(Sweden)	9.23
11	에스토니아(Estonia)	9.26
12	오스트리아(Austria)	9.40
14	스위스(Switzerland)	9.94
15	아일랜드(Ireland)	10.06
16	체코(Czech Republic)	10.17
17	독일(Germany)	10.24
20	캐나다(Canada)	12.69
21	벨기에(Belgium)	12.94
22	폴란드(Poland)	13.11
23	슬로바키아(Slovak Republic)	13.25
26	호주(Australia)	15.24
28	포르투갈(Portugal)	16.75
29	영국(United Kingdom)	16.89
32	미국(United States)	18.22
35	슬로베니아(Slovenia)	20.49
36	스페인(Spain)	20.50
37	프랑스(France)	21.60
50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24.48
52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24.56
53	일본(Japan)	25.17
54	아르헨티나(Argentina)	25.67
56	헝가리(Hungary)	26.09
57	이탈리아(Italy)	26.11
60	칠레(Chile)	26.24
84	그리스(Greece)	28.46
108	브라질(Brazil)	32.75
112	이스라엘(Israel)	32.97
139	인도네시아(Indonesia)	41.05
140	인도(India)	41.22
148	러시아(Russian Federation)	43.42
153	멕시코(Mexico)	45.30
154	터키(Turkey)	46.56
163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56.88
173	중국(China)	73.07

자료 : 1)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World Press Freedom Index 2013
http://fr.rsf.org/IMG/pdf/classement_2013_gb-bd.pdf

주 : 1) 범위(Scale): 0(가장 좋음) - 100
2) 출판 빈도: 매년, 국가 수: 179개국

<표 2-4> 민주주의 지수

국가명	순위	민주주의 지수	범 주				
			선거절차 및 다원주의	정부의 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시민적 자유
노르웨이(Norway)	1	9.93	10.00	9.64	10.00	10.00	10.00
스웨덴(Sweden)	2	9.73	9.58	9.64	9.44	10.00	10.00
아이슬란드(Iceland)	3	9.65	10.00	9.64	8.89	10.00	9.71
덴마크(Denmark)	4	9.52	10.00	9.64	8.89	9.38	9.71
뉴질랜드(New Zealand)	5	9.26	10.00	9.29	8.89	8.13	10.00
호주(Australia)	6	9.22	10.00	8.93	7.78	9.38	10.00
스위스(Switzerland)	7	9.09	9.58	9.29	7.78	9.38	9.41
캐나다(Canada)	8	9.08	9.58	9.29	7.78	8.75	10.00
핀란드(Finland)	9	9.06	10.00	9.64	7.22	8.75	9.71
네덜란드(Netherlands)	10	8.99	9.58	8.93	8.89	8.13	9.41
룩셈부르크(Luxembourg)	11	8.88	10.00	9.29	6.67	8.75	9.71
오스트리아(Austria)	12	8.62	9.58	8.21	7.78	8.13	9.41
아일랜드(Ireland)	13	8.56	9.58	7.86	7.22	8.13	10.00
독일(Germany)	14	8.34	9.58	8.21	6.67	8.13	9.12
영국(United Kingdom)	16	8.21	9.58	7.50	6.11	8.75	9.12
체코(Czech Republic)	17	8.19	9.58	7.14	6.67	8.13	9.41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20	8.13	9.17	8.21	7.22	7.50	8.53
미국(United States)	21	8.11	9.17	7.50	7.22	8.13	8.53
일본(Japan)	23	8.08	9.17	8.21	6.11	7.50	9.41
벨기에(Belgium)	24	8.05	9.58	8.21	5.56	7.50	9.41
스페인(Spain)	25	8.02	9.58	7.50	6.11	7.50	9.41
포르투갈(Portugal)	26	7.92	9.58	6.43	6.67	7.50	9.41
프랑스(France)	28	7.88	9.58	7.14	6.67	7.50	8.53
슬로베니아(Slovenia)	28	7.88	9.58	7.50	7.22	6.25	8.82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31	7.79	8.75	8.21	7.22	6.25	8.53
이탈리아(Italy)	32	7.74	9.58	6.43	6.67	7.50	8.53
그리스(Greece)	33	7.65	9.58	5.71	6.67	6.88	9.41
에스토니아(Estonia)	34	7.61	9.58	7.14	5.00	7.50	8.82
칠레(Chile)	36	7.54	9.58	8.57	3.89	6.25	9.41
이스라엘(Israel)	37	7.53	8.75	7.50	8.33	7.50	5.59
인도(India)	38	7.52	9.58	7.50	6.11	5.00	9.41
슬로바키아(Slovak Republic)	40	7.35	9.58	7.50	5.56	5.00	9.12
폴란드(Poland)	44	7.12	9.58	6.43	6.11	4.38	9.12
브라질(Brazil)	44	7.12	9.58	7.50	5.00	4.38	9.12
헝가리(Hungary)	49	6.96	9.17	6.07	4.44	6.88	8.24
멕시코(Mexico)	51	6.90	8.33	7.14	6.67	5.00	7.35
아르헨티나(Argentina)	52	6.84	8.75	5.71	5.56	6.25	7.94
인도네시아(Indonesia)	53	6.76	6.92	7.50	6.11	5.63	7.65
터키(Turkey)	88	5.76	7.92	6.79	5.00	5.00	4.12
러시아(Russian Federation)	122	3.74	3.92	2.86	5.00	2.50	4.41
중국(China)	142	3.00	0.00	4.64	3.89	5.00	1.47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163	1.71	0.00	2.86	1.11	3.13	1.47

자료 : 1)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Democracy Index 2012(2013)
http://www.eiu.com/

주 : 1) 범위(Scale): 0 - 10(가장 좋음)
2) 출판 빈도: 매년, 국가 수: 167개국

<표 2-5> 세계정보권리 순위(Gloval Rights to Information Rating)

순위	국가명	점수(점)
2	인도(India)	130
3	슬로베니아(Slovenia)	130
7	멕시코(Mexico)	119
13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111
14	브라질(Brazil)	110
18	핀란드(Finland)	105
24	인도네시아(Indonesia)	99
27	영국(United Kingdom)	97
31	스웨덴(Sweden)	95
32	칠레(Chile)	93
32	뉴질랜드(New Zealand)	93
32	노르웨이(Norway)	93
39	미국(United States)	89
43	헝가리(Hungary)	87
44	에스토니아(Estonia)	86
46	아일랜드(Ireland)	86
48	호주(Australia)	84
48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84
51	네덜란드(Netherlands)	82
54	슬로바키아(Slovak Republic)	80
55	캐나다(Canada)	79
62	스위스(Switzerland)	72
62	중국(China)	72
62	포르투갈(Portugal)	72
67	프랑스(France)	70
69	체코(Czech Republic)	69
70	이스라엘(Israel)	68
71	일본(Japan)	67
72	아르헨티나(Argentina)	66
72	덴마크(Denmark)	66
77	터키(Turkey)	64
78	아이슬란드(Iceland)	63
79	폴란드(Poland)	61
83	이탈리아(Italy)	60
83	러시아(Russian Federation)	60
86	벨기에(Belgium)	56
88	독일(Germany)	54
91	그리스(Greece)	40
92	오스트리아(Austria)	39

자료 : 1) Access Info Europe & Center for Law and Democracy, 2013.9
http://www.rti-rating.org/

주 : 1) 범위(Scale): 0 - 150(가장 좋음)
2) 출판 빈도: 매년, 국가 수: 93개국

<표 2-6> 이민자 통합정책지수(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 III)

순위	국가명	점수(점)
1	스웨덴(Sweden)	83
2	포르투갈(Portugal)	79
3	캐나다(Canada)	72
4	핀란드(Finland)	69
5	네덜란드(Netherlands)	68
6	벨기에(Belgium)	67
7	노르웨이(Norway)	66
8	스페인(Spain)	63
9	미국(United States)	62
10	이탈리아(Italy)	60
11	룩셈부르크(Luxembourg)	59
12	독일(Germany)	57
12	영국(United Kingdom)	57
14	덴마크(Denmark)	53
15	프랑스(France)	51
16	그리스(Greece)	49
16	아일랜드(Ireland)	49
18	슬로베니아(Slovenia)	48
19	체코(Czech Republic)	46
19	에스토니아(Estonia)	46
21	헝가리(Hungary)	45
23	스위스(Switzerland)	43
24	오스트리아(Austria)	42
24	폴란드(Poland)	42
29	슬로바키아(Slovak Republic)	36

자료 : 1) 영국문화원 및 이민정책그룹, 2010
http://www.mipex.eu/countries
주 : 1) 범위(Scale): 0 - 100 (가장 좋음)
2) 출판 빈도: 3년, 국가 수: 31개국

<표 2-7> 아동발달지수(The Child Development Index)

순위	국가명	지수 (2005-10)
1	일본(Japan)	0.35
2	스페인(Spain)	0.55
3	독일(Germany)	0.64
4	이탈리아(Italy)	0.70
5	프랑스(France)	0.74
6	캐나다(Canada)	0.74
7	스위스(Switzerland)	0.82
8	노르웨이(Norway)	0.89
9	영국(United Kingdom)	0.92
10	네덜란드(Netherlands)	0.93
11	아이슬란드(Iceland)	1.01
12	벨기에(Belgium)	1.05
13	룩셈부르크(Luxembourg)	1.30
14	핀란드(Finland)	1.37
15	오스트리아(Austria)	1.49
16	호주(Australia)	1.54
18	아일랜드(Ireland)	1.68
19	스웨덴(Sweden)	1.85
20	덴마크(Denmark)	1.87
22	칠레(Chile)	2.83
23	미국(United States)	2.86
24	아르헨티나(Argentina)	2.95
28	체코(Czech Republic)	3.63
29	중국(China)	3.69
35	멕시코(Mexico)	4.40
36	브라질(Brazil)	4.44
37	러시아(Russian Federation)	4.47
47	터키(Turkey)	5.70
64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8.13
82	인도네시아(Indonesia)	11.40
84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12.25
112	인도(India)	23.46

자료 : 세이브더칠드런, The Child Development Index 2012
http://www.savethechildren.org.uk/sites/default/files/docs/Child_Development_Index_2012_UK_low_res.pdf

주 : 1) 2005년 ~ 2010년간 통계
2) 범위(Scale): 0(가장 좋음) - 100
3) 출판 빈도: 5년, 국가 수: 141개국

<표 2-8> 경제사회권 이행지수(SERF Index)

국가명	경제사회권 이행지수		교육권 지수	건강권 지수	식량권 지수	노동권 지수
	순위	지수				
핀란드(Finland)	1	93.11	98.09	98.80	99.76	75.78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2	92.80	97.17	97.81	100.00	76.23
스웨덴(Sweden)	3	91.56	81.44	99.89	99.53	85.40
노르웨이(Norway)	4	91.50	82.85	99.74	97.93	85.49
덴마크(Denmark)	5	90.94	86.56	96.74	99.24	81.22
캐나다(Canada)	6	88.19	87.20	98.45	95.94	71.15
폴란드(Poland)	7	87.52	89.08	92.99	96.95	71.04
호주(Australia)	8	87.45	91.53	99.23	94.20	64.83
오스트리아(Austria)	9	86.32	81.20	98.71	93.73	71.65
슬로베니아(Slovenia)	10	85.69	87.43	97.35	96.98	61.00
스위스(Switzerland)	11	84.71	84.10	99.26	94.50	60.97
체코(Czech Republic)	12	84.32	80.93	95.87	95.45	65.04
에스토니아(Estonia)	13	84.27	95.47	89.54	99.82	52.25
프랑스(France)	14	83.80	84.36	98.99	94.26	57.58
이탈리아(Italy)	15	79.54	79.81	99.47	96.11	42.79
영국(United Kingdom)	16	79.23	82.85	97.76	91.87	44.42
그리스(Greece)	17	79.11	80.58	99.23	92.31	44.31
아일랜드(Ireland)	18	79.02	85.64	99.04	96.28	35.13
이스라엘(Israel)	19	78.98	73.80	99.40	91.54	51.19
미국(United States)	20	76.38	83.01	94.96	90.00	37.55
룩셈부르크(Luxembourg)	21	74.73	59.05	98.53	88.77	52.58
벨기에(Belgium)	불충분한 자료		87.81	98.53	–	51.07
칠레(Chile)	불충분한 자료		76.06	95.77	96.95	–
독일(Germany)	불충분한 자료		–	98.61	94.45	50.82
아이슬란드(Iceland)	불충분한 자료		85.15	100.00	100.00	–
일본(Japan)	불충분한 자료		89.10	99.79	91.43	–
네덜란드(Netherlands)	불충분한 자료		92.03	99.07	–	71.54
뉴질랜드(New Zealand)	불충분한 자료		93.78	98.48	95.57	–
포르투갈(Portugal)	불충분한 자료		86.07	98.14	92.37	–
슬로바키아(Slovak Republic)	불충분한 자료		79.75	91.85	94.98	–
스페인(Spain)	불충분한 자료		84.70	99.36	–	45.44

자료 : 경제사회권강화계획(Economic and Social Rights Empowerment Initiative), 2013.
http://www.serfindex.org/data/

주 : 1) 범위(Scale): 0 - 100(가장 좋음)
2) 출판 빈도: 매년
3) 국가 수: 28개국(OECD 고소득국가)

<표 2-9> 사법정의 지수(World Justice Project)

국가명	정부권력 견제		청렴성		질서와 안전		기본권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노르웨이(Norway)	3	0.90	3	0.94	11	0.87	3	0.90
네덜란드(Netherlands)	7	0.86	5	0.93	14	0.86	9	0.84
독일(Germany)	9	0.82	11	0.82	13	0.86	12	0.80
핀란드(Finland)	4	0.89	4	0.93	3	0.92	4	0.90
덴마크(Denmark)	1	0.93	2	0.95	4	0.91	2	0.91
스웨덴(Sweden)	2	0.92	1	0.96	6	0.89	1	0.93
일본(Japan)	10	0.80	10	0.84	7	0.89	17	0.78
뉴질랜드(New Zealand)	6	0.87	6	0.92	12	0.87	5	0.86
오스트리아(Austria)	8	0.82	20	0.77	9	0.89	10	0.82
영국(United Kingdom)	13	0.79	15	0.80	17	0.84	16	0.78
호주(Australia)	5	0.88	7	0.90	15	0.86	8	0.84
캐나다(Canada)	15	0.78	12	0.81	10	0.88	18	0.78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28	0.66	25	0.74	25	0.82	20	0.76
에스토니아(Estonia)	12	0.79	19	0.77	23	0.82	13	0.79
프랑스(France)	11	0.80	13	0.80	18	0.84	14	0.79
벨기에(Belgium)	16	0.78	16	0.78	20	0.84	11	0.81
칠레(Chile)	19	0.74	24	0.74	53	0.70	24	0.73
미국(United States)	17	0.77	18	0.78	22	0.83	25	0.73
체코(Czech Republic)	25	0.71	32	0.62	26	0.81	15	0.79
스페인(Spain)	18	0.75	14	0.80	30	0.79	6	0.86
폴란드(Poland)	14	0.78	27	0.72	27	0.81	7	0.85
포르투갈(Portugal)	24	0.71	29	0.68	45	0.74	21	0.75
그리스(Greece)	31	0.64	34	0.56	49	0.73	28	0.72
슬로베니아(Slovenia)	30	0.64	31	0.62	29	0.80	19	0.78
이탈리아(Italy)	27	0.67	30	0.62	36	0.76	27	0.72
브라질(Brazil)	35	0.62	38	0.52	69	0.64	33	0.69
터키(Turkey)	68	0.47	35	0.55	70	0.63	76	0.49
헝가리(Hungary)	33	0.63	26	0.72	21	0.83	30	0.72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34	0.62	46	0.50	88	0.56	40	0.64
아르헨티나(Argentina)	70	0.46	50	0.47	80	0.60	43	0.63
러시아(Russian Federation)	92	0.31	71	0.39	92	0.49	83	0.47
인도네시아(Indonesia)	29	0.64	86	0.30	52	0.72	61	0.56
인도(India)	37	0.61	83	0.32	96	0.39	64	0.56
중국(China)	86	0.36	40	0.52	32	0.78	94	0.35
멕시코(Mexico)	50	0.55	74	0.37	91	0.50	60	0.56

자료 :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2012-2013
http://worldjusticeproject.org/sites/default/files/WJP_Index_Report_2012.pdf
주 : 1) 범위(Scale): 0 - 1(가장 좋음)
2) 출판 빈도: 매년, 국가 수: 97개국

국가명	열린정부		규제집행		민사사법 정의		형사사법 정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노르웨이(Norway)	3	0.84	6	0.83	1	0.82	4	0.85
네덜란드(Netherlands)	2	0.90	7	0.83	2	0.80	6	0.80
독일(Germany)	16	0.73	15	0.73	3	0.80	9	0.76
핀란드(Finland)	7	0.84	8	0.82	5	0.79	2	0.87
덴마크(Denmark)	8	0.82	3	0.85	6	0.79	1	0.87
스웨덴(Sweden)	1	0.93	1	0.89	7	0.78	5	0.82
일본(Japan)	9	0.82	2	0.87	8	0.77	23	0.68
뉴질랜드(New Zealand)	4	0.84	9	0.82	9	0.76	7	0.79
오스트리아(Austria)	11	0.80	4	0.84	10	0.74	15	0.75
영국(United Kingdom)	12	0.78	11	0.79	11	0.72	11	0.75
호주(Australia)	5	0.84	5	0.83	12	0.72	17	0.72
캐나다(Canada)	6	0.84	12	0.79	13	0.72	13	0.75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15	0.74	21	0.67	14	0.72	10	0.76
에스토니아(Estonia)	17	0.71	16	0.73	16	0.71	14	0.75
프랑스(France)	14	0.75	13	0.76	18	0.68	22	0.69
벨기에(Belgium)	21	0.67	20	0.70	19	0.68	19	0.72
칠레(Chile)	18	0.68	23	0.66	20	0.66	32	0.60
미국(United States)	13	0.77	19	0.70	22	0.65	26	0.65
체코(Czech Republic)	46	0.49	28	0.59	23	0.65	20	0.70
스페인(Spain)	26	0.61	22	0.67	24	0.65	21	0.69
폴란드(Poland)	29	0.59	26	0.61	27	0.63	16	0.73
포르투갈(Portugal)	25	0.62	32	0.57	29	0.62	28	0.62
그리스(Greece)	41	0.51	43	0.54	30	0.61	46	0.50
슬로베니아(Slovenia)	22	0.63	30	0.59	34	0.60	36	0.59
이탈리아(Italy)	47	0.49	36	0.56	41	0.56	24	0.67
브라질(Brazil)	31	0.54	37	0.56	43	0.55	52	0.49
터키(Turkey)	57	0.46	39	0.55	44	0.55	71	0.42
헝가리(Hungary)	37	0.52	27	0.60	45	0.55	27	0.64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27	0.61	42	0.54	46	0.55	48	0.49
아르헨티나(Argentina)	49	0.48	75	0.43	49	0.54	66	0.43
러시아(Russian Federation)	74	0.41	68	0.45	65	0.50	78	0.40
인도네시아(Indonesia)	35	0.53	54	0.50	66	0.49	62	0.45
인도(India)	50	0.48	79	0.41	78	0.45	64	0.44
중국(China)	69	0.42	80	0.41	82	0.43	39	0.54
멕시코(Mexico)	32	0.53	56	0.49	89	0.40	91	0.35

<표 2-10> 레가툼 번영 지수(Legatum Properity Index)

순위	국가명	경제 순위	기업가 정신과 기회 순위	거버넌스 순위	교육 순위
1	노르웨이(Norway)	2	4	13	6
2	덴마크(Denmark)	19	1	3	16
3	스웨덴(Sweden)	5	2	4	12
4	호주(Australia)	10	8	8	2
5	뉴질랜드(New Zealand)	27	13	2	1
6	캐나다(Canada)	8	16	6	3
7	핀란드(Finland)	16	3	5	8
8	네덜란드(Netherlands)	14	10	11	11
9	스위스(Switzerland)	1	7	1	32
10	아일랜드(Ireland)	25	14	14	14
11	룩셈부르크(Luxembourg)	4	5	9	48
12	미국(United States)	20	12	10	5
13	영국(United Kingdom)	26	6	7	30
14	독일(Germany)	6	18	16	15
15	아이슬란드(Iceland)	61	9	20	13
16	오스트리아(Austria)	13	17	12	24
17	벨기에(Belgium)	21	22	17	17
21	프랑스(France)	22	21	18	19
22	일본(Japan)	12	23	22	23
23	스페인(Spain)	40	26	26	10
24	슬로베니아(Slovenia)	41	25	29	9
26	포르투갈(Portugal)	51	28	36	34
27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23	19	30	7
28	체코(Czech Republic)	30	29	33	22
32	폴란드(Poland)	52	38	38	38
33	이탈리아(Italy)	36	37	39	36
34	칠레(Chile)	28	40	24	60
35	에스토니아(Estonia)	60	32	25	31
36	슬로바키아(Slovak Republic)	56	35	42	26
39	헝가리(Hungary)	68	45	37	20
40	이스라엘(Israel)	29	31	28	33
41	아르헨티나(Argentina)	48	52	75	42
44	브라질(Brazil)	33	47	56	79
49	그리스(Greece)	85	51	48	35
52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31	46	50	64
55	중국(China)	11	66	65	50
61	멕시코(Mexico)	34	69	69	78
63	인도네시아(Indonesia)	43	85	80	84
66	러시아(Russian Federation)	62	50	118	27
74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87	34	45	89
89	터키(Turkey)	74	55	46	91
101	인도(India)	57	99	49	100

자료 : 레가툼연구소(Legatum Institute), 2012.
http://www.prosperity.com/

주 : 1) 출판 빈도: 매년, 국가 수: 142개국
2) '레가툼 번영지수(Legatum Prosperity Index)'는 영국 경제연구소 레가툼이 경제적 기반, 통치 지배구조, 개인의 자유(표현의 자유), 교육, 건강과 사회자본, 건강 수준, 행복 수준 등 9개 부문을 종합해 각국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글로벌 지수임.

순위	국가명	건강 순위	안보와 안전 순위	개인의 자유	사회적 자본
1	노르웨이(Norway)	4	2	6	1
2	덴마크(Denmark)	16	8	7	2
3	스웨덴(Sweden)	14	6	5	9
4	호주(Australia)	17	19	3	3
5	뉴질랜드(New Zealand)	20	13	2	4
6	캐나다(Canada)	15	9	1	8
7	핀란드(Finland)	12	3	19	5
8	네덜란드(Netherlands)	7	18	9	6
9	스위스(Switzerland)	3	10	22	11
10	아일랜드(Ireland)	11	4	4	7
11	룩셈부르크(Luxembourg)	1	7	8	16
12	미국(United States)	2	27	14	10
13	영국(United Kingdom)	18	20	11	12
14	독일(Germany)	5	21	12	15
15	아이슬란드(Iceland)	13	1	10	13
16	오스트리아(Austria)	10	15	21	14
17	벨기에(Belgium)	8	22	20	18
21	프랑스(France)	9	31	16	40
22	일본(Japan)	6	16	42	20
23	스페인(Spain)	21	29	18	34
24	슬로베니아(Slovenia)	25	14	28	36
26	포르투갈(Portugal)	28	17	13	67
27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24	40	56	51
28	체코(Czech Republic)	26	24	45	45
32	폴란드(Poland)	34	25	37	46
33	이탈리아(Italy)	19	42	57	38
34	칠레(Chile)	47	36	29	69
35	에스토니아(Estonia)	39	39	74	30
36	슬로바키아(Slovak Republic)	31	33	40	47
39	헝가리(Hungary)	38	28	68	79
40	이스라엘(Israel)	35	115	118	22
41	아르헨티나(Argentina)	41	46	26	70
44	브라질(Brazil)	57	87	25	64
49	그리스(Greece)	23	38	121	97
52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42	82	130	43
55	중국(China)	67	101	128	29
61	멕시코(Mexico)	52	116	78	63
63	인도네시아(Indonesia)	95	68	80	27
66	러시아(Russian Federation)	48	97	119	71
74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114	100	48	80
89	터키(Turkey)	58	93	127	133
101	인도(India)	104	114	67	138

제3장 학술기관 통계

인권 분야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해 많은 학자들은 국가의 인권 관련 자료들을 수치화하고자 노력한다. 대표적인 자료로 정치테러척도(Political Terror Scale, PTS)와 Cingranelli-Richards('CIRI') 인권지표이다. 이 두 자료들은 쉽게 접할 수 있고 많은 연구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정치테러척도는 국제사면위원회와 미국 국무부가 연례보고서를 통해 특정 국가가 경험한 정치 폭력과 테러의 수준을 측정하여 발표하는 자료를 이용한다. 5단계 척도를 사용하는데 1단계는 국가가 안정된 법치주의 체제 하에 정착했다는 의미이고 5단계는 전체인구가 정치 테러를 겪고 있다는 의미이다. 전자의 경우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 때문에 구속되지 않고 고문과 같은 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국내 상황을 뜻한다. 정치테러척도는 애시빌의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교(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Asheville), 애리조나 주립 대학교(Arizona State University), 그리고 로체스터 대학교(University of Rochester)의 공동연구팀에 의해 발표되고 있다.

CIRI 인권지표는 4가지 영역, 즉 신체적 자유, 정치시민권, 여성의 권리, 그리고 사법권의 독립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영역별로는 총 14종류의 지표들로 세분된다. CIRI 프로젝트는 빙햄턴 뉴욕 주립대학교(Binghamton University)의 David Louis Cingranelli와 코네티컷 주립대학교(University of Connecticut)의 David Richards가 공동으로 주도하고 있다.

이 두 종류의 주요 데이터 세트 이외에도 예일대학교(Yale University)의 환경성과 지수와 국제경영대학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의 세계경쟁력 순위가 본 장에 포함되어 있다.

<표 3-1> 정치테러척도

국가명	국제사면위원회	미국무부
호주(Australia)	1	1
오스트리아(Austria)	1	1
벨기에(Belgium)	1	1
캐나다(Canada)	1	1
체코(Czech Republic)	1	1
덴마크(Denmark)	1	1
핀란드(Finland)	1	1
독일(Germany)	1	1
헝가리(Hungary)	1	2
아일랜드(Ireland)	1	1
네덜란드(Netherlands)	1	1
뉴질랜드(New Zealand)	1	1
노르웨이(Norway)	1	1
폴란드(Poland)	1	2
슬로바키아(Slovak Republic)	1	1
슬로베니아(Slovenia)	1	1
스웨덴(Sweden)	1	1
스위스(Switzerland)	1	1
영국(United Kingdom)	1	1
프랑스(France)	1	1
에스토니아(Estonia)	1	1
이탈리아(Italy)	1	2
포르투갈(Portugal)	1	2
아르헨티나(Argentina)	1	2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2	1
일본(Japan)	2	1
스페인(Spain)	2	1
칠레(Chile)	2	2
그리스(Greece)	2	2
인도네시아(Indonesia)	3	3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3	4
터키(Turkey)	3	4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3	3
브라질(Brazil)	4	3
중국(China)	4	4
인도(India)	4	4
이스라엘(Israel)	4	4
러시아(Russian Federation)	4	4
멕시코(Mexico)	4	4
아이슬란드(Iceland)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1
룩셈부르크(Luxembourg)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1
미국(United States)	3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자료 : 1) Mark Gibney, Linda Cornett & Reed Wood, 2012.
http://www.politicalterrorscale.org/download.php

주 : 1) 범위(Scale): 1(최고) - 5
2) 국제사면위원회 출판 빈도: 매년, 국가 수: 157개국
3) 미국무부 출판 빈도: 매년, 국가 수: 180개국

<표 3-2> CIRI 인권지표(Cingranelli-Richards Human Rights Indicators)

국가명	신체적 자유				
	소 계 0-8(최고)	실종 0-2(최고)	사법외 살인 0-2(최고)	정치적 구금 0-2(최고)	고문 0-2(최고)
아이슬란드(Iceland)	8	2	2	2	2
룩셈부르크(Luxembourg)	8	2	2	2	2
뉴질랜드(New Zealand)	8	2	2	2	2
노르웨이(Norway)	8	2	2	2	2
체코(Czech Republic)	8	2	2	2	2
덴마크(Denmark)	8	2	2	2	2
핀란드(Finland)	8	2	2	2	2
프랑스(France)	7	2	2	2	1
독일(Germany)	7	2	2	1	2
오스트리아(Austria)	7	2	2	2	1
폴란드(Poland)	7	2	2	2	1
호주(Australia)	7	2	2	2	1
아일랜드(Ireland)	6	2	2	2	–
이탈리아(Italy)	6	2	1	2	1
슬로바키아(Slovak Republic)	7	2	2	2	1
스페인(Spain)	5	–	2	2	1
벨기에(Belgium)	8	2	2	2	2
네덜란드(Netherlands)	8	2	2	2	2
스웨덴(Sweden)	7	2	2	2	1
스위스(Switzerland)	7	2	2	2	1
영국(United Kingdom)	7	2	1	2	2
에스토니아(Estonia)	7	2	2	2	1
슬로베니아(Slovenia)	8	2	2	2	2
캐나다(Canada)	7	2	2	2	1
그리스(Greece)	6	2	2	2	–
일본(Japan)	6	2	2	2	–
미국(United States)	6	2	1	2	1
포르투갈(Portugal)	7	2	2	2	1
헝가리(Hungary)	6	2	2	2	–
아르헨티나(Argentina)	5	2	1	2	–
칠레(Chile)	5	2	1	2	–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3	2	–	1	–
인도네시아(Indonesia)	3	2	1	–	–
브라질(Brazil)	2	1	–	1	–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2	–	1	–	1
멕시코(Mexico)	2	–	1	1	–
터키(Turkey)	2	2	–	–	–
이스라엘(Israel)	2	2	–	–	–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1	–	1	–	–
인도(India)	–	–	–	–	–
러시아(Russian Federation)	–	–	–	–	–
중국(China)	–	–	–	–	–

자료 : 1) David Cingranelli, David Richards, and Chad Clay, 2010.
http://www.humanrightsdata.org
주 : 1) 출판 빈도: 매년, 국가 수: 195개국

국가명	정치시민권							
	소 계 0-14 (최고)	집회 시위 0-2 (최고)	국외 이전 0-2 (최고)	국내 이전 0-2 (최고)	언론 0-2 (최고)	선거 자결 0-2 (최고)	종교 0-3 (최고)	노동 0-2 (최고)
아이슬란드(Iceland)	12	2	2	2	1	2	2	1
룩셈부르크(Luxembourg)	14	2	2	2	2	2	2	2
뉴질랜드(New Zealand)	13	2	2	2	2	2	2	1
노르웨이(Norway)	12	2	2	2	1	2	2	1
체코(Czech Republic)	11	1	2	2	1	2	2	1
덴마크(Denmark)	12	2	2	2	1	2	2	1
핀란드(Finland)	11	2	2	2	1	2	1	1
프랑스(France)	10	2	2	1	1	2	–	2
독일(Germany)	11	1	2	2	1	2	2	1
오스트리아(Austria)	12	2	2	2	1	2	2	1
폴란드(Poland)	12	2	2	2	1	2	2	1
호주(Australia)	14	2	2	2	2	2	2	2
아일랜드(Ireland)	12	2	2	2	1	2	2	1
이탈리아(Italy)	12	2	2	2	1	2	2	1
슬로바키아(Slovak Republic)	10	2	2	2	1	1	1	1
스페인(Spain)	11	2	2	2	1	2	1	1
벨기에(Belgium)	12	2	2	2	1	2	1	2
네덜란드(Netherlands)	13	2	2	2	1	2	2	2
스웨덴(Sweden)	12	2	2	2	1	2	2	1
스위스(Switzerland)	11	2	2	2	1	2	1	1
영국(United Kingdom)	13	2	2	2	2	2	2	1
에스토니아(Estonia)	13	2	2	2	2	2	2	1
슬로베니아(Slovenia)	13	2	2	2	1	2	2	2
캐나다(Canada)	12	2	2	2	1	2	2	1
그리스(Greece)	9	1	2	2	1	2	–	1
일본(Japan)	12	2	2	2	2	2	1	1
미국(United States)	11	1	1	2	2	2	2	1
포르투갈(Portugal)	13	2	2	2	2	2	2	1
헝가리(Hungary)	11	1	2	2	1	2	2	1
아르헨티나(Argentina)	12	2	2	2	1	2	2	1
칠레(Chile)	12	1	2	2	2	2	2	1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11	2	2	2	1	1	2	1
인도네시아(Indonesia)	5	–	1	2	1	1	–	–
브라질(Brazil)	12	2	2	2	1	2	2	1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10	1	1	2	1	2	2	1
멕시코(Mexico)	10	2	2	2	1	1	1	1
터키(Turkey)	7	–	2	2	1	1	–	1
이스라엘(Israel)	4	–	–	–	1	1	1	1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	–	–	–	–	–	–	–
인도(India)	7	–	1	2	1	2	–	1
러시아(Russian Federation)	2	–	2	–	–	–	–	–
중국(China)	–	–	–	–	–	–	–	–

➡ 다음 페이지에 계속

국가명	여성의 권리			사법권 독립 0-2(최고)
	소 계 0-6 (최고)	여성 경제권 0-3(최고)	여성 정치권 0-3(최고)	
아이슬란드(Iceland)	6	3	3	2
룩셈부르크(Luxembourg)	6	3	3	2
뉴질랜드(New Zealand)	6	3	3	2
노르웨이(Norway)	6	3	3	2
체코(Czech Republic)	4	2	2	2
덴마크(Denmark)	6	3	3	2
핀란드(Finland)	6	3	3	2
프랑스(France)	4	2	2	2
독일(Germany)	6	3	3	2
오스트리아(Austria)	6	3	3	2
폴란드(Poland)	3	1	2	2
호주(Australia)	5	3	2	2
아일랜드(Ireland)	5	3	2	2
이탈리아(Italy)	5	3	2	1
슬로바키아(Slovak Republic)	4	2	2	–
스페인(Spain)	5	2	3	2
벨기에(Belgium)	5	2	3	2
네덜란드(Netherlands)	6	3	3	2
스웨덴(Sweden)	5	2	3	2
스위스(Switzerland)	5	3	2	2
영국(United Kingdom)	5	3	2	2
에스토니아(Estonia)	4	2	2	2
슬로베니아(Slovenia)	4	2	2	2
캐나다(Canada)	4	2	2	2
그리스(Greece)	4	2	2	1
일본(Japan)	3	1	2	2
미국(United States)	5	3	2	2
포르투갈(Portugal)	4	2	2	2
헝가리(Hungary)	3	1	2	2
아르헨티나(Argentina)	5	2	3	1
칠레(Chile)	3	1	2	2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4	1	3	2
인도네시아(Indonesia)	3	1	2	–
브라질(Brazil)	3	1	2	1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5	3	2	2
멕시코(Mexico)	4	2	2	–
터키(Turkey)	3	1	2	1
이스라엘(Israel)	3	1	2	2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1	–	1	–
인도(India)	4	1	3	–
러시아(Russian Federation)	3	1	2	–
중국(China)	3	1	2	–

<표 3-3> 환경성과 지수(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국가명	순위	점수
스위스(Switzerland)	1	87.67
노르웨이(Norway)	10	78.04
룩셈부르크(Luxembourg)	2	83.29
프랑스(France)	6	71.05
오스트리아(Austria)	8	78.32
이탈리아(Italy)	8	68.90
스웨덴(Sweden)	9	78.09
영국(United Kingdom)	12	77.35
독일(Germany)	6	80.47
슬로바키아(Slovak Republic)	21	74.45
아이슬란드(Iceland)	14	76.50
뉴질랜드(New Zealand)	16	76.41
네덜란드(Netherlands)	11	77.75
체코(Czech Republic)	5	81.47
핀란드(Finland)	18	75.72
덴마크(Denmark)	13	76.92
폴란드(Poland)	30	69.53
일본(Japan)	26	72.35
벨기에(Belgium)	36	66.61
슬로베니아(Slovenia)	15	76.43
브라질(Brazil)	77	52.97
스페인(Spain)	7	79.79
그리스(Greece)	23	73.28
아일랜드(Ireland)	19	74.67
캐나다(Canada)	24	73.14
포르투갈(Portugal)	17	75.80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43	63.79
헝가리(Hungary)	28	70.28
호주(Australia)	3	82.40
미국(United States)	33	67.52
아르헨티나(Argentina)	93	49.55
에스토니아(Estonia)	20	74.66
칠레(Chile)	29	69.93
이스라엘(Israel)	39	65.78
인도네시아(Indonesia)	112	44.36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35	66.66
멕시코(Mexico)	65	55.03
러시아(Russian Federation)	73	53.45
터키(Turkey)	66	54.91
중국(China)	118	43.00
인도(India)	155	31.23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72	53.51

자료 : Yale University, 2014
http://epi.yale.edu/epi/country-rankings
주 : 1) 범위(Scale): 0 - 100(최고)
2) 출판 빈도: 매년, 국가 수: 178개국

<표 3-4> 세계 경쟁력 순위

국가명	순위	점수
미국(United States)	1	100.00
스위스(Switzerland)	2	93.357
스웨덴(Sweden)	4	90.531
캐나다(Canada)	7	89.128
노르웨이(Norway)	6	89.585
독일(Germany)	9	86.197
네덜란드(Netherlands)	14	83.158
룩셈부르크(Luxembourg)	13	83.305
덴마크(Denmark)	12	83.514
호주(Australia)	16	80.513
핀란드(Finland)	20	78.187
영국(United Kingdom)	18	79.150
이스라엘(Israel)	19	78.210
아일랜드(Ireland)	17	79.591
오스트리아(Austria)	23	74.711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22	75.169
중국(China)	21	77.040
뉴질랜드(New Zealand)	25	73.942
벨기에(Belgium)	26	73.133
아이슬란드(Iceland)	29	69.012
일본(Japan)	24	74.529
칠레(Chile)	30	67.994
프랑스(France)	28	71.327
에스토니아(Estonia)	36	64.422
체코(Czech Republic)	35	64.614
폴란드(Poland)	33	65.437
인도(India)	40	59.888
멕시코(Mexico)	32	65.626
터키(Turkey)	37	63.611
스페인(Spain)	45	56.289
이탈리아(Italy)	44	56.328
포르투갈(Portugal)	46	56.225
인도네시아(Indonesia)	39	61.805
헝가리(Hungary)	50	53.497
브라질(Brazil)	51	52.996
슬로바키아(Slovak Republic)	47	54.485
러시아(Russian Federation)	42	56.809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53	50,627
슬로베니아(Slovenia)	52	50.996
아르헨티나(Argentina)	59	42.271
그리스(Greece)	54	49.986

자료 : 1) 국제경영대학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3
http://www.imd.org/research/publications/wcy/index.cfm

주 : 1) 범위(Scale): 0 - 100(최고)
2) 출판 빈도: 매년, 국가 수: 60개국

부 록

1. 국가인권위원회법
2. 인권문화콘텐츠 개발 현황
3. 업무협약 체결 현황
4. 인권상황실태조사 현황
5. 주요 국제인권협약 가입현황
6. 국내 인권통계 인용자료 목록
7. 표목차

【부록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2001. 5. 24. 법률 제6481호
개정 2005. 3. 31. 법률 제7427호 (민법)
개정 2005. 7. 29. 법률 제7651호
개정 2005. 8. 4. 법률 제7655호 (치료감호법)
개정 2005. 12. 29. 법률 제7796호 (국가공무원법)
개정 2006. 10. 4. 법률 제8050호 (국가재정법)
개정 2007. 5. 17. 법률 제8435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09. 2. 3. 법률 제9402호 (공직자윤리법)
개정 2011. 5. 19. 법률 제10679호
개정 2012. 3. 21. 법률 제11413호
개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정부조직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구금·보호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나. 경찰서 유치장 및 사법경찰관리가 직무 수행을 위하여 사람을 조사하고 유치(留置)하거나 수용하는 데에 사용하는 시설
   다. 군 교도소(지소·미결수용실 및 헌병대 영창을 포함한다)
   라. 외국인 보호소
   마. 다수인 보호시설(많은 사람을 보호하고 수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4. "장애"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①이 법에서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2.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2.3.21〉
④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⑤위원 중 4명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한다.
⑥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요구하면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국가재정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7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대통령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①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직
3. 그 밖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1조 삭제〈2005.7.29〉

제12조(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①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와 침해구제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등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는 심의 사항을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성·장애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과 전문위원의 자격·임기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사의 공개)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자문기구) ①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사무처)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7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위원회에 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할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심의 절차,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 3 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관계기관등과의 협의) ①관계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公私) 단체(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정부보고서 작성 시 위원회 의견 청취)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관계 국가행정기관이 정부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2조(자료제출 및 사실 조회) ①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청문회) ①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의 대표자,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등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 또는 의견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시설의 방문조사) ①위원회(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써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 및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을 지정하여 소속 직원 및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위임받은 전문가가 그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할 때에는 소속 직원을 동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위원등"이라 한다)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방문 및 조사를 받는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즉시 방문과 조사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등은 구금·보호시설의 직원 및 구금·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하 "시설수용자"라 한다)과 면담할 수 있고 구술 또는 서면으로 사실이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은 위원등이 시설수용자를 면담하는 장소에 참석할 수 있다. 다만,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녹취하지 못한다.

⑥구금 · 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①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3.21〉

④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2.3.21〉

⑤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와 의견 표명 및 제4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이 통지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12.3.21〉

제26조(인권교육과 홍보) ①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초 · 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③위원회는 인권교육과 인권에 관한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공무원의 채용시험, 승진시험, 연수 및 교육훈련 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8조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장과 협의하여 인권에 관한 연구를 요청하거나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교육내용에 인권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7조(인권도서관) ①위원회는 인권도서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12.3.21〉

②인권도서관은 인권에 관한 국내외의 정보와 자료 등을 수집 · 정리 · 보존하여 일반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2.3.21〉

③삭제〈2012.3.21〉

④인권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3.21〉

[제목개정 2012.3.21]

제28조(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출) ①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係屬) 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4장에 따라 위원회가 조사하거나 처리한 내용에 관하여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위원회는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9조(보고서 작성 등) ①위원회는 해마다 전년도의 활동 내용과 인권 상황 및 개선 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③관계기관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에 관한 의견, 조치 결과 또는 조치 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4 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개정 2012.3.21〉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②삭제〈2005.7.29〉

③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①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진정하려고 하면 그 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소속공무원등"이라 한다)은 그 사람에게 즉시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시설수용자가 위원 또는 위원회 소속 직원 앞에서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소속공무원등은 즉시 그 뜻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소속공무원등은 제1항에 따라 시설수용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즉시 위원회에 보내고 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원을 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항의 통지에 대한 위원회의 확인서 및 면담일정서는 발급받는 즉시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시설수용자가 진정을 원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게 하여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로부터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정을 접수하게 하여야 한다. 이때 진정을 접수한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즉시 접수증명원을 작성하여 진정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의 구금·보호시설의 방문 및 진정의 접수에 관하여는 제24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진정인(진정을 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과 위원 또는 위원회 소속 직원의 면담에는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듣거나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시설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다.

⑦소속공무원등은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할 수 없다.

⑧시설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정서 작성과 제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금·보호시설에서 이행하여야 할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①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却下)한다.

1.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4.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다만,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진정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7.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9. 위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
10. 진정의 취지가 그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진정을 각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을 관계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정을 이송받은 기관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가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그 진정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진정을 각하하거나 이송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진정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 또는 진정인에게 권리를 구제받는 데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제33조(다른 구제 절차와 이송) ①진정의 내용이 다른 법률에서 정한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제출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진정을 그 국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제30조제1항에 따라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과 같은 사안에 관한 수사가 피해자의 진정 또는 고소에 의하여 시작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관할 수사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진정을 이송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송받은 기관은 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진정에 대한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①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조사 목적의 한계) ①위원회는 조사를 할 때에는 국가기관의 기능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부당하게 관여할 목적으로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조사의 방법)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鑑定)
4.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②위원회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장소 또는 시설에 당사자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제1항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피진정인에 대한 출석 요구는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를 한 행위당사자

의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고,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위원회가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자료, 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하려고 하는 경우 관계 국가기관의 장은 그 자료, 물건 또는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위원회에 소명하고 그 자료나 물건의 제출 또는 그 자료, 물건,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관계 국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 국가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1.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 사항인 경우
2. 범죄 수사나 계속 중인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37조(질문 · 검사권) ①위원회는 제36조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이 있는 곳 또는 관계인에 관하여 파악하려면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질문하거나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3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8조(위원의 제척 등) ①위원(제41조에 따른 조정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진정의 당사자이거나 그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진정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진정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진정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 ·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③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진정의 심의 ·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39조(진정의 기각) ①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

1.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 결과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위원회는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 진정의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합의의 권고)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1조(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조정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성·장애 등의 분야별로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장애 등의 분야별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또는 민간단체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③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위원회의 위원인 조정위원 중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2. 제2항에 따른 분야별 조정위원 중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④조정위원의 위촉 및 임기,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⑤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관하여 이 법 및 위원회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제42조(조정위원회의 조정) ①조정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하여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②조정은 조정 절차가 시작된 이후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적은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조정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조정위원회는 조정 절차 중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④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⑤조정위원회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당사자가 제5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제43조(조정위원회의 조정의 효력) 제42조제2항에 따른 조정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42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이행
2. 법령 · 제도 · 정책 ·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②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12.3.21〉

제45조(고발 및 징계권고) ①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이나 군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고발을 받은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고발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①위원회는 제44조 또는 제45조에 따른 권고 또는 조치를 하기 전에 피진정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47조(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①위원회는 진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 요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 요청의 절차 ·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①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의료, 급식, 의복 등의 제공
2.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및 감정 또는 다른 기관이 하는 검증 및 감정에 대한 참여
3.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 장소의 변경
4.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5.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을 그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

6.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명예의 보호, 증거의 확보 또는 증거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및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9조(조사와 조정 등의 비공개) 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조사·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50조(처리 결과 등의 공개) 위원회는 이 장에 따른 진정의 조사 및 조정의 내용과 처리 결과, 관계기관등에 대한 권고와 관계기관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 장 보 칙

제51조(자격 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 조정위원, 자문위원 또는 직원이거나 그 직에 재직하였던 사람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4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관계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 등에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5조(불이익 금지와 지원) ①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 또는 자료 등을 발견하거나 제출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보상의 내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벌 칙

제56조(인권옹호 업무방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 또는 직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2. 위원 또는 직원에게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3. 위계(僞計)로써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람
4. 이 법 제4장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사람

②친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1항제4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57조(진정서 작성 등의 방해) 제31조를 위반하여 진정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자격 사칭) 제51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9조(비밀누설) 제52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60조(긴급구제 조치 방해)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하는 조치를 방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1조(비밀침해) 제31조제6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침해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3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조사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제3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진술서 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 등의 제출요구 및 사실조회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 등을 제출한 자

②제5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법률 제11413호, 2012.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권고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정부조직법)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제1조(시행일) ①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⑲ 및 ⑳ 생략

제7조 생략

【부록 2】

인권문화콘텐츠 개발 현황

구 분	제 목	추 진 내 역
영화	여섯 개의 시선 (2002년)	• 감독 : 박찬욱, 여균동, 임순례, 박광수, 박진표, 정재은 • 주제 : 장애, 이주노동자, 신체조건 등 (110분)
	별별이야기 (2003년)	• 감독 : 박재동, 이성강, 이애림, 권오성, 유진희, 5인팀 • 주제 : 장애, 성차별, 이주노동자, 학력, 외모 등(72분)
	다섯 개의 시선 (2004년)	• 감독 : 박경희, 류승완, 정지우, 장진, 김동원 • 주제 : 장애, 중국동포, 탈북자, 비정규직 등 (112분)
	세 번째 시선 (2005년)	• 감독 : 정윤철, 홍기선, 김현필, 김곡·김선, 노동석, 이미연, 홍기선 • 주제 : 인종, 이주노동자, 성 소수자 등(106분)
	별별이야기2 (2006년)	• 감독 : 권미정, 박용제, 안동희·유정우, 이홍민·이홍수, 정민영, 홍덕표 • 주제 : 다문화가정, 성소수자, 장애, 성역할, 외모, 나이, 성별, 아동 등
	시선1318 (2007년)	• 감독 : 방은진, 전계수, 이현승, 윤성호, 김태용 • 주제 : 청소년인권(124분)
	날아라 팽귄 (2008년)	• 감독 : 임순례 • 주제 : 아동, 여성, 노인(110분)
	시선너머 (2009~2010년)	• 감독 : 강이관, 부지영, 윤성현, 김대승, 신동일 • 주제 : 정보인권, 다문화(124분)
	범죄소년 (2011년)	• 감독 : 강이관 • 주제 :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
	어떤시선 (2012년)	• 감독 : 신아가, 이상철, 박정범, 민용근 • 주제 : 노인, 발달장애인 학생, 양심적 병역거부
	하늘의 황금마차 (2013년)	• 감독 : 오멸 • 주제 : 노인 및 노인복지
만화	십시일反 (2003년)	• 작가 : 홍승우, 이우일, 박재동, 등 10명의 만화가가 참여 • 주제 : 이주노동자, 성차별 등의 주제로 극화, 만평 등 제작
	사이시옷 (2006년)	• 작가 : 유승하, 손문상, 정훈이, 장차현실 등 8명의 만화가 참여 • 주제 : 비혼모, 청소년 인권 등을 주제로 제작
	어깨동무 (2013년)	• 작가 : 유승하, 손문상, 정훈이, 조주희 등 10명의 만화가 참여 • 주제 : 학교인권, 기업인권, 노인인권, 세계인권선언 등을 주제로 제작
사진	눈 밖에 나다 (2003년)	• 곽상필 등 사진작가 9명이 인권현장을 앵글에 담고 해설한 사진집
	어디 핀들 꽃이 아니랴(2005년)	• 성남훈 등 사진작가 10명이 인권현장을 앵글에 담고 공선옥 등 작가 4명이 해설한 사진집
포스터	차별1 (2003년, 16종)	• 작가 : 안상수, 홍성담, 박불똥 등 16명의 시각매체전문가 • 주제 : 이주노동자, 성차별, 소수자차별 등의 주제로 제작
	차별2 (2006년, 10종)	• 작가 : 김현, 서정계, 조선경 등 10명의 시각매체전문가 • 주제 : 시각장애인, 비정규직, 출신민족 등의 주제로 제작
	생활 속 인권 이야기 (2011년, 12종)	• 이주여성, 소년원, 새터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등이 참여한 생활 속의 인권이야기를 표현한 그림 등을 시각매체전문가 안상수 교수가 인권포스터로 디자인하여 창작

【부록 3】

업무협약 체결 현황

기관명	체결일시	업무협약기간	비 고
전남대학교	2006.12. 6.	2006.12. 6.~	
영남대학교	2007. 4.27.	2007. 4.27.~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07.10.26.	2007.10.26.~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07.10.26.	2007.10.26.~	
인하대학교	2007.10.31.	2007.10.31.~	
한양대학교	2007.11. 1.	2007.11. 1.~	
이화여자대학교	2007.11.21.	2007.11.21.~	
고려대학교	2007.11.22.	2007.11.22.~	
UNHCR한국사무소	2007.12. 3.	2007.12. 3.~	
전북대학교	2007.12.21.	2007.12.21.~	
충남대학교	2008. 5. 7.	2008. 5. 7.~	
부산대학교	2008. 5.16.	2008. 5.16.~	
경기도, 안산시	2008. 5.25.	2008. 5.25.~	
광주광역시	2008.10.31.	2008.10.31.~2011.10.30.	
경상대학교	2008.11.18.	2008.11.18.~	
몽골국가인권위원회	2009. 7.24.	2009. 7.24.~2012. 7.23.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09. 8. 1.	2009. 8.14.~2011. 8.13.	
부산교통공사	2009.12.18.	2009.12.18.~2011.12.17.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	2010. 1.29.	2010. 1.29.~2013. 1.28.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3.10.	2010. 3.10.~2012. 3. 9.	
한국장애인고용 공단부산지사	2010. 7.27.	2010. 7.27.~	
서울특별시의회	2010.10.15.	2010.10.15.~제8대지방의회임기종료시	
전라남도	2010.11. 2.	2010.11. 2.~	
법무법인 태평양	2011. 5. 3.	2011. 5. 3.~2013. 5. 2.	
대한정신건강재단	2011. 5.31.	2011. 5.31.~2013. 5.30.	
NHN, 교보문고, 누리미디어	2011. 9.20.	2011. 9.20.~2013. 9.19.(NHN) 2011. 9.20.~2014. 9.19.(교보,누리)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6.20.	2012. 6.20.~과제계약종료시	
충북대학교	2012.10. 9.	2012.10. 9.~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12.13.	2012.12.13.~2014.12.12.	
영화진흥위원회	2013. 1.28.	2013.1.28.~	
대구광역시교육청	2013. 3. 6.	2013.3.6.~	
서울특별시교육청	2013. 7. 9.	2013.7.9.~	
우즈베키스탄국가인권센터	2013. 8.30.	2013. 8. 30.~2016. 8. 29.	
(재)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2013.10.29.	2013.10.29.~	
광주광역시교육청	2013.12.18.	2013.12.18.~	

【부록 4】

인권상황 실태조사 현황

<2002년도> : 29개 과제

연번	과 제 명	연구기관
1	지역사회에서의 노인학대실태조사	한국노인의 전화
2	국내거주 외국인 노동자 인권실태조사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
3	장애인 고용 및 승진 실태조사	대구대학교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4	장애인 차별실태 자료분석을 통한 인권의식 개선방안 연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5	구금시설의 의료실태조사 및 의료권 보장을 위한 연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6	군대내 구금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위한 기초현황 파악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7	군대내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 군내 자살, 구타 및 가혹행위를 중심으로 -	천주교인권위원회
8	인권감수성 조사를 위한 지표개발	서울대학교
9	소년사법 절차상 어린이 · 청소년 인권보호 방안	한양대학교
10	무료 및 실비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례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1	범죄수사 절차상 피의자의 인권침해 현황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2	보안관찰 대상자의 인권침해 사례조사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13	유치장 시설환경 인권실태조사	교도소인권모임
14	공무원 고용상의 평등권 침해에 관한 연구	행정개혁시민연합
15	민간보험 상의 장애인 차별실태조사	법무법인지평
16	B형 간염 보균자에 대한 고용차별 실태조사	서울대 보건대학원
17	여성장애인의 이중차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
18	구금시설 내 진정권 보장 현황 실태조사	원광대학교
19	장애인 특례입학 전형제도 실행 이후 학내 지원체계 현황조사	한국재활복지대학
20	취학 연기로 인한 취업연령 제한에 따른 장애인 고용차별실태조사	동의대학교
21	시국관련 법령의 입법결정 및 사법결정에 대한 실증적 연구	건국대학교
22	한국 내 양심적 집총거부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고려대학교
23	정보화로 인한 프라이버시권 침해법령 조사 연구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24	교사의 인권의식 조사 연구	부산교육연구소
25	부랑인 시설내 노인인권 현황조사	한국도시연구소
26	아동청소년관련 법령 검토(가정폭력법,특례법)	동해대/연세대/전북대/해람합동법률사무소
27	아동청소년관련 법령 검토(청소년보호법)	
28	아동청소년관련 법령 검토(노동관련법)	
29	아동청소년관련 법령 검토(아동복지법)	

<2003년도> : 23개 과제

연번	과 제 명	연구기관
1	국내 거주 화교의 인권실태조사	성공회대학교
2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인권실태조사	한국사회학회
3	기지촌 지역 혼혈아동 인권실태조사	두 레 방
4	금융기관과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공유현황 실태조사	함께하는시민행동
5	차별관련 법령 실태조사	한국여성개발원
6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
7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의 유형분석 및 지침개발	한국외국어대
8	국가보안법 적용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9	구금시설 내 여성수용자 인권실태조사	한림대학교
10	군 수사과정 및 군 영창 인권상황 실태조사	원광대학교
11	사회보호법 관련 인권실태조사	대구가톨릭대
12	비정규직 노동자 건강권 보장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강원대학교
13	군 사법제도 운영 및 인권침해 현황 실태조사	울산대학교
14	사형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한국도시연구소
15	'사회적 배제' 의 관점에서 본 빈곤층 실태연구	코리아데이타네트워크
16	군대 내 성폭력 현황 실태조사	한국성폭력상담소
17	구금시설 평가지침서 개발연구	경원대학교
18	규제완화 이후 산업안전 보건정책의 변화와 노동자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조사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19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의 차별관련 실태조사	한국공법학회
20	성별 등 차별시정 국가정책계획(NAP) 수립을 위한 기초현황조사	한국여성개발원
21	장애 및 병력 차별시정 국가정책계획(NA)P) 수립을 위한 기초현황조사	한국재활복지대학
22	연령,학벌,학력 국가정책계획(NAP) 수립을 위한 기초현황조사	(사)국제노동법연구원
23	비정규직 차별시정 국가정책계획(NAP) 수립을 위한 기초현황조사	(사)서울사회경제연구소

<2004년도> : 26개 과제

연번	과 제 명	연구기관
1	경제,사회,문화적권리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회보장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기초현황조사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	경제,사회,문화적권리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회보장 (4대 사회보험) 기초현황조사	중앙대학교
3	경제,사회,문화적권리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거권 기초현황조사	한국도시연구소
4	경제,사회,문화적권리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건강권 기초현황조사	서울대보건대학원
5	경제,사회,문화적권리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노동권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3권)기초현황조사	(사)국제노동법연구원
6	경제,사회,문화적권리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노동권 (개별적 노사관계: 노동조건, 기업복지) 기초현황조사	(사)한국노동사회연구소
7	경제,사회,문화적권리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권 기초현황조사	한국교육개발원
8	경제,사회,문화적권리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노인권 기초현황조사	밝은노후를만들어 가는사람들의모임
9	경제,사회,문화적권리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아동권 기초현황조사	(사)광주사회조사연구소
10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한양대학교
11	수용자의 인권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2	집회/결사의 자유 분야 NAP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3	양심/종교의 자유 분야 NAP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14	시민적·정치적 권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15	피의자, 피고인, 증인, 참고인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6	인터넷 및 정보통신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서울산업대학교
17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18	외국인 분야 NAP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사)한국조사연구학회
19	문화권 NAP수립을 위한 기초현황실태조사와 정책연계방안	문화사회연구소
20	환경권 NAP수립을 위한 기초현황실태조사와 정책연계방안	녹색연합
21	NAP수립을 위한 성적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	일다
22	국민인권의식조사	㈜ 한국리서치
23	생명윤리법 개정안 및 생명윤리 가이드라인 초안개발을 위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4	원폭피해 2세의 기초현황과 건강실태조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25	차별금지법이 국가의 재정부담에 미치는 효과	한국노동연구원
26	색각이상자의 고용등에 대한 차별 연구	한림대학교

<2005년도> : 17개 과제

연번	과 제 명	연구기관
1	개발사업지역 세입자 등 주거빈곤층 주거권 보장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사)한국도시연구소
2	한센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3	국내탈북자의 인권상황 개선에 관한 연구	(재)국제평화전략 연구원
4	미등록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	전북대
5	청소년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연구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 운동본부
6	사업장 감시시스템이 노동인권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7	HIV 감염인 및 AIDS환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인하대 총장
8	노숙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성공회대 산학협력단
9	장애인 시설생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0	주민등록번호 사용현황 실태조사	건국대 산학협력단
11	학령기 장애아동 통합교육 현황 실태조사	한국재활복지대학
12	인권관련 정부공식통계에 대한 실태조사	새사회연대
13	전의경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천안대 산학협력단
14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 마련을 위한 연구	광주대 산학협력단
15	진정직업자격 등 고용차별 판단기준에 대한 외국판례조사	법률사무소 이안
16	군대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성공회대 산학협력단
17	단수·단수 등으로 인한 인권상황실태조사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06년도> : 24개 과제

연번	과 제 명	연구기관
1	실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실태조사(교육권·학습권·건강권 관점에서)	한국청소년개발원
2	중·고등학교 학생 인권상황 실태조사(두발·용모제한 등 학교생활규정의 인권침해 조사 중심)	사)청소년교육전략21
3	여성공무원 배치 및 승진 차별 실태조사	이화여대 산학협력단
4	특수고용 종사자 노동권 침해 실태조사(5개 직군을 중심으로)	사)한국노동사회연구소
5	출소자의 사회적 차별 실태조사(성인을 중심으로)	동국대 산학협력단
6	중증장애인 생활 실태조사(활동보조인 서비스제도를 중심으로)	연세대 산학협력단
7	학생 운동선수 등에 대한 폭력 실태조사(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연세대 산학협력단
8	노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실태조사 (개인적 및 제도적 차별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성서대산학협력단
9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이화여대 산학협력단
10	경비교도대 인권상황실태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1	선진외국의 인권교육 우수사례 실태조사 (언론인·기업인·사회복지공무원을 중심으로)	사)유엔인권정책센터
12	지역사회 정신지체장애인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3	청소용역 노동자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사)비정규노동센터
14	사회권 규약 해설집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	배제대외 2
15	차별판단지침에 대한 외국 사례조사	중앙대산학협력단 외 3
16	주민등록말소자의 기초생활 실태조사	한국빈곤문제연구소
17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실태조사	한국도시연구소
18	아동학대 실태조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19	지방자치단체의 정신보건업무 수행 실태조사	대구대 산학협력단
20	국내·외 공공분야 인권교육 실태조사	성공회대 산학협력단
21	정신장애인 인권개선 법제 연구	한양대 산학협력단
22	사회복지시설 운영합리화 법제연구	가톨릭대 산학협력단
23	외국 군인사 복무 관련 법령 및 제도 등 실태조사	건국대 산학협력단
24	개인정보 수집 저장 이용의 적법성과 한계/ 헌법 및 국제인권법의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의 취급기준과 그 한계	전북대 산학협력단

<2007년도> : 14개 과제

연번	과 제 명	연구기관
1	새터민 정착과정실태조사	이화여대 산학협력단
2	공적개발원조정책의 문제점과 수혜국의 인권증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권재단
3	수사, 재판, 형집행과정에서의 장애인 차별실태조사	한남대 산학협력단
4	경찰관서 인권상황 평가지표 개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	인권친화적 초중등 인권교육 체계화 연구	경인교대 산학협력단
6	빈곤층아동급식제도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	노동사건에 대한 형벌적용 실태조사	법률사무소 새날
8	재판과정에서의 국제인권기준 적용연구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8	자유권실현현황과 방향정립에 관한 실태조사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10	유통업 여성비정규직 차별 및 노동권 침해 실태조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1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과 학습권 인권실태조사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12	노인복지서비스에서의 노인건강권 보장 실태조사	시민건강연구소
13	아동권리협약과 소년사법 연구	동아대학교
14	사회권 지표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2008년도> : 11개 과제

연번	과 제 명	연구기관
1	무기계약근로자 차별 및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2	콜센터 텔레마케터 여성비정규직 인권 상황 실태조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3	국내 난민 등 인권상황 실태 조사	법무법인 소명
4	주요기업의 인권정책 현황 분석과 한국형 기업인권가이드라인 연구	(사)기업책임시민센터
5	기업활동과 인권에 관한 시민의식 실태조사 연구	위즈덤센터
6	평생학습에서의 인권교육 접목방안 연구(지방자치단체 평생학습도시의 사례 중심)	사)청소년교육전략21
7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 스포츠 성폭력 실태 및 중·고교 학생선수 중심	이화여대 산학협력단
8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보호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울산대 산학협력단
9	사회적약자 소수자 관련 조례 실태조사	부산대 산학협력단
10	특히 취약한 계층의 정신보건 및 인권실태 조사	동국대 산학협력단
11	인권 관점에서 다문화이해교육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대 산학협력단

<2009년도> : 8개 과제

연번	과 제 명	연구기관
1	개인정보 수집·유통 실태조사	진보네트워크 참세상
2	중도탈락 학생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고려대 산학협력단
3	노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서울대 산학협력단
4	비주택 거주민 인권상황 실태조사	(사)한국도시연구소
5	임금차별 판단기준 연구(성, 나이차별을 중심으로)	법률사무소 이안
6	기업의 인권경영에 관한 모범사례 연구 및 '자가진단도구' 개발	(사)기업책임시민센터
7	여성 연예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8	대학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2010년도> : 7개 과제

연번	과 제 명	연구기관
1	민간부문 CCTV 설치 및 운영 실태조사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
2	구금시설 수용자의 건강권 실태조사	인권의학연구소
3	아동복지시설 아동인권상황 실태조사	동국대 산학협력단
4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대학생 학생선수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5	주취자 인권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경찰대학 산학협력단
6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조사	외국인 이주노동자 협의회
7	지자체 인권친화적 다문화사업 가이드라인 마련 실태조사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년도> : 8개 과제

연번	과 제 명	연구기관
1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2	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3	고문피해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사)인권의학연구소
4	기업 채용과정의 차별관행에 대한 실태조사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5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인권교육 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6	정부 정보자원의 인권적 관리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7	인권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각국의 사례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8	문화,체육,스포츠 등 특수산업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

<2012년도> : 8개 과제

연번	과 제 명	연구기관
1	사이버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실태조사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2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3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및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
4	대학교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5	노인 집중취업분야 인권상황 실태조사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
6	간접고용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7	종교에 의한 차별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종교자유정책연구원
8	보육교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김연아동발달지원센터

<2013년도> : 8개 과제

연번	과 제 명	연구기관
1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사)한국노동사회연구소
2	감시단속직 노인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울산대 산학협력단
3	탈북청소년 교육권 실태조사	중앙대 산학협력단
4	주요 언론의 인권보도준칙 실태조사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5	영장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고려대 산학협력단
6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사)이주민과 함께
7	세계 국가인권기구 현황 연구	(사)휴먼아시아
8	국제인권시스템 현황에 관한 연구	숭실대 산학협력단

【부록 5】

주요 국제인권협약 가입현황

분류	협 약 명	협약채택일/ 발효일	가입서/비준서 기탁일/ 발효일
국제인권 장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66. 12. 16. 76. 1. 3.	90. 4. 10. 90. 7. 10.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66. 12. 16. 76. 3. 23.	90. 4. 10. 90. 7. 10.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66. 12. 16. 76. 3. 23.	90. 4. 10. 90. 7. 10.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89. 12. 15. 91. 7. 11.	미가입
차별방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65. 12. 21. 69. 1. 4.	78. 12. 5. 79. 1. 4.
	고용과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 (ILO협약 no.111) Convention Concerning Discrimination in respect to Employment and Occupation	58. 6. 25. 60. 6. 15.	98. 12. 4. 99. 12. 4.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 (ILO협약 no.100) Convention Concerning Equal Remuneration for Men and Women Workers for Work of Equal Value	51. 6. 29. 53. 5. 23.	97. 12. 8. 98. 12. 8.
여성의 권리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79. 12. 18. 81. 9. 3.	84. 12. 27. 85. 1. 26.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99. 10. 6. 00. 12. 22.	06. 10. 18. 07. 1. 18.
	부녀자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Political Rights of Women	53. 3. 31. 54. 7. 7.	59. 6. 23. 59. 9. 21.

주 : 1) 외교부 홈페이지(이슈별 자료실－조약과 국제법－조약정보－다자조약)

2) UN Treaty Collection(http://treaties.un.org)

분류	협 약 명	협약채택일/ 발효일	가입서/비준서 기탁일/ 발효일
아동의 권리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89. 11. 20. 90. 9. 2.	91. 11. 20. 91. 12. 20.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00. 5. 25. 02. 2. 12.	04. 9. 24. 04. 10. 24.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00. 5. 25. 02. 1. 18.	04. 9. 24. 04. 10. 24.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권리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06. 12. 13. 08. 5. 3.	08. 12. 11. 09. 1. 10.
	장애인권리 협약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06. 12. 13. 08. 5. 3.	미가입
강제근로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 (ILO협약 no.29) Forced Labour Convention	30. 6. 7. 34. 1. 1.	
	강제근로의 폐지에 관한 협약 (ILO협약 no.105) Abolition of Forced Labour Convention	57. 6. 25. 59. 1. 17.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50. 3. 21. 51. 7. 25.	62. 2. 13. 62. 5. 14.
고문방지 및 강제실종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84. 12. 10. 87. 6. 26.	95. 1. 9. 95. 2. 8.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02. 12. 18. 06. 6. 22.	미가입
	강제적 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s	06. 12. 20. 10. 12. 23.	미가입
근로권, 공정한 고용조건의 권리	고용 정책에 관한 협약 (ILO협약 no.122) Convention Concerning Employment Policy	64. 7. 9. 66. 7. 15.	92. 12. 9. 93. 12. 9.
	기업의 근로자대표에게 제공되는 보호 및 편의에 관한 협약(ILO협약 no.135) Convention concerning Protection and Facilities to be Afforded to Workers' Representatives in the Undertaking	71. 6. 23. 73. 6. 30.	01. 12. 27. 02. 12. 27.

분류	협 약 명	협약채택일/ 발효일	가입서/비준서 기탁일/ 발효일
결사의 자유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ILO협약 no.87)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s to Organize Convention	48. 7. 9. 50. 7. 4.	
	단결권 및 단체교섭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ILO협약 no.98) Right to Organiz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49. 7. 1. 51. 7. 18.	
	단체교섭 촉진에 관한 협약 (ILO협약 no.154)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motion of Collective Bargaining	81. 6. 19. 83. 8. 11.	
혼인	혼인의 동의, 혼인을 위한 최소연령 및 혼인신고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Consent to Marriage, Minimum Age for Marriage and Registration of Marriages	62. 12. 10. 64. 12. 9.	
이주자의 권리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90. 12. 18. 03. 7. 1.	미가입
국적, 무국적자, 난민	기혼여성의 국적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Nationality of Married Women	57. 2. 20. 58. 8. 11.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54. 9. 28. 60. 6. 6.	62. 8. 22. 62. 11. 20.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51. 7. 28. 54. 4. 22.	92. 12. 3. 93. 3. 3.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67. 1. 31. 67. 10. 4.	92. 12. 3. 92. 12. 3.
전범, 인도에 반하는 죄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48. 12. 9. 51. 1. 12.	50. 10. 14. 51. 1. 12.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공소시효 부적용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68. 11. 26. 70. 11. 11.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98. 7. 17. 02. 7. 1.	02. 11. 13. 03. 2. 1.

【부록 6】

국내 인권통계 인용자료 목록

자료명	발간부처	발간일	조사기준일	발간주기
경찰통계연보	경찰청	2013.10.	2012.12.31.	매년
고령자 통계	통계청	2013.9.	2012.12.31.	매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	고용노동부	2014.6.	2013.6.	매년
교육통계연보	교육부	2014.	2013.12.31.	매년
국방통계연보	국방부		2012.12.31.	매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보건복지부	2014.6.	2013.12.31.	매년
범죄백서	법무부	2014.3.	2012.12.31.	매년
법무연감	법무부	2013.7.	2012.12.31.	매년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2013.11.	2012.12.31.	매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2014.	2013.12.31.	매년
사교육비조사 보고서	통계청	2014.4.	2013.12.31.	매년
사법연감	대법원	2013.8.	2012.12.31.	매년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2014.9.	2013.12.31.	매년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	안전행정부	2014.4.	2014.1.1.	매년
정보격차 지수 및 실태조사 보고서	미래창조과학부	2014.3.	2013.12.31.	매년
재외동포현황	법무부	2014.	2013.12.31.	매년
제2기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백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4.4.	2013.12.31.	-
청소년백서	여성가족부	2013.12.	2013.	매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법무부	2014.5.	2013.12.31.	매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통계청	2014.6.	2013.12.31.	매년
통일백서	통일부	2014.3.	2013.12.31.	매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교육부	2013.9.	2013.4.1.	매년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2014.3.	2013.12.31.	매년
한국의 성 인지 통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2.26.	2013.	매년
한국의 종교 현황	문화체육관광부	2012.3.		5년
한국통계연감	통계청	2014.3.	2013.12.31.	매년
안전행정통계연보	안전행정부	2014.6.	2013.12.31.	매년
환경통계연감	환경부	2013.12.	2012.12.31.	매년

【부록 7】

표 목 차

제1부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표 1-1-1〉 인권정책 권고 등 연도별 현황 ····· 10
〈표 1-1-2〉 국제인권규약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현황 ····· 11
〈표 1-1-3〉 법원 및 헌법재판소 의견제출 현황 ····· 11
〈표 1-2-1〉 연도별 권고수용현황 ····· 12
〈표 1-2-2〉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 12
〈표 1-2-3〉 2013년 피권고기관별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 13
〈표 1-2-4〉 2013년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별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 14
〈표 1-2-5〉 2013년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별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 15
〈표 1-2-6〉 2013년 시·도교육청별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 16
〈표 1-2-7〉 권고이행계획 90일 이내 회신현황 ····· 16
〈표 1-3-1〉 이주 인권정책 권고 또는 의견표명, 의견제출 현황 ····· 17
〈표 1-3-2〉 이주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 17
〈표 1-3-3〉 2013년 피권고기관별 이주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 18
〈표 1-3-4〉 여성·성소수자 인권정책 권고 또는 의견표명, 의견제출 현황 ····· 18
〈표 1-3-5〉 여성·성소수자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 19
〈표 1-3-6〉 2013년 피권고기관별 여성·성소수자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 19
〈표 1-3-7〉 장애인 인권정책 권고 또는 의견표명, 의견제출 현황 ····· 19
〈표 1-3-8〉 장애인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 20
〈표 1-3-9〉 2013년 피권고기관별 장애인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 20
〈표 1-3-10〉 북한 인권정책 권고 또는 의견표명, 의견제출 현황 ····· 21
〈표 1-3-11〉 북한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 21
〈표 1-3-12〉 인권교육 정책 권고 또는 의견표명, 의견제출 현황 ····· 22
〈표 1-3-13〉 인권교육 정책 권고 수용현황 ····· 22
〈표 1-3-14〉 2013년 피권고기관별 인권교육 정책 권고 수용현황 ····· 22
〈표 1-4-1〉 인권상황실태조사 현황 ····· 23
〈표 1-4-2〉 분야별 인권상황실태조사 현황 ····· 23
〈표 1-4-3〉 연구용역 현황 ····· 24
〈표 2-1-1〉 인권상담 · 민원/안내 현황 ····· 25
〈표 2-1-2〉 부서별 상담 현황 ····· 26
〈표 2-1-3〉 부서별 상담 경로별 현황 ····· 26
〈표 2-1-4〉 인권순회상담 현황 ····· 27

〈표 2-1-5〉 부서별 인권순회상담 현황 ····· 27
〈표 2-1-6〉 상담신청인 지역별 현황 ····· 28
〈표 2-1-7〉 상담신청인 성별 현황 ····· 28
〈표 2-1-8〉 상담신청인 연령별 현황 ····· 28
〈표 2-1-9〉 유형별 상담 현황 ····· 29
〈표 2-1-10〉 기관별 인권침해 상담 현황 ····· 29
〈표 2-1-11〉 검찰 인권침해 유형별 상담 현황 ····· 30
〈표 2-1-12〉 경찰 인권침해 유형별 상담 현황 ····· 31
〈표 2-1-13〉 군 인권침해 유형별 상담 현황 ····· 32
〈표 2-1-14〉 구금시설 인권침해 유형별 상담 현황 ····· 32
〈표 2-1-15〉 다수인보호시설 인권침해 유형별 상담 현황 ····· 33
〈표 2-1-16〉 출입국관리기관 인권침해 유형별 상담 현황 ····· 33
〈표 2-1-17〉 각급 학교 인권침해 유형별 상담 현황 ····· 33
〈표 2-1-18〉 기관별 차별행위 상담 현황 ····· 34
〈표 2-1-19〉 차별행위 사유별 상담 현황 ····· 34
〈표 2-1-20〉 차별행위 영역별 상담 현황 ····· 35
〈표 2-1-21〉 기타 상담 내용별 현황 ····· 35
〈표 2-1-22〉 상담 처리결과 현황 ····· 36
〈표 2-1-23〉 접수처별 상담 처리결과 현황 ····· 36
〈표 2-1-24〉 면전진정 신청 및 처리 현황 ····· 37
〈표 2-1-25〉 부서별 면전진정 처리 현황 ····· 37
〈표 2-1-26〉 구금 · 보호시설별 면전진정 신청 및 처리 현황 ····· 38
〈표 2-1-27〉 면전진정 처리 소요일수 ····· 38
〈표 2-2-1〉 민원 내용별 처리 현황 ····· 39
〈표 2-2-2〉 부서별 민원 처리 현황 ····· 39
〈표 2-2-3〉 안내 내용별 현황 ····· 40
〈표 2-2-4〉 부서별 안내 처리 현황 ····· 40
〈표 3-1-1〉 유형별 진정 접수 현황 ····· 42
〈표 3-1-2〉 경로별 진정 접수 현황 ····· 43
〈표 3-1-3〉 진정인 지역별 현황 ····· 44
〈표 3-1-4〉 진정인 성별 현황 ····· 44
〈표 3-1-5〉 진정인 연령별 현황 ····· 44
〈표 3-1-6〉 헌법상 기본권별 인권침해 진정 접수 현황 ····· 45
〈표 3-1-7〉 주요 기관별 인권침해 진정 접수 현황 ····· 46
〈표 3-1-8〉 검찰 인권침해 내용별 진정 접수 현황 ····· 47
〈표 3-1-9〉 경찰 인권침해 내용별 진정 접수 현황 ····· 48
〈표 3-1-10〉 군 인권침해 내용별 진정 접수 현황 ····· 49

〈표 3-1-11〉 구금시설 인권침해 내용별 진정 접수 현황 ····· 49
〈표 3-1-12〉 다수인보호시설 인권침해 내용별 진정 접수 현황 ····· 50
〈표 3-1-13〉 출입국관리기관 인권침해 내용별 진정 접수 현황 ····· 50
〈표 3-1-14〉 각급 학교 인권침해 내용별 진정 접수 현황 ····· 50
〈표 3-1-15〉 주요 기관별 차별행위 진정 접수 현황 ····· 51
〈표 3-1-16〉 사유별 차별행위 진정 접수 현황 ····· 52
〈표 3-1-17〉 영역별 차별행위 진정 접수 현황 ····· 53
〈표 3-1-18〉 2013년 영역 및 사유별 차별행위 진정 접수 현황 ····· 54
〈표 3-1-19〉 주요 기관별 성희롱 진정 접수 현황 ····· 56
〈표 3-1-20〉 차별 영역별 성희롱 진정 접수 현황 ····· 56
〈표 3-1-21〉 성희롱 진정의 성별 당사자 현황 ····· 57
〈표 3-1-22〉 성희롱 진정의 연령대별 피해자 현황 ····· 57
〈표 3-1-23〉 장애 차별행위 진정 접수 현황 ····· 58
〈표 3-1-24〉 장애 유형별 진정 접수 현황 ····· 58
〈표 3-1-25〉 장애차별 영역별 진정 접수 현황 ····· 58
〈표 3-1-26〉 기타 진정 내용별 접수 현황 ····· 59
〈표 3-2-1-1〉 진정 처리결과 현황 ····· 60
〈표 3-2-1-2〉 진정 처리결과 – 기각 사유별 ····· 61
〈표 3-2-1-3〉 진정 처리결과 – 각하 사유별 ····· 61
〈표 3-2-1-4〉 진정 처리결과 – 진정 처리 소요일수 현황 ····· 62
〈표 3-2-2-1〉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63
〈표 3-2-2-2〉 2013년 주요 기관별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64
〈표 3-2-2-3〉 2013년 헌법상 기본권별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65
〈표 3-2-2-4〉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기각 사유별 ····· 66
〈표 3-2-2-5〉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각하 사유별 ····· 66
〈표 3-2-2-6〉 부서별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본부 ····· 67
〈표 3-2-2-7〉 부서별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부산인권사무소 ····· 67
〈표 3-2-2-8〉 부서별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광주인권사무소 ····· 67
〈표 3-2-2-9〉 부서별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대구인권사무소 ····· 68
〈표 3-2-2-10〉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진정 처리 소요일수 현황 ····· 68
〈표 3-2-2-11〉 2013년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검, 경, 군) – 내용별 ····· 69
〈표 3-2-2-12〉 검찰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70
〈표 3-2-2-13〉 검찰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기각·각하 사유별 ····· 70
〈표 3-2-2-14〉 2013년 검찰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내용별 ····· 71
〈표 3-2-2-15〉 경찰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72
〈표 3-2-2-16〉 경찰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기각·각하 사유별 ····· 72

〈표 3-2-2-17〉 2013년 경찰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내용별 ····· 73
〈표 3-2-2-18〉 군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74
〈표 3-2-2-19〉 군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기각·각하 사유별 ····· 74
〈표 3-2-2-20〉 2013년 군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내용별 ····· 75
〈표 3-2-2-21〉 구금시설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76
〈표 3-2-2-22〉 구금시설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기각·각하 사유별 ····· 76
〈표 3-2-2-23〉 구금시설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부서별 ····· 77
〈표 3-2-2-24〉 2013년 구금시설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내용별 ····· 78
〈표 3-2-2-25〉 다수인보호시설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78
〈표 3-2-2-26〉 다수인보호시설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기각·각하 사유별 ····· 79
〈표 3-2-2-27〉 다수인보호시설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부서별 ····· 79
〈표 3-2-2-28〉 2013년 다수인보호시설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내용별 ····· 80
〈표 3-2-2-29〉 출입국관리기관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80
〈표 3-2-2-30〉 출입국관리기관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기각·각하 사유별 ····· 80
〈표 3-2-2-31〉 2013년 출입국관리기관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내용별 ····· 81
〈표 3-2-2-32〉 각급학교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81
〈표 3-2-2-33〉 각급학교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기각·각하 사유별 ····· 82
〈표 3-2-2-34〉 2013년 각급학교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내용별 ····· 82
〈표 3-2-3-1〉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83
〈표 3-2-3-2〉 2013년 사유별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84
〈표 3-2-3-3〉 2013년 영역별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85
〈표 3-2-3-4〉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기각 사유별 ····· 86
〈표 3-2-3-5〉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각하 사유별 ····· 86
〈표 3-2-3-6〉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진정 처리 소요일수 ····· 87
〈표 3-2-3-7〉 성별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87
〈표 3-2-3-8〉 성별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기각·각하 사유별 ····· 87
〈표 3-2-3-9〉 2013년 성별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 88
〈표 3-2-3-10〉 임신 또는 출산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89
〈표 3-2-3-11〉 임신 또는 출산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기각·각하 사유별 ····· 89
〈표 3-2-3-12〉 2013년 임신 또는 출산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 90
〈표 3-2-3-13〉 혼인여부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91
〈표 3-2-3-14〉 혼인여부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기각·각하 사유별 ····· 91
〈표 3-2-3-15〉 2013년 혼인여부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 92
〈표 3-2-3-16〉 나이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93
〈표 3-2-3-17〉 나이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기각·각하 사유별 ····· 93
〈표 3-2-3-18〉 2013년 나이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 94

〈표 3-2-3-19〉 인종 등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95
〈표 3-2-3-20〉 인종 등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기각·각하 사유별 ····· 95
〈표 3-2-3-21〉 2013년 인종 등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 96
〈표 3-2-3-22〉 용모·신체조건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97
〈표 3-2-3-23〉 용모·신체조건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기각·각하 사유별 ····· 97
〈표 3-2-3-24〉 2013년 용모·신체조건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 98
〈표 3-2-3-25〉 학력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99
〈표 3-2-3-26〉 학력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기각·각하 사유별 ····· 99
〈표 3-2-3-27〉 2013년 학력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 100
〈표 3-2-3-28〉 병력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101
〈표 3-2-3-29〉 병력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기각·각하 사유별 ····· 101
〈표 3-2-3-30〉 2013년 병력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 102
〈표 3-2-3-31〉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103
〈표 3-2-3-32〉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기각·각하 사유별 ····· 103
〈표 3-2-3-33〉 2013년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 104
〈표 3-2-3-34〉 사회적 신분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105
〈표 3-2-3-35〉 사회적 신분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기각·각하 사유별 ····· 105
〈표 3-2-3-36〉 2013년 사회적 신분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 106
〈표 3-2-3-37〉 기타사유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107
〈표 3-2-3-38〉 기타사유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기각·각하 사유별 ····· 107
〈표 3-2-3-39〉 2013년 기타사유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 108
〈표 3-2-3-40〉 성희롱 진정 처리결과 ····· 109
〈표 3-2-3-41〉 성희롱 진정 처리결과 – 기각·각하 사유별 ····· 109
〈표 3-2-3-42〉 2013년 성희롱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 110
〈표 3-2-3-43〉 장애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111
〈표 3-2-3-44〉 장애 진정 처리결과 – 기각·각하 사유별 ····· 111
〈표 3-2-3-45〉 장애차별 인용 현황 – 영역별 ····· 111
〈표 3-2-3-46〉 2013년 장애차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 112
〈표 3-2-4-1〉 기타 진정 처리결과 ····· 113
〈표 3-2-4-2〉 기타 진정 처리결과 – 기각 사유별 ····· 113
〈표 3-2-4-3〉 기타 진정 처리결과 – 각하 사유별 ····· 114
〈표 3-2-4-4〉 기타 진정 처리결과 – 진정 처리 소요일수 ····· 114
〈표 3-3-1〉 조사중 해결 및 구제율 현황 ····· 115
〈표 3-3-2〉 진정사건 연도별 권고수용현황 ····· 116
〈표 3-3-3〉 2013년 진정사건 권고수용현황 ····· 116
〈표 3-3-4〉 2013년 피권고기관별 진정사건 권고수용현황 ····· 117

〈표 3-3-5〉 인권침해 진정사건 권고수용현황 ····· 117
〈표 3-3-6〉 2013년 피권고기관별 인권침해 진정사건 권고수용현황 ····· 118
〈표 3-3-7〉 차별행위 진정사건 권고수용현황 ····· 118
〈표 3-3-8〉 2013년 피권고기관별 차별행위 진정사건 권고수용현황 ····· 119
〈표 3-3-9〉 기타 진정사건 권고수용현황 ····· 119
〈표 3-3-10〉 긴급구제 결정 및 결정 내용 ····· 120
〈표 3-3-11〉 진정사건 권고이행계획 90일 이내 회신현황 ····· 120
〈표 3-4-1〉 직권조사 결정 및 처리 현황 ····· 121
〈표 3-4-2〉 직권조사 권고수용현황 ····· 121
〈표 3-4-3〉 2013년 피권고기관별 직권조사 권고수용현황 ····· 122
〈표 3-4-4〉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정 및 처리 현황 ····· 122
〈표 3-4-5〉 인권침해 직권조사 권고수용현황 ····· 122
〈표 3-4-6〉 2013년 피권고기관별 인권침해 직권조사 권고수용현황 ····· 123
〈표 3-4-7〉 차별행위 직권조사 결정 및 처리 현황 ····· 123
〈표 3-4-8〉 차별행위 직권조사 권고수용현황 ····· 123
〈표 3-4-9〉 2013년 피권고기관별 차별행위 직권조사 권고수용현황 ····· 124
〈표 3-4-10〉 방문조사 결정 및 처리 현황 ····· 124
〈표 3-4-11〉 방문조사 권고수용현황 ····· 125
〈표 3-4-12〉 2013년 피권고기관별 방문조사 권고수용현황 ····· 125
〈표 3-4-13〉 구금·보호시설별 방문조사 현황 ····· 125
〈표 3-4-14〉 다수인보호시설별 방문조사 현황 ····· 126
〈표 4-1-1〉 인권교육 실시 현황 ····· 128
〈표 4-1-2〉 교육과정 운영 현황 ····· 129
〈표 4-1-3〉 방문프로그램 운영 현황 ····· 129
〈표 4-1-4〉 부서별 방문프로그램 운영 현황 ····· 129
〈표 4-1-5〉 사이버인권교육 대상별 이수 현황 ····· 130
〈표 4-1-6〉 과정별 사이버인권교육 실시 현황 ····· 130
〈표 4-1-7〉 인권특강 현황 ····· 131
〈표 4-1-8〉 지역별 인권특강 실시 현황 ····· 131
〈표 4-2-1〉 인권현장방문 현황 ····· 132
〈표 4-2-2〉 보조금 지원 현황 ····· 132
〈표 4-3-1〉 국제회의 개최 현황 ····· 132
〈표 4-3-2〉 국제회의 등 참가 현황 ····· 133
〈표 4-3-3〉 외빈(국가, 인권단체 등) 방문 현황 ····· 133
〈표 5-1-1〉 전원위원회 운영 현황 ····· 135
〈표 5-1-2〉 상임위원회 운영 현황 ····· 135

〈표 5-1-3〉 침해구제제1위원회 운영 현황 ····· 136
〈표 5-1-4〉 침해구제제2위원회 운영 현황 ····· 136
〈표 5-1-5〉 차별시정위원회 운영 현황 ····· 136
〈표 5-1-6〉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운영 현황 ····· 137
〈표 5-1-7〉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운영 현황 ····· 137
〈표 5-1-8〉 조정위원회 개최 현황 ····· 138
〈표 5-1-9〉 조정신청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 138
〈표 5-1-10〉 차별조정위원회 조정신청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 138
〈표 5-1-11〉 성차별조정위원회 조정신청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 139
〈표 5-1-12〉 장애차별조정위원회 조정신청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 139
〈표 5-1-13〉 인권침해조정위원회 조정신청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 139
〈표 5-1-14〉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 현황 ····· 140
〈표 5-1-15〉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현황 ····· 140
〈표 5-1-16〉 사회권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 140
〈표 5-1-17〉 인권교육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 141
〈표 5-1-18〉 국제인권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 142
〈표 5-1-19〉 자유권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 142
〈표 5-1-20〉 차별시정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 143
〈표 5-1-21〉 장애인인권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 143
〈표 5-1-22〉 정보인권 특별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 144
〈표 5-2-1〉 조직 및 정원 현황 ····· 145
〈표 5-2-2〉 2013년도 직급별 정원 현황 ····· 145
〈표 5-2-3〉 연도별 예산 추이 ····· 146
〈표 5-2-4〉 2013년 주요사업별 예산 현황 ····· 146
〈표 5-2-5〉 인권도서관 장서 보유현황 ····· 147
〈표 5-2-6〉 인권도서관 이용현황 ····· 148
〈표 5-2-7〉 정보공개 현황 ····· 148
〈표 5-2-8〉 비공개(부분공개) 사유별 현황 ····· 149
〈표 5-2-9〉 정보공개 불복신청 및 처리현황 ····· 150
〈표 5-2-10〉 청문회 개최 현황 ····· 150
〈표 5-2-11〉 업무협약 체결 현황 ····· 151
〈표 5-2-12〉 대한민국 인권상 및 인권보도상 시상 현황 ····· 151
〈표 5-2-13〉 과태료 부과 현황 ····· 152
〈표 5-2-14〉 과태료 부과 내역 ····· 152
〈표 5-2-15〉 보상금 지급 현황 ····· 152

제2부 국내 인권통계

〈표 1-2-1〉 총인구, 인구성장률 ····· 156
〈표 1-2-2〉 성 및 연령별 인구 ····· 157
〈표 1-2-3〉 지역별 인구 ····· 158
〈표 2-1-1〉 여성가구주 ····· 160
〈표 2-1-2〉 강력범죄(흉악)1) 피해자 중 여성비율 ····· 161
〈표 2-1-3〉 성폭력 발생(검거) 건수 현황 ····· 161
〈표 2-1-4〉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범죄위험) ····· 162
〈표 2-1-5〉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및 대처방법 ····· 162
〈표 2-1-6〉 성별 경제활동인구 ····· 163
〈표 2-1-7〉 성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 ····· 164
〈표 2-2-1〉 국내외 입양 현황 ····· 166
〈표 2-2-2〉 학령인구 ····· 166
〈표 2-2-3〉 어린이집 현황(시·도) ····· 167
〈표 2-2-4〉 어린이집 정원·현원 현황 ····· 168
〈표 2-2-5〉 어린이집 연도별 보육아동 현황 ····· 170
〈표 2-2-6〉 아동복지시설 수 및 보호아동 현황 ····· 171
〈표 2-2-7〉 연도별 요보호아동 발생 및 조치현황 ····· 173
〈표 2-2-8〉 아동학대 사례유형(중복포함) ····· 174
〈표 2-2-9〉 아동빈곤율 ····· 174
〈표 2-2-10〉 연령별 3대 사망원인 구성비 및 사망률 ····· 175
〈표 2-2-11〉 청소년성매매 발생 및 검거조치 현황 ····· 175
〈표 2-2-12〉 영양섭취부족자 및 에너지/지방과잉섭취자 분율 추이 ····· 176
〈표 2-2-13〉 문제유형별 상담실적 ····· 176
〈표 2-3-1〉 등록장애인 수 – 연도별, 장애유형별 ····· 178
〈표 2-3-2〉 등록장애인 수 – 성별, 장애유형별 ····· 179
〈표 2-3-3〉 보육시설 형태 ····· 180
〈표 2-3-4〉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현황 ····· 181
〈표 2-3-5〉 특수보육시설 및 장애아동 수 ····· 182
〈표 2-3-6〉 장애인 생활시설 및 입소자 수 ····· 183
〈표 2-3-7〉 장애인 생활시설수 및 입소 현황 ····· 184
〈표 2-3-8〉 정신요양 시설 수 및 입소자 수 ····· 186
〈표 2-3-9〉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 188
〈표 2-3-10〉 특수학교 ····· 188

〈표 2-3-11〉 특수교육 규모 ····· 189
〈표 2-3-12〉 특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 190
〈표 2-3-13〉 특수학급 설치유치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 192
〈표 2-3-14〉 특수학급 미설치 초·중·고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 194
〈표 2-3-15〉 장애인에 대한 가족 내 차별·폭력 정도 ····· 196
〈표 2-3-16〉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경험 여부 ····· 196
〈표 2-3-17〉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 196
〈표 2-4-1〉 고령가구 ····· 198
〈표 2-4-2〉 노인복지 생활시설 수 및 생활자 현황 ····· 199
〈표 2-4-3〉 노인학대 유형 ····· 201
〈표 2-4-4〉 노인학대 주된 행위자 ····· 201
〈표 2-4-5〉 노인(65세 이상)의 학대 경험률 ····· 202
〈표 2-4-6〉 노인의 건강상태 만족도 ····· 202
〈표 2-4-7〉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수급자 비율 ····· 202
〈표 2-4-8〉 노인 경제활동참가율 ····· 203
〈표 2-4-9〉 노인 빈곤율 – 절대적 빈곤율 ····· 203
〈표 2-4-10〉 노인 빈곤율 – 상대적 빈곤율 ····· 204
〈표 2-5-1〉 인구대비 체류외국인 현황 ····· 205
〈표 2-5-2〉 체류외국인 자격별·연도별 현황 ····· 206
〈표 2-5-3〉 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 ····· 207
〈표 2-5-4〉 체류외국인 국적별 현황 ····· 208
〈표 2-5-5〉 연도별 결혼이민자 현황 ····· 209
〈표 2-5-6〉 결혼이민자 국적별·성별 현황 ····· 209
〈표 2-5-7〉 결혼이민자 지역별·성별 현황 ····· 210
〈표 2-5-8〉 연도별 혼인귀화자 현황 ····· 211
〈표 2-5-9〉 연도별 국적취득자 현황 ····· 211
〈표 2-5-10〉 난민 인정률 ····· 212
〈표 2-5-11〉 난민심사 현황 ····· 212
〈표 2-6-1〉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 현황 ····· 213
〈표 2-6-2〉 탈북청소년 연도별 입국 현황 ····· 213
〈표 2-6-3〉 북한이탈청소년 재학현황 ····· 214
〈표 2-6-4〉 북한이탈학생 학업중단 현황 ····· 214
〈표 2-6-5〉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상태 변동 양상 ····· 215
〈표 2-6-6〉 전후 납북자 현황(추정) ····· 215
〈표 2-6-7〉 정부 발간 6·25 전쟁 중 납북자 명부 ····· 215
〈표 2-6-8〉 6·25전쟁 납북자의 출신지 및 직업별 통계 ····· 216

〈표 2-6-9〉 재외동포현황 ····· 217
〈표 2-6-10〉 재외한국학교현황 ····· 218
〈표 2-7-1〉 군 사망사고 현황 ····· 221
〈표 2-7-2〉 민간인과의 자살사고 비교 ····· 222
〈표 2-7-3〉 병에 대한 징계현황 ····· 222
〈표 2-7-4〉 군교도소 수용자 입 · 출소 현황 ····· 223
〈표 2-7-5〉 군 신분별 수용자 현황 ····· 224
〈표 2-7-6〉 군 형기별 수용자 현황 ····· 225
〈표 3-1-1〉 사형집행 인원 및 사면·감형 인원 현황 ····· 226
〈표 3-1-2〉 자살자 연령대별 현황 ····· 227
〈표 3-1-3〉 인구 십 만 명당 살인건수 비율 ····· 228
〈표 3-1-4〉 인공임신중절 사유(15~44세) ····· 228
〈표 3-1-5〉 모성사망비 등 ····· 229
〈표 3-1-6〉 실종 아동·장애인 신고접수 및 발견현황 ····· 229
〈표 3-1-7〉 영아사망률 ····· 230
〈표 3-2-1〉 교정시설 수용현황 ····· 232
〈표 3-2-2〉 경찰 유치장 현황 ····· 233
〈표 3-2-3〉 보호소년의 연간 신수용인원 및 1일 평균수용인원 ····· 234
〈표 3-2-4〉 소년보호사건 처리내역 ····· 234
〈표 3-2-5〉 벌금미납에 의한 노역장 유치인원 수(1일 평균 수용인원) ····· 235
〈표 3-2-6〉 영장사건 처리상황 – 전심급 ····· 236
〈표 3-2-7〉 형사공판사건(인원수) 중 구속사건 비율 – 접수 ····· 237
〈표 3-2-8〉 구속영장 발부율 ····· 238
〈표 3-2-9〉 범죄자 기소인원 중 구속인원 및 구속률 ····· 239
〈표 3-2-10〉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인별 처리상황 ····· 240
〈표 3-2-11〉 보석청구사건 처리상황 ····· 240
〈표 3-3-1〉 국선변호인 선정 사건수 및 피고인수 ····· 242
〈표 3-3-2〉 형사보상처리 인용률 ····· 243
〈표 3-3-3〉 구속영장 기각률 ····· 243
〈표 3-4-1〉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 ····· 245
〈표 3-4-2〉 공공기관 CCTV 설치/운영 ····· 245
〈표 3-4-3〉 공공기관 개인정보 노출 및 유출현황 ····· 246
〈표 3-4-4〉 권리침해정보 위반유형별 시정요구 현황 ····· 246
〈표 3-5-1〉 출입국자 연도별 추이 ····· 248
〈표 3-5-2〉 연도별 출입국사범 처리 현황 ····· 248
〈표 3-5-3〉 저상버스 도입현황 ····· 249

〈표 3-5-4〉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및 이용률 ····· 250
〈표 3-6-1〉 입영 및 집총 거부자(양심적 병역거부) 발생 현황 ····· 251
〈표 3-6-2〉 입영 및 집총 거부자(양심적 병역거부) 처리 현황 ····· 252
〈표 3-6-3〉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기소 및 구속자수 ····· 252
〈표 3-6-4〉 종교별 교세현황 ····· 253
〈표 3-6-5〉 종립 전문대학 이상 현황 ····· 254
〈표 3-6-6〉 종립 초·중·고등·특수학교 현황 ····· 254
〈표 3-7-1〉 연도별 통신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 256
〈표 3-7-2〉 제재종류별 방송심의 의결 현황 ····· 257
〈표 3-7-3〉 행정정보 공개율 ····· 258
〈표 3-7-4〉 정보격차지수 ····· 258
〈표 3-8-1〉 집회시위 발생현황 ····· 260
〈표 3-8-2〉 신고 및 미신고집회 개최 현황 ····· 261
〈표 3-8-3〉 연도별 집회시위 금지통고 현황 ····· 261
〈표 3-8-4〉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 위반 현황 ····· 262
〈표 3-8-5〉 단체조직의 자유 정도(공무원노동조합 조직현황) ····· 262
〈표 3-9-1〉 투표율 추이 ····· 264
〈표 3-9-2〉 국회 및 지방의회 여성의원 비율 ····· 264
〈표 3-9-3〉 관리직(5급 이상) 여성공무원 현황 ····· 265
〈표 3-9-4〉 장애인선거에 대한 투표편의 제공 ····· 265
〈표 3-9-5〉 선거사범 처리현황 ····· 266
〈표 4-1-1〉 연도별 최저생계비 ····· 268
〈표 4-1-2〉 건강보험 적용인구 – 지역별, 시도별 ····· 269
〈표 4-1-3〉 국민연금 가입자수 – 가입형태별, 시도별 ····· 271
〈표 4-1-4〉 공공연금 가입자수 – 연금형태별 ····· 272
〈표 4-1-5〉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 ····· 273
〈표 4-1-6〉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 ····· 275
〈표 4-1-7〉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류별 시설수와 평균 종사자수 및 수용인원 ····· 276
〈표 4-1-8〉 모자보호 생활시설수 및 생활 현황 ····· 277
〈표 4-1-9〉 노숙인 생활시설수 및 생활인원 현황 – 시도별 ····· 278
〈표 4-1-10〉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 및 지급 실적 – 시도별 ····· 280
〈표 4-1-11〉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인정현황 – 시도별 ····· 281
〈표 4-1-12〉 산재보험적용 근로자수 ····· 282
〈표 4-1-13〉 지니계수 및 상대적 빈곤율 추이 ····· 283
〈표 4-2-1〉 성별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구성비 ····· 285
〈표 4-2-2〉 고용형태별 임금 및 근로시간 ····· 286

〈표 4-2-3〉 고용형태별 임금총액 현황 ····· 287
〈표 4-2-4〉 성별 시간당 임금총액 ····· 288
〈표 4-2-5〉 학력별 시간당 임금총액 ····· 288
〈표 4-2-6〉 고용형태별 총 근로시간 및 소정 실근로시간 현황 ····· 289
〈표 4-2-7〉 학력별 총 근로시간 ····· 289
〈표 4-2-8〉 성별 총 근로시간 ····· 290
〈표 4-2-9〉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상여금·퇴직금 적용률 및 노조 가입률 ····· 290
〈표 4-2-10〉 성별 15세 이상 인구(천명) 고용률과 실업률 ····· 291
〈표 4-2-11〉 실업률과 장기실업자 비중 ····· 291
〈표 4-2-12〉 실업급여 수급인원, 평균수급일수 및 임금대체율 ····· 292
〈표 4-2-13〉 산업재해 현황 ····· 293
〈표 4-3-1〉 기대수명 ····· 295
〈표 4-3-2〉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간호사 수 및 병상 수 ····· 296
〈표 4-3-3〉 연도별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 ····· 296
〈표 4-3-4〉 건강검진 종별 수검률 추이 ····· 297
〈표 4-3-5〉 주관적 건강 인지율(19세 이상 표준화) ····· 297
〈표 4-3-6〉 천식·알레르기성비염·아토피피부염 유병률 추이(만19세 이상) ····· 298
〈표 4-3-7〉 주요 대도시 소음도 현황 ····· 298
〈표 4-4-1〉 취학률 ····· 300
〈표 4-4-2〉 학교급 및 성별 진학률 ····· 301
〈표 4-4-3〉 학교급 및 성별 학업중단율 ····· 303
〈표 4-4-4〉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 304
〈표 4-4-5〉 도시규모별 문화예술 관람률 ····· 304
〈표 4-4-6〉 여가활용 만족여부 및 불만족 이유 ····· 305
〈표 4-5-1〉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 ····· 307
〈표 4-5-2〉 주택 자가보유율 ····· 307
〈표 4-5-3〉 월평균 주거비 지출 현황 ····· 307
〈표 4-5-4〉 주거환경 만족도 추이(최저1~최고5점) ····· 308
〈표 4-5-5〉 홈리스 수 ····· 308

제3부 국제 인권통계

〈표 1-1〉 18개의 국제인권조약 비준 ····· 312
〈표 1-2〉 국가인권기구(NHRI) 승인 등급 ····· 314
〈표 1-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에 의한 개인청원 ····· 315

〈표 1-4〉 고문방지협약 제22조 절차에 의한 개인청원 ····· 316
〈표 1-5〉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4조 절차에 의한 개인청원 ····· 317
〈표 1-6〉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에 의한 개인청원 ····· 318
〈표 1-7〉 유엔 글로벌콤팩트 가입 기업의 수 ····· 319
〈표 1-8〉 난민, 망명신청자, 국내실향민, 귀환자, 무국적자의 현황 ····· 320
〈표 1-9〉 망명신청 및 난민지위 결정 현황 ····· 321
〈표 1-10〉 인간개발지수(HDI) ····· 322
〈표 1-11〉 유엔 전자정부발전지수 ····· 325
〈표 1-12〉 5세 미만 영유아사망률 ····· 328
〈표 1-13〉 자살률 ····· 329
〈표 1-14〉 근로시간 및 경제활동인구 ····· 330
〈표 1-15〉 유럽인권재판소 통계 ····· 331
〈표 1-16〉 미주인권재판소 통계 ····· 332
〈표 1-17〉 아프리카 인권재판소 통계 ····· 332
〈표 1-18〉 실업률, 기대여명, 1인당 국내총생산(OECD) ····· 333
〈표 1-19〉 국가관리지수(세계은행,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 334
〈표 1-20〉 행복지수(Better Life Index) ····· 336
〈표 1-21〉 국회 여성의원 비율 ····· 337
〈표 2-1〉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 및 시민적 자유(Civil Liberties) 지수 ····· 339
〈표 2-2〉 인터넷 및 언론자유 지수(프리덤하우스) ····· 340
〈표 2-3〉 언론자유지수(국경없는기자회) ····· 341
〈표 2-4〉 민주주의 지수 ····· 342
〈표 2-5〉 세계정보권리 순위(Gloval Rights to Information Rating) ····· 343
〈표 2-6〉 이민자 통합정책지수(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 III) ····· 344
〈표 2-7〉 아동발달지수(The Child Development Index) ····· 345
〈표 2-8〉 경제사회권 이행지수(SERF Index) ····· 346
〈표 2-9〉 사법정의 지수(World Justice Project) ····· 347
〈표 2-10〉 레가툼 번영 지수(Legatum Properity Index) ····· 349
〈표 3-1〉 정치테러척도 ····· 352
〈표 3-2〉 CIRI 인권지표(Cingranelli-Richards Human Rights Indicators) ····· 353
〈표 3-3〉 환경성과 지수(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 356
〈표 3-4〉 세계 경쟁력 순위 ····· 357

그 림 목 차

<그림 1> 인권정책 권고 등 추이 ····· 3
<그림 2> 인권상담, 안내 · 민원 추이 ····· 4
<그림 3> 유형별 진정 구성비 ····· 4
<그림 4> 진정 접수 및 처리건수 추이 ····· 5
<그림 5> 권고건수 및 수용률 추이 ····· 6
<그림 6> 교육과정 및 사이버교육 수강생 추이 ····· 6
<그림 7> 인권정책 권고건수와 수용률 추이 ····· 9

참 고 목 차

<참고 1> 사회권전문위원회 및 아동인권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 141
<참고 2> 인권교육 관련 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 141
<참고 3> 자유권 관련 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 142
<참고 4> 차별 관련 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 143
<참고 5> 장애인인권 관련 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 144
<참고 6> 성불평등지수 ····· 324
<참고 7> 국제정보화지수 ····· 326

2013 인권통계

인 쇄 : 2014년 12월
발 행 : 2014년 12월
발행인 : 현 병 철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주 소 : 서울시 중구 무교로 6(을지로 1가 16번지)
우 100-842
전화 / (02) 2125-9797 / 대표전화 1331
팩스 / (02) 2125-0913
홈페이지 / www.humanrights.go.kr
인쇄처 : (주) 삼일기획 (02) 503-4800